

발 간 등 록 번 호
11-1250000-000021-14

2004

북한개요

통 일 부

일러두기

- ① 본 책자는 주로 통일부의 분석·평가 자료와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를 활용, 북한 실상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② 북한의 인명, 기관 등과 같은 고유 명칭과 용어에 대해서는 가급적 북한 철자법에 따라 표기하였다.
- ③ 북한 연구의 참고를 위해 자료편에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차 례

I. 지리	1
1. 자연환경	3
가. 위치 및 면적	3
나. 지형	4
다. 지하자원	5
라. 기후	7
2. 사회환경	11
가. 인구	11
나. 행정구역	15
II. 정치	23
1. 정치이념	25
가. 주체사상	25
나. 각종 하위 통치이념	31
다. 혁명관	38
2. 정치체제	41
가. 체제 성격	41
나. 조선로동당	43
다. 정권기관	57
3. 정치권력	77
가. 김일성시대 정치	77
나. 김일성 사망과 유훈통치	81
다. 김정일시대 정치	82

Ⅲ. 군사 93

- 1. 인민군의 형성과정과 성격 95
 - 가. 형성과정 95
 - 나. 성격 96
 - 다. 군의 위상 98
- 2. 군사정책 및 전략 99
 - 가. 정책기조 99
 - 나. 군사전략 102
- 3. 군사조직과 제도 104
 - 가. 군사조직 104
 - 나. 군사제도 108
- 4. 군사력 113
 - 가. 지상군 113
 - 나. 해군 114
 - 다. 공군 115
 - 라. 예비전력 117
 - 마. 군사비 119
 - 바. 군수산업 120
 - 사. 대량살상무기 개발 현황 122
 - 아. 대외군사협력 124

Ⅳ. 외교 127

- 1. 외교정책 129
 - 가. 정책기조 129
 - 나. 외교 전개과정 132

2. 외교활동	138
가.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138
나. 외교 현황	142
V. 경제	187
1. 경제체제	189
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189
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192
2. 경제정책의 기초	195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195
나. 중공업 우선정책	197
다. 군사·경제의 병진	198
라. 경제관리 개선	199
3. 경제관리	200
가. 관리원칙	200
나. 관리방법	203
다. 관리체계	208
4. 경제계획 및 실적	221
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구축	221
나. 사회주의 경제계획 추진	227
다. 내부정비 조치 및 부문별 경제계획 추진	235
5. 분야별 현황	237
가. 국민소득	237
나. 재정	241
다. 화폐·금융	252

라. 산업부문별 실태 262
마.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288

VI. 과학기술 301

1. 과학기술정책 303
가. 정책기조..... 303
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304
2.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체계 311
가. 과학기술 행정체계 311
나. 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체계 314
다. 과학기술 연구기관 316
3. 최근 과학기술부문 동향 321
가. 각종 과학기술 행사 강화..... 321
나. IT산업 육성 동향 321

VII. 사회 323

1. 사회정책 및 구조 325
가. 사회정책..... 325
나. 사회계층 구조 326
2.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328
가. 조직생활 통제 328
나. 경제·사회적 통제 329
다. 사회일탈행위 및 범죄자 처벌 실태 330
라. 사회적 부조리 332
마. 정치범 수용소 333

3. 주민생활	334
가. 의식주 생활	334
나. 직장생활.....	339
다. 가정생활.....	342
라. 여가생활.....	343
4. 노동문제	345
가. 노동정책.....	345
나. 노동조직과 노동조건	346
5. 사회복지	347
가. 사회보장제도	347
나. 사회복지시설	348
다. 사회보험.....	350
6. 보건·의료	352
가. 보건·의료정책.....	352
나. 의료시설.....	355
다. 보건·의료요원 양성	356
라. 고려의학.....	357
7. 도덕·풍속	359
가. 도덕.....	359
나. 관혼상제.....	361
다. 명절.....	363
라. 민속놀이.....	366
8. 환경	368
가. 환경정책.....	368
나. 오염실태.....	370

VIII. 문화 375

1. 교육	377
가. 교육정책	377
나. 교육관리체계	378
다. 교육내용	382
라. 교원양성	384
마. 특수교육	385
2. 문학·예술	386
가. 문예정책 및 이론	386
나. 문예단체	390
다. 분야별 현황	392
3. 언론·출판	405
가. 언론	405
나. 출판	414
4. 관광	415
가. 관광정책	415
나. 관광자원	416
다. 주요 관광지	417
라. 관광시설	421
5. 체육	422
가. 체육정책	422
나. 지도·양성기관	423
다. 주요 체육대회	425
라. 체육시설	427
6. 종교	429

7. 역사	433
가. 시대구분.....	434
나. 주체사관.....	435
8. 언어	435
9. 문화시설	439
IX. 대남·통일.....	443
1. 대남전략 기초	445
가. 대남인식과 전략목표	445
나. 대남전략 및 전술	448
다. 대남사업기구	454
2. 대남전략 전개과정	460
3. 연방제 통일방안	468
자료	477
□ 사회주의 헌법	479
□ 조선로동당 규약	504

I . 지리



1. 자연환경

가. 위치 및 면적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에 위치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도상으로 북위 33도~43도에 속하는 온대기후지역이다. 동쪽으로는 동해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열도와 서쪽으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대륙과 마주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만주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방과 접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해 왔다.

북한 지역의 위치

방 향	경·위도	해 당 지 명
동단	동경 130도 41분 32초	나선시 우암리 (분단선: 경흥군 노서면)
서단	동경 124도 18분 41초	평안북도 룡천군 진흥로동자구 (분단선: 용천군 마안도)
남단	북위 37도 41분 00초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분단선: 황해도 용진군 봉강리)
북단	북위 43도 00분 36초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분단선: 현재와 같음)

* 출처: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2), p.7.

* 주: 섬을 포함하는 경우의 서단은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동경 124도 10분 47초)

I. 지리

북한 지역은 1953년 7월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2,300km²의 55%인 122,762km²¹⁾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 남북의 총 길이는 약 1,100km이고 동서의 길이는 좁은 곳이 200km, 넓은 곳은 320km이다. 해안선 길이는 총 8,593km인데 이중 북한 지역의 해안선은 2,495km이다. 또한 중국과는 1,353.2km 러시아와는 16.2km를 각각 접하고 있어 그 접경선의 전체 길이는 1,369.4km이다.

나. 지형

북한의 지세는 백두대간인 낭림산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이로부터 서쪽으로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등이 펼쳐져 있고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 등이 낭림산맥과 이어져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부와 남부로 오면서 점차 낮아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 산맥으로부터 발원한 여러 개의 큰 강들은 서해 및 동해로 흐르고 있으며 이들 강을 중심으로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평안북도의 묘향산과 함경남도의 함흥을 연결하는 선의 이북지방은 고산지대를 형성하여 백두산(2,750m), 관모봉(2,540m), 북수백산(2,521m), 남포태산(2,433m), 와갈봉, 차일봉, 두운봉, 백산, 운령, 대연지산, 낭림산 등 2,000m가 넘는 산만도 50여개 정도이다.

이에 따라 고원지대가 발달되어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백무고원(백두 및 무산고원)과 개마고원을 비롯하여 장진고원, 낭림고원, 풍산고원 등 10여개의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회령분지, 강계분지, 구성분지, 덕천분지, 이천분지 등 분지지형도 고루 발달되어 있다.

북한에 있는 강·하천들은 이러한 고산지역의 경사가 심한 지형을 따라

1) 북한은 우리나라 전체면적을 223,370km²로 서술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2), p.7.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고 수량도 풍부하여 동력자원으로서의 이용가치가 크다.

북한에서 가장 길이가 긴 압록강을 비롯하여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서해로 흐르는 강들은 산악지대를 벗어나서는 완만한 경사와 곡류하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두만강, 남대천, 용흥강, 어랑천, 성천강 등 동해로 흐르는 강들은 대체로 하천의 길이가 짧고 하폭이 좁고 깊으며 거의 직류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평야는 큰 하천들을 중심으로 서해안지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동해안지역에는 서해안에 비해 평야의 발달이 미약하여 규모가 작다. 주요 평야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중부 및 서남부의 대동강 유역에 발달한 평양평야(950km²)와 황해남도의 재령, 신천, 안악, 은천 등 재령강 유역에 발달한 재령평야(1,300km²), 황해남도 연안, 배천, 청단 지역의 연백평야(1,150km²), 평안남도의 안주, 문덕, 숙주, 평원 등 청천강 유역의 열두삼천리평야(750km²), 함경남도의 함주, 증평 등 성천강 유역의 함흥평야, 평안북도 압록강 유역의 용천평야 등이 있다.

또한 북한에는 크고 작은 자연호수와 인공호수가 많이 있다. 자연호수는 양강도의 천지(9.2km²)를 비롯하여 함경남도의 광포(9.0km²), 함경북도의 장연호(7.7km²) 및 만포호(8.6km²) 등 5km²이상의 호수만도 5개에 이른다. 인공호수는 관개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것과 수력발전용으로 조성된 것으로 수풍호(298.2km²)를 비롯하여 운봉호(104.9km²), 장진호(46.1km²), 부전호(20.3km²), 서흥호 등 5km² 이상의 호수가 25개 정도 조성되어 있다.

다. 지하자원

북한지역에는 지질적으로 시생대부터 신생대에 걸쳐 여러 지층이 형성되어 있고 지각변동의 영향으로 다양한 광물이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인 광물로는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흑연, 중정석, 운모, 형석, 은, 철, 연,

I. 지리

아연, 알루미늄, 석탄 등을 들 수 있다.

철광석은 함경북도 무산군을 중심으로 황해남도 은률과 재령 일대, 함경남도 허천, 덕성, 북청지구 및 강원도 창도군에 매장되어 있다. 금·은·동은 평안북도 운산, 삭주지구를 비롯하여 북한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주요 광물 매장 현황

구 분	품 위	매 장 량	분 포 지
철(Fe)	20~50%	20~40억톤	함북 무산, 함남 이원·허천, 황남 은률·재령, 평남 개천
중석(WO ₃)	65%	20~30만톤	황북 신평, 평남 대흥·양덕, 평북 창성
몰리브덴(MoS ₂)	90%	1,000~3,000톤	황북 수안, 함북 온성, 강원 금강
망간(Mn)	40%	10~30만톤	함북 부령, 강원 금강
니켈(Ni)	3%	1~2만톤	함남 정평, 함북 나진
석탄	6,000cal	147억톤 (무연탄 117억톤, 유연탄 30억톤)	평남 순천·덕천·개천·안주, 평북 구장, 함남 고원, 함북 새별
아연(Zn)	100%	1,000~2,000만톤	함남 단천, 평남 성천·개천, 자강 용림·송원·위원
금(Au)	100%	1,000~2,000톤	평북 동창·운산, 황북 수안·연산, 함남 허천, 강원 금강
은(Ag)	100%	3,000~5,000톤	평북 동창·운산, 황북 수안·연산, 함남 허천, 강원 금강
마그네사이트(Mgo)	45%	30~40억톤	함남 단천, 양강 백암·운흥
석회석(CaO)	50%	1,000억톤	함북 회령, 함남 고원

* 출처: 『조선중앙년감』, 각 년판 종합

특히 북한의 주종 수출품이 되고 있는 연·아연광은 함경남도 단천과 양강도 등 20여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함경남도 단천군의 검덕광산이 규모면에서 유명하다. 마그네사이트광은 북한지역에 전세계 매장량의 약 50%가 매장되어 있을 정도로 풍부하며, 특히 함경남도 단천군 일대에는 노천광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석탄 역시 북한 전역에 걸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북한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은 대부분이 무연탄이며, 유연탄은 함경북도 아오지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탄전지대와 평안남도의 안주탄전에서 주로 생산된다.

한편 원유는 매장 가능성은 있으나 경제성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북한 서부 연안 대륙붕과 동한만에 대한 시험탐사작업이 스웨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외국 석유기업들에 의해 일부 시도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최근 북한은 20만분의 1, 5만분의 1 지질도를 완성하고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지하자원 발굴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라. 기후

북한의 기후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지역이나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겨울철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덥다. 그리고 여름에는 습기가 많고 훈훈한 태평양쪽의 남동풍의 영향으로 자주 흐리고 무더우며 겨울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쪽의 북서풍의 영향으로 춥고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봄과 가을은 대체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데 봄철에는 기온의 급상승에 따른 수분증발의 증가로 가장 건조한 시기가 된다.

2) 채취공업성 국가자원개발국 리득호 부국장 인터뷰, 『조국』(도료: 조충련, 2003년 4월) p.36.

I. 지리

연중 평균 바람의 속도는 전반적으로 초당 약 2~3m 정도로 약한 편이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7~9월중 태풍이 통과하여 적지 않은 풍수해와 해일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동안의 주요 태풍으로는 제니스(1995), 올리와(1997), 야니(1998), 바트(1999), 프라피룬·사오마이(2000), 라마순·루사(2002) 등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1995년도에는 태풍이 북한 전역에 피해를 입힌 바 있다.

(1) 기온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0℃로써 남부지방이 14~15℃, 중부지방이 10℃ 내외인데 비하여 북부지방은 3~6℃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한 편이다.

지역별로는 동쪽의 산맥 발달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이 서해안에 비하여, 해안지대가 내륙지방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다. 특히 남부해안 지대는 가장 추운 1월달의 평균기온이 약 2℃ 내외인데 비하여 북부 고원 지대는 영하 18℃로 남북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또 해산의 연평균 기온이 3.6℃인데 비하여 해주 및 원산은 11℃로써 7℃ 정도의 차이가 있고 1월 평균기온은 원산의 영하 2.5℃에 비하여 해산은 영하 16.6℃로서 약 14℃ 정도의 차이가 있다.

겨울은 대체로 약 5개월 동안 지속되어 남한 지역에 비해 기간이 길다. 하천의 결빙기간만도 두만강은 4개월 이상, 압록강 및 대동강은 3개월 또는 그 이상 계속된다.

그러나 여름철의 월평균 최고 온도는 해산의 20.5℃(7월평균)에 비하여 신의주의 8월 평균기온이 3.5℃ 정도가 높을 뿐이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월평균 최고 온도와의 별 차이가 없는 등 여름의 지역별 평균온도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지역별 월평균 기온

(단위 : °C)

지역 \ 월	월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삼지연	-17.7	-14.4	-7.8	1.5	7.6	12.3	15.9	15.8	8.9	1.7	-6.9	-14.2	0.2
청진	-5.7	-3.9	1.1	7.0	12.0	15.5	19.9	21.7	17.5	10.9	3.5	-2.7	8.1
혜산	-16.6	-11.9	-3.3	5.7	12.1	16.7	20.5	19.8	12.8	5.0	-4.1	-13.6	3.6
강계	-12.3	-7.6	0.4	8.7	15.1	19.7	23.0	22.4	15.7	8.1	-0.5	-9.1	7.0
신의주	-7.0	-3.7	2.6	9.6	15.3	20.0	23.4	24.0	18.7	11.6	3.2	-4.1	9.5
함흥	-4.4	-2.3	2.9	9.7	15.3	18.6	22.1	22.8	18.1	12.0	4.7	-1.4	9.8
안주	-7.8	-3.8	2.3	9.7	15.6	20.4	23.5	23.9	18.4	11.1	3.3	-4.0	9.4
원산	-2.5	-0.9	3.8	10.5	15.9	19.0	22.5	23.2	18.8	13.4	6.6	-0.6	10.9
평양	-6.2	-3.3	3.0	10.5	16.3	21.0	24.0	24.1	18.8	11.8	4.1	-3.1	10.1
남포	-5.3	-2.5	3.0	10.4	16.1	20.6	23.7	24.3	19.6	13.0	5.3	-1.6	10.6
사리원	-5.3	-2.7	3.3	10.7	16.6	21.1	24.1	24.3	19.2	12.5	4.8	-2.2	10.5
해주	-3.7	-1.5	4.0	10.5	15.8	20.3	23.4	24.5	20.0	13.6	6.1	-0.6	11.0
개성	-4.4	-1.7	3.9	10.4	15.9	20.4	23.6	24.2	19.4	12.9	5.4	-1.4	10.7

* 출처: 기상청 기후예측과

* 주: 이 통계는 10년 단위로 작성되는 것으로 1975~1995년간 평균 기온

I. 지리

(2) 강수량

북한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600mm~1,500mm이며 그 중 53~63%가 6~8월의 3개월 동안에 내린다. 북한 주요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을 보면 장전지역

지역별 월평균 강수량

(단위 : mm)

지역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장전	52	42	62	62	111	140	271	252	262	119	101	46	1,520
청진	12	16	21	36	42	101	111	129	65	30	33	19	615
혜산	5	10	16	37	57	125	133	110	61	26	16	10	606
강계	8	9	19	53	87	143	198	157	77	39	31	18	838
신의주	11	10	16	48	77	117	234	207	98	51	36	17	920
함흥	14	15	25	54	58	112	193	178	95	39	36	15	834
안주	13	12	36	37	71	109	297	215	99	40	39	15	983
원산	39	36	43	57	85	150	261	287	200	66	75	29	1,327
평양	11	12	29	53	69	98	244	176	83	43	35	18	871
남포	12	11	30	33	72	76	209	200	89	44	51	24	849
사리원	12	11	25	55	68	91	203	225	109	35	52	18	905
해주	12	14	28	57	74	118	264	214	123	36	39	17	996
개성	13	16	29	68	103	116	291	264	133	39	41	18	1,130

* 출처: 기상청 기후예측과

* 주: 이 통계는 10년 단위로 작성되는 것으로 1975~1995년간 평균 강수량

(강원도 고성군)이 가장 많은 연 1,520mm인데 비하여 해산은 가장 적은 606mm로써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남한에 비해 적은 편이다.

북한의 지대별 강수량 분포를 보면 대체로 원산지방을 비롯하여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 적유령산맥 일대가 연평균 1,300mm내외로 가장 많은 편이고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북부 내륙지방은 700mm 이하이며, 동북부의 두만강 유역도 600~800mm 정도로 강수량이 적은 지대에 속한다.

2. 사회환경

가. 인구

북한은 그동안 인구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1989년 예야 비로소 「유엔인구기금」(UNFPA)에 1946~1987년 기간의 각종 인구통계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1994년 1월3~15일 기간중 「유엔인구기금」의 도움을 받아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여 1993년 인구를 2,121만 3,378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북한은 『조선중앙년감』을 통해 매년 총인구만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02년 『조선중앙년감』에 의하면 1999년 북한의 총인구는 2,275만명이다.

북한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1960년대는 3.0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0년대부터는 1.70%, 1980년대에는 1.60%, 1990년대 이후에는 1.0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960년대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인력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1980년대까지 출산제한 정책을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극심한 경제난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출산율 저하와 영아사망률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보면 평양시 및 평안남·북도에 전체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서부지역에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으며, 북부내륙지방인

I. 지리

자강도·양강도에는 8.7%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보면 총인구의 61% 정도가 도시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직업별 인구구성은 1960년대에서 1993년말 현재까지 공장·기업소 근로자는 38.3%에서 63.1%로, 농장원은 44.4%에서 23.5%로, 비생산직 사무원은 14.0%에서 13.4%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³⁾ 이렇게 농업인구는 감소, 공장·기업소 근로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서방권의 산업화에 따른 도시집중화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

북한의 인구정책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까지는 출산제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1983년에는 여성들의 낙태수술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아사자·영아사망률이 증가하고 더욱이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다산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에는 ‘산아제한규정’을 변경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산여성들과 유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낙태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1998년에는 37년만에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여 다산운동을 독려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한쪽 수레바퀴를 떠맡고 있다”⁵⁾고 주장하면서 강성대국건설에서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와 출산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매년 남녀평등권법령 발표일(7.30)을 즈음하여 여성들의 역할과 다산을 강조해 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주민의 평균수명을 1998년에는 74.5세⁶⁾, 1999년에는 66.8세⁷⁾로 하향하여 발표(2001년)한 바 있다. 이는 식량난으로 인한 영아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일제조사자료집』(1995) 참조.

4) “인구정책의 중요한 목적은 인구현상과 과정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본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전반적인 사회경제발전에 유리한 인구적 요인을 갖추어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적극 다그치는데 있다”: 『인구학』(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참조.

5) 『로동신문』(2001. 7.30)

6) “모든 주민들에 대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의 실시, 74.5살에 이른 사람들의 평균수명과……”: 『조선중앙통신』(1998. 7.21)

7) 외무성 부상 최수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아동기금」 회의(2001. 5.15)에서 발표.

사망률 증가, 아사자 발생과 보건·의료시설의 미비 등 열악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표 인구

(단위: 천명)

연도	총인구		남	여		성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46	9,257	-	4,629	-	4,628	-	100.0
1949	9,622	1.30	4,782	1.09	4,840	1.5	98.8
1953	8,491	-3.08	3,982	-4.48	4,509	-1.76	88.3
1956	9,359	3.30	4,474	3.96	4,885	2.71	91.6
1960	10,789	3.62	5,222	3.94	5,567	3.32	93.8
1965	12,408	2.84	6,067	3.05	6,341	2.64	95.7
1970	14,619	3.33	7,127	3.27	7,492	3.39	95.1
1975	15,986	1.80	7,433	0.84	8,553	2.68	86.9
1980	17,298	1.59	8,009	1.50	9,289	1.66	86.2
1982	17,774	1.37	8,194	1.15	9,580	1.55	85.5
1985	18,792	1.87	8,607	1.65	10,185	2.06	84.5
1986	19,060	1.43	8,710	1.20	10,350	1.62	84.2
1987	19,346	1.50	8,841	1.50	10,505	1.50	84.2
1989	20,000	1.68	9,140	1.68	10,860	1.68	84.2
1993	21,213	1.48	10,330	3.12	10,884	0.06	94.9
1994	21,514	1.42	-	-	-	-	-
1996	22,114	1.38	-	-	-	-	-
1997	22,355	1.08	-	-	-	-	-
1998	22,554	0.89	-	-	-	-	-
1999	22,754	0.89	-	-	-	-	-
2000	-	-	-	-	-	-	-
2001	-	-	-	-	-	-	-
2002	-	-	-	-	-	-	-

* 출처: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자료 종합, 1989년부터는 『조선중앙년감』을 통해 매년 발표

* 주: 성비는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인구수

I. 지리

북한의 총인구 추계

(단위 : 천명)

연 도	총 인 구	남	여	성 비(%)
1970	14,905	7,052	7,853	89.8
1972	15,683	7,458	8,225	90.7
1975	16,646	7,964	8,682	91.7
1977	17,083	8,194	8,889	92.2
1980	17,621	8,478	9,143	92.7
1982	18,214	8,784	9,430	93.1
1985	19,097	9,248	9,849	93.9
1987	19,559	9,491	10,068	94.3
1990	20,221	9,841	10,380	94.8
1992	20,798	10,140	10,658	95.1
1995	21,543	10,519	11,024	95.4
1997	21,810	10,672	11,138	95.8
1999	22,082	10,824	11,258	96.1
2000	22,175	10,876	11,299	96.3
2001	22,253	10,920	11,333	96.4
2002	22,369	10,983	11,386	96.5

* 출처: 통일부

* 주: 성비는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인구수

나.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구역은 1945년 해방 당시에는 6도, 9시, 89군, 810읍·면이 있으나, 1952년 12월 행정체계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도(특별시), 시·군(구), 읍·면, 리(동)의 4단계 행정구역 체계 중 면을 폐지하여 도(직할시), 시(구역)·군, 읍·리(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구역체제로 개편하고 군 지역을 재분할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단위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즉, 1946년 9월 평양시를 평안남도에서 분리하여 특별시로 승격시켰다가 1952년 12월에는 직할시로 개편하는 등 60여 차례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2003년 12월 현재 3직할시, 9도, 25시, 31구역⁸⁾, 145군, 2구, 2지구, 145읍, 3230리, 1136동, 267노동자구⁹⁾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¹⁰⁾

종래의 행정구역 개편이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면서 김일성·김정일 부자 및 가계우상화를 위한 지명 개칭과 한국의 행정구역수를 의식한 구역수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본다면, 나선시, 흥남시, 신의주특별행정구 등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개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 '구역'은 대도시(평양, 남포, 청진)에, '구·지구'는 도(평안남도, 함경남도)에 소속된 행정구역으로 시·군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단위이다.

9) '노동자구'는 광산, 임·수산사업소, 공장, 기업소 등에 인구가 집중되어 일종의 취락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별도로 설치된 행정구역으로 1952년 12월 행정구역 개편시 신설되었다.

10) 『조선대백과사전 18』(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p.21~23; 『고장이름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2002) 및 북한의 신문·방송 종합

I. 지리

행정구역 현황

구 분	시(구역)	군(읍)	구	지구	리(동)	노동 지구	도 소재지
평양시	(19)	4(4)			118(284)	10	-
남포시	(5)	1(1)			35(75)	-	-
나선시	-	-			12(20)	-	-
평안남도	5	15(15)	1	1	361(118)	31	평성시
평안북도	3	22(22)			484(88)	31	신의주시
자강도	3	15(15)			229(68)	23	강계시
양강도	1	11(11)			143(25)	67	혜산시
황해남도	1	19(19)			419(26)	11	해주시
황해북도	3	16(16)			332(77)	8	사리원시
함경남도	4	15(15)	1	1	465(160)	35	함흥시
함경북도	3(7)	12(12)			253(134)	44	청진시
강원도	2	15(15)			379(61)	7	원산시
합 계	25(31)	145 (145)	2	2	3,230 (1,136)	267	

* 주: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통계에 포함

행정구역 개편내용

시 기	개 편 내 용
1946. 9. 5	· 평양시를 특별시로 승격 · 경기도에 있던 연천군 일부와 함남의 원산시, 문천군, 안변군을 분리, 강원도에 통합
1949. 1.31	· 평북의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위원군, 초산군, 희천군과 함남의 장진군 일부를 병합하여 자강도 신설
1949.10	· 함남에 흥남시를 신설(1960.10 폐지, 2001. 7 재신설)
1952.12	· 개성시, 개풍군 및 판문군을 병합하여 개성지구 신설, 중앙직속으로 운영
1952.12.22	· 면을 폐지 · 평양특별시를 평양직할시로 명칭 변경 · 면을 정리 병합하여 군을 증설(94개 군→168개 군), 리를 1만 120개에서 3,658개로 병합 개편 · 군의 중심지를 읍으로 호칭 · 노동자구 4개소 설치 · 평양직할시의 구를 구역으로 개칭 * 4단계 행정체계를 3단계로 변경
1954.10.30	· 양강도 신설 - 함남 북부 산악지대의 혜산시와 10개 군을 병합 · 황해도를 남·북도로 분리 신설 - 황해북도는 사리원, 송림시와 17개 군으로 신설 - 황해남도는 해주시와 18개 군으로 신설 - 개풍군과 판문군을 황해북도에 편입
1955. 2.22	· 도시내의 리를 동으로 개칭
1957. 6	· 개성지구에 개풍군과 판문군을 재편입하여 개성직할시로 승격
1960.10	· 함흥시를 직할시로 승격(1970. 7 일반시로 격하)
1960.10.12	· 청진시를 7개 구역으로 개편 · 평양을 11개 구역→18개 구역으로 확대 개편
1963. 5. 9	· 평남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을 평양직할시에 편입
1963.11	· 함북 청진시를 직할시로 승격

I. 지리

시 기	개 편 내 용
1965. 1.15	· 평양 북부지역을 분리 병합하여 평성구 신설 · 양강도의 부전군을 함남에 편입
1967.10	· 황남의 송화군을 일부 분리, 과일군 신설 · 평북 구성군을 시로 승격
1969.12	· 평남 평성구를 시로 승격
1970. 7	· 함흥시 덕산 퇴조지역을 군으로 변경 · 청진직할시를 일반시로 격하
1972. 4	· 평남 순안군을 평양직할시 순안구역으로 변경 · 강원도 문천군을 원산시에 편입
1974. 1.21	· 함남 일부군 폐지(인흥, 신창, 홍상, 신상, 수동, 덕산군)
1974. 5.31	· 평남 은산군, 평북 청성군, 함남 광천군, 함북 유선군 폐지
1976. 6. 8	· 원산시 일부를 분리, 문천군 재신설
1977. 3	· 함남 영흥군을 금야군으로 개칭
1977. 9	· 함북 경흥군을 은덕군으로, 경원군을 새별군으로 개칭
1977.11	· 청진시에 무산군과 경성군을 편입, 청진직할시로 승격
1978. 3.29	· 평남 강서군을 폐지하고 강서군과 용강군 일부를 통합하여 대안시 신설
1978. 8. 7	· 양강도 5호지구와 삼지연군 일부, 함북 연산군 일부를 통합하여 대흥단군 신설
1979.12	· 남포시에 대안시와 용강군을 편입, 남포직할시로 승격
1981. 8.17	· 양강도 신파군을 김정숙군으로 개칭
1981.10.22	· 함북 옹기군을 선봉군으로, 함북 명간군을 화성군으로, 함남 오로군을 영광군으로 개칭
1982. 8	· 함남 단천군을 시로 승격
1982. 9	· 함남 퇴조군을 낙원군으로 개칭
1983. 3	· 평남 강동군을 평양직할시에 편입 · 남포직할시의 대안시와 남포구역을 폐지하고 5개 구역 신설
1983.10	· 평남 순천군을 시로 승격

시 기	개 편 내 용
1985. 7	· 청진직할시를 폐지, 청진시·경성군·무산군으로 분리, 각각 함경북도에 편입
1985.12	· 청진시 부령구역을 함경북도 부령군으로 개편
1986. 6	· 평남 덕천군을 시로 승격
1987. 8	· 평남 안주군을 시로 승격
1988. 7	· 평북에 신도군 재신설
1988. 8.25	· 양강도 후창군을 김형직군으로 개칭
1989.12	· 신의주시에 3개 구역(해안, 남, 광명) 신설
1990. 1	· 황남 평천군을 봉천군으로, 함남 함흥시 성천구역을 성천강구역으로, 함남 함흥시 용성구역을 해안구역으로 개칭
1990. 8	· 양강도 풍산군을 김형권군으로 개칭, 평남 개천군을 개천시로 승격
1990.12	· 함남 고원군을 분리, 수동구 신설
1991. 5	· 강원도 문천군을 시로 승격
1991. 7	· 함북 회령군을 시로 승격
1992. 1	· 평남 은산군 신설
1992.	· 청진시에 청암구역 신설
1993. 1	· 함북 청진시 부윤구역을 나남구역에 편입
1993. 9	· 나진·선봉시 신설(나진시와 선봉군 병합), 나진선봉직할시로 승격
1994. 3	· 청진시 나남구역 부윤노동자구를 부윤구역으로 승격
1994. 8	· 평북 정주군을 시로 승격
1995. 5	· 평성시 일부를 은정구역으로 명명, 평양직할시의 19번째 구역으로 편입

I. 지리

시 기	개 편 내 용
1995. 9	· 평남에 등장지구 신설 · 함남 신포시 일대 7개 리와 1개 노동자구를 분리, 금호지구 신설
1997. 8	· 평남의 안주·순천시 일부를 분리, 운곡지구 신설
1999. 6	· 평남 문덕군을 분할 청남구를 재신설
2000. 8	· 나진선봉직할시를 나진직할시로 개칭, 나진구역과 선봉군을 폐지
2001. 7	· 함흥시내 7개 구역 폐지, 홍남시 재설치
2002. 9	· 평북 신의주시·주변 군 일부를 중앙 직속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
2002.11	· 강원도 금강산 일대와 통천군 일부를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
2002.11	· 개성시와 관문군 일부를 개성공업지구로 지정, 관문군을 폐지
2003. 6. 2	· 개성직할시의 개풍군 및 장풍군을 황해북도에 편입
2003. 9	· 개성직할시를 일반시로 격하, 황해북도 편입 확인

* 출처: 『조선대백과사전 18』(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고장이름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2002) 및 북한의 신문·방송 종합

행정구역도



행정구역 체계 비교	
해방당시 (4단계)	2003년 12월 현재 (3단계)
도 시·군(구) 읍·면 리·동	도(직할시) 시(구역)·군 읍·리(동·노동자구)
6도, 9시, 89군	3직할시, 9도, 25시, 145군

Ⅱ . 정치



1. 정치이념

가. 주체사상

(1) 형성과정

북한에서 ‘주체’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 개최된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연설에서이다.¹⁾ 당시 김일성이 당 사업에서 주체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는 북한 전역에 소련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어 이로부터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 연설에서 ‘주체’는 당면한 사상사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김일성이 당내의 여러 과별에 대한 숙청을 계속하면서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리고 중·소간 이념 분쟁의 격화로 국제공산주의운동 대열에서 현대 수정주의에 관한 시비가 벌어지자 대외정치 명분으로까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주체’가 ‘주체사상’으로 된 것은 김일성의 1인 지배권력 강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김일성의 절대권력이 확고해지고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된 것은 1967년의 일이다. 이때부터 김일성 우상화의 이론적 근거²⁾가 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467.

2) 북한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은 1948년 9월 정권 수립시까지의 ‘건국사상총동원운동’, 1950년대의 ‘공산주의교양’, 1960년대의 ‘혁명전통교양’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가운데 1960년대에 진행된 혁명전통교양은 김일성과 그의 가계 우상화가 중심 내용이었다. 김일성은 제4차 당대회(1961. 9)에서 보고를 통해 공산주의의 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결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II. 정치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치 사상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등장은 김일성의 1인 지배 강화,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1970년대에 들어서자 당의 유일한 이념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표방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 이념으로 공식화하여 당 규약에 명문화하였다.³⁾ 1972년에 제정된 헌법은 주체사상을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하였다.

김정일은 당중앙위 제5기 제8차 전원회의(1974. 2.12)에서 후계자로 결정된 후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1974. 2.19)에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주의’를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으로서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라고 강조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지었다.⁴⁾ 한편, 1974년 4월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에는 주체사상을 ‘현시대 로동계급의 영생불멸의 지도리념’이라고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우월한 사상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데 주력하였다. 1982년 이후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지도적 원칙의 한 부분으로 구성하는 등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고, 1986년 이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50년대 중반에 ‘주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1970년대에 와서 주체사상을 확립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1930년 6월 말, 중국 만주의 장춘현 ‘카륜’에서 열린 ‘공청 및 반제 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 창시를 선포했다고 주장한다.⁵⁾

3)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461.

4) 김정일,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8~9.

5) 북한은 김일성 전기와 김정일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 등을 통해 1930년에 주체

그러나 김일성이 1930년대에는 중국공산당의 무장부대인 동북항일연군에서, 그리고 1940년대 초반에는 소련군의 정찰부대인 88특별여단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그가 1930년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는 김정일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내 용	제 기 시 기	배 경
사상에서의 주체	당 선전선동원대회 (1955.12.28)	· 스탈린의 사망 · 당내 남로당파 숙청
경제에서의 자립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56.12.11)	· 대외원조 감소(5개년 경제계획 수립 차질) · 당내 반김일성 움직임 고조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 (1957.12.5)	· 공산권내 개인숭배 반대운동 · 당내 연안파, 소련파 타도
국방에서의 자위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1962.12.10)	· 중·소분쟁 심화와 미·소 공존 모색 · 한국의 5·16 군사정변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제2차 당 대표자회 (1966.10.5)	· 중·소분쟁의 확대 · 비동맹 운동의 발전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1967. 5.28), 당중앙위 제5기 제8차 전원회의(1974. 2.12) 및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1974. 2.19)	·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 · 김일성 개인숭배운동 전개
온 사회 주체 사상화 강화	제6차 당대회 (1980.10.10)	· 부자 세습체제 공고화

사상을 창시했다고 공식화시키고 있으나, 때로는 그 시기를 1926년으로 소급하기도 한다. 즉 김일성이 1926년 10월에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년감』(1982), p.190;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결성된 것으로 선전했다. 『정치사건』(1973), p.1145.

II. 정치

(2) 기능과 내용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체제와 주민생활 그리고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 되고 있다. 김일성 사후에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들⁶⁾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노동당과 국가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다.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⁷⁾고 되어 있으며, 1998년 9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3조는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⁸⁾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도 교양과 학습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체사상 교양에는 원리교양, 충실성 교양,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전통 교양, 당정책 교양, 계급교양 등이 주종을 이룬다. 주체사상은 북한 주민들의 삶 자체를 규정짓는 하나의 준거틀이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대외면에서 자주노선의 추구라는 명분하에 폐쇄체제를 합리화하는 준거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대남면에서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남조선혁명 및 공산화통일을 정당화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대내외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그 형성과 전개과정이 여러 측면에서 변화·발전을 보인 것과 같이 그 내용도 새로운 면들을 보충하

6) 김정일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 1);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 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10. 2).

7)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규약 전문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했으나,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8) 1992년 개정 헌법에서도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이라는 구절을 삭제하였고, 1998년 개정헌법에도 이러한 구절은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면서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란 말을 처음 사용할 때,⁹⁾ 그 내용에 대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 사상이라 했다.

여기서 사람이란 집체적 용어인 인민대중을 뜻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¹⁰⁾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¹¹⁾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개념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따라 붙는다. 그것은 ‘혁명적 수령관’이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는 없다고 한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지도가 주체 확립에서 핵심이 되는 셈이다. 이 점에서 주체사상에서의 수령의 역할과 지위는 그 기원과 종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1986년에는 ‘수령·당·대중’이 수령을 뇌수(腦髓)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적 통일체이며, 이들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그 내용에 추가하였다. 김정일은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고 하여 ‘수령론’에서 더 나아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¹²⁾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이 등장함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은 최상의 수준으

9)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는 1961년 11월 5일자 『로동신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0)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1055.

1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참조.

12)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 7.15) 참조.

II. 정치

로 강화되었다.

“혁명의 주체는 다름아닌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은 곧 바로 ‘혈연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 주는 ‘아버이 수령’으로부터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다는데에 근거하고 있다. 김정일은 “은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개인과 집단의 자주성이 다 같이 실현되는 완전한 집단주의적 사회관계”로 되어간다고 강조한다.¹³⁾ 북한은 이와 같은 주체사상의 혈연론으로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3) 최근 위상 변화

주체사상은 김일성 사후 강조빈도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5년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등 3개 신문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3회 언급했던 것이 1996~1998년에는 1회로 줄어들었으며, 1999~2001년에는 그나마도 사라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체사상이 지배이념으로서 자리를 내놓았다는 것은 아니며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정세에 따른 하위 실천이념들의 부각 필요에 의해 그 강조의 수위를 낮추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반적인 선전의 강도는 약화되고 있는 대신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 새로운 실천적 하위 통치이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3)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92. 1. 3), 『김정일선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288.

나. 각종 하위 통치이념

(1)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자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체제 유지에 총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몰락의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고, 변화의 물결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내놓은 두 가지 하위 통치이념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이다.

북한은 1980년대말부터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다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집중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해 “오늘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력사의 법칙”¹⁴⁾이고 사회주의의 일시적 좌절의 이유는 주체사상과 같은 위대한 사상이 없었고 김일성·김정일과 부자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동구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로 침투해 들어온 반동적 책동의 결과”¹⁵⁾라고 입장을 정리한 다음,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화와 정치에서의 다당제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를 허물고 인민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

대신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14) 1990~1994년도 김일성 신년사 참조.

15) 김정일 담화(1992. 1. 3)

16) 위 담화 참조.

II. 정치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 라고 선전하면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아가기 위해 몸바쳐 투쟁하자”¹⁷⁾고 주민들을 학습시켰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란 ‘영원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독창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인류의 참된 복지생활이 보장되는 이상 사회를 구현한 정치제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한 걸음도 물러서거나 주저함이 없이 김정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2002년 1월 신년 공동사설에서 “수령이 탁월하고 사상이 위대하며 군대가 위력하고 제도가 우월하기에 우리식 사회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¹⁸⁾라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령·사상·군대·제도의 ‘4대 제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¹⁹⁾는 1986년 7월 김정일의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198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행한 김정일 연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본격 강조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되었다.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원천이 첫째,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지도자들째, 주체사상 셋째, 혁명전통 넷째, ‘우리식 사회주의’ 다섯째, 민족의 고유한 역사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

17)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1. 5. 5); 『김정일선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52.

18) 『로동신문』(2002. 1. 1) 참조.

19)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민족자주의식의 높은 표현”이라고 하였으며,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규정하였다. 『철학연구』 제4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1989.12)

20)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평양: 평양출판사, 1989), pp.127~188.

결국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워 붕괴된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창된 하위 통치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남 측면에서는 민족대단결 논리를 뒷받침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재와 노력을 들여 1994년 10월 단군릉을 완공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2) 붉은기 사상

김일성 사망(1994. 7), 자연재해 등 체제위기 국면이 전개되던 1995년부터 김정일은 “적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 희어지는 것이나, 우리는 붉다”며 사회주의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를 지키는 보루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면서, 사회주의 순결성·체제보루를 상징하는 ‘붉은기 사상’을 내놓았다.

‘붉은기 사상’은 1995년 8월 28일자 노동신문에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가자’라는 논설이 실린 이후부터 북한의 각종 언론보도에 등장하였다. 이어 1996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라는 제목을 내세우면서부터 ‘붉은기 사상’의 선전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붉은기 사상’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체제 위기를 느낀 북한 지도부가 체제 수호의 구호로서 내세운 것으로 그 선전의 강도를 높였을 뿐 주체사상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었다. ‘붉은기 사상’의 기초인 ‘붉은기 철학’이 주체의 혁명철학에 기초해서 일심단결의 혁명철학과 신념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붉은기 사상’이 주체사상에 기초하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나온 체제수호의 논리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붉은기 사상’은 “어떤 배신도 모르며 사소한 사상적 변질도 없는 일심

II. 정치

단결의 상징이며 혁명적 지조와 절개로 죽어서도 붉은 기폭에 싸여 영도자의 품속에서 영생하려는 신념의 기치”²¹⁾로 표현된다. 즉 살아서도 죽어서도 김정일에게 충성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1997년 10월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하고 황장엽 망명(1997. 2) 등으로 인한 북한사회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면서 ‘붉은기 사상’에 대한 강조도 줄어들었다.

(3) 강성대국론

강성대국론은 1998년에 본격 등장한 이념이다. 1998년 2월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 및 ‘8·15’를 전후하여 ‘강성대국’이라는 용어가 제시되었다.²²⁾ 이어 8월 22일 노동신문 정론 ‘강성대국’이 발표되고, 같은해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하고서는 이를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인 것처럼 의미부여하는 등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 건설론은 3가지 측면으로 제시된다. 첫째는 사상·정치의 강국 건설이고, 둘째는 군사의 강국 건설이며, 셋째는 경제의 강국 건설이다.

북한은 사상의 강국이란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공고한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이 이룩된 나라”를 말하며, 군사의 강국은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全民 무장화, 전국 요새화가 빛나게 실현되어 그 어떤 원썩도 범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보루”를 뜻하고, 경제의 강국이란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면 우리 조국은 모든 면에서 강대한

21)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로동신문』(1996. 1. 9) 참조.

22) 북한은 중앙방송(1998. 4. 8)을 통해 “강선의 정신과 강계의 혁명정신으로 일어날 때 조국은 위대한 강성대국으로 만방에 위력을 떨칠 것이다”라고 하였고, 판문점 동포 단합대회(1998. 8. 5)에서도 “민족대단결로 분렬주의 세력이 구축한 분단의 장벽을 단호히 허물어 버리고 부강번영하는 통일 강성대국을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23)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1998. 9. 9)

나라로 빛을 뿌리게 된다”²³⁾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신사고’에 기초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종자론’²⁴⁾을 관철할 것을 촉구하였다.²⁵⁾ ‘신사고론’은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고방식, 투쟁기풍 등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과거 다른 나라의 낡은 틀과 관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우리식’ 대로의 방법론을 강조하고 있다.²⁶⁾

북한이 강성대국론을 내놓은 배경에는 대내적으로 김정일 시대의 출범에 즈음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이념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건재함을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선군정치론

1995년 이후 김정일 정치의 특징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선군 정치이다.²⁷⁾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7년 12월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나, 군 중시의 정치방식은 김일성 사후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²⁸⁾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선행, 군 중시’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독창적인 위대한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기둥으로

24) ‘종자론’은 1973년 4월 김정일의 논문 『영화예술론』에서 제시된 이론으로 “사업에서 근본을 이루는 핵을 틀어쥐고 근원적 문제부터 혁명적으로 풀어 사업전반에서 변혁을 이룩해 나간다”는 종자 중시의 논리이다.

25)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로동신문』(2001. 1. 1) 참조.

26)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자”: 『로동신문』(2001. 1. 9)

27) 북한은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이 다박술 초소를 방문하였을 때부터 선군정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동신문』(2001.11.22) 참조.

28) 『로동신문』(1998.10.19) 참조.

II. 정치

부강조국 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²⁹⁾는 표현으로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방 공업은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국가정치의 첫째 가는 중대사”³⁰⁾라고 함으로써 다른 어느 분야보다 국방력의 강화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였다.³¹⁾

또한 북한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였고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정립된 것으로 주체사상은 선군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지침이라고 주장³²⁾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추구하는 국가의 자주성을 수호하는 것은 선군정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여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구현하는 정치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군정치는 이른바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군의 정치·경제·사회적 선도역할을 통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군정치는 군 중시의 정치로서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³³⁾로 규정된다. 또한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 나가는 것”³⁴⁾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북한은 이러한 군 중시 정치를 “김정일 동지의 기상이자 우리당의 기질이고 김정일동지식이자 우리 당의 혁명방식”³⁵⁾이라고 하는가 하면,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데까지 확대

29) 『로동신문』(1998.10.19) 참조.

30) 『로동신문』(1998. 8.22) 참조.

31) 2003년도 신년 공동사설 참조.

32)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고 세계관적 기초이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 한 방법론적 지침이다”: 『로동신문』 논설 (2003. 3.21)

33) 『로동신문』(2003. 4. 3) 참조.

34) 1999년도 신년 공동사설 참조.

35) 『로동신문』(1998.10.10) 참조.

해석하고 있다. 군 중시 사상을 반영한 국방위주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선군정치론은 오늘날 김정일체제 유지의 독창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통치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와같은 군 우선의 의지를 수시로 표현해 왔다. 1997년 신년 공동사설은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사회주의의 운명과 부강조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7년 2월 15일 김정일의 55회 생일을 축하하여 정권기관들이 보낸 축하문에는 “군대가 혁명 주체의 핵심역량, 주력군을 이루며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라고 강조했다. 1998년 3월 9일 노동신문은 “군대를 기둥으로하여 혁명을 완성해 나가야 하며 군대를 본보기로 온 사회와 혁명대군을 정예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사지도자들의 권력핵심의 인사에서도 두드러진다. 무엇보다도 김정일 자신이 1998년 9월에 이어 2003년 9월에도 국가최고의 직책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혁명1세대인 리을설, 백학림 등 군부 원로들은 일선에서 퇴진하였지만 군부실세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리용무 등 핵심계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96년에는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과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정전협정 체결일) 등 군관련 기념일을 공휴일이자 ‘국가명절’로 지정하였다.

선군정치의 표방으로 군부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2003년 3월 노동신문에서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류다리, 금릉동굴, 금강산 발전소, 문화유적지 건설 등 대부분의 중요 경제건설 사업과 각종 우상화 선전물을 군 인력으로 건설했다. 그밖에도 군대는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 광산, 협동농장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제2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농사와 철도운행, 중요 치안업무 등에도 간여하고 있다.

199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군대가 창조한 정신과 도덕, 문화와 생활기풍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가 군을

II. 정치

따라 배울 것을 독려했다. 또한 ‘군민일치 모범군 생취운동’, ‘우리초소 우리학교 운동’을 벌여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꾀하고, 2002년부터는 ‘군민일치³⁶⁾ · 관병일치³⁷⁾ · 군정배합³⁸⁾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³⁹⁾

다. 혁명관

(1) 혁명목표와 단계

북한의 혁명목표는 ① 북한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 공산주의 사회건설 ② 남한 지역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 ③ 세계 공산화 혁명이라는 3가지 과업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 3가지의 과업간의 연관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은 ‘남조선혁명을 위한 기지’를 강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세계혁명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은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할 때까지의 혁명단계 구분, 각 혁명단계마다의 목표와 전략적 과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론의 특징은 프롤레타리아 정권이 들어서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 이후부터 무계급 사회가 실현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까지를 과도기 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⁴⁰⁾

36) 군민일치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결 같은 것”을 의미한다.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3), p.338.

37) 관병일치란 “지휘관과 병사가 하나와 같이 굳게 뭉쳐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3), p.514.

38) 군정배합이란 “군사일군들과 정치일군들이 서로 합심하여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의도대로 군사사업과 정치사업을 벌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동신문』(2002. 8. 3) 참조.

39) 북한이 2003.5.14 개최한 ‘김정일의 선군혁명로선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에서 군민일치, 관병일치, 군정배합의 실현을 다시 강조하였다.

40) 철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44~58.

(2) 대내혁명(3대혁명)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까지 과도기 단계에서의 혁명 목표로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의 두가지 고지 점령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도기 단계에서의 2가지 혁명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수행을 당면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3대혁명 중에서 무엇보다 인간개조 및 정치사업을 위해 사상혁명을 중요시하고 이를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촉진을 위해 1970년대 초부터 김정일 관장하에 '3대혁명소조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전당·전인민적 차원에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 운동', '80년대 속도 창조운동' 등을 벌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김일성 사망후 1995년부터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대내적으로 정치·군사·경제의 3대진지강화론을 내세워 체제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대남혁명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완수'를 위한 지역혁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성격을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⁴¹⁾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의 완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의 당면 목표는 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계열이

41)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동경: 구월서방, 1974), p.278.

II. 정치

주도하는 민주연합정부라는 이름의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남혁명노선에서 남한내에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평화적 방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폭력적 방도에 의거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임하면서도 대남혁명의 전략목표와 혁명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⁴²⁾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함에 따라 강경 일변도의 혁명전략의 성격이 다소 유연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세계혁명

북한은 세계혁명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면서 다른 한편, 이를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여건 조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혁명은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을 그 기본 동력으로 하고 있으며 대남혁명의 대외적 환경으로서 국제혁명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 된다.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으로서 반미투쟁을 세계 모든 혁명역량의 선차적 과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반제·반미 역량의 통일전선 형성,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단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³⁾

그러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퇴조, 비동맹운동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세계혁명의 추진은 명목상으로 남아 있을 뿐, 실제로는 스스로의 체제생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42)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1990. 5.24) 시정연설에서도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촉구하였다.

43)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혁명 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91~99.

2. 정치체제

가. 체제 성격

북한 정치체제는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 특성인 1당 지배체제라는 점과 북한 고유의 특수성에 기인한 유일 지배체제·세습체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1당 지배체제

북한은 “조선로동당을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 조직”이라고 규정하면서⁴⁴⁾ 정권기관이나 기타 정치조직으로서의 각종 사회단체들을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당의 영도가 필연적이라고 하고 있는 등 이른바 ‘당국가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⁴⁵⁾

북한의 권력구조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⁴⁶⁾ 이와 같은 북한 정치체제는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권력구조의 일반적 특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서도 공식적으로 당대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당의 활동사항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통치의 수단을 군대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 여건과 김정일 개인의 통치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당의 조직과 집행기능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것이 군부와 함께 현 북한 통치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44) 『조선중앙년감』(1977), p.69.

45) 이것은 북한에서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것이 “인민정권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라고 강조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인민정권 건설 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133.

46) 위의 책, p.1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사회주의 헌법 제11조)

II. 정치

(2) 유일 지배체제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기본 노선이 당내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에 있다고 하면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유일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의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 령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그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⁴⁷⁾

또한,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 ‘혁명적 수령관’을 제시하여 수령의 지위는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령도자”로 규정된다.⁴⁸⁾

북한은 수령의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 북한식 사회주의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소련 및 동구 등의 여타 사회주의국가가 좌절된 것과는 달리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담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⁹⁾

북한은 이러한 유일 지배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바탕을 둔 ‘일심단결’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이나 수령을 위한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등으로 무장할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3) 세습체제

북한 정치체제의 또 하나의 특성은 ‘령도의 계승성’에 있다. 영도의 계승성이란 수령으로서 사상, 자질, 능력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김정일을 김일성의 화신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47)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1982.10.17) 참조.

48)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199.

49)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제도』(평양: 평양출판사, 1992), p.137.

북한은 이미 1970년대부터 권력세습 문제를 정권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김일성 자신이 “김정일 동지가 모든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문제가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이러한 세습체제는 김정일이 1997년 10월 당 총비서가 되고,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완성되었다.

권력세습은 근대화된 서구사회에서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서도 유례가 없는 북한만의 독특한 현상으로서 북한 정치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나. 조선로동당

(1) 형성과정

북한은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창건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⁵⁰⁾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가 개최된 1945년 10월 10일을 조선로동당 창건일로 공식화하여 1949년부터 ‘사회주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동 대회에서 채택한 ‘정치로선과 조직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창설하였다.⁵¹⁾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946년 4월말에 북조선공산당으로 되었다가,⁵²⁾ 8월 29일에는 중국 연안으로부터 돌아온 조선독립동맹 계열이 중심이 된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으로 발족되었다.⁵³⁾

50)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I)』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341.

5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창설 초기만 해도 서울의 조선공산당은 ‘당중앙’으로서 인정되고 있었다. 『조선중앙년감』(1949), p.715.

52) 1946년 4월 18일 미·소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 대상 정당·사회단체의 자격문제에 관한 제5호 성명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53)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동하여 북조선로동당을 창립함에 대한 결정서” (1946.8.29),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I)』(서울: 국토통일원, 1988), p.57.

당의 이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독립국가 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경제·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을 당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당 이념 및 목표의 변화 과정

당 대회	지도이념	최종 목표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1946.8.28~30)	(마르크스·레닌주의) ⁵⁵⁾	· 통일적 독립국가 건설
북조선로동당 제2차 대회 (1948.3.27~30)	(마르크스·레닌주의) ⁵⁵⁾	· 통일적 독립국가 건설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 (1956.4.23~29)	마르크스·레닌주의	· 사회주의제도의 수립(대내)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전 한반도)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1961.9.11~18)	마르크스·레닌주의 +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 사회주의제도의 강화 발전(대내)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전 한반도)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 (1970.11.2~13)	마르크스·레닌주의 + 김일성 주체사상	·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대내)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 (전 한반도)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1980.10.10~14)	김일성 주체사상	·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대내)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 (전 한반도)

* 출처: 각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규약 및 회의록 참조

* 주: 1) 당시 당규약은 지도 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56년 4월에 열린 제3차 당대회에서⁵⁵⁾ 당규약 제1조를 개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최고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55) 제3차 당대회는 대내적으로 1955년 12월 박헌영의 처형 등 남로당계의 대거 숙청, 대외적으로는 1956년 2월에 열린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의 스탈린 격하와 평화 공존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이 모색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II. 정치

조선로동당을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 계승자’로 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 완수’를 당의 당면 목적으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최종 목적으로 내세웠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는 당의 이념 및 목표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의 당규약 개정에서는 처음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 이념으로 표방하는 변화를 보였다.⁵⁶⁾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한 지도 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당의 최종목표로 내걸었다.⁵⁷⁾ 한편 북한은 내부사정으로 제6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3) 조직 및 운영체계

(가) 핵심 조직

조선로동당의 조직·운영은 당원의 합의보다는 수령을 정점으로 한 소수 집단의 하향식 지시에 따르는 운영체제로 점차 바뀌면서 김일성 1인 지배를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로 기능해 왔다.

조선로동당 발족 초기에는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가 주요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1956년 제3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권한이 커졌으며, 1966년 10월 당중앙위원회에 ‘비서국’이 신설되면서부터는 당의 운영이 김일성의 지시를 받는 비서국 중심 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바꾸고 그 안에 ‘상무위원회’를 신설해 핵심적인

56) 제4차 당대회 개최시 주변 상황은 중·소분쟁이 표면화된 시기로 김일성은 보고에서 “수정주의(소련)와 교조주의(중국)의 두 조류를 모두 반대한다”고 하는 중립적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상황을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에 이용하였다.

57)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참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조선로동당 발족 초기에 당대회는 매년 1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3개월에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현재는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따라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도 있게 규정되어 있다.⁵⁸⁾

지도기관 변천과정

당대회	지도기관	당책임자	회의 개최 기간
1, 2차 대회	당대회→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상무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장	· 당대회 : 1년에 1회 · 중앙위 전원회의 : 3개월에 1회
3차 대회	당대회→당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조직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 당대회 : 4년에 1회 · 중앙위 전원회의 : 4개월에 1회 이상
4차 대회	당대회→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¹⁾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 당대회 : 4년에 1회 · 중앙위 전원회의 : 6개월에 1회 이상
5차 대회	당대회→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 당대회 : 4년에 1회 · 중앙위 전원회의 : 6개월에 1회 이상
6차 대회	당대회→당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 당대회 : 5년에 1회 · 중앙위 전원회의 : 6개월에 1회 이상

* 출처: 각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 참조

* 주: 1)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 결정(1966.10.12)에 따라 비서국이 설치된 이후, 당 운영의 중심이 비서국으로 옮겨졌다.

58) 당규약 제21조, 제24조 참조.

II. 정치

(나) 당세의 변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창설 초기에 4,530명의 당원을 가진 전위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그후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개최시 조선신민당과의 합당을 계기로 당원의 급속한 증가를 보인 이래 195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때에는 100만 당원을 확보하고, 약 5만 개의 세포조직을 갖추게 되었다.⁵⁹⁾

당원 증가 추세

시 기	당원수(명)	당세포수(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1945. 12)	4,530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1946. 8)	366,000	12,000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1948. 3)	725,762	29,762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1952. 12)	1,000,000	48,933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1956. 4)	1,164,945	58,258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1961. 9)	1,311,563 ¹⁾	65,000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1965. 10) ²⁾	약 1,600,000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1970. 11) ³⁾	약 1,730,000	
『로동신문』(1972. 8.29) 보도	약 2,000,000	
『로동신문』(1978. 1.29) 보도	약 2,000,000	200,00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1980. 10) ⁴⁾	약 3,220,000	약 210,000

* 출처: 각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보고서의 김일성 연설, 『조선중앙년감』

* 주: 1) 당원 1,166,359명, 후보당원 145,204명

2) 『로동신문』(1965. 10. 10)

3) 『로동신문』(1970. 10. 10)

4) 당 제5기 제19차 전원회의(1979. 12. 18) 당대표자 선출비율에 의거 추정

59) 『김일성저작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372.

한국전쟁 기간 중 출당과 전사 등으로 인한 당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1950년 7월부터 1952년 11월까지 당원 수는 오히려 45만명이나 증가하였으며, 당시 신입 당원이 전체 당원의 40%나 될 정도로 대규모의 당원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당원의 대량 증가는 자연히 질적 저하 현상을 가져 왔다. 당시 신입 당원의 반 이상이 문맹자로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의 강화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북한은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회시 당원 수 1,311,563명,⁶⁰⁾ 당세포 수 65,000개로 공식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당세에 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 참가한 당대표⁶¹⁾ 중 결의권 대표수와 결의권 대표의 선출 비율⁶²⁾을 감안하면 당시 당원수는 대략 32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1개 세포당 평균 당원수를 15명으로 계산할 경우⁶³⁾ 당시 당세포 수는 21만개 정도 조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전국당세포비서대회(3.31~4.1) 및 노동당 창건 49주년 기념보고 대회(10.10)에서 북한은 당세포 수를 막연히 ‘수십만 개에 이른다’ 고 한 것으로 보아,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상당한 당세의 확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당원 수의 대폭 증가는 김정일의 권력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3대혁명 소조원’ 등 전후세대의 대거 입당⁶⁴⁾과 산업구조 및 업무의 다양화로 각급 기관과 공장·기업소에 대한 당의 지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당원 증가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60) 한달 전인 1961년 8월 1일 북한은 당원 1,166,359명, 후보당원 145,204명으로 발표하였다.

61) 제6차 당대회 참가 대표수는 총 3,220명(결의권 대표 3,062명, 발언권대표 158명)으로 발표되었다.

62) 북한은 제5기 제19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79.12.18), 당원 1,000명당 결의권 대표 1명 선출, 후보당원 1,000명당 발언권자 1명 선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63) 당규약 제42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서 구성되며,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단위에는 초급 당조직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4) 1990년 2월 13일 평양방송은 “소조원 17만여명 중 2만여명이 당원이 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전후세대의 대거 입당을 시사하였다.

II. 정치

당대회 개최 현황

대회별	개최일자	당원수 ¹⁾ (명)	인구 대비	대표수 (명)	주요 안건
제1차 당대회	1946. 8.28~30 (3일)	366,000	4%	801	·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 합당 문제 · 북조선로동당 강령 및 규약 채택
제2차 당대회	1948. 3.27~30 (4일)	725,762	8%	999	· 북조선로동당 규약 개정
제3차 당대회	1956. 4.23~29 (7일)	1,164,945	10%	914	· 평화통일선언 채택 ·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
제4차 당대회	1961. 9.11~18 (8일)	1,311,563	17.5%	1,230 ²⁾	· 경제발전7개년계획 채택 · 평화통일선언 채택 ·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
제5차 당대회	1970. 11.2~13 (12일)	1,730,000 (추정)	11.4%	1,871 ³⁾	· 경제발전6개년계획 채택 ·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
제6차 당대회	1980. 10.10~14 (5일)	3,220,000 (추정)	12.2%	3,220 ⁴⁾	· 김정일의 공식 등장 ·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안 ·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

* 출처: 당대회 대표 자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당해 연도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 주: 1) 후보당원 포함

2) 발언권만 갖는 대표 73명 포함

3) 발언권만 갖는 대표 137명 포함

4) 발언권만 갖는 대표 158명 포함

(다) 운영체제

당 규약에 의하면 조선로동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여 외형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은 당조

직에 복종하고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 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1당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⁶⁵⁾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노동단위별로 조직되어 있다.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 되며 ‘정치적 총참모부’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당위원회는 집단적 지도를 기본 활동지침으로 하고 있다.⁶⁶⁾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도(직할시)·시(구역)·군 당의 경우는 해당 당대표회가, 당대표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초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당총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⁶⁷⁾

군대내에도 각급 단위 부대에 당조직을 가지며, 군대내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인민군 당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조직된다. 군대내의 당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주둔 지역에 있는 각급 당위원회에 정치 및 군사 간부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주요 정치, 경제, 군사분야에 정치기관인 정치국(정치부)을 두고 있다. 정치국은 해당 기관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당의 기층 조직은 당의 전투단위로 일컬어지는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 5~30명 단위에 조직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당세포의 상급조직으로 초급당 조직이 있으며, 이 위원회는 당원 31명 이상의 단위에서 조직된다.⁶⁸⁾

65) 당규약 제11조.

66) 당규약 제12조, 제13조.

67) 당규약 제14조.

68) 당규약 제42조.

II.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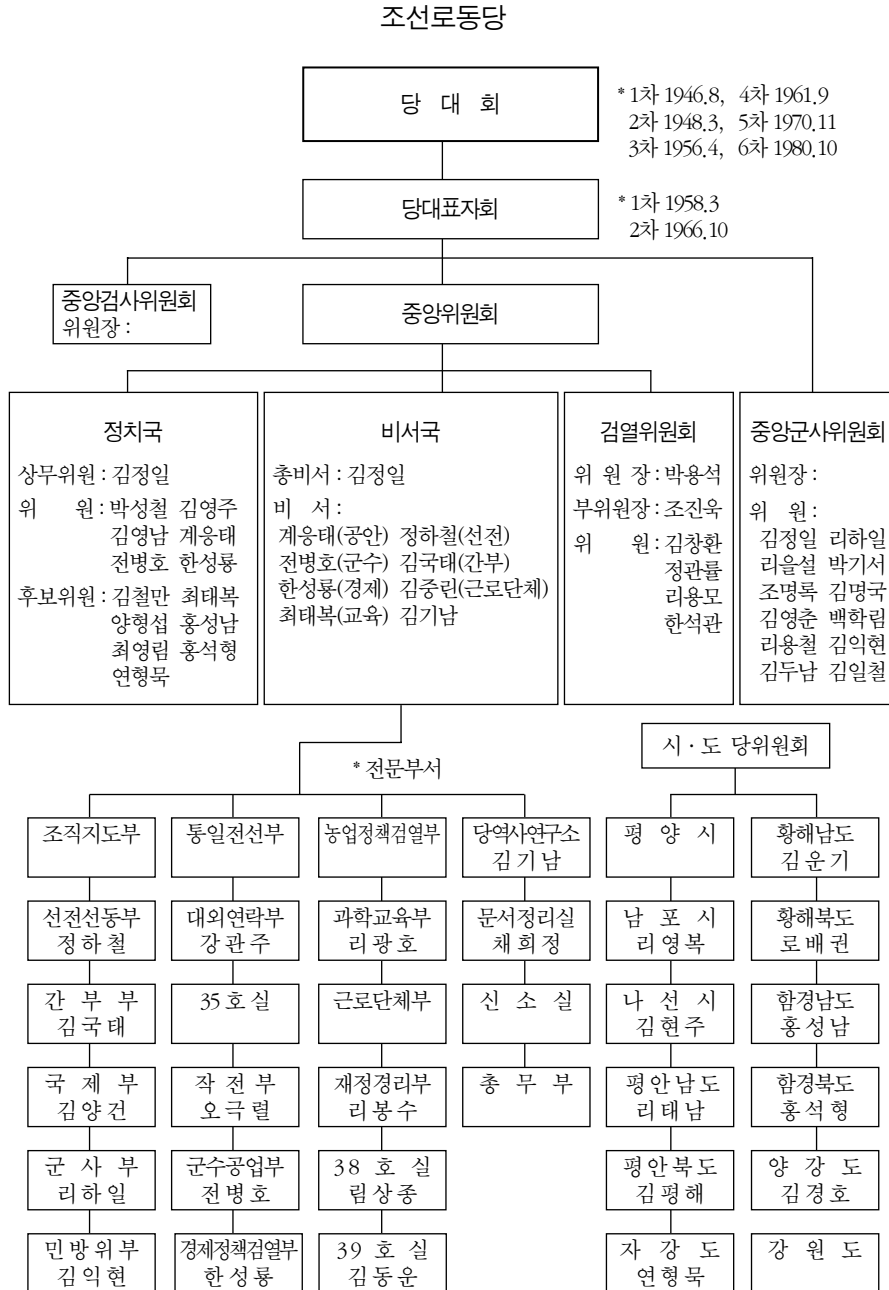
각급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당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가로 회의가 성립되며, 회의의 결정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당 회의에서 채택된 제반 정책은 비서국(지방은 비서처)에서 집행되고 있다. 중앙위원회의 비서국에는 사상 담당 등 분야별로 통상 10명 내외의 비서를 두고 있다. 당의 기층 조직인 초급당위원회와 당세포에는 비서와 부비서가 있다.

당간부의 자질 향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각급 당위원회는 간부 양성 및 재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당의 교육기관으로는 시(구역)·군당의 부장급 이상을 입교 대상으로 하는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중앙에 있으며, 각 도에는 공산대학, 각 군에는 군당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에는 1개월부터 5년까지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다. 모든 당간부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각급 재교육기관에서 적어도 한달씩 교육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⁶⁹⁾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보도·출판 매체로 '로동신문사'와 '조선로동당출판사'가 있다. 이들은 당원들과 일반주민에 대한 사상교육과 함께 당의 정책관철을 위해 주민들을 조직, 동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69) 『김일성저작선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pp.136~152.



II. 정치

(4) 외곽단체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67조에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정당으로는 이른바 조선로동당의 우당으로 1945년 11월 3일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⁷⁰⁾과 1946년 2월 8일에 창립된 ‘천도교청우당’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적인 정당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대남 비난성명 발표시나 통일문제 등과 관련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제의시 나타나는 이름 뿐인 정당이다.

북한이 발표하는 각종 성명에는 이러한 명의만 있는 정당 외에도 많은 사회단체가 있다. 그 중에는 근로단체로 불리는 대규모 조직을 가진 단체들도 있다. 이러한 근로대중의 조직으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등이 있다.

근로 대중단체 현황

단 체	창 립 일	맹 원 수
조선직업총동맹	1945.11.30	약 160만
조선농업근로자동맹	1946. 1.31	약 130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946. 1.17	약 500만 ¹⁾
조선민주녀성동맹	1945.11.18	약 20만

* 출처: 방완주, 『조선개관』(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8), pp.106~107.

* 주: 1) 『로동신문』(1995.10.10)

70) 창립 당시 ‘조선민주당’이었으나, 조선민주당 제6차 대회(1981. 1.28)에서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인전대(引傳帶)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⁷¹⁾

이밖에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과 같은 통일 단체를 비롯하여 민족화해협의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등이 있다. 종교단체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협회 등이 존재하는데 이 종교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산하에 있다.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은 대부분 북한의 통일노선 선전과 대남·대미 선전·선동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전위조직들이다.

71) 당규약 제56조.

II. 정치

조선로동당 외곽단체

(2003년 9월 현재)

정당	조선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류미영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영대			
대남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전선) 의장 박성철 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부위원장 립동욱 등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 부위원장 고대철 등	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 회장 김영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북측본부 의장 안경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 연합(범청학련)북측본부 의장 김인호	조선평화옹호국민족 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재북평화통일축진 협의회 서기국장 강태무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류미영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남조선의국가보안법 철폐를위한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대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조선대외문화연락 위원회 위원장대리 문제철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조선외교협회 부회장 김양건	조선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위원장 김국훈
	일제의 조선강점피해 조사위원회 위원장 리몽호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신옥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위원장	반핵평화를위한조선 피복자협회 회장 주성운	아시아여성들과연대 하는조선여성협회 회장 홍신옥
	조선유네스코민족 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식량및농업 기구민족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개발계획민족 조정위원회 서기장 리태균	유엔기금조선조정 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인종격리제도반대 조선위원회 위원장
사회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청년동맹) 1비서 김경호	조선직업총동맹 (직총) 위원장 립순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위원장 송상섭	조선민주여성동맹 (어맹) 위원장 박순희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국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일선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허명규	조선중앙변호사협회 위원장 리동석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국진
경제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 위원장 김용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정운업	조선아시아무역추진 위원회 위원장 리성록	조선국제합영추진위원회 위원장 채희정	조선국제무역추진 위원회 위원장 김경기
종교	조선카톨릭교협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영섭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화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장재언
학술 체육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양형섭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조선과학기술통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변영립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배달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김상록
	조선역사협회 회장 전영철	조선김정일화연맹 위원장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황봉영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회장 박명철

다. 정권기관

(1) 정권의 성립

오늘날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9일을 정권수립일로 기념하고 있다.⁷²⁾ 그러나 실제로 해방 직후부터 북한지역에서는 소련군의 점령하에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었다.

그 첫 작업은 1945년 8월 27일 조직된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지방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일이었다. 같은 해 10월 8일에는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의 주재로 평양에서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 회의가 소집되고, 이어 10월 28일에는 ‘북조선 5도 행정국’이 정식 발족되었다.

이듬해인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조선 민주주의 각 정당·사회단체, 각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에서는 북한 주둔 소련군의 비호 아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지역의 최고집행기관이었으나 소련군 사령부에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소련군 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독자성이 없었다.

1946년 11월 3일에는 북한 전역에서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여 3,459명의 인민위원을 선출하였는데 북한은 당시 총유권자 4,516,120명의 99.6%가 투표에 참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47년 2월 17~19일까지 3일간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 및 각 정당·단체 대표 1,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되어 여기에서 선출된 대의원 237명으로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였다.

72) 『김일성저작집 2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419.

II. 정치

북조선인민회의는 2월 21~22일 이틀간 제1차 회의를 열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22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당별 구성은 북조선로동당 16명, 조선민주당 2명, 천도교청우당 2명, 무소속 2명이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당시의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탄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 총회가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를 결의하자 인민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게 되었다.

1947년 11월 18~19일에는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가 개최되어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12월 20일에는 헌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듬해 1948년 2월 6일부터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는 헌법 초안을 인민토의에 회부하고 또한 이를 심의하기 위한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28일에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가 소집되었고, 이 회의에서는 헌법 초안을 축조 심의하여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으로 정식 확정하였다. 이어 7월 9~10일에는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회의가 소집되어 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문제를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였다.

1948년 8월 25일 북한에서 최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총 21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당시 북한은 등록된 유권자의 99.97%가 투표에 참가하여 이중 98.49%의 찬성율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소위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360명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하여 보냈다고 발표하였다.

9월 2~10일까지 평양에서는 5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⁷³⁾ 여기에서 인민공화국헌법을 정식 채택하였

73) 이 회의에는 남한의 유권자 99.97%가 참가한 서명투표로 구성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선출한 360명(이름을 밝히지 않은 66명 포함)도 참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중요문헌집』(평양, 1948), pp.283~287; 『조선중

으며,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출범시켰다.⁷⁴⁾

(2) 사회주의 헌법 제정

북한은 1948년 ‘인민공화국 헌법’⁷⁵⁾을 처음 제정한 이래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⁷⁶⁾을 채택하고,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이를 개정하였다. (이하 ‘구 사회주의 헌법’)⁷⁷⁾ 그리고 김일성 사망 4년 후인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이를 다시 대폭적으로 개정,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내놓았다. 이는 최초 헌법 제정 이후 통산 8차 개정에 해당한다.

1972년 헌법이 김일성 독재권력 구축 이후 이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체계를 국가주석 중심으로 제도화하였다면, 1992년 구 사회주의 헌법은 김정일에게로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일종의 과도적 헌법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우선 권력구조면에서는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군사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군정을 국방위원장 산하로 일원화하며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을 선출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하고 군부 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⁷⁸⁾

또한 구 사회주의헌법은 국가 지도이념 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양년감』(1949), pp.14~17.

74) 북한은 1946년 11월 북한 전역에서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한 후, 이듬해인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 8.15) 이후에야 공산정권이 들어선 것처럼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75) 총 10장 104개조.

76) 총 11장 149개조.

77) 총 7장 171개조.

78)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1993. 4. 7~9)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II. 정치

삭제하고 대신 주체사상의 독자성을 강조하였으며,⁷⁹⁾ 주석,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관의 임기를 5년으로 단일화하였다.

대외정책 추진원칙에 있어 종전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 ‘자주·평화·친선’ 등으로 바꾸어 명시함으로써 이념적 색채를 약화시켰다.⁸⁰⁾ 통일과 대남분야에서 그동안 대남적화전략 조항이라고 문제시되던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통일’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다.⁸¹⁾

이에 반해 1998년의 개정헌법은 ‘김일성 헌법’이라는 헌법 서문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이 이미 출범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을 헌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개정된 ‘김정일식 헌법’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 사회주의헌법과 비교한 개정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구조의 대폭 개편이다.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내각제를 채택하고,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3인에게 권력이 분립되는 듯한 형식을 취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종전의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되어 권한이 강화되었고, 위원장은 ‘국가대표’ 권한을 가진다.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종전에 비해 권한이 강화된 내각 총리는 북한 ‘정부 대표’ 권한을 갖는다.⁸²⁾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 최고의 직책”으로 격상되었고 여기에 김정일을 다시 추대함으로써 국방위원장으로서의 김정일이 ‘국가의 최고수위’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김정일은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된 국방위원회를 통해 군대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한편 행정·경제분야 사업의 책임을 내각에 위임하는 등⁸³⁾ 내각의

79) 구 사회주의 헌법 제3조.

80) 구 사회주의 헌법 제16조, 제17조.

81) 구 사회주의 헌법 제5조, 제9조.

82) 사회주의 헌법 제111조, 제120조.

83) 사회주의 헌법 제125조.

자율성이 법적으로 강화되어 그 위상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권기관의 경우,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흡수하여 내각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체계가 일원화되었다.

둘째, 헌법 서문의 신설이다. 헌법 서문은 김일성을 ‘공화국의 창건자’, ‘사회주의 조국의 시조’로 규정하며 개정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하였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하였다.

셋째, 경제분야의 변화이다. 개정헌법은 경제분야에서 사경제범위의 확대 등 현실을 인정하면서 제한적이거나 실용주의적 정책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즉,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으며 가격·원가·수익성 등 시장경제 개념의 일부를 도입하였다.

(3) 정권기관의 조직·기능

(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미쳐, 국정 전반사항은 노동당에서 결정하고 단지 이를 추진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 차례 열린다. 통상 정기회의는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이외에도 주요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의제 등을 심의·확정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⁸⁴⁾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⁸⁵⁾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84) 사회주의 헌법 제87조.

85) 사회주의 헌법 제88조.

II. 정치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⁸⁶⁾ 2003년 8월의 선거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의 수는 제9기, 제10기의 경우와 같이 687명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두고 있다.⁸⁷⁾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가 있다.⁸⁸⁾ 회의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⁸⁹⁾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⁹⁰⁾

1. 헌법의 수정 보충
2. 부문법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
3. 휴회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률 승인
4.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5.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7. 국방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9. 내각 총리의 선거 및 소환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의 임명
11.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해임
12.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86) 사회주의 헌법 제90조.

87) 사회주의 헌법 제98조.

88) 사회주의 헌법 제92조.

89) 사회주의 헌법 제93조.

90) 사회주의 헌법 제91조.

14.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수립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결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나, 헌법의 수정·보충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⁹¹⁾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으며 의장은 최태복, 부의장은 려원구, 강능수가 맡고 있다.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를 대신해 모든 일을 담당한다. 최고인민회의 산하에는 지방 주권기관으로 도·시(구역)·군 인민회의가 있다.

91) 사회주의 헌법 제97조.

II. 정치

역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기 별	선거일	대의 원수	투표율/ 찬성율	재임 기간 ¹⁾	내 용 개 요
1	1948. 8.25	572 ²⁾	99.97/ 98.49	9년	· 흑백함 투표 실시(제1기~2기) · 인민공화국 헌법 승인 · 인구 5만명당 1인 선출 · 13차례 회의 개최
2	1957. 8.27	215	99.99/ 99.92	5년 1개월	·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시행(1957. 6) · 11차례 회의 개최
3	1962. 10.8	383	100/100	5년 1개월	· 단일투표 실시(제3기~9기) · 인구 3만명당 1인 선출(제3기~9기) · 7차례 회의 개최
4	1967. 11.25	457	100/100	5년	· 8개항 통일방안 제안 · 6차례 회의 개최
5	1972. 12.12	541	100/100	5년	· 사회주의 헌법 개정(주석 선출) · 7차례 회의 개최
6	1977. 11.11	579	100/100	4년 4개월	·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시정연설) · 5차례 회의 개최
7	1982. 2.28	615	100/100	4년 9개월	·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 동일을 촉진할데 대한 결정” 채택(제3차회의) · 5차례 회의 개최
8	1986. 11.2	655	100/100	3년 5개월	·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시정연설) · 5차례 회의 개최
9	1990. 4.22	687	99.78/ 100	8년 3개월	·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시정연설) · 7차례 회의 개최
10	1998. 7.26	687	99.85/ 100	5년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제1차회의) · 사회주의 헌법 개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내각제 부활) · 6차례 회의 개최
11	2003. 8.3	687	99.9/ 100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제1차회의) · 외무성의 대외적 조치에 대한 승인 결정

* 주: 1) 재임기간은 최고인민회의의 각기별 제1차회의 소집일을 기준으로 환산, 헌법상 임기는 제1기 3년, 제2~9기 4년, 1992년 및 1998년 사회주의헌법에서는 5년으로 바뀌었다.

2) 북한은 남한 출신 대의원 360명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국방위원회

1998년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되었다.⁹²⁾ 이는 국방위원회가 국방분야에서의 주권 뿐만 아니라 행정권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영남 대의원(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대연설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인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분에서의 상설적인 최고 주권 및 행정기관으로서 북한의 중추적 기관이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⁹³⁾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⁹⁴⁾

1.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⁹⁵⁾
3. 중요 군사 간부의 임명 및 해임
4.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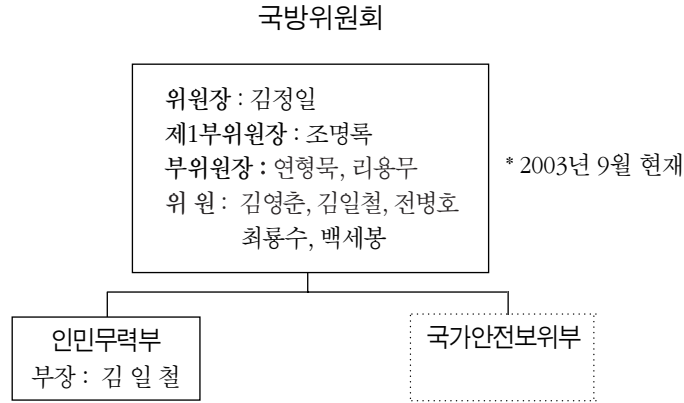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내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92) 사회주의 헌법 제100조.

93) 사회주의 헌법 제101조.

94) 사회주의 헌법 제103조.

95) 이 권한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명령으로 종전의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개칭하였다가 이후 인민무력부로 다시 환원시켰다.



(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98년 헌법 개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보충되었다. 헌법상으로 볼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결국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다 맡고 국가를 대표하여 활동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이처럼 헌법 개정을 통하여 상임위원회 지위가 높아졌으며 종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국가주석이 갖고 있던 권한의 대부분을 물려받게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주권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⁹⁶⁾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5년⁹⁷⁾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기간 국가건설 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약간 명을 명예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⁹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⁹⁹⁾

1. 최고인민회의 소집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법안과 수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의 심의 채택, 채택 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

96) 사회주의 헌법 제106조, 107조.

97) 사회주의 헌법 제109조.

98) 사회주의 헌법 제108조.

99) 사회주의 헌법 제1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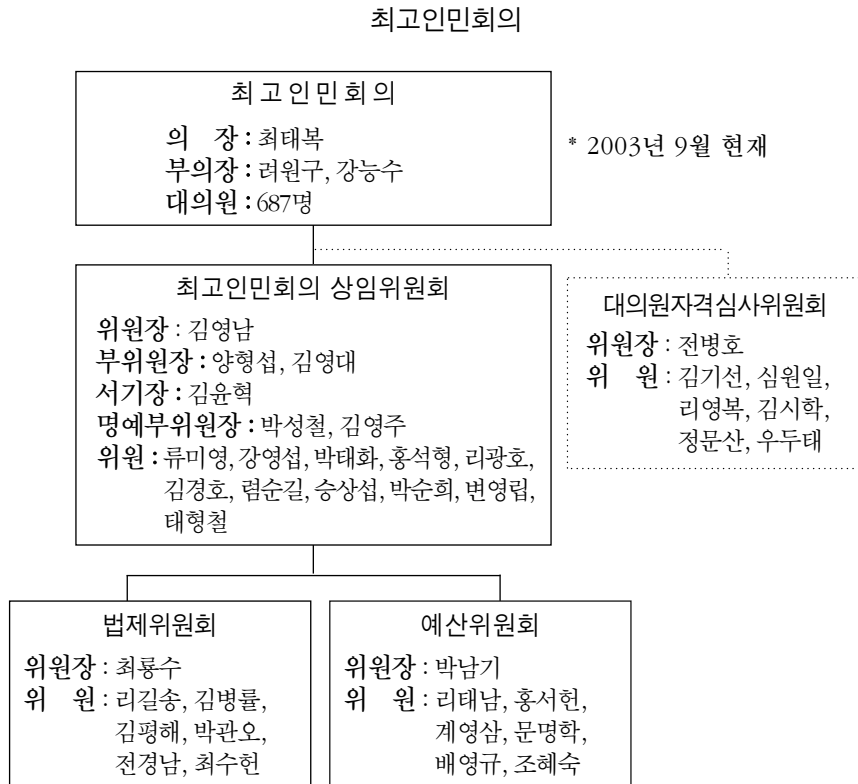
인민회의 승인을 받음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인민경제 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 심의 및 승인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 해석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에 대한 감독과 대책 마련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의 정지
 7.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 및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사업의 조직
 8.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
 9.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
 10. 내각 위원회·성의 조직 및 폐지
 1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12.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선거·소환
 14. 조약의 비준 및 폐기
 15. 외교대표 임명 및 소환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 및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수여
 17. 대사권과 특사권 행사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침
-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한다.¹⁰⁰⁾

100) 사회주의 헌법 제111조.

II. 정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등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를 가지는데¹⁰¹⁾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¹⁰²⁾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내며,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¹⁰³⁾



101) 사회주의 헌법 제112조.

102) 사회주의 헌법 제113조.

103) 사회주의 헌법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라) 내 각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¹⁰⁴⁾ 내각은 총 33개 부서(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¹⁰⁵⁾

1. 국가의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지도
 4. 내각 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6.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에 대한 조직과 집행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
 9.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과 통제사업
 10.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11. 조약의 체결 및 대외사업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
-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¹⁰⁶⁾

내각 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104) 사회주의 헌법 제117조, 제118조.

105) 사회주의 헌법 제119조.

106) 사회주의 헌법 제120조.

II. 정치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총리, 부총리와 내각 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는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¹⁰⁷⁾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내며, 자기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¹⁰⁸⁾

내각 위원회와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 기관으로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¹⁰⁹⁾ 내각 위원회·성은 지시를 내며,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 대책과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¹¹⁰⁾

107) 사회주의 헌법 제121조, 제122조.

108) 사회주의 헌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109) 사회주의 헌법 제127조, 제128조.

110) 사회주의 헌법 제129조, 제130조.

내 각



II. 정치

(마)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는 우리의 지방의회에 해당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으로 임기 4년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¹¹¹⁾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¹¹²⁾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3.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의 선거 또는 소환
5. 해당 재판소 판사, 인민 참심원의 선거·소환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

지방인민회의는 위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1~2회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¹¹³⁾ 각급 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¹¹⁴⁾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내며, 의장을 선거하고 선출된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¹¹⁵⁾

(바)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며, 도·시·군 단위의 행정집행기구로 되었으며 개정헌법에서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그 지도도 받지 않게 되었다.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는 해

111) 사회주의 헌법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112) 사회주의 헌법 제134조.

113) 사회주의 헌법 제135조.

114) 사회주의 헌법 제136조.

115) 사회주의 헌법 제137조, 제138조.

당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 기관이다.¹¹⁶⁾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으며¹¹⁷⁾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¹¹⁸⁾

1. 인민회의의 소집
2.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
3. 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지시의 집행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 수립
7. 지방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대책 수립
8. 해당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9.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
10.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의 지도
11. 하급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

지방인민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¹¹⁹⁾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내며,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의 앞에 책임을 지며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¹²⁰⁾

116) 사회주의 헌법 제139조.

117) 사회주의 헌법 제140조.

118) 사회주의 헌법 제141조.

119) 사회주의 헌법 제142조, 제143조.

120) 사회주의 헌법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사) 검찰소와 재판소

개정 헌법에서는 종래 ‘재판소와 검찰소’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순서를 바꾸어 검찰소를 앞에 내세웠다. 이는 범질서를 세우는 검찰기관의 임무를 중시하고 일선에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은 5년이다.¹²¹⁾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면한다.¹²²⁾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의 통일적 지도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해야 하며¹²³⁾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¹²⁴⁾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에서 하며¹²⁵⁾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은 5년이고¹²⁶⁾ 중앙재판소를 비롯한 각급 재판소의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¹²⁷⁾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또는 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¹²⁸⁾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 등에서 선출한다.¹²⁹⁾

재판은 판사 1명(특별한 경우 3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한다.¹³⁰⁾ 재판은 공개(법이 정한데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하며 피소자의

121) 사회주의 헌법 제147조, 제148조.

122) 사회주의 헌법 제149조.

123) 사회주의 헌법 제151조.

124) 사회주의 헌법 제152조.

125) 사회주의 헌법 제153조.

126) 사회주의 헌법 제154조.

127) 사회주의 헌법 제154조.

128) ‘인민참심원’이란 일종의 배심원을 말하며, “재판시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나 제 1심재판에만 참가한다”;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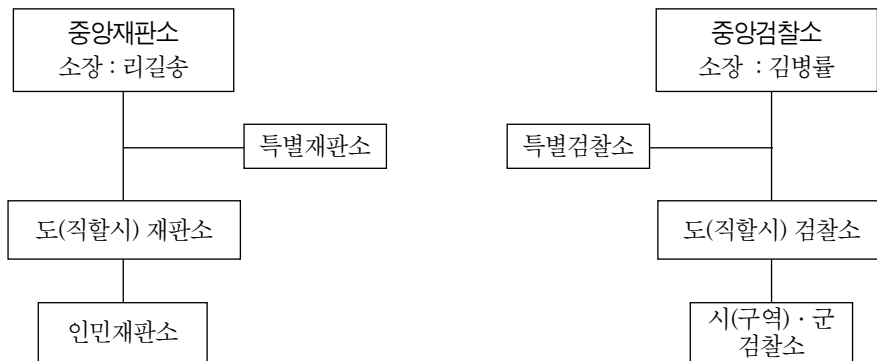
129) 사회주의 헌법 제155조.

130) 사회주의 헌법 제157조.

변호권을 보장한다.¹³¹⁾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¹³²⁾고 하여 재판의 형식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최고재판기관이며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는 중앙재판소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³⁾ 즉, 정권기관이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사법 · 검찰 조직 체계



(4) 특수기능 조직

북한에는 당규약이나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있다. 이러한 특수조직들은 1970년대 초반 김일성 ·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체계의 확립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주요한 주민통제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31) 사회주의 헌법 제158조.

132) 사회주의 헌법 제160조.

133) 사회주의 헌법 제161조, 제162조.

II. 정치

(가) 국가안전보위부

북한은 1973년 당시 정무원 부서인 사회안전부의 기능 중 정치보위 부문만을 독립시켜 국가정치보위부를 신설한 바 있다. 이 기구는 1982년 4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회의에서 인민무력부 및 사회안전부와 함께 정무원에서 분리되면서 그 명칭도 국가정치보위부에서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다. 또한 1993년부터 국가보위부는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이 기관은 인민보안성과 더불어 김정일 1인 지배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감시기관으로서 정치사찰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조직체계는 중앙으로부터 인민군과 도(직할시)·시(구역)·군은 물론 기타 특수기관에까지 설치되어 있다.

(나) 3대혁명소조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3대혁명을 규정한 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3대혁명소조를 발기하여 각급 생산단위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¹³⁴⁾ 소조는 당원, 대학생, 과학자 등 20~5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김정일의 직접 지도 밑에 경제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문화기관, 각급 학교 등에까지 파견되어 기존의 당조직과 더불어 3대혁명을 지도하였다.¹³⁵⁾

소조운동은 실질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의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3대혁명소조원 중심의 전후 세대가 대거 입당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3대혁명소조 활동은 1990년대 들어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4) 김창성, 『3대혁명 소조운동과 그 생활력』(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83.

135) 북한은 3대혁명소조운동 발기 20돌 기념중앙연구토론회(1993.2.4)에서 소조 활동 기간을 마친 22만 여명의 소조원 출신들이 당 및 정권기관과 경제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 정치권력

가. 김일성시대 정치

(1) 권력투쟁

북한의 정치사는 한마디로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과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의 구축과정이었다.

북한의 지도층은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운동 또는 항일투쟁 경력, 지역적 출신 등을 달리하는 파벌들간의 연합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던 파벌로는 김일성계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지하공산당 운동을 했던 국내파, 중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 귀국한 연안파, 소련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북한에 보내진 소련파가 있었다.

김일성(본명 김성주)은 사실상 국내에 전혀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북한 주둔 소련군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아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였다.¹³⁶⁾ 그는 당시에 소련군이 북한을 소비에트화 하는 데 대리인으로서 활동했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반대파 또는 잠재적인 적대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을 벌여 왔다. 그 첫 희생자는 국내파 인물들로서, 김일성은 이들을 처음부터 좌경적 오류, 종파주의자, 영웅주의자로 비판하였다.¹³⁷⁾

권력투쟁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벌어진 남로당계에 대한 숙청에서 본격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 연안파·소련파에 대한 숙청과 1960년대 후반의 갑산파와 군부에 대한 숙청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초반에도 김일성·

136)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1차 확대회의(1945.10.13)에서는 김용범이 책임비서로 선출되었으며, 같은해 12월 17일에 개최된 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 회의에서 비로소 김일성이 책임비서로 되었다.

137) 김일성,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1), pp.105~212.

II. 정치

김정일부자세습체제에 장애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남로당에 대한 숙청은 한국전쟁 패배의 책임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서, 김일성은 남침의 실패로 인해 조성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과정에서 남로당 계열을 숙청 대상으로 삼았다.

김일성은 195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시발로 1955년 12월까지 남로당계의 지도급 인물들인 박헌영, 리승엽, 배철, 김남천, 립화 등을 미제의 고용간첩이라는 죄목을 붙여 일대 숙청을 단행한 것이다.¹³⁸⁾ 이후 계속된 남로당계 잔당에 대한 숙청을 벌이며 김일성은 또다시 연안파 및 소련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1956년 2월에 개최된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공산권내에서 개인 숭배 반대와 스탈린 격하운동이 진행되자 북한에서도 반김일성 운동이 고조되는 한편, 군수공업을 위주로 한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남에 따라 김일성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연안파와 소련파에 의해 절정에 달했던 반김일성 운동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김일성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때에 김일성은 김두봉, 최창익, 박창옥 등 연안파와 소련파 지도자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이 사건은 '8월 종파사건'으로 불린다.

김일성은 1958년 3월, 제1차 당대표자회를 소집하여 반대파 거물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일단락 짓는 한편, 전국적으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반대파의 기반을 일소하는 등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자파내의 인물들에 대한 숙청에도 착수하였다.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박금철과 리효순 등 갑산파 당료들을 반당·종파분자로 몰아 숙청한데 이어, 1969년 1월에는 인민군당 제4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

138) 『미제국주의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사건 공판문헌』(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1956), pp.150~160.

하여 민족보위상 김창봉, 인민군 총정치국장 허봉학 등을 유일사상체계 문란 등의 이유로 숙청한 것이다.¹³⁹⁾

1970년 11월에 개최된 5차 당대회 이후부터 북한의 지도층은 완전히 김일성 일파로 일색화되었다. 그러나 1973년 9월 김정일의 당비서 취임을 계기로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를 비롯하여 김동규, 리용무, 류장식 등 권력세습을 반대하는 당료와 군부에 대한 숙청을 또다시 전개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 말까지의 숙청이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 구축과 그의 우상숭배를 위한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정일 후계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하겠다.

(2) 김일성 개인숭배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실태는 영웅화 단계를 넘어서 신격화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

김일성 개인숭배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그에 반대하는 주요 세력들을 제거하고 1인 지배체제 기반을 구축한 1958년 이후부터이다. 김일성 개인 숭배운동은 과장된 찬양과 상징조작, 날조된 과거행적의 선전, 사상교육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김일성을 호칭할 때에는 그 이름 앞에 최상의 수식어, 최상의 경어가 붙는다. 예컨대, ‘아버이 수령’에서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에 이르기까지 그를 호칭하는 수식어는 매우 다양하다. 1960년대 그에 대한 우상화 초기에는 그의 이름 앞에 붙는 경칭과 찬양의 수사가 무려 180여자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름에 새로운 수식어나 경어를 붙여가며 인간의 위치에서 신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렸다.

139) 『로동신문』 사설(1969. 5.17):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적 사업 기풍을 세우자’ 참조.

II. 정치

우리 민족의 근대사, 항일독립운동사는 김일성 중심의 혁명투쟁사로, 그 일가의 족벌사로 개작되었다. 북한의 신문, 잡지와 각급 학교 교과서, 학술서적 등 모든 출판물들은 반드시 김일성 교시로부터 시작하여 내용이 서술되며, 출판물의 대부분은 김일성의 행적들을 수록한 개인 숭배를 위한 선전책자에 불과하다. 북한의 헌법, 노동법, 토지법, 교육 체계 등 모든 법령 등은 김일성의 저작품으로 되어 있다.

김일성 개인숭배는 항일혁명투사, 조선의 해방자로서 김일성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세기와 더불어' 라는 김일성 회고록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학습 및 사상교육의 기본 교재로서 활용되고 있다.¹⁴⁰⁾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을 능가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천재적 이론가로 칭송된다.

모든 주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일하는 것이 모두 '수령님의 은혜'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토록 강요하고 있다. 각 가정의 안방에는 반드시 그의 사진을 걸고 신주 모시듯 해야 하고 전지역에는 3만 5천 여개가 넘는 동상, 석고상을 세워 놓고 전 주민이 참배토록 하고 있다.

김일성 개인숭배운동은 그의 가계와 혈통에 대한 우상화로 확대되어 직계 선조, 외가친척, 전처의 행적을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활동하였다는 장소는 혁명유적지·사적지로 지정되고 있으며, 혁명열사릉에 다가 그들의 무덤까지 꾸며놓은 실정이다. 북한은 1992년 4월 13일 김일성에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의 군사 칭호로 대원수 칭호를 수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우상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김일성 우상화작업은 그가 사망한 후에도 김정일에 의해 지속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¹⁴¹⁾에 안치하고 주민

140) 『세기와 더불어』(조선로동당출판사)는 1992년 4월 15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기해 발간되기 시작한 김일성 회고록으로서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활동내용을 담고 있다. 『세기와 더불어』는 1998년 6월 현재 총8권까지 발간되었다.

141) '금수산의사당' 이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 공동명의로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개칭(1995. 6.12)되었다.

들로 하여금 참배토록 하고 있는 등 김일성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나. 김일성 사망과 유훈통치

1994년 7월 8일 오전 2시 김일성이 사망하였다. 북한 당국은 사망 34시간 만인 1994년 7월 9일 낮 12시 ‘특별방송’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망원인에 대해 “겹쌓이는 헌신적인 과로로 하여 1994년 7월 7일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장쇼크가 합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사망 11일 후인 7월 19일 영결식을 갖고 김일성의 시신을 과거 소련의 레닌,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의 경우와 같이 미이라 형태로 금수산의사당(주석궁)에 안치하였다.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이 곧바로 김일성의 공식 직책들을 승계 받으리라고 보았던 관측들과는 달리 김정일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직책도 승계 받지 않았으며, 단지 군최고사령관 명의로 김일성 유훈¹⁴²⁾만을 내세우며¹⁴³⁾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할 뿐이었다.¹⁴⁴⁾ 이로써 북한에는 노동당 총비서와 주석 등 ‘당과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이 오랜 기간 공석인 채 남아 있는 이상한 현상이 빚어졌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태도는 그의 등장 배경의 한계 및 가부장제적 정치 문화와 함께 경제난을 비롯하여 북한이 당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체제는 김일성이 보유했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승계 받은

142) 북한은 ‘유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유훈을 강조하면서도 통치의 폭에 제한을 받지 않으려는 고려에서 였던 것으로 보인다.

143)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10. 2), 『김정일 선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참조.

144) 외교부 부부장 최수현의 제5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1995.10.11)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로 호칭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김일성 사망이래 김정일은 최고 지도자로서의 통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I. 정치

후계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국가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김일성을 '아버이'로 부르는 등 가부장적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다. 특히 북한은 그 동안 '충효'라는 덕목의 가치를 강조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김정일은 이렇게 정치화된 '충효' 덕목을 내세워 김일성에 대한 이상화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을 김일성과 동일시하는 선전을 계속하면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자신에게로 이입시키는 작업에 주력하였을 것이다.

결국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 관철을 특히 강조하고, 김일성에 대한 최상의 애도를 통해 스스로 '충효의 최고 화신'임을 과시함으로써 수령의 후계자로서 부족한 카리스마를 보완하고 승계 이후에도 자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을 강화해 가는 길을 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시기에까지 이어져,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의 서문에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떠받들며, 새 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다. 김정일시대 정치

(1) 후계문제의 등장 및 김정일의 부상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20여년에 걸쳐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에서 후계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부터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 자신이 1971년 6월에 개최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 대회에서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어 해방 후 세대들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로써 권력

승계의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다.¹⁴⁵⁾ 김정일의 권력 승계는 먼저 당을 장악하고 이어 군을 장악해 가는 수순을 밟았다. 본래 공산주의 체제는 당에 의한 독재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당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최고권력자가 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당을 장악하는 과정을 우선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김일성의 후원아래 진행되었음은 물론이다.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소련 하바로프스크 인근의 소련 극동군 제88특별여단 브야츠크 야영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¹⁴⁶⁾ 김정일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산인민학교, 중국 길림학원, 만경대혁명학원, 삼석인민학교, 평양 제4인민학교 등 여러 학교를 옮겨다니면서 인민학교 과정을 마쳤다.

이어 그는 평양 제1중학교(1954~1957), 남산 고급중학교(1957~1960)를 거쳐 1960년 9월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였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제목의 졸업논문으로 1964년 봄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김정일이 당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64년 6월 19일 노동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이 되면서부터이다. 당사업을 시작한 김정일은 1967년 노동당 선전선동부 과장이 되었고 이후 매 2년마다 한 직급씩 높아져 1969년 선전선동부 부부장, 1971년 문화예술부장, 그리고 1973년 9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상한 것은 이 무렵부터이다.

1974년 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는 김정일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과 동시에 2월 12일에는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추대하는

145) 『조선중앙년감』(조선중앙통신사, 1972), p.285.

146) 당시 이 야영에서 김정숙과 함께 활동하였던 김정일 유모 李在德(중국 거주)의 증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서울: 중앙일보사, 1992), p.376; 북한은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백두산의 항일유격대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이 지역을 '고향집'이라고 부르며 성역화하였다.

II. 정치

결정' 을 채택하였다.¹⁴⁷⁾

이 회의에서 당시까지 김일성의 후계자로 알려졌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당 비서에서 물러났으며,¹⁴⁸⁾ 이후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부주석 김동규 등도 모습을 감추었다. 대신 김정일을 옹호하는 립춘추, 오진우 등의 지위가 상승하는 등 권력 핵심부에 변화가 있었다.

김정일의 권력장악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3대혁명소조운동' 이다. '3대혁명소조'란 "간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버리고 당이 요구하는 대로 일을 잘하도록 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준비된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무어진 소조"를 말한다.¹⁴⁹⁾ 이 단체는 1973년 2월 13일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김정일은 같은 해 9월 이 조직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사실상 김정일의 행동대로서 당 및 행정기관과 공안 기관 등에 대해 통제, 조정, 감독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과 함께 주요 정보를 당 중앙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김정일 후계 체제를 위한 기반조성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즉,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기존의 당 조직을 통제, 감독하는 또 하나의 계선을 자신의 직접 지휘하에 운영함으로써 당을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각종 문헌 자료 가운데 부자세습을 비판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원에서 편찬한 『정치사전』 1973년도 판에는 종전에 수록되었던 '세습'이란 항목이 삭제되었다.¹⁵⁰⁾

1974년 2월부터는 대내적으로 김정일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다만

147) 김일성방송대학 강좌 제78회(1993.11.10) 및 제80회(1993.11.16) 참조.

148) 제5기 제8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난 후 당 조직담당 비서인 김영주가 부총리로 전보되고 김정일의 주도로 '속도전 운동'이 전개되었다.

149) 『조선말 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688.

150) 1970년 발간된 『정치용어사전』은 세습제도에 관해 "착취사회에서 특권계급의 신분에 기초하여 그 직위 또는 재산을 대대로 물려받도록 법적으로 고착시킨 반동적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중앙’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그를 후계자로 공식 등장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작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5년 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일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부르는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시기에 해외로 나가는 선전책자, 특히 조총련의 교육자료에서는 김정일을 직접 언급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예찬하기 시작하였다.¹⁵¹⁾

(2) 후계자 공식화

김정일은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권력의 전면에 공개적으로 등장하면서 비로소 공식적인 후계자로 나서기 시작하였다.¹⁵²⁾ 그후 그는 1981년 5월 18~22일간 묘향산 지구를 실무시찰한 것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과 건설현장에 나타나 실무시찰, 실무지도를 계속해왔고 1988년에 들어와서는 그의 이러한 활동에 김일성에게만 사용되던 ‘현지지도’라는 용어를 붙이기 시작하였다.¹⁵³⁾

1983년 6월 2~12일에는 중국공산당 총서기 호요방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등소평, 이선념, 조자양, 등영초 등과 회담하였으며 1986년부터는 중·소 등의 수뇌급과 신년 연하장을 교환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정상급 활동을 계속해 왔다.

한편 김정일의 군 장악과정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되었다. 김정일은 이미 당을 장악함으로써 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쥐고 있었

151) 당시 동 교육자료에서는 “우리 당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수령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152) 1980년 10월 김정일의 공식등장 이전에는 ‘통일혁명당방송’을 통해 후계자 자질에 관한 방송을 계속해 왔다.

153) 『로동신문』(1990. 1. 7) 참조.

II. 정치

으나 이때부터는 군사 직함들을 보유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군을 장악 해가기 시작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었고, 1991년 12월 24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어 이때부터 ‘최고사령관 명령’을 통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등 실질적인 군통수권을 행사하였다.

1992년 4월 20일에는 ‘원수’ 칭호를 수여 받은 데 이어 1992년 4월 23일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664명의 군 장성에 대해 대대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 하면서 북한 군의 상징인물인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에게 원수 계급장을 달아줌으로써 자신이 군의 최고책임자임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한 개정헌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독립시켜 과거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되어있던 군사 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통합하고, 이듬해인 1993년 4월 7~9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국방위원회의 권한은 1998년 헌법개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김정일의 권력장악이 진행됨에 따라 이미 1986년 5월에 김일성은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¹⁵⁴⁾ 각종 선전매체들은 북한에서 “령도의 계승 문제가 빛나게 해결 되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김일성은 1994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에 보낸 축하문에서 “당 령도의 계승문제를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염원에 맞게 원만히 해결한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성과”라고 지적함으로써 이를 재확인 하였다.

김정일의 50회 생일인 1992년 2월 16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공동축하문을 통해 그에 대한 충성을

154)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교훈』(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111.

다짐했으며, 이어 김일성 80회 생일(1992. 4.15) 기념 ‘주체사상토론회’ 에서도 그에 대한 맹세문을 채택하면서 그를 ‘당·국가·군대의 수위’ 로 호칭하였다.¹⁵⁵⁾

1993년 10~11월에는 사회단체와 군대 그리고 민간인들의 집회를 연 이어 개최하고 김정일 중심의 일심단결을 촉구하였다. 특히 11월 17일 제7차 기자동맹 대회에서는 김정일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수령’ 으로 부르고 ‘우리시대 김정일시대’ 라는 표현을 등장시키기도 하였다.¹⁵⁶⁾

이와 같은 동향들은 김정일이 이미 김일성 사망 이전에도 김일성의 권력을 사실상 승계받아 북한의 실질적 통치권자로서 군림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김정일 우상화

북한은 김정일여로의 권력승계를 준비하는 과정과 병행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김정일 우상화 작업을 벌여 왔다.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김정일에 대한 호칭 변화이다.

북한은 1974년 2월 이후 김정일에 대해 ‘당중앙’ 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오다 1975년 6월 김정일 생일을 휴무일로 공식 지정하면서부터 ‘유일한 지도자’ 라는 호칭을 등장시켰다. 1977년 이후에는 ‘당중앙’ 이라는 호칭과 함께 ‘영명하신 지도자’, ‘존경하는 지도자’,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등의 호칭이 등장하였으나 김정일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또한 ‘당중앙의 불빛을 우러러’ 등의 가요를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당중앙’

155) 김일성은 “김정일이 국정전반을 장악하고 있다.”(1992. 4.12, 워싱턴타임즈 회견): “전체인민이 김정일과 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혁명의 대를 이어 나아가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1992. 4.14 김일성 80회 생일 축하연설)고 발언하였다.

156) 1993년 10월 18일의 ‘군 지휘관·정치일군대회’와 11월 11일의 인민무력부 김정일 위대성 연구토론회에서 김정일의 업적을 칭송하였으며, 또한 11월 15일의 『직총』 중앙위원회 제26차 전원회의와 『여맹』 중앙위원회 제18차 전원회의, 11월 16~17일의 『사로청』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와 『농군맹』 중앙위원회 제21차 전원회의 등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단결을 강조하였다.

II. 정치

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정치국 상무위원, 군사위원회 위원 등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즉 1983년 2월 김정일의 41회 생일을 계기로 ‘영도자’란 호칭이 등장하였고 1983년 5월에는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직책과는 상관없이 ‘최고사령관’이라고 불렀다.

1985년 2월에는 ‘수령’ 호칭이 일시 나타난 바 있으며 1986년 2월에는 ‘인민의 아버지’ 그리고 이른바 ‘구호나무 발굴사업’이 본격화된 이후인 1987년 2월부터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 ‘백두광명성’, ‘향도성’ 등의 호칭이 사용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일성과 거의 같은 형태와 수준의 호칭을 김정일에게 사용함으로써 그가 북한 권력의 최고 수위임을 나타내었다. 1991년 10월에는 ‘또 한분의 걸출한 수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1993년 7월에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노동신문에 기고한 기명논설에서 김정일을 ‘탁월한 군사 전략가, 강철의 영장’으로 불렀고, 1993년 8월에는 ‘민족의 아버지, 인민의 지도자’라는 호칭도 등장하였다. 1993년 10월에는 김정일을 ‘우리 아버지’라고 지칭한 2곡의 가요를 제작하여 주로 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급하였다.

북한은 각급 학교 교과서에도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김정일과 관련한 교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여 청소년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소학교 국어교과서에는 “나는 아버지 원수님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느꼈습니다”¹⁵⁷⁾라는 구절이 있으며, 중학교 국어교과서에는 “아,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 백두산에 탄생하시었다”¹⁵⁸⁾라는 찬양이 등장한다.

각급 학교 수학과 대수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크나큰 사랑이 깃들어 있는 ‘은덕분교’로 소학교 학생 165명이 견학을

157) 소학교 1학년 국어 ‘참배’, p.31.

158) 중학교 3학년 국어 ‘해돋이’, p.16.

잡니다. 그 가운데 3/5은 4학년생이고...”¹⁵⁹⁾ 등으로 김정일과 관련지어 문제를 내는 방식이 쓰이고 있고, 음악 교과서에도 “온 나라 꽃봉오리 학습터 찾아 지도자 선생님을 따라 배워요”¹⁶⁰⁾ 등 김정일을 찬양하는 가사가 등장한다.

북한은 또한 김정일의 ‘위대성’과 ‘빛나는 업적’을 찬양하는 책자와 문학작품 그리고 노래를 대량으로 제작해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김정일의 출생 및 성장과 관계가 있는 여러 지역을 ‘혁명사적지’로 조성하여 왔다. 1982년 ‘어은 혁명사적지’를 시작으로 현재 16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정일이 출생하였다는 백두산 밀영으로, 북한은 여기에 귀틀집, 회의장소 등을 건립하여 놓고 이를 ‘고향집’이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의 문예출판사는 1991년 9월 김정일에 관한 전설을 모은 ‘백두광명성 전설집’을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여기에는 김정일이 해방 후 청진시를 방문, 일본인들이 쓰던 지구의의 일본지도를 먹으로 새까맣게 칠해 놓자 일본 땅에 검은 구름과 소낙비가 내렸다는 내용의 ‘지동이 울다’를 비롯하여 30여편의 김정일 전설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1987년 5월부터 항일혁명투쟁 당시 빨치산 대원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글을 써 넣었다는 소위 ‘구호나무’에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그 태양빛 이어갈 백두광명성”,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 등의 구호가 발견되었고, ‘탄생’ 및 ‘후계자로서의 위상’과 관련한 200여 가지의 김정일 칭송 문헌이 발견되었다고 선전하였다.

1988년 2월 김정일의 46회 생일을 기해 일본의 한 화원 주인이 오랜 연구 끝에 재배에 성공하여 기증하였다는 베고니아꽃을 ‘김정일화’로 명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급·선전하였다. 또한 백두산, 금강산 등 명산의 바위 위에는 한 글자의 길이가 수 미터나 되고 글자의 깊이만 해도 1미터에 이르는 김정일의 어록과 이름을 새겨 우상화에 활용하고 있다.

159) 소학교 4학년 수학 ‘분수’, p.160.

160) 소학교 1학년 음악 제31과 ‘장자산의 학습터’, p.71.

II. 정치

김정일 우상화에는 김일성도 직접 참여하였다. 김일성은 1992년 2월 16일 김정일의 50회 생일을 맞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친필 송시를 한문과 한글로 발표하였으며, 1994년 3월과 4월에는 “김정일 조직 비서는 한마디로 말하여 충성의 최고 화신”, “신념이 강하고 배짱이 센 사람,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등으로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맞이한 김정일의 53회 생일을 앞두고 1995년 2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1992년 2월 7일 김일성 비준)으로 김정일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이틀간의 휴무일을 부여하는 등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앞두고 후계자로서의 상징 조작을 강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3년 1월 28일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로 처음 규정한 이래 계속해서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김정일 우상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인덕정치’의 실현을 통해 “령도자와 인민들이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와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자식’ 간의 혈연적 관계가 형성되었다”¹⁶¹⁾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최고사령관 동지’, ‘장군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등의 호칭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4) 김정일 정권의 출범

김정일은 1970년대 이래로 지도자 실습을 계속해 왔고, 점차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김일성 시대 말년에는 북한의 국정전반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북한의 지도자가 된 것은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이라기 보다는 김일성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이 그늘 밖으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161) 『로동신문』(1995. 1.15) 참조.

김일성 사후 3년의 과도기를 소위 ‘김일성 유훈통치’ 방식으로 체제 위기를 안정적으로 수습한 김정일은 1997년 10월 8일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지 1년 후인 1998년 9월 5일 김일성 사망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제10기 제1차회의)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되었다.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중점은 ‘국가주석’ 제 폐지이다. 종전의 국가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에 이관시켜 국가기능의 분산·조정을 꾀했다. 과거 국가주석의 지휘를 받던 정무원은 내각으로 명칭이 바뀌고, 내각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는 등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격상시키고 여기에 김정일을 다시 추대하였다. 국방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개정헌법 상에는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김영남의 추대사를 통해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군사·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 최고의 직책”이며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절대적인 직책이라고 강조하였다.¹⁶²⁾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되면서 대외적으로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도록 한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 권력구조가 외형적으로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3자간의 권력분산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국방위원장으로서의 김정일이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형식상의 권한과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권력

162) 김영남의 국방위원장 추대사(1998. 9. 5) 참조.

II. 정치

구조의 '김정일식 통치체제' 인 것이다.

그동안 김정일은 정치적으로 '선군정치' 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체제결속을 도모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강성대국론', '신사고론' 및 '과학중시사상' 등을 강조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독립채산제의 명문화, 개방형 자력갱생 노선의 채택 및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종래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세적 노선에서 경제실리를 위한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노선' 으로 정책기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확보를 위해 대미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중국 및 러시아 정상외교를 통한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원하고, 일본 및 유럽연합(EU)과의 관계개선에도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2000년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화해협력관계로의 전환에 호응하여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대남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일을 국가최고직책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또 다시 추대하고 내각총리 등 국가지도기관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어 '정권창건 55돌 기념 열병식 및 군중시위' (9. 9) 등 각종 대규모 행사를 통해 체제의 견고함을 보여주었다.

Ⅲ. 군사



1. 인민군의 형성과정과 성격

가. 형성과정

인민군의 창설은 1945년 8월 해방 직후부터 '건당·건군·건국'이라는 3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부는 김일성을 내세워 정치조직인 당을 우선적으로 결성하고 1945년 10월 12일에 “북한 지역내에 있는 모든 무장대를 해산시킬 것, 모든 무기·탄약·군용물자들을 군경무 사령관에 바칠 것, 평민중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립시도위원회들은 소련군사령부와의 협의하에 기정된 인원수의 보안대를 조직함을 허가한다”¹⁾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 따라 해방 직후 북한지역의 치안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던 민족진영의 자위대, 국내파 공산계열의 치안대 등을 해산시키고 10월 21일 소련군 출신 한인 2,000여명으로 구성된 적위대를 중심으로 북한 각지에 인민군의 모체라 할 수 있는 보안대를 조직하였다. 또한 군내 정치장교와 군사간부 양성을 위해 1945년 11월 ‘평양학원’, 1946년 6월 ‘보안간부학교’ 등 군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보안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1946년 8월 15일 각 지역에 조직된 보안대를 통합, 지도하기 위하여 평양에 보안간부 훈련대대부(訓練大隊部)를 창설하고, 1947년 5월에는 인민집단군 총사령부로 개칭하였다.

1948년 2월 4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내에 현재의 인민무력부의 전신인 ‘민족보위국’을 신설하였으며 정권 수립 7개월전인 2월 8일에 ‘인민집단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개칭하고 정규군 창설을 선포하였다.

1) 소련군 제25군사령관 성명(1945.10.12): 『조선중앙년감』(1949), p.58.

III. 군사

해군은 1946년 6월 5일 수상보안대사령부를 원산에 창설(동해 수상보안대: 원산, 서해 수상보안대 : 남포)한 데서 비롯되었다. 1946년 8월 사령부를 평양으로 이전·확장하였으며 1946년 12월에는 수상보안대를 해안경비대로 개칭하고 1947년 6월 원산에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두었는데 이것이 후에 해군군관학교가 되었다. 해안경비대는 1949년 8월 20일 내무성 관할에서 민족보위성 관할로 변경되면서 8월 28일 처음으로 ‘어뢰정대’를 창설함으로써 정규 해군으로 발족되었다. 북한은 어뢰정대 창설일인 8월 28일을 1972년 6월 3일 정령에 의해 ‘해군절’로 정하여 1992년까지 기념해 왔으나 1993년부터는 수상보안대 창설일인 6월 5일로 변경하였다.

공군은 1945년 10월 25일 민간기구로 발족한 신의주항공대가 1946년 6월 7일 ‘평양학원’ 예하 항공중대로 편입되면서 군사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947년 8월 20일 소련유학을 마치고 온 신의주항공대 출신 약 300여명을 중심으로 비행대를 창설하고 1948년 2월 8일 인민군 창설과 함께 항공대대로 증편함으로써 정규 공군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1972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비행대를 창설(1947. 8.20)한 8월 20일을 ‘공군절’로 정하였다.

나. 성격

북한 인민군은 노동당규약(제7장 제46조)에서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선군정치를 앞세워 북한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군인물들의 서열이 급상승하고 군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데 반해 당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²⁾ 이에 따라 ‘당의 군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북한군의 역할 확대는

2) 김정일은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즈음 당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연설에서

어디까지나 당의 영향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반적인 무력지휘에서부터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의 결정, 군수산업과 인민군대와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의 조직, 지도와 군대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³⁾

군의 당적·혁명적 성격외에 군을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활동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군은 ‘김일성·김정일의 군대’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⁴⁾

북한은 노동당규약 제46조에서 “인민군의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계승”을 강조하고 있으며 1977년까지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 오던 것을 1978년부터는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창설했다는 1932년 4월 25일로 변경하였고 김정일이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이끌어 왔다고 선전하고 있다.⁵⁾

한편, 1996년부터는 인민군의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과 군의 혁명적 사상무장 강화에 목적을 둔 ‘오중홍 7연대 칭호 쟁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⁶⁾ 이는 인민군의 성격을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투쟁 경력 및 김정일의 군영도력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하고 군대를 사병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 군대는 대내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한 핵심적인 체제보위수단이며 대외적으로는 ‘벼랑끝 외교(brinkmanship)’의 배경으로서 대남면에서는 대남혁명 수행을 위한 실천 역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 일군들은 일선현장에 머리로 내밀지 않고 회의실에서 학습과 강연회 회의만을 하고 있다”며 당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내면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지 못하면 중앙당이 노인당, 송장당이 될 수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3) 노동당 규약 제27조.

4) 인민군의 ‘충성의 선서’ 첫째항: “우리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5)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을 공식 선포하고 이 날을 창건일로 기념해왔다. 그러다가 1978년 2월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직접적인 계승자’라고 주장하면서 창건일을 이른바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시절 조직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립일(1932. 4. 25)인 4월 25일로 변경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을 빨치산 시절로 소급한 것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성을 부각·선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6) 북한 주장에 의하면, 오중홍 7연대는 항일혁명시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로서 위기사 김일성 및 혁명사령부를 목숨바쳐 보위한 모범적인 전위부대로 당시 연대급 지휘관으로서 는 오중홍이 최초로 전사한 부대이다. 북한은 1996년 1월부터 훈련, 부대관리, 사상무장 등에서 모범을 보인 부대에 ‘오중홍 7연대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다. 군의 위상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김일성·김정일의 군대’로서의 북한군은 김일성 사망 이후 경제난 등 체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혁명의 기둥’⁷⁾으로 체제수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98년 3월 9일자 노동신문에서 소연방의 해체와 동구사회주의권 몰락에 대해 “군대를 비사상화, 비정치화함으로써 총 권 군대가 당이 변질되고 국가가 와해되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나앉아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였다”고 분석하였다.

김정일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군사 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은 공개활동시 경제·사회 등 여타 분야 활동 보다도 군부대 시찰을 포함한 군관련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 출생일, 당창건일 등을 계기로 군장성급 진급인사를 수시로 단행하여 군인들의 사기진작과 충성심을 유도하고 자신의 군부장악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등 군인사를 통치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⁸⁾ 이에 따라 주요 행사시 발표되는 주석단 명단에서도 군인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 났으며 상위 서열을 차지하고 있다.⁹⁾

한편, 김정일의 지시로 군이 주요 공장, 협동농장 등을 비롯한 각급 사회기관에 파견되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군민일치’ 기풍을 강조하여 군에 대한 주민들의 원호사업 뿐만 아니라 소위 ‘혁명적 군인정신’¹⁰⁾에 기초한 군대와 주민들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강요함으로써 주민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2001년을 ‘선군정치의 승리의 해’로 평가

7) 1998년 3월 9일 노동신문은 역사상 처음으로 김정일이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정식화하였다고 보도하였다.

8) 김정일은 최고사령관 추대(1991.12.24) 이후 2003년 8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1,164명의 진급인사를 실시하였다.

9) 김일성 생존시 주석단에 등장하는 군인물로는 오진우, 최 광, 백학립, 김광진 등 4-5명에 불과했으나 김정일 시대에는 차수 12명이 대부분 주석단에 참석하고 있다.

10) 1998년 5월 13일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혁명적 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

하였을 정도로 북한은 군병력을 발전소와 댐건설, 토지정리 등에 대거 투입하는 등 경제건설의 주력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일의 군사우선정책 추진으로 북한에서 군은 '혁명의 기둥'으로서 체제 보위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경제건설 및 사회통제 기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 군사정책 및 전략

가. 정책기조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 총동원 태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국방자위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김일성은 “자위적 국방건설이란 권력을 장악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국방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지도적 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자위로선의 본질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¹¹⁾이라고 하면서 군사자위노선을 강조하였다.

중·소에 의존하던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원칙을 주창하기

폭정신이며 인민군 군인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각오로 투쟁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과업도 무조건 집행하고 있다. 경제지도일군들도 혁명적 군인정신을 말로만 따라 배운다고 하지 말고 실지 사업에서 구현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보도했다.
11) 『김일성저작집 28』, p.534.

III. 군사

시작한 것은 쿠바사태와 중·소 이념분쟁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하였다.¹²⁾

이러한 국방자위원칙의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4대 군사노선이다. 북한은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로 제시되는 이 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¹³⁾

4대 군사노선

노 선	정 책 목 표
전군 간부화	군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 수행
전군 현대화	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수행
전민 무장화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으로 무장
전국 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로 건설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의 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4대 군사노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옹성 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하였다. 자립적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¹⁴⁾ 이러한 4대

12) 『조선중앙년감』(1963), pp.157~163.

13) “우리는 이르는 곳마다 굴을 파놓아야 한다. 전연지대 뿐만 아니라 후방지대, 제2선, 제3선 할 것 없이 온 나라를 다 요새화하여야 하며 대공방어와 해안방어를 강화해야 한다. 공장도 땅속에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17』, p.446.

14) 『로동신문』(1970.11. 3); 『김일성저작집 5』, pp.437~475.

군사노선으로 표명된 북한의 군사정책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대 군사노선 채택 이후 북한 군사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은 아래와 같다.

군사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방향

구분	내 용	비 고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의 추진) · 경제건설과 군사건설의 병진 ¹⁾ · 전당·전인민의 전쟁동원태세 확립 ²⁾	· 중·소 의존정책에서 탈피 · 1969년 특수 8군단 창설
1970년대	(4대 군사노선의 관철) · 자립적 군사공업기지를 완성하여 획기적인 자위력의 육성 ³⁾ · 정규·비정규, 소부대·대부대 배합전술 위주 교리개발 ⁴⁾	· 독자적 전쟁수행능력 향상 · 휴전선에 남침용 땅굴 굴설
1980년대	(4대 군사노선의 강화) · 전투동원태세 완비 ⁵⁾ · 예비전력의 정규군 수준화 ⁶⁾ · 현대전 능력 보장 ⁷⁾	· 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민방 위부 설치 · SCUD미사일 개발 및 배치
1990년대 이후	(4대 군사노선의 발전) · 군민일치 강화 ⁸⁾ · 전국가적·전인민적 방위체계 강화 ⁹⁾ · 독자적 전략무기 체계 구축 ¹⁰⁾ · 국방공업의 선차적인 역량 집중 ¹²⁾	· 군사중시, 군대원호 기풍 진작 ¹¹⁾ · 노동미사일 개발·배치 및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방사포 등 장사정포 전방 배치

* 출처: 1) 1962년 당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시 김일성 보고

2) 1967년 김일성 신년사

3) 1971년 김일성 신년사

4) 제5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 (1971.11. 2)

5) 제6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 (1980.10.10)

6) 인민군 창건 56돌 기념보고 (1988.4.24)

7) 인민군 창건 57돌 기념보고 (1989.4.24.)

8) 인민군 창건 58돌, 59돌, 60돌 기념보고

9) 1993년 김일성 신년사

10) 인민군 창군 63돌 기념보고 (1994.4.24)

11) 1994년 김일성 신년사

12) 2003년 신년 공동사설

III. 군사

김일성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하고 1980년대 인민군의 당면과업으로서 ① 군대내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② 전투·정치훈련의 강화 ③ 군사기술 수준의 향상 ④ 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 강화 등을 선언하였다.¹⁵⁾

199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전군을 주체사상화 할 데 대한 군 건설로선’을 제시하고 동구권 몰락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군의 사상무장 강화를 주장하면서 ‘군대는 인민, 국가, 당’이라는 ‘군 중시 사상’을 내세우며 통일혁명무력과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 증강이 정체되는 가운데 선군정치 강화와 함께 전략무기 중점 개발을 통해 군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나.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일성의 계급투쟁과 민족해방 전쟁관에서 출발한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전쟁론을 전개하였으며, 1950년 6.25 기습 남침도 ‘조국해방전쟁’,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

초기에는 항일 유격전 경험을 바탕으로 속공기동 및 포위섬멸전략을

15) 『로동신문』(1980.10.11) 참조.

16) 한국전쟁의 기원을 놓고 북한만이 북침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유고 학술원 발간 『대백과사전』(1978), 중국어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1986. 10), 『호루시초프 회고록』(2집, 3집) 등에 북한의 남침모의와 선제 기습을 기술하고 있으며, 소련 역사학자 ‘미하일 스미로노프’의 증언(모스크바 방송, 1990. 4.20)과 중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 ‘자이지하이’의 논문(서울: 제2차 한국전쟁 국제학술회의, 1990. 6. 14)에서도 남침을 인정하였다. 또 러시아는 1993년도 새교과서에 “소련과 북한의 협의하에 남침했다”고 수정하였다(서울: 한·러 교과서 세미나, 1992. 8. 6).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1994. 6) 엘친대통령이 전달한 한국전쟁관련 전문 등 외교문서자료들, 해방후 북한의 정치고문으로 활동했던 레베체프의 일기와 최근 해체된 KGB의 비밀문건 등에서도 남침 논의 과정이 소상하게 밝혀지고 있다.

주 내용으로 하는 소련군의 군사전략을 모방하였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한국전쟁 경험을 응용하여 현대전과 혁명전의 배합이라는 기본전략전술을 설정하였다.

김일성의 군사전략전술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1971년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의 총정치국장 한익수의 보고이다. 한익수는 “집중과 분산, 적극적 방어와 배후교란의 배합, 대소 부대활동의 결합,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즉시적 반격전과 연속적 타격전, 적 배후의 제2전선 형성, 유격전 저격수 및 유동포 활동, 비행기·탱크사냥 운동 등 김일성의 전략전술법은 현대전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¹⁷⁾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러한 군사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전격전과 유생역량(有生力量) 말살, 정치사상의식 고취를 강조하고 있다.¹⁸⁾

이처럼 북한의 군사전략전술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결정적 시기 도래시 기습 및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차·장갑차·자주포로 장비된 기동부대를 중심 깊숙히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증원 이전에 전 남한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군사력, 한국의 잠재적 전쟁수행능력, 한·미 동맹 관계 및 연합방위태세, 유엔과 국제여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쟁 도발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말하자면, 연합군의 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전쟁이 한반도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내전

17) 『로동신문』(1971. 2. 8) 참조.

18) 『주체의 혁명리론의 발전풍부화』(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331: 김정일은 “적들이 미처 손 쓸 사이 없이 불같은 공격을 들이대야 적의 유생력량을 철저히 소멸하고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 공격전투에서는 그저 적을 넓다 밀고 나가려만 하지 말고 한 놈의 적이라도 더 많이 소멸하여야 합니다. ... 전쟁의 승패는 그 어떤 무기나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III. 군사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제여론을 왜곡시키고 유엔 및 연합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최대의 장애가 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이미 1980년대에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기계화 군단의 편성, 그리고 대규모 특수전 부대 보유 등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통한 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장사정포,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주요 군사력의 70% 이상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있다.

3. 군사조직과 제도

가. 군사조직

(1) 군 지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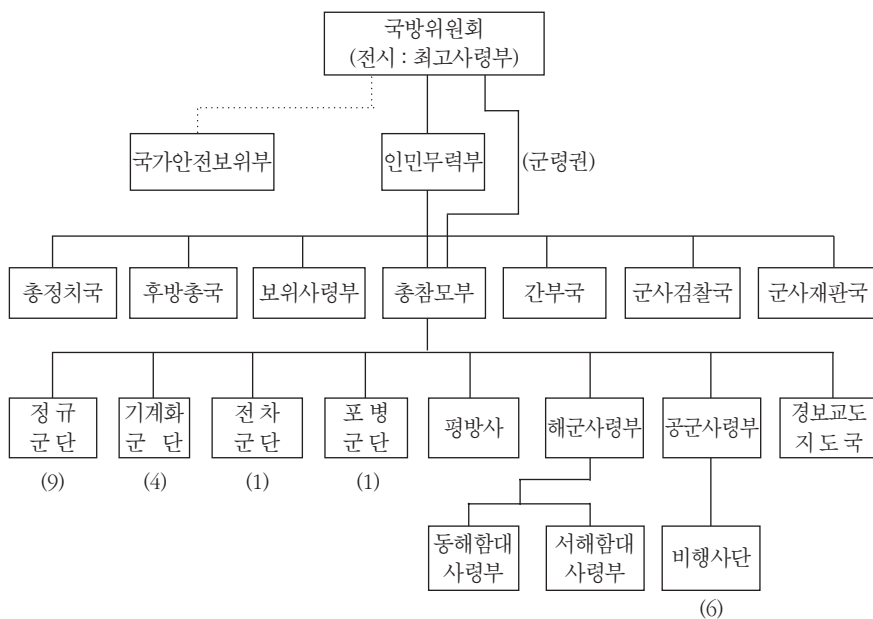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인민무력부는 국방위원회 산하에서 군사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예하에 총참모부를 두어 지상군의 정규군단, 기계화군단, 전차군단, 포병군단, 평양방어사령부, 정보교도지도국과 해·공군 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단일군 지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군은 이와 같은 군사·행정적 지휘체계 외에 당조직을 통한 정치·정책적 지도를 받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인민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는 최고 군사정책 결정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군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무력 일체를 직접

장악하고 있다. 김정일은 오진우·최광 인민무력부장 사망 이후에는 인민무력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총참모부를 통해 중요 지시를 하달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지휘체계



* 출처: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2003), p.158. 참조

* 주: () 내 숫자는 군단, 사단 수

(2) 군사기구

1)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시 중앙인민위원회의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로 신설되었다. 1992년 4월 구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III. 군사

1991년 12월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되고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주석이 행사하던 일체의 무력 지휘·통솔권을 국방위원장이 행사하게 된다.

1998년 9월 개정 헌법¹⁹⁾에서는 기존의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 지도’, ‘중요 군사간부 임명 또는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급 이상 군사칭호 수여’,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외에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설치하거나 폐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는 등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강화되었으며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지휘·통솔하는 ‘국가 최고직책’으로 격상되었다.²⁰⁾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연형묵·리용무, 위원 김영춘·김일철·전병호·최룡수·백세봉 등 총 9명으로 되어 있다.

2) 당중앙군사위원회

북한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시·군 단위에도 각급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1982년 11월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1997년 10월 당중앙위원회와 공동명의로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하기도 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은 당 군사정책의 수행 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19) 사회주의 헌법 제100~105조 참조.

20) 1998년 9월 5일 제10기 제1차 회의시 김영남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직책으로 발표하였다.

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고 당규약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은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출되는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당시 위원장 김일성을 비롯하여 오진우, 김정일 등 18명의 위원이 선출(총 19명)되었으나 위원장은 김일성 사망(1994. 7) 이후 공석이며²¹⁾ 위원으로는 김정일, 리을설, 조명록, 김영춘 등 12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각급 지방 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노동적위대 등 민병조직의 정치사상교육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동원체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는 국방위원회 산하의 군사집행기구로서 총정치국, 총참모부, 보위사령부 등을 비롯한 기구들을 통하여 정규군의 군무를 총괄·집행하며 이중 총참모부가 군사작전을 지휘·관장한다.

인민무력부는 1948년 북한 정권 수립시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했으며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 채택시 인민무력부로 개칭되고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회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92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인민무력부는 1998년 9월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다가 2000년 9월 9일 다시 인민무력부로 바뀌었다.

오진우 사망(1995. 2)이후 공석이던 인민무력부장에 1995년 10월에 총참모장 최 광이 임명되었으며, 최 광 사망(1997. 2)으로 다시 17개월간 공석이었다가 1998년 9월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던 김일철이 인민무력상에 임명되었다.

김정일은 최고사령관으로서 인민무력부를 거치지 않고 총참모부 등을

21) 일부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총비서의 당연직으로 김정일이 1997년 10월 8일 당총비서 추대시 동 직위에도 추대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III. 군사

통해 직접 군을 통제하고 있으며,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의 서열이 총정치국장 조명록이나 총참모장 김영춘보다 뒤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오진우, 최광 등 이전의 인민무력부장과 비교시 인민무력부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군령권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군사제도

(1) 병역제도

북한은 헌법 제86조에서 “조국보위는 국민의 최대 의무이다. 국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 의무병제를 채택하여 모든 남자들을 군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군의 입대절차에 따르면 만14세가 되면 징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시·군 인민병원과 도 인민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징병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키 150cm, 체중 48kg, 시력 0.8이었으나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화되자 1994년 8월부터 키 148cm, 체중 43kg, 시력 0.4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가족 중 친가 6촌·외가 4촌 이내, 월북자, 형복무자 등), 특수분야 종사자 및 정책수혜자(인민보안성요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부모 고령의 독자 등)들은 정책적 이유로 징집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대학생은 2학년 재학시 6개월간의 군부대 입소훈련 후 예비역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신체검사 합격자는 중학교 졸업후인 17세를 전후하여 각급 행정단위 군사동원부의 초모(징집)²²⁾ 통지에 따라 지상군은 군단 또는 사단 신병훈련

22) 북한은 징집이란 말 대신 ‘초모(招募)’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시에는 17~45세까지 초모 대상이 된다. 이 용어는 조선시대 병조에서 군병을 모집할 때 사용되었다.

소에서 병종(병과)별로 약 2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해군은 전대 신병교육대에서, 공군은 비행기지별 신병교육대에서 각기 2~3개월간 교육후 배치된다.

하사관은 당성이 강한 현역 사병이나 전문학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되며 6개월(공병하사관은 10개월)간의 교육후 하사관 결원시 보직과 동시에 진급한다.

군관은 2~5년 이상 근무한 현역사병이나 하사관 중에서 선발하는데 강건종합군관학교, 해군군관학교, 비행군관학교 등에서 양성되며 고급군관 양성 및 보수교육은 김일성종합군사대학 등 각급 군사대학이 담당한다.

한편 여자들은 중학교 졸업반이 되면 군입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최근 식량난 등으로 여성들의 군입대 지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148호(1958년)에 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복무연한제’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10월 군복무 조례를 다시 변경하여 사병들의 복무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 여자 군관은 28세로 연장하였다.

한편, 이러한 북한의 징집제도는 최근 전민군사복무제의 도입과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의 군사복무법 채택에 따라 상당부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³⁾

(2) 군대 복무

군복무에 있어서는 정신적 무장과 기율이 강조되고 있는데 1975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① 강인한 혁명정신

23) 전민군사복무제는 정책적 이유로 징집에서 제외되었던 대학생 등에 대해 ‘무조건적인 군사복무’를 지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조치는 적정 규모의 초모대상 인원의 유지와 군사복무와 관련된 계층별 위화감 해소를 위해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2003년 5월 31일 조선중앙방송은 “인민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을 반영하여 공화국 정부는 전민군사복무제를 법령으로 채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III. 군사

②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③ 무쇠같은 체력 ④ 백발백중의 사격술 ⑤ 강철같은 규율 등 ‘전투력강화 5대방침’ 을 제시하였다.²⁴⁾

또한 1977년 11월 인민군 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①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② 무기의 정통과 철저한 관리 ③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④ 당 및 정치조직들에게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⑤ 국가기밀·당조직비밀의 엄숙한 유지 ⑥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⑦ 군사정치훈련의 어김없는 참여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⑨ 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⑩ 군대안의 일치단결 등 ‘군무강화 10대 준수사항’ 을 제시하였다.²⁵⁾

이와 같은 ‘전투력강화 5대방침’ 과 ‘군무강화 10대 준수사항’ 은 인민군의 복무규율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되고 있다.²⁶⁾ 군기 및 부대관리를 위해 동지심판, 경고, 권한정지, 출당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민군대내의 주체적 혁명사상 확립을 강조하였고²⁷⁾ 경제사정 악화로 군이 경제건설현장에 대거 동원되면서부터는 ‘군민일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 등이 특징이다.

복무중에는 규정상으로 연1회의 정기휴가(15일)와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 사망시 특별휴가(10~15일), 표창휴가(10~15일) 등이 있으나 제대로 준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기휴가는 1968년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이후 정세긴장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아 휴가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으며 10~13년간의 군복무중 1회 정도만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인 결혼(군관 해당)이나 직계가족 사망시 실시하는 특별휴가는 사정휴가, 청원휴가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통지서

24) 『로동신문』(1975.2.8) 참조.

25) 『김일성저작집 7』, pp.418~423.

26) 제6차 당대회에서 총참모장 오극렬은 토론을 통해, “70년대는 우리 혁명무력 건설 력사에서 군의 전투력 강화 5대방침과 군무생활 10대준수사항의 관철로 새로운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시기이다... 인민군대는 이제 무적의 군대로 강화 발전되었고 우리의 국방력은 사실상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27)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대회(1977.11.30)에서 김일성은 인민군대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 데 대한 전군 주체사상화 방침을 제시하였다: 『로동신문』(1983.2.15) 참조.

가 지연 배달되고 휴가수속이 까다로워 사망후 20일이 지난 후이나 귀향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표창휴가는 표창 또는 훈장 수여자에게 실시되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고 위층 자제들이 뇌물을 주고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으며, 군부대 물자부족으로 고향지역의 특산물을 획득해오기 위한 물자휴가 역시 고위층 자제들이 쉽게 물품을 구해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수시로 물자휴가를 보내주고 있어 대부분의 사병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인민군의 급여는 전시에는 평시의 2배 지급을 제도화하고 있고 전방근무시에는 1인당 군관 30%, 하전사 100%의 봉급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대급식에 있어 주식은 보급되나 부식은 부대 자체영농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식조달에 애로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제대와 동시에 직장에 배치를 받게 되며 배경이 있거나 성분이 좋은 경우 대학진학이 허용되기도 하나 농장, 탄광, 기업소 등에 집단적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3) 단계급 구조

북한군은 계급을 ‘군사칭호’로 호칭하고 있으며²⁸⁾ 1952년 12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된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① 원수급에 대원수, 원수, 차수 ② 장령급에 대장, 상장, 중장, 소장 ③ 군관급에는 좌급군관으로 대좌, 상좌, 중좌, 소좌, 위급군관으로 대위, 상위, 중위, 소위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의 경우는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로 지칭되는 사관과 상등병, 전사로 지칭되는 일반병으로 구분되었으나 일반병의 경우 1998년 4월 계급체계 세분화 작업을 통해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로 세분화

28) 『조선말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에는 군사칭호를 “군인들의 자격과 상하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하는 칭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III. 군사

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병사들이 입대후 상등병 계급으로 5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함에 따라 입대 연수가 늦은 신참 상등병과 고참 상등병간에 문란해진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장기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다.

북한군 차수 이상의 고위 간부 현황을 보면 1992년 4월 13일 80회 생일을 앞두고 '대원수'로 추대된 김일성의 사망으로 '대원수'는 없다. '원수'에는 김정일, 리을설이 있으나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며 리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로 구분하고 있으며, '차수'에는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장성우, 리용무, 백학림, 김룡연 등 군부실세와 혁명1세대 등 12명이 포진하고 있다.

(4) 군내 당조직

인민군내에는 노동당 조직과 노동당 외곽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이루어진 정치기구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 당이 군을 통제하고 정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군대내 노동당 조직은 한국전쟁 기간에 설립되기 시작하여²⁹⁾ 1958년에 이르러 '인민군 당위원회'로 정식 발족되었다.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에 군대내의 당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었다.

구성을 보면 중앙에 인민군대내의 전체 당조직을 총괄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있고 대대급 이상에는 당위원회가, 중대·소대 단위에는 당세포와 당분조가 구성되는데 이들 기구는 군지휘관과 정치간부 등이 참여하여 군내 사상교육 등 정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집행방향을 토의·결정하는 회의체 기구이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그 지도밑에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군대내 각급 노동당 조직은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 대열의

29) 『조선로동당 역사교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265: 1950년 10월 당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군대내의 당조직 설립이 시작되었다.

확대 강화, 군사사업의 당적 지도 강화, 당 군사노선 관철, 청년동맹의 조직 강화·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³⁰⁾

또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기관인 인민군 총정치국은 대대급까지 정치부를 두고 있으며 대대급 이상에는 정치위원을, 중대급 이하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각급 군지휘관의 사업을 당적으로 조정·통제하면서 그 사업결과를 정기적으로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³¹⁾

군대내의 모든 교육계획, 명령서는 군지휘관에 이어 정치간부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정치간부들은 군지휘관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군대의 정치·군사 이원화 체제는 정치간부와 군지휘관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인민군내에는 부대단위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도 조직되어 있는데 청년동맹 조직은 각급 당위원회와 정치기관의 지도하에 군대내의 비노동당원을 노동당의 지도아래 결속시켜 군인들의 사상통제와 군무수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³²⁾

4. 군사력

가. 지상군

북한의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4개의 전방군단을 포함한 9개의 정규군단, 4개의 기계화군단, 1개의 포병군단, 1개의 전차군단을 포함한 총 19개의 군단과 특수전부대를 관장하는 정보교도지도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병력은 100만여명이다. 주요 전투부대는 69개 사단, 67개 기동

30) 노동당 규약 제47조, 제48조, 제50조 참조.

31) 노동당 규약 제51조, 제52조 참조.

32) 청년동맹 규약 제48조 참조.

III. 군사

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³³⁾

북한 지상군부대의 특징은 기계화, 전차 및 특수부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수년에 걸쳐 기계화사단 및 전차사단을 한반도 지형에 운용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는 등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인 10만여명 규모의 비정규전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는 유사시 전·후방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침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상군의 주요 장비중 전차는 아직까지 구식인 T-54, 55, 59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포구경이 향상된 T-62, 천마호 전차를 자체 생산하여 전방지역과 평양일대를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장갑차는 BTR계열 및 M-1973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경전차 수준의 성능을 갖춘 BMP계열 장갑차가 새롭게 배치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구경과 사거리의 야포는 50% 이상이 자주화(自走化)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최단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는 방사포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나. 해군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서해 함대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14개 전대 및 2개의 해상저격여단 등으로 총병력은 6만여명이다.³⁴⁾

북한 해군은 작전부대가 지형상 동·서해 함대사령부로 분리 운영됨으로써 전략적 집중이 불가능하고 함정 운용상 상호 지원이 곤란하여 작전의 융통성이 제약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투함정 중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의 수상전투함 대부분이 소형으로 원해 작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연안방어작전 위주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40여척의 유도탄정은 사정거리 46km의 스틱스(STYX)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 등 대형함정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미

33)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2003), p. 158.

34) 위의 책, p. 158.

오급 및 상어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50여척의 잠수함 전력은 한반도 전 해역의 해상교통로 교란 및 수상함 공격, 기뢰부설, 특수전 부대 침투 지원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개 소대규모의 무장병력을 태우고 목표지역으로 기습상륙시킬 수 있는 140여척의 공기부양정을 자체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동함정은 해상은 물론 갯벌지역에서도 기동이 가능하며 50노트 이상의 고속 기동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초기에 동시다발적인 기습상륙용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한편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가 95km에 달하는 실크웜(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다. 공군

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 중앙 통제하에 3개의 전투/폭격기 비행사단, 2개의 지원기 비행사단 및 1개의 훈련비행사단을 포함 총 6개 비행사단과 1개의 헬기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⁵⁾

주요 항공전력으로는 MiG-15/17, IL-28 등 구형 전투/폭격기가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MiG-19/21이 주력 기종으로 되어있다. 이외에도 MiG-23/29 및 SU-25 등 신예 전투기를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 MiG-29 전투기를 조립 생산한 바 있다.

300여대의 AN-2기는 단발엔진을 갖춘 복엽기로서 시속 160km의 저속·저공비행과 레이더 회피가 용이하여 남한 내 깊숙한 후방지역까지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으며 일부는 폭탄 투하용으로 개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 공군은 작전기지, 예비기지, 비상활주로 등 총 70여개의 항공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30여개 기지에 항공기를 분산 배치해 두고 있다. 특히 주요 전술기의 47%가 전방기지와 평양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35)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2003), p. 158.

III. 군사

남북한 군사력 현황

구 분			한 국		북 한	
병력			지상군 56만여명	69만 1천여명	100만여명	117만여명
			해군 6만8천여명 (해병대 포함)		6만여명	
			공군 6만3천여명		11만여명	
주요 전력	지상군	부대	군단	13개 (항작사, 특전사 포함)	19개 (포병,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포함)	
			사단	49개	69개	
			기동 여단	19개	67개 (교도 50여개 미포함)	
		장비	전차	2,400여대	3,700여대	
			장갑차	2,400여대	2,100여대	
			야포	5,000여문	10,000여문	
	다연장 방사포		200여문	4,400여문		
		지대지 유도무기	20여기(발사대)	50여기(발사대)		
	해군	전투함	130여척	430여척		
		지원함	20여척	3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100여척		
		상륙함	10여척	420여척		
		기뢰전함	10여척	30여척		
	공군	전투기	550여대	830여대		
		특수 기	70여대 (해군 항공기 미포함)	30여대		
		지원기	210여대	520여대		
		헬기	700여대 (육·해·공군 헬기 통합)	330여대		

* 출처: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2003), p.158.

라. 예비전력

북한은 “인민이 혁명적 군사사업의 주인이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조직 동원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군사관에 기초하여 주민을 예비전력으로 동원하고 있다.³⁶⁾

주민에 대한 군사동원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은 1958년 중국 인민해방군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에 ‘노농적위대’가 창설되고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이 제기되고 부터이다. 곧 이어 ‘교도대’가 조직되었고 1970년 9월 김일성의 지시로 학생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가 창설되었다.

1972년 12월 27일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전인민의 무장화를 위한 군사동원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며 1988년 4월에는 예비전력을 효율적으로 통할지휘하기 위해 당 민방위부를 설치하였다.

예비전력의 지휘체계는 인민무력부와 당 민방위부로 2원화 되어 있는데 교도대는 전시와 평시 모두 인민무력부 예하 후방군단의 통제하에 있으며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는 당 민방위부의 관할하에 있다가 전시에는 인민무력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2003년말 현재 북한의 예비병력은 76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 교도대

북한의 예비전력중 가장 핵심체로서 1963년 노농적위대 병력중 제대군인을 주축으로 조직되었으며 17~50세의 남자와 17~30세의 여성으로 편성되며 총병력은 90여만명이다. 인민무력부 예하 후방군단의 관할하에

36) 김일성은 별오리회의(1950.12.31)에서 “민병대와 같은 예비부대를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하였으며...후방공급사업들이 잘 조직되지 못하였다”고 언급,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Ⅲ. 군사

110여개의 교도사단·여단과 80여개의 대학생 교도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도대의 지휘관과 공용화기 사수들은 현역군인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는 정규보병사단 및 여단에 준하는 편제와 무장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쟁 발발시 정규군에 배속되어 전방 전력으로 투입되거나 후방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훈련은 정규군과의 합동훈련 실시 등 현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각 제대별로 소속부대 현역군관이 실시하는 자대훈련 10일과 각도 위수군단 주관하에 실시하는 동원훈련 30일 등 40일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교도대는 연간 160여시간의 교내훈련과 2학년 재학시 6개월간 군부대에 동원되어 실시하는 입영 집체훈련이 있다.

(2) 노농적위대

노농적위대는 46~60세의 남자를 위주로 하되 17~60세의 남자와 17~30세의 여성 중 교도대 미편성 인원도 노농적위대로 편성되며 총인원은 540여만명이다.

부대 편성은 각급 직장의 부서 및 인민반별로 단위제대를 편성하고 리·동 단위에 중대 및 소대, 시·군(구역) 단위에 연대 및 여단, 도(직할시) 단위에는 사단급으로 편성되며 제대별 지휘관은 당해 직장 또는 지역의 노동당 책임비서가, 부지휘관은 인민보안성 해당지역 안전국장 이, 참모장은 해당지역 노동당 군사부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여 노농적 위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

노농적위대의 기본적 임무는 민방위업무와 함께 전시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는 물론, 지역방어와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자동보총 등 개인화기는 100% 지급되고 있으며 공용화기도 일부 지급되어 있다.

훈련은 당 민방위부 주관하에 자체훈련 15일과 동원훈련 15일 등 연간 30일을 받고 있으며 주말이나 월말에는 야외훈련, 연말에는 정규군과의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3) 붉은청년근위대

붉은청년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녀학생들(14~16세)을 대상으로 학교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며 총인원은 90여만명이다. 노동당 민방위부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연간 160시간의 교내훈련과 중학교 5학년 재학시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7일간의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 입영훈련과 비상소집훈련 등을 받는다.

(4) 기타 준군사부대

기타 준군사부대로는 주요 보안시설 건설을 담당하며 유사시는 정규군에 편입시켜 공병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민보안성 공병총국, 군수물자를 관리 지원하는 군수동원총국,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산하에서 경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청년돌격대, 호위사령부 등 약 40여만명에 이르는 인원도 즉각 동원 가능한 예비전력으로 분류된다.

마. 군사비

북한은 1962년 채택된 4대 군사노선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GNI의 20~25%를 군사비로 사용하여 왔으며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재정 규모 대비 15% 수준에서 군사비를 편성해 오고 있다.

북한이 1966년도부터 공식발표하고 있는 세출구성의 추이를 보면 1972년 이후의 군사비 구성비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남북관계를 의식하여 군사비를 인민경제비 등 다른 예산 항목에 은폐시킨 데 기인한다.

2002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확정된 2002년 예산안에 의하면 총예산은 221억 7,379만 북한원(100.3억 달러)이며 그중 14.4%인 31억 2,172만 북한원(14.1억 달러)이 군사비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III. 군사

북한이 공식적인 군사비외에 이른바 제2경제로 불리는 군수경제 운영 체제를 통해 무기수출, 직영 무기생산, 외화벌이 등을 통한 사업이익금을 군사비로 재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군사비는 총예산의 3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군사비 규모 (1993~2002)

(단위 : 억달러, %)

연 도	총 예 산	군 사 비	군사비 / 총예산
1993	187.2	21.5	11.4
1994	191.9	21.9	11.5
1995	-	-	-
1996	-	-	-
1997	-	-	-
1998	91.0	13.3	14.6
1999	92.3	13.5	14.6
2000	95.7	13.6	14.3
2001	97.6	14.7	14.5
2002	100.3	14.4	14.4

* 1995~1997년 최고인민회의 미개최.

바. 군수산업

북한은 휴전후부터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공장들을 건설해 오다가 특히 1960년대 중·소관계가 악화되자 더욱 군수산업에 주력하게 되었다.

군수산업은 노동당 산하의 제2경제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데 제2경제위원회는 산하의 여러 군수공장들을 통해 총포, 함정, 항공기 등 각종

군사장비 생산은 물론 군사장비의 개발과 수출입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군수공장외에 내각 소속의 민수공장에도 ‘군수직장’을 설치하여 제2경제위원회의 지도하에 군복, 군화 등 보급품을 비롯하여 소총 등 소화기와 군수부품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은 군수산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는데 1960년대에는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면서 군수공장을 더욱 확장시키는 한편, 주요 금속공장, 공작기계공장, 정밀기계공장, 자동차공장, 트랙터공장, 통신기계공장 및 조선소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그 동안의 모방 생산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군수산업의 확충에 치중하여 전차를 비롯한 장갑차, 화포, 공용화기 및 각종 탄약을 양산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함정은 잠수함을 비롯하여 각종 전함을 건조할 수 있으며, 주요 정밀 전자 기기와 부품을 제외하고는 무기의 대부분을 자급체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무기의 자체개발단계에 돌입하여 양적 확장만이 아닌 질적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일부 전자 및 정밀유도무기, 최신형 전차 및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MiG-29기의 조립생산을 추진한 바 있으며, 전방지역 배치시 수도권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사정포를 생산하는 등 재래식 무기 생산능력을 계속 축적해 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의 양적 증강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소형잠수함, AN-2기 등 기습침투장비 생산과 미사일, 화생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3년 5월 노동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고 1998년 8월에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III. 군사

또한 화학작용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8개의 생산공장, 4개의 연구 시설, 6개의 저장시설 및 2,500~5,000여톤으로 추정되는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저병, 천연두 등 생물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자강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군수공장은 현재 180여개소로 대부분 지하화되어 있으며 '제000호 공장'으로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110여개소의 일반공장을 전시전환 공장으로 지정하여 전시에는 즉각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군수제품의 수준은 서방권의 제품에 비해 가공정밀도가 낮고 부품의 호환성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1978년부터 소련의 기술지원으로 T-62전차를 생산하여 아랍 등의 분쟁지역에 수출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SCUD 등 미사일을 중동 지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분야에서 가장 낙후된 부문은 전자·통신 분야로서 1980년대부터 중·소체의 유무선 통신장비의 모방생산을 시도하여 연대급 이하 소부대용의 교환대 및 전화기, 저출력 무전기 등 재래식장비는 양산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사. 대량살상무기 개발 현황

(1) 핵 개발³⁷⁾

북한은 가채량 400만톤에 달하는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영변에 핵단지를 조성한 후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료를 도입하고 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관련 기술을 축적하여 왔다.

19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37) 국방부, 『국방백서』(2000), pp.43~44.

집중 연구하여 자체 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을 확장하였으며, 1980년에는 5MWe급 연구용 원자로 건설에 착공하였다.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 핵개발 체계 완성에 주력하여 1986년에 우라늄 정련, 변환시설의 운용을 시작하였고, 1989년에는 태천에 200MWe급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하였으며, 영변지역에 재처리시설 건설을 착수하였다.

1990년대에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구하는 기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핵무기 완성 및 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2) 화생무기 개발

북한은 1961년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에 따라 연구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학무기 개발을 시작하였다. 1980년 11월 1일 당 군사위원회에서 김일성이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생산하여 전투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질식, 수포, 혈액, 신경작용제 등 다양한 종류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무기도 19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3여종의 생물학작용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⁸⁾

(3) 미사일 개발

북한은 구소련제 SCUD-B 및 발사대를 이집트에서 도입, 역설계 개발 방식을 통해 1984년 SCUD-B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다. 1986년에는 사정거리가 500km에 이르는 SCUD-C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다. 1993년에는 사정거리가 1,300km인 노동 1호를 시험발사 하였으며, 1998년 8월에는 대포동 1호 미사일 운반체에 의한 소형 인공위성(광명성 1호)의

38)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2003), p.23.

III. 군사

궤도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³⁹⁾

이와 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 국가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중동지역 등에 수출함으로써 국제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아. 대외군사협력

북한은 1961년 김일성이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 (1961. 7.6),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 (1961. 7.11)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 두 조약은 다같이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체약 상대국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소 조약은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 10년 유효의 시한적 조항을 두고 있으며 또 조약체결 일방이 시한만료 1년전에 해약 희망을 표시하지 않으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똑같은 절차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연방의 소멸직후인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연방공화국 대통령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동 조약 제1조(피침시 군사 등 즉각 지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6월 러시아 방문시 정상회담을 통해 동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후 러시아측이 1995년 9월 7일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통보함으로써 동 조약의 효력이 1996년 9월 10일 이후 상실하게 되었다.

그 후 북한과 러시아는 1999년 3월 17일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을 가

39) 국방부 『국방백서』(2000), p.45.

서명하고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후 2001년 4월 북한 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간 방위산업 및 군수장비분야 협력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어 8월 4일 김정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ABM조약⁴⁰⁾ 준수, 경제·군사 등 쌍무적 협조발전 등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비해 조·중 조약은 계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무기한 효력 조항을 두고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여전히 군사동맹조약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 개입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1971년 8월 ‘군사교류협정’을 조인하고, 매년 군사대표단을 상호 파견하여 군사현안 문제들을 협의하는 등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외에 북한은 1982년 11월 리비아 원수 카다피의 평양 방문시 ‘조선·리비아 우호 협력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쌍방은 군사문제에 있어 상호 협력과 군사정보·군사대표단의 상호교환, 무기제공 등을 합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간씩 자동 연장하게 되어 있다.

1986년 3월 쿠바 수상 카스트로의 방북시에도 체결 20년후 10년간 자동 연장되는 ‘조선·쿠바 친선 및 협력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 역시 쌍방간의 정치·경제·문화·기술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협조 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과 협조도 규정하고 있어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⁴¹⁾

40) 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ABM: Antibalistic Missile Treaty)은 가입국에 대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전역방어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며, 허용된 전략미사일 방어체제의 배치를 제한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1972년 5월 26일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조인되었다.

41) 이 조약은 전문과 본문 1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7조에서 “쌍방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어느 일방에 대해 그 어떤 위협이나 침략을 감행하는 경우 이것을 다른 일방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으로 인정하고 가능한 모든 지지와 원조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외교



1. 외교정책

가. 정책기조

(1) 외교정책의 이념과 목표

북한은 1972년 헌법 제16조에서 평등과 자주,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를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의 대외관계 적용 및 반제투쟁의 지지와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¹⁾ 이같은 입장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도 나타나 있다. 즉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 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²⁾는 것이다.

또한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및 반제국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지배세력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외

1) 1972년 헌법 제16조에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 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48년 헌법에는 외교정책의 이념과 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2) 당규약 전문.

활동의 기본목표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운동의 확대 발전” 및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됨으로써 동서 냉전체제가 사라지자 북한은 종전에 내세웠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외교정책의 원칙에서 삭제함으로써 변화된 국제정세를 반영하였다. 1992년 헌법은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원칙으로 자주, 평화, 친선을 규정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통한 침략과 내정간섭에 대한 반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³⁾ 1998년 헌법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소멸을 반영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은 사라졌으나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에 대한 연대투쟁 목표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것은 북한의 국제정세에 대한 대결론적 상황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북한은 자주, 친선, 평화라는 외교정책의 이념과 원칙하에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인 여건과 환경의 조성 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2) 대외활동 방향

북한은 헌법 제17조에서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3) 1992년 헌법 제17조에는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고 규정하였다.

4) 사회주의 헌법 제17조.

하고, 과거에는 외교활동이 사회주의권 및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소 양극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라는 구조와 사회주의 국제주의라는 이념적 요인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를 중시하게 하였다.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활발했던 이유는 북한이 반제국주의 이념⁵⁾을 내세우면서 비동맹 국가들을 대상으로 남한과 수교경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냉전의 종식에 따른 소연방 해체와 동구권 몰락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종래 사회주의권내 국가들을 지향한 진영 외교 및 비동맹에 주력하던 외교활동은 변화를 맞고 있다. 경직된 통치 이데올로기와 계획경제의 한계 및 내부자원 고갈에 의해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사라진 현실에 직면하여, 생존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오늘날의 지역별, 대상별 외교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과 경제적 실리 획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⁶⁾

② 중국, 러시아 등과는 과거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주의 동지적 유대라는 성격과 달리 전통적 우호·친선관계로서 유지·발전 시킨다.

③ 전반적으로 비동맹 외교의 퇴조 속에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의 자원외교를 강화한다.

④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들과는 1995년 이후 계속된 식량난 해소 차원에서 유대 강화를 도모 한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외교활동은 이념, 정치 위주에서 실리, 경제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적인 외교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5) 이는 이른바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고 있는 공동의 처지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 이러한 노선은 이미 1970년대에 표명된 바 있다.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1972.12.10)에서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대해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 5개월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표방하였던 것이다.

나. 외교 전개과정

(1) 1948년 정권 수립~1950년대 초반 : 중·소 의존

북한의 외교관계는 정권수립시기부터 1953년 휴전이 성립될 때 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진영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당시의 외교활동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가 거의 전부였으며 수교국도 소련, 중국, 동구 제국 등 12개국에 불과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의 도발로 UN에 의해 침략자로 규탄된 북한은 전적으로 소련을 추종하면서 중·소로부터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적·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지원 획득에 치중하였다.

(2) 1950년대 중반~1960년대 후반 : 중립국외교 강화

휴전협정이 성립되자 북한은 전후 복구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중·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5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신생독립국 29개국이 참가한 반동회의에서 ‘평화 5원칙’이 발표되고,⁷⁾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정책을 거론하게 되자 북한은 중·소·동구 등 공산국가에 국한하였던 진영외교를 탈피하여 다변외교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이 중립국들과의 외교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56년 4월에 개최된 제3차 당대회에서 다변외교로의 전환방침을 밝힌 때부터이다.⁸⁾ 이와 동시에 1956년 4월 대외문화연락위원회라는 ‘인민외교’ 수행담당 기관을

7) ‘평화 5원칙’이란 ‘영토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적 공존’ 등이다.

8) 김일성은 총화보고에서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주요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p.12.

노동당 외곽단체로 만들어 대중립국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58년에는 알제리, 기니 등과 수교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대중립국 외교를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것은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신생독립국가들이 대거 UN에 가입하고 1960년 제15차 UN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초청문제가 제기된 데서 비롯되었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① 사회주의국가와의 단결 ②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투쟁 ③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접근⁹⁾ 등을 강조하였으며, 같은 해 6월과 7월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고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각각 체결하여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1962년 중·소 국경분쟁과 쿠바사태 이후 중·소 분쟁이 격화되자 북한은 중국에 밀착하였다가 1965년 2월 코시긴 소련 수상의 방북을 계기로 중·소 균형외교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중·소 양다리 외교에서 북한은 그들의 외교적 활로를 찾고자 1966년 8월 ‘내정불간섭과 호상평등’을 표방한 자주노선을 선언하고¹⁰⁾ 이를 대중립국 외교의 지침으로 삼았다.

(3) 1970년대 : 서방외교 모색(남북외교 경쟁)

1970년대에 들어 북한의 외교정책은 보다 다변화되고 실리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이 실리외교를 정책노선으로 채택한 것은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의제가 토의되면서¹¹⁾ 본격화되었다.

북한이 1970년대에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한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서방

9) 『김일성 저작선집 3』, pp.194~197.

10)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1966. 8.12) 참조.

11) 『조선중앙년감』(1972), pp.269~270.

IV. 외교

제국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외적으로 1971년 9월 중국의 UN 가입과 1972년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 미국·중국의 관계 개선, 일본·중국의 국교 정상화 등 국제적 화해 분위기의 성숙, 그리고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한 지지국의 확보 필요성 등이 작용하였다. 또한 대내적 배경으로는 새로운 6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이 있었다.

1973년 6월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이 발표되자 북한은 남북한의 공존을 “두개의 조선을 고정화하고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구실로 반대하면서도¹²⁾ 서방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¹³⁾ 1974년 3월에는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는 한편, 비동맹외교를 적극 전개하여 1975년 8월 비동맹회의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 제30차 UN총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반도문제에 관한 서방측 안과 공산측 안이 동시에 통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 전략, 외채 상환문제, 외교관의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별다른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4) 1980년대 : 서방외교 추진

북한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라는 궁극적인 외교목표를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1980년대 들어 외교 다변화를 모색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자주·친선·평화’라고 표방하였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공산국가와의 단결강화를 강조하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대서방외교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12) 『로동신문』(1974. 1.26) 참조.

13)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서방 일부 국가들과의 수교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특히 북한은 1983년 10월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서방제국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자, 평화공세의 한 수단으로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열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 라는 의제를 토의하고 남한·북한·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하는 한편,¹⁴⁾ 이를 통해 대미 접근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4년 9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만성적인 경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합영법을 채택하고 서방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5) 1990년대 : 미·일외교 강화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 탈피와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였다.

김일성이 사망하자(1994. 7. 8)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북한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군부중시의 비상위기관리체제를 통해 체제안정을 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경주하였다.

미국과는 1988~1992년 사이 북경에서 28차례의 참서관급 외교관 접촉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1994년 10월 21일 북·미간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를 이루어냄으로써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9년 3월 금창리 지하 핵 의혹시설의 성격 규명을 위한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식량 60만 톤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그후 미사일 재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1999년 9월 12일

14) 『로동신문』(1984. 1.13) 참조.

IV. 외교

베를린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후속회담이 11월15일 베를린에서 재개됨으로써 대미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일본과는 1991~1992년 사이 8차례에 걸친 국교정상화회담을 개최하고, 1995년 3월에는 북한 노동당과 일본의 연립여당이 국교정상화회담을 재개한다는데 합의하였으며, 일본은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북한과 일본은 일본인 처 고향방문 사업을 추진, 두 차례 고향방문을 실현시키고, 1998년 3월 일본 자민당대표단이 방북하여 관계개선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8년 8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쌍방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1999년 8월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일본이 관계개선과 과거사 보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북·미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북·미베를린 합의(1999.9) 분위기에 편승, 방북한 일본 정당대표단과 북한 측은 1999년 12월 3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국교정상화회담 재개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1999년 12월 19일부터 개최된 적십자회담에서 양측은 제3차 재북일본인 여성 고향방문 재개 등 4개항에 합의하였으며, 이어 열린 수교회담을 위한 국장급 예비회담에서 2000년 3월에 국교정상화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중국과는 1992년 8월 한·중수교로 냉각기를 맞았으나, 1996년 5월 북·중 경제기술협조협정 체결과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방문, 그리고 1999년 10월 탕자취안(唐家璇) 외교부장의 북한방문을 통해 쌍방간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러시아와는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대체하는 신조약에 1999년 3월 가서명함으로써 일반국가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8~1999년 사이 유럽연합(EU)과 2차례에 걸친 정치대화를 개최하였으며, 1999년 9월에는 제54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백남순 외무상이 유럽국가 등 20여개국과 외무장관회담을 가짐으로써 그간 소원하게 지내왔던 유럽연합 여러나라와의 관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6) 2000년대 : 전방위 외교 추진

1998년 9월 공식 출범한 김정일 체제는 변화된 대내외적 상황속에서 생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고 이로 인해 국제적 고립 탈피 및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를 외교활동의 주요목표로 설정하여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북한의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한이 체제위기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정책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먼저, 북한은 체제안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핵, 미사일 문제 등을 고리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한 후,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과 '반테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과 회담을 하는 등 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양측 관계는 후퇴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확보를 위해 핵카드를 활용, 대미관계 정상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북한은 2000년 수교회담을 재개하고 동년 9월에는 제3차 일본인 처 고향방문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교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어 2002년 4월 북·일 적십자회담과 국장급 회담을 거쳐 같은 해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 핵문제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으로 인해 북·일 관계 개선이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의 전방위 외교활동은 대 EU외교활동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월 이후 EU 국가와의 외교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

IV. 외교

하여 2003년 현재는 총 15개 성원국 중 프랑스 및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수교하였으며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지원 획득 및 경험 추진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다.

북한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01년 7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방문한 데 이어 2002년 3월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순방 했다. 또한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2002.3), 천득령 베트남 주석(2002.5) 및 분양 라오스 총리(2002.5)를 초청하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는 정상외교를 통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해 가고 있다. 중국과는 김정일의 두 차례에 걸친 방중(2000.5, 2001.1) 및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방북(2001.9)을 통해 기존의 우호관계를 회복한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응하면서 다방면적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대중국 외교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와도 정상간 상호방문(2000년 7월 푸틴 대통령 방북, 2001년 7~8월 김정일 방러)을 통해 전통적 친선관계를 회복하였고 특히 2002년 8월 김정일의 러시아 극동지방 방문 시에는 TKR/TSR 연결 사업 및 북한과 러 극동지역간 경제협력 등 실질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2. 외교활동

가.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북한에서 대외정책의 결정은 헌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립 하도록 되어 있다.¹⁵⁾ 그러나 당우위 체제 특성상 실제로는 외교정책 결정에 관해서 노동당의 당적 지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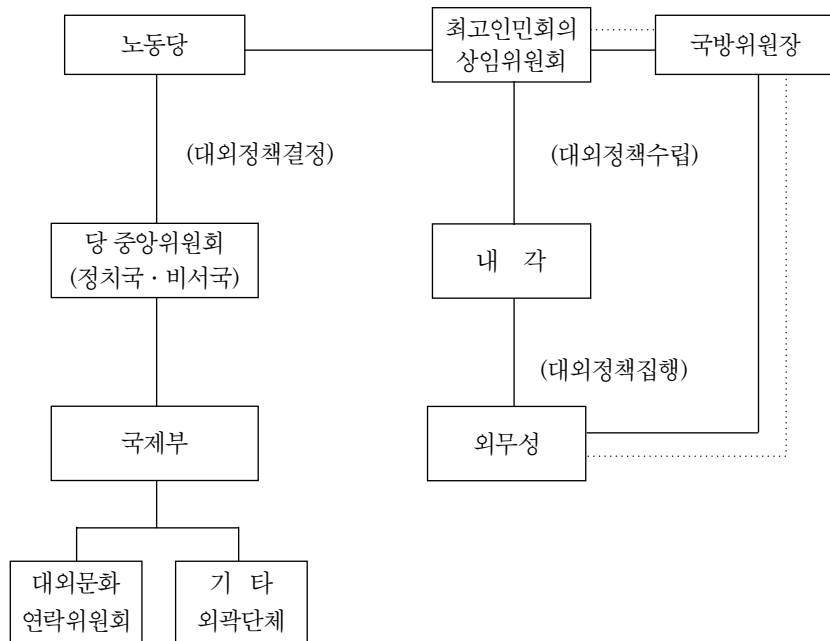
15) 사회주의 헌법 제91조 4항.

노동당에서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이를 심의·결정하며 그 중심역할은 대외문제를 관장하는 비서국의 국제부가 담당하고 여기서 결정된 문제가 최고인민회의에 통고·추진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은 결정과정을 거쳐 그 집행은 형식상 당과 정권기관인 내각이 분담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요 책임을 맡는다.¹⁶⁾

과거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외교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대폭 이관되었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외교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외교정책의 결정 및 집행



16) 사회주의 헌법 제110조.

IV. 외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 발표한다.¹⁷⁾

정부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주로 관장하고 있으며, 정당외교는 당 국제부가, 의회외교는 최고인민회의가, 민간외교는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이 맡고 있다. 내각의 외무성은 과거 정무원 외교부에 비해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등 권한이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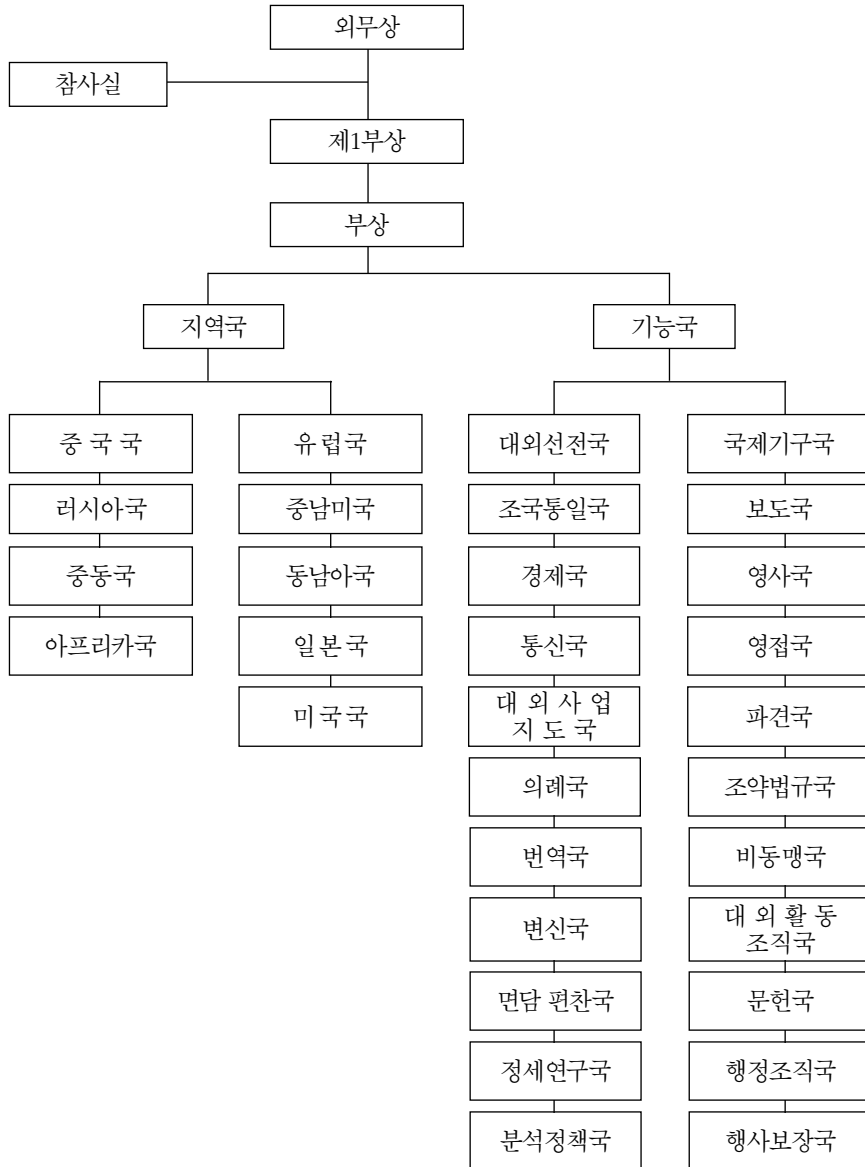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상과 다수의 부상들이 30여개에 이르는 지역국과 기능국을 분담해 업무를 관장하며 산하에 군축 및 평화연구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업무는 당과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에 의해 다양하게 분담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간외교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고, 직총 등 기타 근로단체들도 대외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17) 사회주의 헌법 제110조, 제111조.

외무성 조직체계



나. 외교 현황

(1) 지역별 외교

(가) 주변 4개국

1) 미 국

북한이 대서방 접근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닉슨 미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 미·소의 화해 등 동서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였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자극받아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대서방 접근을 정당화하는 ‘당면한 제문제의 전술적 전환’을 결의하였다.¹⁸⁾ 그러나 1980년 대 말까지 이어진 미·소 냉전은 북한의 대서방 외교가 활발히 전개되기 힘든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미·일 관계 개선 노력은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일 양국과 유대를 통해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 한국 열세를 만회하며 이들 두 나라로부터 식량지원 획득 및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미·일과의 관계정상화를 서방 선진제국에 접근하는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미 접근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내세우면서 시도되었다.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후¹⁹⁾ 유엔총회, 비동맹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를 주장해 왔다.

18) 김일성은 “공산주의자들은 정세를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해 적들과 일시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고 주장, 대서방 접근을 정당화하였다: 『김일성저작선집 6』, p.161.

19) 허담,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 보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III』(서울: 국토통일원, 1988), p.844.

1984년 1월 10일 북한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간 불가침 선언을 하자는 이른바 '3자회담'을 제의하는가 하면, 1986년 6월 17일에는 남북한 및 미국과의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1988년 7월 20일에는 북·미간 '국회대표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측에 제의한데 이어 수 차례의 외교부 대변인 담화, 비망록 및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 등을 통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1996년 2월에는 평화협정의 과도적 조치로서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40여 년간 한반도 평화보장장치로 기능을 해왔던 정전협정체제를 무실화시키기 위해 군사정전위에서 일방적으로 중감위 공산측 대표단을 철수하고 '관문점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였다.²⁰⁾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를 시도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 체제를 와해시키고 연방제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1990년부터 북한측의 미군유해 발굴 및 인도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유해의 신원확인 문제가 제기되어 1996년부터 공동발굴 작업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7년부터 4회 작업으로 7구의 미군유해가, 1998년에는 5회 작업으로 22구의 미군유해가 각각 발굴되어 미국측에 인도된 바 있다. 그리고 1999년 10월 이후부터 그동안 북한군과 유엔사측간에 유해를 인도인수해 오던 관례에서 벗어나 미군과 북한군간에 직접 미군유해를 인도인수하고 있다.

20) 북한측은 정전체제를 무실화시키기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대표단 철수(1993. 4. 20),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 설치(1994. 5. 24), 군사정전위원회 중국측 대표단 소환(1994. 12. 15),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철수(1995. 2. 28), 관문점 북측 지역 사무실 폐쇄(1995. 5. 3)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IV. 외교

북·미관계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이다. 북한이 1992년 1월 30일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임시사찰을 실시하고 북한측이 미신고한 영변지역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1993. 2.25)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²¹⁾ 국제적인 긴장국면이 조성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마침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였다.²²⁾ 북·미 제네바합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1995년 6월 13일 칼라룸푸르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 노형 및 주계약자를 선정한다는 등 주요 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과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폐연료봉 보관·처리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1995.1.20), 대북 중유 제공 및 북·미간 직통전화 개설(1995.4.10) 등이 이루어졌다.

핵문제가 제네바합의로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북한의 미사일 수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1996년 4월부터 북·미간에 미사일 협상이 진행되었다.²³⁾

그러나 북한은 협상에서 “미사일 문제는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미국이 진실로 미사일 수출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미사일 수출증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

21) 『로동신문』(1993. 3.13) 참조.

22)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측은 NPT 완전복귀, 특별사찰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 수용, 핵활동 전면동결 및 기존 핵시설에 대한 해체를 약속하였고, 미국측은 2003년을 시한으로 북한에 2,000MWe 경수로 지원, 중유제공 및 경제제재 완화, 연락 사무소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23) 미사일 협상은 이후 2000년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24) 『조선중앙통신』(1998. 6.16)

1998년 8월에는 미사일(광명성1호) 발사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급격히 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1998년 8월에 평북 대관군 금창리의 지하 핵 의혹 문제가 제기되어 북·미간에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북한은 미국측의 현장방문을 허용하는 대가로 약 60만톤의 식량을 제공 받았고 1999년 5월 미국의 현장방문단이 금창리 터널을 현지 조사함으로써 금창리 지하 핵 의혹시설 용도를 둘러싼 논란은 7개월만에 일단락되었다.

이와 같은 긴장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개최되었으며²⁵⁾ 1995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도 계속되었다.²⁶⁾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11월 페리 전국방 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 한·미·일과의 공조하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할 경우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대북 포괄적 협상틀을 마련하였다.²⁷⁾

미사일문제와 관련하여 1999년 9월의 북·미 베를린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두 번째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했으며, 북한 역시 '미사일 재발사 유보입장'을 밝혔다.²⁸⁾

그리고 동년 11월 베를린에서 후속회담이 재개됨으로써 북한과 미국은 미사일 등 현안문제와 함께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25) 한·미 양국이 1996년 4월 16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자회담을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이 호응, 1997년 3월 5일 공동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예비적 성격의 회담을 거친 이후 1997년 12월~1999년 8월 사이 6차례의 본회담이 제네바에서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26) 미국은 1995년 이후 매년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지원해 오고 있다.

27) 페리 조정관은 보고서에서 미행정부와 의회에 대해 첫째,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와 함께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둘째,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북한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봉쇄전략은 위험하므로 첫번째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28) 백남순 외무상은 1999년 9월 25일 제5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진행할 것이며, 회담 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미사일 재발사 유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IV. 외교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한 후,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과 '반테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과 회담을 하는 등 북·미간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표방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2002. 1)과 비핵국가에 대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핵태세 보고서'(2002. 3) 등을 계기로 북·미관계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2년 4월 우리측 임동원 특사가 방북, 북한에 미국의 특사를 수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2002년 10월 켈리 국무부 동아태 지역담당 차관보가 부시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하였다. 켈리 차관보는 10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측이 자신에게 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 개발계획을 시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 계획을 먼저 포기한 후에야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KEDO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로 12월부터 중유 지원을 중단하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면서, 북·미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제네바합의 이후 IAEA의 감시하에 있던 핵관련 시설의 동결을 해제(2002.12) 하고, 사찰관을 추방하는 등 일련의 강경조치를 취하였으며, 2003년 1월 10일에는 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미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 시인이 제네바합의, 한반도비핵화 선언 등 쌍무적 약속 뿐 아니라 NPT, IAEA 핵안전협정 등 국제사회와의

합의 위반 행위이고, 핵 포기는 합의 위반 전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당연하고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핵문제는 WMD를 생산·확산시키려는 ‘불량국가’의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평화를 수호하려는 국가들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고 북·미 양자가 아닌 다자간 문제라며 다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였다.

반면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정권교체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본인은 미국이기 때문에 오직 미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논리로 북·미간 직접협상 입장을 견지하였다.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중재노력 또한 집중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참여한 3자회담이 2003년 4월23~2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를 제안하였으며,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강조하였다. 북한은 베이징 3자회담 이후, 5월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선(先) 북·미회담’, ‘후(後) 다자회담’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가와의 정상회담과 G-8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가시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비확산안보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통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갔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미국이 북·미간 회담을 직접 반대하면서 다자회담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등 관련 국가의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8월 27일부터 29일 까지 베이징에서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가한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회담 개최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자신들의 입장을

IV. 외교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미국을 압박하였다.²⁹⁾

북한은 6자회담 종료일인 8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자회담 참여국의 기초발언문 요지를 공개하였다.³⁰⁾

이에 따르면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자신들의 ‘총적 목표’이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위협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간 필요한 조치들을 동시 행동 원칙에 의거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베이징 3자회담시 제시하였던 단계별 해결방식을 재차 제기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담보 및 정치·경제적 혜택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사일, 재래식무기, 위조화폐, 마약, 테러, 인권, 납치 등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제기한 안보우려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공고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격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긴급대책과 상호간 조치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한국은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일본은 핵문제와 함께 미사일, 납치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6자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대표단 단장인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이 의장 요약문 형식으로 회담 참여국들이 대화지속을 통한 이견조율, 가능한 빠른 시일내 차기회담 재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 금지, 북핵

29) 북한은 8월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의지에 대한 명백한 확인을 요구하고 ② 동시행동 원칙에 의한 핵문제 해결방식 수용을 촉구하며 ③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전 조기사찰 불가 입장을 밝혔다.

30) 『조선중앙통신』(2003. 8.29)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동시병행을 통한 해결 등 6개항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³¹⁾ 설명하였다.

2) 일본

북한의 대일 접근노력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도되었는데 1955년 2월 25일 남일 외상은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과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1955년 5월 조총련을 조직하고 1956년 3월에는 일·조무역협회를 설립하여 경제교류를 실시하였으며 1959년 8월부터는 재일교포의 복송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7년 9월 5일 ‘민간어업잠정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1981년 9월 10일 대일접근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북한내에 ‘조일우호·친선촉진협회’를 결성하였다.

일본은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질서변화 및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전개를 계기로 가네마루 신(金丸 信) 자민당 전 부총재를 단장으로 자민당, 사회당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1990.9.24~28), 노동당과 양국간 조기 수교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³²⁾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과 북한은 1991년 1월 30일에서 1992년 11월 6일 사이 8차례에 걸쳐 수교회담을 진행하였으나 배상문제, 북한의 핵 개발문제, 이은혜(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어선생)문제 등에 대한 쌍방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결렬되고 말았다. 북한의 노동당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의 연립여당은 1995년 3월 28~30일 사이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4개항³³⁾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국교정상화회담 재개를 위한 몇

31) 『조선중앙통신』(2003. 8.29)

32) ‘3당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식민지배 35년 및 전후 45년에 대한 보상 ②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국교관계 수립 ③ 교류협력 발전과 위성통신 이용, 직항로 개설 ④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존중 ⑤ 조선은 하나, 남북대화에 의한 평화통일 인정 ⑥ 핵위협 제거 ⑦ 국교수립 실현을 위한 정부간 교섭권고 ⑧ 상호 당적 관계강화 및 협조발전 등이다.

33) 합의한 4개항은 ① 조기 국교정상화 실현에 적극 노력 ② 전제조건없는 대화 및 국교 정상화회담 재개 ③ 자주적·독자적 입장에서의 회담진행 ④ 양국정부의 국교정상화회담 추진 지원 등이다.

IV. 외교

차례의 실무접촉을 진행하였지만 합의서 해석문제, 일본의 배상문제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1995년 6월 일본으로부터 쌀 30만톤(무상 15만톤, 유상 15만톤)을, 1995년 10월에는 20만톤의 쌀을 추가지원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일관계는 1997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수교 예비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활기를 되찾았다.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재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와 기타 현안 문제’를 논의한 양측은 일본인처 고향방문에 합의함으로써 1997년 11월과 1998년 1월 2차례에 걸쳐 북송 일본인처의 고향방문이 실현되었다. 또한 1999년 3월 28~31일간 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正暉) 자민당 중의원의원을 단장으로 한 자민당대표단이 방북해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 쌍방 수교교섭의 걸림돌이 되었던 현안을 논의, 북·일간 수교협상이 재개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같은 해 6월 “북한내에는 일본인 행불자가 없다”³⁴⁾며 “일본이 고향방문 사업에 인위적으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³⁵⁾고 비난하자 일본내 대북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어 일본인처의 고향방문은 물론 양국간 수교교섭협상도 중단되고 말았다. 더욱이 1998년 8월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미사일(광명성1호)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정부는 동년 9월 북·일 수교교섭 중단, 대북식량지원³⁶⁾ 유보, KEDO분담금 합의서 서명 보류, 직항전세기 운항중지 등의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 쌍방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러한 침예한 대립속에서도 북한은 1999년 8월 10일 ① 일본의 대북 압살정책 포기 ②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 및 보상 ③ 대결정책에는 상응한

34)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1998. 6. 5)

35)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담화(1998. 6. 7)

36) 일본 정부는 WFP의 3차어필(1997. 4~1998. 3)에 호응해 2,700만달러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었다.

대응책 강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악화된 대일 관계를 타개해 보려고 하였다. 북·미간 베를린회담(1999.9.7~12)에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가 해결된 것을 계기로 일본은 1999년 11월 3일 북한에 대한 직항 전세기 운항중지조치를 해제하고, 무라야마 전 총리의 동년 12월 1~3일 사이 방북을 통해 국교정상화 회담재개 문제 등에 합의하였으며, 북·일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9차), 8월(10차) 및 11월(11차)에 걸쳐 국교정상화 본 회담이 재개되었으나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의 과거청산 요구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성과없이 종결되고 말았다. 이후 북·일관계는 일본 경찰의 조총련계 은행수색, 괴선박 사건 등으로 더욱 경색되었다.

그러나 북·일수교를 향한 양측의 물밑 접촉은 지속되고 있었으며, 결국 2002년 4월 일본인 납치 문제, 재북 일본인 처 문제 등을 다룬 북·일 적십자회담 및 국장급 회담을 거쳐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간에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일 평양선언’에서 북측은 일본인 납치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경협방식에 의한 대북 경제지원 용의를 표명하였다.³⁷⁾ 그러나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혹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2002년 10월 개최된 제12차 북·일 수교협상 역시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이 같은 해 10월 15일 납치 생존자 5명에 대해 일시 고향방문을 허용하여 방일이 실현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0월 24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북한에 귀환시키지 않고 일본에 영주 귀국시키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일본으로 귀국시킬 것을 북한에 요구하였다.

37) ‘북·일 평양선언’의 내용은 ① 10월 중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②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반성과 대북 경협 제공 ③ 북한의 피랍 일본인 문제 사과와 재발 방지약속 ④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 준수 및 미사일 발사 유예를 2003년 이후까지 연장할 용의표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같은 해 11월 개최기로 하였던 핵문제 관련 ‘안보협의회’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2003년 4월 베이징 3자회담에서도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없고 일본내 대북여론 악화 등으로 대북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월에는 만경봉-92호 등 일본에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사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만경봉-92호의 운항 일정이 조정되기도 하였다.³⁸⁾ 북한은 일본 당국의 선박 검사활동 강화와 2003년 6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유사시 법제 등을 ‘대북 제재’, ‘조선에 대한 재침야욕’이라며 일본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북한은 북·일관계 진전없이 평양선언 1주년(9.17)이 경과하고 일본이 북핵문제 관련 6자회담(8.27~29, 베이징) 등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언급한데 대해 비난하면서, 일본이 앞으로 북핵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10. 7 외무성 담화)고 주장하였다.

3) 중국

북한의 대중 외교는 소련과 함께 정권수립부터 북한 외교의 중심이었다. 정권수립 초기에는 소련 일변도 외교를 추진하다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 대중관계에도 같은 비중을 두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소 관계가 항상 안정되고 균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른바 북방삼각관계의 균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한 것은 중·소간의 잦은 분쟁이었으며 북한이 외교에서 자주를 선언하고 나선 것도 결국은 중·소 분쟁으로부터의 자구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북한·소련관계가 소원해졌으나 1961년 7월 소련·중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대중·소관계는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38) 만경봉-92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 입항을 취소한 이후, 7개월여만인 2003년 8월 25일 니가타 항에 입항하였다.

1962년 10월의 쿠바사건과 중·소 국경분쟁은 중·소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고 여기서 북한은 중국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1965년 월남전 확대와 중국의 문화혁명 등 대내외적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1965년 2월 소련 코시긴 수상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은 다시 친소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소 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점차 안정적으로 되었으며 자주노선도 정착단계에 들어갔다.

즉, 중국으로부터는 이념적 결속을, 소련으로부터는 경제·군사적 실리 획득을 추구하는 등 대중·소 양면외교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5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개혁과 개방 추진 및 1990년 9월 한·소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북한은 소련에 대해 ‘배신행위’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리익과 신의를 팔아 먹은 행위’ 등으로 극렬히 비난하면서³⁹⁾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북한의 김일성과 연형묵 총리 등 당·정 고위인물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였고,⁴⁰⁾ 1990년 11월 압록강다리를 ‘조·중 친선의 다리’로 개칭하는가 하면 북한의 보도매체들은 ‘불멸의 조·중 친선관계’를 대대적으로 강조하였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제국주의에 굴복한 변절자·배신자”⁴¹⁾라고 중국을 비난하였으나, 1995년 들어 중국의 당·정 대표단들의 잇따른 북한 파견 및 쌍방 기념일에 즈음한 최고 지도자간 축전 교환 등으로 북·중은 상호 친선유지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중국이 5년간(1996~2000년) 북한에 곡물 50만톤, 유류 130만톤, 석탄 250만톤을 절반은 무상으로, 나머지 절반은 국제가격의 1/3 값으로 제공

39) 『로동신문』(1990.10. 5) 참조.

40) 김일성은 한·소 수교가 발표되기 직전인 1989년 11월과 1990년 9월 두차례, 그리고 연형묵 총리는 1990년 11월 각각 중국을 방문하였다.

41) “반제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완성을 위한 근본요구”: 『조선중앙방송』(1992. 9.21)

IV. 외교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기술협조협정’⁴²⁾이 1996년 5월 22일 베이징에서 체결되면서 북·중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어 동년 7월에는 ‘조·중조약’ 체결 35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중국 군함이 남포항에 입항하는 등 동맹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이듬해인 1997년부터는 중국이 4자회담의 한 축으로 참여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원도 이루어졌다. 북한은 1999년 6월 3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한·중수교 이후 소원해졌던 북·중관계를 정상화 단계로 진입시켰다.

북한측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중국이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중국측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노력’을 평가하는 등 쌍방간 친선과 우호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일성 사후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1999년 10월 5일 중국의 당자취엔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김정일 시대의 북·중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0년 5월 29~31일까지 김정일은 장쩌민 주석의 초청형식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쌍방간 관계와 개혁·개방 문제, 남북정상회담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두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양측간 친선을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원유, 석탄 등 물자를 무상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듬해 1월 김정일은 중국을 다시 비공식 방문하였다. 이때 김정일은 상하이 푸둥 지구의 첨단 산업기지,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시찰한 다음 ‘천지개벽’, ‘상상을 초월하는 변모’ 등의 용어로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일의 두 차례 중국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42) 당시 북한의 홍성남 부총리와 중국의 리난칭 부총리간에 체결된 이 협정은 제일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1996.12.17)에서도 확인되었다. 『조선신보』는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은 채 “향후 5년간 석유와 코크스를 무상 혹은 우호가격으로, 6월에도 1996년도 무역경제교류에 관한 교환문서를 통해 쌀과 원유, 코크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장쩌민 국가주석은 2001년 9월 북한을 공식 방문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외 상호방문을 통해 북한과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 불편했던 전통적 우호친선 관계를 완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2003년 4월에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군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이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귀보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차오강찬 국방부장 등 소위 중국의 제4세대 지도자들로 불리우는 새로운 지도부와 접촉하며 국제문제와 쌍방간 친선증진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3자 회담 중재에 이어 6자회담 성사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러시아

북한은 1991년 12월 소연방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연합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들과 수교함으로써 구 소련권과의 관계 재정립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95년 9월 7일 러시아가 ‘조·러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동맹관계에서 일반적인 국가관계로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적 밀착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하였다.

1996년 4월 평양에서 ‘조·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린 것은 그 서막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북·러는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외무, 대외경제, 농업, 철도, 경공업, 임업 등 경제 각 분야에서의 협력방향을 모색했으며 이 회의는 정례화되었다. 양측은 19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지대 투자확대와 대북 원유제공, 금속공업 제품 교환 등을 통한 양측간 무역확대를 목표로 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러간 교역량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자

IV. 외교

북한은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지방정부와 개별적인 경제협력을 점차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소연방 해체이후 독립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과도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 협력 시도와 더불어 북·러간의 정치적 관계도 점차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7년 1월 21일부터 리인규 외교부 부부장과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북·러 신조약 회담이 시작되어 1998년 12월까지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4차례 진행되었다. 양측은 이를 통해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자동군사개입조항 폐지와 고려연방제 지지조항 삽입 배제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1999년 3월 17일 평양에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 가서명하였으며,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적 혈맹관계를 청산하고 일반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듬해 김정일은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였는 바, 이 선언에는 양측간 협력 관계 복원과 TKR과 TSR의 연결 사업 등에 대한 합의가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2년은 북·러관계의 진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해였다. 러시아 측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폴리코프스키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2월 및 4월 등 2회, 야코블레프 상페테르브르크시 시장(4월) 이바노프 외무장관(7월), 아무르주 행정부 대표단(8월), 하바로프스크 정부 대표단(10월) 등이 방북하였고, 북한측에서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3월), 조창덕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대표단(4월)에 이어 백남순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으로는 15년만에 러시아를 공식방문(5월)하였다.

김정일의 방러를 기념하는 상징물인 ‘조·러 친선각’이 3월 7일 나선시 두만강역 지구에 개관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정일이 8월에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푸틴대통령과 3년 연속 정상회담을 개최함으

로써 러시아가 북한 외교의 핵심적 축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북·러관계의 급속한 진전은 양측이 TKR 및 TSR 연결 등 연방차원에서 사업과 북·러 극동지역간 상호보완적 경협사업 발굴을 통해 상호이익 창출 가능성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러관계의 증진을 발판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핵문제 대두 이후, 해결책 마련을 위한 긍정적 역할도 모색하고 있다.

(나) EU 및 동구권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 1991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등의 조치를 통해 서방 기업과의 합영·합자 사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일환으로 북한대표단은 1993년 3월 25~4월 26일 기간 동안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를 차례로 순방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5년 3월에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자금지원을 통해 유럽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1996년부터 매년 1,500만유로(Euro)를 KEDO에 지원해왔고 1997년 9월에 EU가 KEDO의 집행이사국이 되면서부터 북한과 서유럽 제국과의 관계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1998년부터 북한에 대한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왔는데 같은 해 5월 EU 대표단이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12월에는 유럽의회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⁴³⁾

북한·EU관계는 특히 1999년 9월 북·미 베를린 미사일 협상의 타결과 2000년 6월 13~15일의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추진력을 얻어 한층 빠르게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북·미기본합의 이후 미사일 문제로 다시 고조되던 한반도 긴장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43) 유럽의회대표단은 1998년 12월 7~12일 방북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등과 회담을 가졌으며 양측은 “계속 고위급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1998.12.10) 참조.

IV. 외교

북한측의 변화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북한·EU간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2001년 5월 2일 당시 EU의장이었던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EU 대표단이 방북, 김정일과 회담을 갖고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 시험 유예, 북한·EU간 인권문제 논의, 북한측 경제조사단 유럽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대북수교를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도 200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 대표단을 파견, 처음으로 EU와의 ‘인권대화’를 갖고 북한·EU간 정치 대화도 2001년 10월 제4차 회의에 이어 2002년 6월 제5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EU측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EU 개별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힘써 이탈리아(2000. 1. 4), 영국(2000. 12. 12), 독일(2001. 3. 1) 등 2000년 이후 8개 국가와 수교하여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핵문제는 북한·EU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2년 11월 당시 EU의장국이었던 덴마크의 뮐러 외무장관은 “북한이 즉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03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 EU 회원국 정상들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면서, 북한에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비확산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면에서 EU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2002년 3월에 유럽순방에 나선 리광근 무역상을 포함한 경제 대표단이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 4개국을 방문, 자본주의 경제체제 시찰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수시로 단기 연수생들을 EU국가에 파견함으로써 교류협력의 토대를 닦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2002년 12월에는 대외 결제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EU의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EU간 교역량은 아직 소규모의 상징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의 동구정책은 중·소관계의 변화속에서 대소관계와 함수관계를 가지고 변화해 왔다. 중·소분쟁 이전 북한의 대동구관계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의 참여와 협조를 명분으로 하여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 및 기술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었다.⁴⁵⁾

중·소분쟁 과정에서 북한이 동구국가들과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동구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한 적도 있었으나 북한의 대중·소관계가 균형적 관계로 들어서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가 급진전 되었고 중·소분쟁 시기부터 대소 자주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루마니아와의 관계도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1972년 2월 외교부장 허담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소련, 루마니아, 유고, 체코, 동독,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에 순방하여 동구제국과의 상호 친선과 협력을 다짐하였다.

김일성은 1975년 중국 방문길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를 순방하였고 1984년 5월 다시 소련 방문을 마친 뒤 폴란드, 동독, 체코,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구 7개국을 방문, 동독 및 불가리아와 우호 및 협력조약을 각각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여타 국가와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 강화에 합의하는 등 동구 제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말 동구 제국이 개혁과 민주화를 추진하고 1989년 2월 헝가리를 선두로 하여 1990년 이후에는 모든 동구 국가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북한이 그동안 누려온 외교적 독점은 사라지게

44) 『러시아의 소리방송』은 2002년 12월 2일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공민들은 며칠 내로 달러 구좌를 이전시키고 현금을 다른 나라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고 북한 무역은행이 선포했다”고 하면서 “북한내 모든 은행들은 달러 구좌를 유로 구좌로 이전시키게 됐다”고 보도하였다.

45) 동구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소련·중국에 비하면 규모면에서는 현저하게 적은 것이었으나, 대부분이 1954~1956년 사이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기간과 1957~1961년 사이의 5개년경제계획 기간중에 제공되었다.

IV. 외교

되었다.⁴⁶⁾ 특히 1989년 12월에 발생한 루마니아사태로 차우체스쿠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실은 북한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⁴⁷⁾

한편 북한이 정전체제 무실화 책동의 일환으로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 대표단을 철수(1993.4.20)시킨데 이어 1995년 2월 28일에는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로 철수시키자, 폴란드도 동년 3월 30일 바르샤바 주재 북한대사관 인원을 반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평양주재 폴란드 대사를 소환한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과 변화된 동구국가들과의 외교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이념적 동맹관계 대신 경제 및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발전으로 대동구 국가와의 관계개선 방향을 선회하였다.⁴⁸⁾ 그러나 북한이 EU 중심의 서유럽 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주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유럽과의 관계는 약화되었다. 2000년 이후 동유럽국가와의 교류는 2000년 2월 요바노비치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의 평양방문과 2001년 3월 폴란드와의 대사급 관계 회복 등 소수에 불과한 형편이다.

46) 북한은 한국·헝가리 수교 다음날인 1989년 2월 2일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헝가리의 배신행위에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극렬히 비난한 다음, 헝가리와 의 대사급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후 연이은 다른 동구국가들의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서는 커다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47) 북한은 동구국가들의 변혁에 대해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중국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라며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과 함께 싸워 나아갈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1991년 및 1992년 김일성 신년사 참조.

48) 북한은 1995년 들어 외교부대표단을 동유럽에 파견, 루마니아(1995.11.23), 유고(1995.11.15), 마케도니아(1995.11.20), 불가리아(1995.11.23) 등과 ‘외교부 사이의 협조 의정서’를 각각 체결하는가 하면, 1996년 1월 19일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 이 지역에서의 외교적 토대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또 당시의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중공업과 군수공업 분야에서의 선진기술을 획득코자 루마니아(1994. 9.25), 유고(1995.10.23), 불가리아(1996. 1.26), 폴란드(1996.11.27), 헝가리(1996.12.10)와 과학기술협조의정서를 각각 체결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1997년부터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실험에 들어간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역증진을 위한 대외정책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마케도니아(1997.10.15), 루마니아(1998. 1.23), 유고(1998. 8.26), 슬로바키아(1998.10.27), 불가리아(1999. 6.16) 등의 국가들과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비동맹 국가

북한의 비동맹 외교는 ‘반제·반미 공동전선’의 형성과 이에 따른 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⁴⁹⁾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 ① 평화공존노선 표방
- ② 반제·반식민주의 및 민족해방투쟁지원 선전
- ③ 국제공산주의 선전기구 가입
- ④ 인민외교
- ⑤ 문화 및 경제교류

북한은 1955년 반동회의가 있던 후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를 계기로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설정에 눈뜨기 시작하여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 노동당 외곽단체를 통한 친선 및 문화교류 형태의 접근을 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성격의 접근은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 이후였다. 제2차 반동회의를 앞두고 중국 지도자들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을 순방할 때 북한에서도 고위대표단을 파견, 이 지역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주력한 것은 다수가 신생 독립국으로 이루어진 비동맹 그룹국가들이 UN에서 수적 우세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UN문제화와 관련하여 비동맹회의 국가들의 협조를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상하였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1975년 8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비동맹회의에 지속적으로 한반도문제를 상정, 북한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1978년부터는 비동맹회의가 열리기 전에 당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연석회의를 열어 비동맹회의에 임하는 입장을 미리 정리하는 방침까지 취하였다.

49) 『로동신문』(1974. 8.11)에서는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제1지지 세력은 제3세계 국가들 이라고 규정하였다.

IV. 외교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비동맹국가들이 대결보다는 협조를, 그리고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대폭 향상됨에 따라 비동맹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89년 9월 유고에서 개최된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문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수정안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비동맹국가들과의 우호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⁵⁰⁾ 비동맹 운동의 약화와 변화된 분위기 등으로 과거와 같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3년 2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3차 비동맹정상회의에 참석하여 NPT 탈퇴는 미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압살책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등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주최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은 북한이 NPT를 탈퇴함으로써 비동맹운동의 주요 목표인 군축과 핵무기 없는 세계 지향 원칙을 깨뜨렸으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하였다. 또한 최종문서의 한반도 조항에 당초 북한이 의도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규탄 및 북·미 불가침협정 체결 촉구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2)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

북한은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되고 1950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침략자로 규정되자 UN의 권위와 기능을 부인해 왔다. 1953년 휴전회담에서 북한은 UN군사령관과 휴전협정을 체결한뒤 UN을 미국과 동일시하면서 남북한을 포함한 유관국회의를 제의하는 등 한국문제를 UN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였다.

50) 백남순 외무상은 2001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40주년 기념연회에서 북한이 앞으로 비동맹운동의 이념과 근본목적에 충실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이 이른바 자주외교를 강조하면서부터 UN에 대한 자세는 경색되어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UN을 부정하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UN대표권 획득과 남북한 UN동시 초청안이 제기되는 등 분위기가 유리하게 형성되자 북한의 UN외교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6월 23일 한국이 남북한 UN동시 가입 불반대를 선언한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발표하자, 북한도 같은날 ‘조국통일 5대강령’ 발표로 맞서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을 내세우면서 UN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3년 9월 5일 UN본부 상주대표부를 개설하였고 제네바에 있는 UN사무국에도 상주 옵서버대표부를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부터 각종 UN산하기구 및 전문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등에도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급속한 경제력 신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외교역량이 강화되고 동서화해 분위기와 소련 및 동유럽의 개혁·개방물결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은 국제외교 무대에서의 입지가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대UN전략도 크게 위축된 경향을 보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일시 단일의석하의 공동가입⁵¹⁾을 주장하는 등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결국은 날로 심화되는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북한 동시가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총회에서 남북한이 나란히 UN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⁵²⁾

51)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1990. 5.24)시 발표한 ‘조국통일 5개방침’ 제3항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우선 단일의석아래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52) 북한은 외교부 성명(1991. 5.27)을 통해 최초로 UN가입 방침을 밝히면서 “남한만이 단독으로 가입한다면 UN무대에서 전체민족의 리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 부득이 가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UN동시 가입이 결정된 9월 18일에도 외교부 성명을 발표, “하나의 조선으로 조국과 민족을 통일할 데 대한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IV. 외교

2000년대 들어 전방위 외교활동을 강화한 북한은 대UN 외교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띠어 왔다. 2002년도 9월에는 최수현 외무성 부상이 UN 총회연설에서 8~9월에 개최된 북·러,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실천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박길연 UN주재 북한 대사도 UN의 여러 주요 위원회⁵³⁾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UN을 중심으로 한 반테러활동, 군축 및 핵무기의 완전파괴, 개도국들을 위한 공정한 국제경제·무역질서 구축 등을 촉구하였고 ‘인권개념의 상대성’을 이유로 내세워 서구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3년 들어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유엔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53) UN의 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을 논의해서 제출하거나 건의를 준비하는 총회의 구성부분으로 다루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제1위원회: 군축·국제 안보, 제2위원회: 경제: 재정, 제3위원회: 사회·인도·문화, 제4위원회: 특별한 정치적 문제, 제5위원회: 행정·예산, 제6위원회: 법률.

시기별 대UN관계 변화과정

시 기	연도	주 요 입 장	비 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유엔 간섭 거부	1948~ 1953	· 유엔간섭 거부 - 유엔에 의한 남한 지역 단독선거 반대	· 1949, 1952 유엔가입 신청 · 1950. 6.28 안보리,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 · 1953. 7.27 유엔군사령관과 휴전협정 체결
한반도문제의 유엔상정거부	1954~ 1970	· 유엔을 미국과 동일시 · 통일을 위한 남북한 포함 유관국회의 제의 · 유엔권능 부인	· 1960. 8.14 김일성, 남북연방제 제의 · 1966. 8.12 자주노선 선언 · 1969.10.29 서독 할슈타인 원칙 폐기
한반도문제의 선별적 유엔상정	1971~ 1991. 8	· 유엔과 미국 분리 시도 - 주한미군의 유엔명칭 사용배제 · 한반도 문제의 유엔문제화 시도 · '고려연방국' 국호로 유엔 가입 제의 · '교차승인' 및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반대 - 유엔의 목적·원칙 존중 · 단일의석 공동가입 제안	· 1971. 4.12 허담, 평화통일 8개항제시 · 1972. 7. 4 남북 공동성명 · 1973. 9. 5 유엔대표부 개설 · 1974 제29차 유엔총회, UNCURK 해체안 결의 · 1975 9.22 제30차 유엔총회, 남북한 지지 두개결의안 동시 통과 · 1976. 9 공산측 결의안 철회
유엔동시가입	1991. 9 ~현재	· 단일의석 입장 견지 · 핵문제관련 IAEA결의에 유엔의 추종반대 · 새로운 평화체제 창설에 유엔관심 촉구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요구 · 국제관계에서의 자주권 존중 · 유엔활동의 민주적 개혁 · 안보리에 개도국 포함 요구	· 1991. 9.17 남북한 UN 동시가입 · 1999. 9.25 제54차 총회 기조연설 및 백남순 외무상, 유럽국가 등 20여 개국과 외무장관 회담 개최 · 2003. 4. 9 UN안보리 북핵 문제 토의

IV. 외교

남북한의 국제기구 가입현황 대비

(2003년 현재)

구분	UN산하기구	UN전문기구	UN독립기구	정부간기구	합계
한국	5	16	3	70	94
북한	4	11	0	20	35

남북한의 UN 및 산하기구 가입현황

(2003년 현재)

기 구 명	한국	북한
국제연합(UN)	1991	1991
유엔자원봉사단(UNV)	1986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7	1992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5	1973
제네바군축회의(CD)	1996	1996

남북한의 UN독립기구 가입현황

(2003년 현재)

기 구 명	한국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1974 (1994. 6 탈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67	-
세계무역기구(WTO)	1995	-

남북한의 UN전문기구 가입현황

(2003년 현재)

기 구 명	한 국	북 한
만국우편연합(UPU)	1900	1974
세계보건기구(WHO)	1949	197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1977
유엔교육 과학 문화기구(UNESCO)	1950	1974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1952	1977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1975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55	-
국제통화기금(IMF)	1955	-
세계기상기구(WMO)	1956	1975
국제해사기구(IMO)	1957	1986
국제개발협회(IDA)	1961	-
국제금융공사(IFC)	1964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1980
국제농업개발기구(IFAD)	1978	1986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79	1974
국제노동기구(ILO)	1991	-

남북한의 정부간 기구 가입현황

(2003년 현재)

기 구 명	한 국	북 한
아시아·태평양수산물위원회(APFIC)	1950	-
인도·태평양수산물위원회(IPFC)	1950	-
국제소맥이사회(IWC)	1953	-
국제수역국(IOE)	1953	2001
국제곡물이사회(IGC)	1953	-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1954	-
국제면화자문기구(ICAC)	1954	-
국제수로기구(IHO)	1957	1987
국제군인 체육이사회(IMSC)	1957	1993

IV. 외교

기구명	한국	북한
세계관광기구(WTO)	1957	1987
국제도량형국(IBWM)	1959	1981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SENAEA)	1960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1961	-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APPU)	1961	-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	1961	1978
콜롬보 플랜(Colombo Plan)	1962	-
동부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	1962	-
국제교육국(IBE)	1962	1975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AARRO)	1963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
국제표준화기구(ISO)	1963	1963
국제무역센터(ITC)	1964	-
아시아개발은행(ADB)	1966	-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1966	-
국제자연 및 천연자원 보전연맹(ICUN)	1966	1963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1967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1967	2001
인도양수산위원회(IOFC)	1967	1974
세계관세기구(WCO)	1968	-
관세협력이사회(CCC)	1968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ROM)	1968	1986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	1968	-
국제사탕기구(ISO)	1968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1970	-
공동식품규격위원회(CODEX)	1971	1981
아시아채소개발연구센터(AVRDC)	1973	-
국제포플러위원회(IPC)	1973	-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ALCC)	1974	1974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WECAFC)	1974	-
국제수로기구(IHO)	1975	1987
국제법정계량기구(IOLM)	1978	1974
국제포경위원회(IWC)	1978	-

기구명	한국	북한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1979	-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체(APT)	1979	1994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위원회(APPPC)	1981	1995
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ICSEAF)	1981	-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1981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982	-
아시아·태평양 개발센터(APDC)	1982	-
상품공동기금(CFC)	1982	-
섬유수출개도국기구(ITCB)	1984	1999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1985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1985	-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1985	-
국제남·아연연구그룹(ILZSG)	1987	-
세계박람회기구(IBE)	1987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1988	-
국제이민기구(IOM)	1988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	-
개도국간特惠무역제도(GSTP)	1989	-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1990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991	-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1993	-
지구환경금융(GEF)	1994	-
아세안 안보포럼(ARF)	1994	2000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1995	-
국제해저기구(ISA)	1995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6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1996	-
Wassenaar 체제	1996	-
국제결제은행(BIS)	1997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997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997	-
상설중재재판소(PCA)	2000	-
국제에너지기구(IEA)	2001	-

IV. 외교

(3) 수교 현황

북한은 2003년 현재 153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나 한국의 186개국에 비하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수교현황

(2003년 현재)

구분 \ 지역	아주·태평양	미주	구주	중동	아프리카	계
한국	36	34	51	19	46	186개국
북한	25	22	46	16	44	153개국
동시	25	21	45	15	44	150개국

남북한 수교관계의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초기의 남북한은 내부 정치체제의 정비와 전쟁 피해복구에 전념함으로써 외교활동은 진영내 국가들에만 국한되었다. 따라서 1953년까지 한국은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 아시아의 자유진영국가 6개국과 그리고 북한은 소련·중국 및 동구 등의 10개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였다. 또한 1953년 7월 휴전 이후 1960년까지의 기간에도 한국은 반공노선 고수와 할슈타인 원칙⁵⁴⁾ 준수 등으로 중립국과의 수교는 제한되었으나 자유진영 국가와의 관계발전에 주력하여 1960년까지 16개국과 수교하였다. 북한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외교에만 노력하여 1960년까지 한국과 같이 16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소대립의 심화, 아시아·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의 국제적 지위향상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국은 중립국들과의 외교 강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외관계를 급격히 신장시켜 나아갔다. 그 결과 1961년부터 1971년 사이에 한국은 아프리카 21개국 및

54) 이념이 다른 나라와는 정치·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외교정책 원칙을 지칭한다. 1956년 서독 외무차관 할슈타인이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서독은 1960년대에 이 원칙을 폐기하였다.

미주권국가를 비롯하여 총 67개국과 새로 수교함으로써 1971년에는 총 수교국이 83개국에 달해 1960년의 16개국에 비해 무려 5배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에 북한은 이른바 반제·반식민 해방을 내세우면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제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1966년 8월에는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을 선언하면서 다변외교에 치중하였다. 이 기간동안에 북한도 대외활동에 많은 성과를 보여 1971년에는 총 수교국이 37개국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와서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 UN의 성격 변화 등으로 한국의 수교국 확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동서화해라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힘입어 1973년 6월에는 비적성국가에 대해 문호개방을 밝히는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천명하는 등 이념을 초월한 실리외교에 박차를 가하여 1980년 말에는 112개국과 수교하게 되었다.

북한도 1972년을 ‘외교의 해’로 정하고 세계 각국에 여러 형태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활동을 강화하여 1980년 말에는 총 수교국이 100개국에 달하였다.

1980년대의 한국은 경제발전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7·7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꾸준히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때마침 민주화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달아 국교를 맺고 1990년 9월에는 소련과 수교함으로써 총 14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수교국 확대에 있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983년의 버마 아웅산폭파사건 등 잦은 국제테러 행위와 북한 외교관들의 밀수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들로부터는 단교조치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남미지역에 대한 진출을 꾸준히 시도하여 콜롬비아(1988), 페루(1989), 안티구아 바부다(1990) 등과 새로 수교하였다.

1990년대들어 한국은 소련 및 모든 동구권국가, 그리고 그동안 친북

IV. 외교

일변도였던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수교함으로써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의 외교역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1992년의 한·중수교는 북한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국제정세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였다. 북한도 이러한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소연방 탈퇴국가들과 1993년까지 수교를 마쳤으며 유럽의 마케도니아(1993.11. 2), 그루지아(1994.11. 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996. 1.19), 아프리카 지역의 남아프리카공화국(1998. 8.10),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1999. 1. 7)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 공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1998년 3월 외교부의 재외공관 30% 정도 감축방침 발표 이래 공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⁵⁵⁾ 1998년 이후 폐쇄된 공관현황을 보면 아프리카 지역이 7개로 가장 많고 유럽지역이 6개, 중동 2개, 아시아 및 중남미 각 1개 공관이 감축되었다.⁵⁶⁾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EU 8개국을 포함,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터키, 캐나다, 브라질, 뉴질랜드,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바레인 등과 수교하였고, 2002년 11월에는 신생 독립국인 동티모르와 국교를 수립하였다. 특히 북한은 이 시기에 대외관계를 확대하면서 주요 거점지역에 공관을 새로 개설하였는 바, 2000년에 홍콩 총영사관 및 이탈리아 대사관, 2001년에 독일 대사관, 2002년에 오스트레일리아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 2003년에 영국 대사관을 개관하여 2003년 10월 현재 총 50개 재외공관을 유지하고 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17개, 아시아가 16개, 중동과 아프리카가 13개, 미주가 4개이고, 상주대사관 40개, (총)영사관 3개, 대표부 7개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현재 재외공관 현황은 1997년 말 68개 공관보다 18개가 감소하였다.

55)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자메이카, 베닌, 포르투갈, 니카라과, 튀니지,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레바논, 콩고, 부룬디, 모잠비크, 헝가리 등 11개 공관을 폐쇄하였다.

56)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세네갈, 말리, 잠비아, 짐바브웨, 토고, 앙골라, 유럽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유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중동에서는 요르단과 알제리, 아시아에서는 몽골,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북한 공관이 폐쇄되었다.

남북한의 재외공관 현황 비교

()는 한국

(2003년 현재)

지역	상주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계
아주	13(24)	2(14)	1(1)	16(39)
미주	3(17)	- (13)	1(1)	4(31)
유럽	12(28)	1(2)	4(2)	17(32)
중동	3(12)	- (-)	1(-)	4(12)
아프리카	9(14)	- (-)	- (-)	9(14)
계	40(95)	3(29)	7(4)	50(128)

북한의 재외공관 설치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총)영사관 보다 상업업무나 정치·외교적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대표부의 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특히 대표부가 유럽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 지역에 각종 국제기구가 설치된 것과 관련이 있다.

북한의 대표부 설치현황

(2003년 현재)

기구명칭	소재지	설치일
국제기구 대표부	오스트리아(비엔나)	1988. 2
예멘 대표부	예멘(사나)	1998. 1
국제기구 대표부	스위스(제네바)	1974.12
광조우 대표부	중국(광조우)	1985. 9
프랑스 일반대표부	프랑스(파리)	1984.12
FAO 대표부	이탈리아(로마)	1977.11
UN 대표부	미국(뉴욕)	1973. 9

IV. 외교

남북한의 지역별 수교현황

(2003년 현재)

지역구분	국가명	수 교	
		한국	북한
아주 및 태평양지역	필리핀	1949. 3. 3	2002. 7. 12
	태국	1958. 10. 1	1975. 5. 8
	말레이시아	1960. 2. 23	1973. 6. 30
	오스트레일리아	1961. 10. 31	1974. 7. 31
	뉴질랜드	1962. 3. 26	2001. 3. 26
	일본	1965. 12. 18	
	몰디브	1967. 11. 30	1970. 6. 14
	통가	1970. 9. 11	
	피지	1970. 10. 11	2002. 12. 5 복교
	투발루	1970. 11. 15	
	사모아	1972. 9. 15	
	인도네시아	1973. 9. 18	1964. 4. 16
	인도	1973. 12. 10	1973. 12. 10
	방글라데시	1973. 12. 18	1973. 12. 9
	네팔	1974. 5. 15	1974. 5. 15
	미얀마	1975. 5. 16	
	싱가포르	1975. 8. 8	1975. 11. 8
	파푸아 뉴기니	1976. 5. 19	1976. 6. 1
	스리랑카	1977. 11. 14	1970. 7. 15
	솔로몬군도	1978. 9. 15	

지역구분	국가명	수 교	
		한국	북한
아주 및 태평양지역	나우루	1979. 8.20	1982. 2.25
	키리바시	1980. 5. 2	
	바누아투	1980.11. 5	1981.10. 1
	파키스탄	1983.11. 7	1972.11. 9
	브루나이	1984. 1. 1	1999. 1. 7
	부탄	1987. 9.25	
	몽골	1990. 3.26	1948.10.15
	마셜군도	1991. 4. 5	
	마이크로네시아	1991. 4. 5	
	중국	1992. 8.24	1949.10. 6
	베트남	1992.12.22	1950. 1.31
	팔라우	1995. 3.22	
	라오스	1995.10.25 복교	1974. 6.24
	캄보디아	1997.10.30 복교	1964.12.28
	아프가니스탄	2002. 1.31	1973.12.26
	동티모르	2002. 5.20	2002.11. 5
	소 계	36개국	25개국
미주지역	미국	1948. 8.13	
	브라질	1959.10.31	2001. 3. 9
	멕시코	1962. 1.26	1980. 9. 4
	니카라과	1962. 1.26	1979. 8.21
	아르헨티나	1962. 2.15	
	콜롬비아	1962. 3.10	1988.10.24

IV. 외교

지역구분	국가명	수 교	
		한국	북한
미주지역	온두라스	1962. 4. 1	
	도미니카공화국	1962. 6. 6	
	칠레	1962. 6.12	1992. 9.25 복교
	파라과이	1962. 6.15	
	코스타리카	1962. 8.15	
	엘살바도르	1962. 8.30	
	아이티	1962. 9.22	
	파나마	1962. 9.30	
	에콰도르	1962.10. 5	
	자메이카	1962.10.13	1974.10. 9
	과테말라	1962.10.24	
	캐나다	1963. 1.14	2001. 2. 6
	페루	1963. 4. 1	1988.12.15
	우루과이	1964.10.17	
	볼리비아	1965. 4.25	
	베네수엘라	1965. 4.29	1974.10.28
	가이아나	1968. 6.13	1974. 5.18
	그레나다	1974. 8. 1	1991. 9.20 복교
	수리남	1975.11.28	1982.10.11
	바베이도스	1977.11.15	1977.12. 5
도미니카연방	1978.11. 3	1990.11.28 복교	
세인트 루시아	1979. 2.23	1979. 9.13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1979.10.28	1990. 8.17 복교	
안티구아 바부다	1981.11. 1	1990.11.27	
세인트 키츠네비스	1983. 9.19	1991.12.13	

지역구분	국가명	수 교	
		한국	북한
미주지역	바하마	1985. 7. 8	1991. 5.16
	트리니다드 토바고	1985. 7.23	1986. 1.22
	벨리즈	1987. 4.14	1991. 6.20
	쿠바		1960. 8.29
	소 계	34개국	22개국
구주지역	영국	1949. 1.18	2000.12.12
	프랑스	1949. 2.15	
	스페인	1950. 3.17	2001. 2. 7
	독일	1955.12. 1	2001. 3. 1
	이탈리아	1956.11.24	2000. 1. 4
	터키	1957. 3. 8	2001. 1. 5
	노르웨이	1959. 3. 2	1973. 6.22
	스웨덴	1959. 3.11	1973. 4. 7
	덴마크	1959. 3.31	1973. 7.17
	스위스	1960.12.19	1974.12.20
	네덜란드	1961. 4. 4	2001. 1.15
	그리스	1961. 4. 5	2001. 3. 8
	포르투갈	1961. 4.15	1975. 4.15
	벨기에	1961. 5. 2	2001. 1.23
	룩셈부르크	1962. 3.16	2001. 3. 5
	아이슬란드	1962.10.10	1973. 7.27
	오스트리아	1963. 9.18	1974.12.17
	교황청	1963.12.11	
	몰타	1965. 4. 2	1971.12.20
	핀란드	1973. 8.24	1973. 6. 1
아일랜드	1983.10. 4		
헝가리	1989. 2. 1	1948.11.11	

IV. 외교

지역구분	국가명	수 교	
		한국	북한
구주지역	폴란드	1989.11. 1	1948.10.16
	유고슬라비아	1989.12.27	1971. 9. 2
	불가리아	1990. 3.23	1948.11.29
	루마니아	1990. 3.30	1948.10.26
	알바니아	1991. 8.22	1949. 5.17
	에스토니아	1991.10.14	
	타지키스탄	1991.10.17	1992. 2. 5
	산마리노	1991.10.22	
	러시아	1991.12.27 승계	1991.12.27 승계
	카자흐스탄	1992. 1.28	1992. 1.28
	우즈베키스탄	1992. 1.29	1992. 2. 7
	몰도바	1992. 1.31	1992. 1.30
	라트비아	1992. 1.31	1991. 9.26
	투르크메니스탄	1992. 2. 7	1992. 1.10
	우크라이나	1992. 2.10	1992. 1. 9
	벨로루시	1992. 2.10	1992. 2. 3
	아르메니아	1992. 2.21	1992. 2.13
	아제르바이잔	1992. 3.23	1992. 1.30
	리투아니아	1992. 4.27	1991. 9.25
	슬로베니아	1992.11.18	1992. 9. 8
	크로아티아	1992.11.18	1992.11.30
	그루지아	1992.12.14	1994.11. 3
	체코	1993. 1. 1	1993. 1. 1
슬로바키아	1993. 1. 1	1993. 1. 1	
리히텐슈타인	1993. 6.14	2001. 5. 2	
안도라	1995. 2.27		

지역구분	국가명	수 교	
		한국	북한
구주지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5.12.15	1996. 1.19
	사이프러스	1995.12.19	1991.12.23
	키르기스스탄	2000. 9.25	1992. 1.31
	마케도니아		1993.11. 2
	소 계	51개국	46개국
중동지역	이스라엘	1962. 4. 9	
	모로코	1962.7.6	1989.2.13
	요르단	1962. 7.26	1974. 6.30
	사우디아라비아	1962.10.16	
	이란	1962.10.23	1973. 4.15
	튀니지	1969. 3.31	1975. 7.16
	오만	1974. 3.28	1992. 5.25
	카타르	1974. 4.18	1993. 1.11
	바레인	1976. 4.17	2001.5.23
	수단	1977. 4.13	1969. 6.21
	모리타니	1978.11.19 복교	1980.3.19 복교
	쿠웨이트	1979. 6.11	2001. 4. 4
	아랍에미리트	1980. 6. 8	
	리비아	1980.12.29	1974. 1.23
	레바논	1981. 2.12	1981. 2.12
	이라크	1989. 7. 9	
	알제리	1990.1.15	1958.9.25
	예멘	1990. 5.22 승계	1990. 5.22 승계
	이집트	1995. 4.13	1963. 8.24
	시리아		1966. 7.25
소 계	19개국	16개국	

IV. 외교

지역구분	국가명	수 교	
		한국	북한
아프리카지역	코트디부아르	1961. 7.23	1985.10. 9
	니제르	1961. 7.27	1974. 9. 6
	차드	1961. 8. 6	1969. 5. 8
	카메룬	1961. 8.10	1972. 3. 3
	부르키나파소	1962. 4.20	1972.10.11
	마다가스카르	1962. 6.25	1972.11.16
	시에라리온	1962. 6.25	1971.10.14
	가봉	1962.10. 1	1974. 1.29
	세네갈	1962.10.19	1972. 9. 8
	레소토	1962.12. 7	1980. 7.19 ('86.11.일시외교중단)
	르완다	1963. 3.21	1972. 4.22
	우간다	1963. 3.26	1972. 8. 2
	콩고민주공화국	1963. 4. 1	1972.12.15
	중앙아프리카	1963. 9. 5	1977. 2.14 복교
	이디오피아	1963.12.23	1975. 6. 5
	케냐	1964. 2. 7	1975. 5.12
	라이베리아	1964. 3.18	1973.12.20
	말라위	1965. 3. 9	1982. 6.25
	감비아	1965. 4.21	1973. 3. 2
	보츠와나	1968. 4.18	1974.11.27
	스와질랜드	1968.11.19	
	모리셔스	1971. 7. 3	1973. 3.16
	가나	1977.11.14	1964.12.28
	지부티	1977.12. 8	1993. 6.13
기니	1978. 1. 6	1958.10. 8	

지역구분	국가명	수 교	
		한국	북한
아프리카지역	코모로	1979. 2.19	1989.11.20 북교
	적도 기니	1979. 9.14	1969. 1.30
	나이지리아	1980. 2.22	1976. 5.25
	기니비사우	1983.12.22	1974. 3.16
	소말리아	1987. 9.26	1967. 4.12
	상투메프린시페	1988. 8.20	1975. 8. 9
	카보베르데	1988.10. 3	1975. 8.18
	나미비아	1990. 3.21	1990. 3.22
	콩고	1990. 6.16 북교	1964.12.24
	잠비아	1990. 9. 4	1969. 4.12
	말리	1990. 9.27	1960.10.31
	베냉	1990.10. 3 북교	1973. 2. 5
	토고	1991. 1.23 북교	1973. 1.31
	부룬디	1991.10. 3	1967. 3.11
	앙골라	1992. 1. 6	1975.11.16
	탄자니아	1992. 4.30	1965. 1.13
	남아프리카공화국	1992.12. 1	1998.8.10
	에리트리아	1993. 5.25	1993. 5.25
	모잠비크	1993. 8.11	1975. 6.25
	짐바브웨	1994.11.18	1980. 4.18
세이셸	1995. 1.29 북교	1976. 8.24	
소 계	46개국	44개국	
총 국가수		186개국	153개국

(4) 민간대상 대외선전 및 동포조직 현황

외국의 민간을 주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대외선전은 공식적 외교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위업에 적극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아래 북한은 ①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에서의 공산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 ② 북한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한국의 고립화 ③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④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및 세습체제의 당위성 선전 ⑤ 북한 통일방안의 정당성 주장 등을 대외선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민간 외교 활동은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별 외교목표에 맞춰 전개되어 왔다. 사회주의권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 견지’와 ‘사회주의운동의 통일단결 강화’를 주장하였다. 비동맹권에 대해서는 ‘반제·반식민주의’와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연대성을 표방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 통일방안의 정당성 선전에 주력하였다. 서방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 평등과 주권존중’을 내세워 인민들의 단결을 주장하면서 평화이미지 부각에 중점을 두었다.⁵⁷⁾

대민간 외교 활동도 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외교 및 대외선전 활동의 총체적인 계획은 당 선전선동부가 담당하며, 집행은 당 국제부가 지휘·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의 선전활동은 대부분 해당지역의 친북단체들을 주로 동원하고 있다.

주요 민간외교 조직으로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있다. 1994년 10월에 창설된 ‘아·태평화위’는 미국과

57) ‘현 국제정세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제5기 제3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허담 보고(1971.11.15) 참조; 1991년도 및 1992년도 김일성 신년사에서도 이같은 기본입장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 등 서방권은 물론 대남업무도 담당하며 1990년대 후반들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기구의 활동범위는 한반도 통일, 핵·군축, 지역민족간 분쟁, 환경 보호 등 정치·경제·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1956년에 설립된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당의 외곽기구로 민간차원의 학술·문화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당 국제부의 지도하에 주로 민간외교를 담당하는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친선대표단을 구성, 해외각국을 순방하기도 하고 문화교류협정을 조인하는 일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기타 외곽단체로는 조선아시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위원회, 각국과의 친선협회 등이 있으며 직총, 청년동맹, 여맹 등의 근로단체도 각각 대외사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밖에 북한의 해외 친북단체 조직을 이용하기도 하는 데, 경제난 등으로 북한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실질적 활동은 매우 미미한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⁵⁸⁾

북한의 주요 대외활동 조직의 하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⁵⁹⁾를 들 수 있다. 1955년 5월 25일에 조직된 조총련은 재일교포들을 친북 성향으로 전향시키고 한반도의 공산화혁명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김일성저작선집』과 ‘혁명전통교양’ 자료들을 각국어로 번역출판하는가 하면 ‘김정일 장군 약사’ 등 김정일 우상화

58) 친북단체는 ① 친선협회 ② 김일성연구소조 ③ 연대성위원회로 크게 나뉘지는데 친선협회는 상대국의 좌경 또는 친북인사들로 구성된 인민외교의 전위단체로서 집회, 성명, 전시회 등을 통해 북한의 우월성을 선전에 활용되고 있다. 김일성연구소조는 ‘김일성노작’에 대한 학습과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 선전과 주체사상의 해외 전파에 이용되고 있다. 연대성위원회는 친북·반한 활동을 위한 정치단체로서 집회·성명 등을 통해 북한 통일방안 선전과 지지획득에 활용되고 있다.

59) ‘조총련’은 2003년 현재 47개의 지방본부와 260개의 지부, 1,550여개의 분회를 가지고 있다.

IV. 외교

자료를 출판하였으며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들을 발간하여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⁶⁰⁾ 뿐만 아니라 조총련에 대해서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대를 이어 충성할 것을 강요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북한은 조총련에 대해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1957년부터 2003년 4월 15일까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명목으로 149차에 걸쳐 총 451억 616만 3,000엔을 송금했다고 밝히고 있다.⁶¹⁾ 그러나 북한이 조총련으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과 물품을 헌납받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조총련계 실업인들과의 합영을 통해서도 적지 않게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1959년 12월 14일부터 1984년까지 187차에 걸쳐 총 93,342명의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북송시켰다.⁶²⁾ 그런가 하면 1967년 제4기 최고인민회의부터는 조총련 대표를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시대변화와 젊은 세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조총련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1998년 5월 22일 제18차 전체대회를 열어 한덕수 의장-서만술 제1부 의장-허종만 책임부 의장 체제를 정립하고,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 의장단을 4명으로 줄이는 등 조직정비를 단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조총련은 1999년 들어 4월 서만술 제1부 의장의 방북시 김정일의 ‘조총련을 일본실정에 맞게 개혁하라’는 지시에 따라 동년 9월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동포생활과 권익옹호를 최우선시하는 사업방침을 확정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였다.

60) 조총련의 간행물로는 『조선신보』, 『조국』, 『조선화보』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민조선』 등의 정기간행물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 배포되고 있다.

61) 『조선중앙방송』(2003. 4.15)

62) 북한은 “1959년에서 1984년까지 25년간 187차에 걸쳐 10만여명의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기었다”고 선전하였다: 『조선중앙년감』(1985), p.210.

이러한 움직임은 2001년 조총련을 결성한 이후 46년간 의장으로 재임하여 온 한덕수가 사망하고 서만술이 의장에 공식적으로 취임함에 따라 더욱 활발해졌다.

서만술 의장은 2001년 7월 일본 각지에서 열린 각 지부별 정기대회에 참석, 조총련의 기층조직인 지부와 분회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조총련의 ‘애국사업’은 앞으로 “동포밀착, 동포복무, 동포주인형으로 혁신될 것이다” 라면서 동포 중심의 조총련 활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일본의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조총련의 돈줄인 조은(朝銀)신용조합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2001년 11월에는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한 일본경찰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조직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2002년 8월 방북한 허종만 조총련 책임부의장을 통해 조총련의 조직과 교육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학습조를 폐지하고 조총련 산하 초·중등 학교에서의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대신 자연스러운 활동사진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하였다.⁶³⁾

이와 같이 북한과 정치·사상·경제적으로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 조총련은 북한의 대외선전기구 및 한반도 공산화혁명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던 기능에서 일부 벗어나 동포권익옹호 단체로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등 현실 적응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에도 제일 조총련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결성했는데, 1998년 8월 15일 통일대축전을 전후한 시점에서 1991년경 결성된 기존의 친북 단체 ‘재중조선공민총연합회’를 ‘재중조선인총연합회’(재중 조총련)로

63) 학습조는 1957년 5월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투사집단 양성’을 목적으로 조총련 산하에 결성된 비밀 조직이며 2002년 현재 조총련 본부, 지방본부, 산하단체, 사업체 등에 약 1천여개조 (1개조는 3~7명으로 구성)가 활동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상화 철거는 조총련계 학교가 교조적 정치교육으로 인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 조총련 자녀들의 충원이 위협받고 있던 상태에서 진학률을 높여 보려는 취지에서 지시된 것으로 보인다.

IV. 외교

확대·재편하였다.⁶⁴⁾ 재중 조총련의 의장은 재중조선국민총연합회 의장이었던 양영동이 승계하였다. 북한의 평양방송이 “재중 조총련이 2001년 3월 조직 결성 10돌 기념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영도아래 통일애국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고 보도⁶⁵⁾한 것으로 볼 때,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밖에도 북한은 미국 내에서 여러 단체로 흩어져 친북활동을 벌여왔던 한인단체들을 규합해 1997년 1월 뉴욕에서 ‘재미동포 전국연합회’를 결성, 함성국(미국명 마이클 함) 목사가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중앙회와 3개 지역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주로 정치외적인 재미동포의 북한 방문과 식량지원 같은 인도적 활동에 치중하고 필요시 미국정부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의 완전 해제와 같은 일종의 로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이들 외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단체로는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고통련), ‘재독일 동포연합회’와 ‘재호주 동포연합회’ 등이 있다.

64) 『로동신문』(1998. 8.13) 참조.

65) 『평양방송』(2001. 4.11)

V. 경제



1. 경제체제

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¹⁾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1998년 개정헌법에 의하면 국가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²⁾을 하는 부문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 등”이 있다.³⁾ 북한에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북한 헌법은 국가소유를 전체 인민의 소유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소유는 축소하는 대신 개인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범위는 확대하였다.

사회협동단체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의 두가지 형태의 단체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에는 노동당, 직업동맹, 여성동맹,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다.⁴⁾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사회협동단체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즉 사회협동단체는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⁵⁾

사회협동단체 소유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협동적 소유이다.

1) 『조선대백과사전 13』(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88.

2) 사회주의 헌법 제21조.

3) 사회주의 헌법 제21조.

4) 사회단체는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최초로 소유주체로 규정되었다.

5) 사회주의 헌법 제22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동일한 유형에 속하지만, 북한은 전인민적 소유형태를 더 고차원적 소유형태로 본다. 즉, 두 소유 형태는 “사회화 수준에서 차이를 가질 뿐 사적 소유의 폐절에 기초하여 발생한 사회적 소유로서 동일한 유형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에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한 소유형태로서 사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전인민적 소유로 이행하게 된다고 북한은 주장한다.⁷⁾ 현재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의 지배적인 분야는 농업부문이며 협동농장이 그 전형이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⁸⁾

개인소유의 대상은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⁹⁾ 그리고 각종 수매기관과 농민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에서 북한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다른 나라 법인

6) 『조선대백과사전 13』(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88.

7) 사회주의 헌법 제23조는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8) 사회주의 헌법 제24조, 이 중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은 1998년 헌법에서 개인소유의 대상을 확대한 부분이다.

9) 사회주의 헌법 제24조.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병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운동을 장려한다”고 하여 주로 경제특구에서의 외국인의 개인소유와 공동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1946년에 착수하여 12년 만인 1958년에 완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같은 해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¹⁰⁾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8월 10일에는 주요산업의 국유화법령을 발표, 공장·광산·철도·체신·은행 등의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였다.

1947년부터는 산업에서의 국유화 부문을 계속 확대시키는 한편, 농업 부문에서는 국영 농·목장을 설치하는 등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그러다가 1953년 휴전 이후부터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업의 집단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를 더욱 강화하여 1958년에는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¹⁾

북한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사유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개인소유로 인정되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축적’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북한주민은 소비생활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즉 북한은 “우선 축적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축적을 소비보다 빨리 늘릴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증산과 절약투쟁’을 일상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소유제도는 북한 주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경제의식, 경제기구의 조직과 기능 등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현격한 차이를 갖게 되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 소유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0) 『조선로동당력사교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16.

11) 구체적인 생산수단의 집단화 과정은 이 책의 제Ⅳ장-제4절의 ‘경제계획 및 실적’ 중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 구축기’ 참조.

V. 경제

국·공유 및 사유화 비율

연도 구분		1949	1953	1956	1957	1958. 6	1958. 10
		공 업	국·공유	90.7	95.1	98.3	98.7
사유	9.3		3.9	1.7	1.3		
농 업	국·공유	3.2	32.0	80.9	95.5	98.6	리 단위 통합완료
	사유	96.8	68.0	19.1	4.5	1.4	
상 업	국·공유	56.5	67.5	84.6	87.9	100.0	
	사유	43.5	32.5	15.4	12.1		

* 출처: 『통일조선년감』(동경: 통일조선신문사, 1967·1968), p.830.

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북한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한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¹²⁾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지령) 경제체제’라고도 한다.

북한은 그동안 경직된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제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가 기술적으로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 『조선대백과사전 4』(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433.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화체계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경제계획의 작성 및 집행에 있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공장·기업소 등 하부 경제단위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내각의 각 위원회 및 성(省)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작성한 모든 계획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계획 일원화가 주관주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등의 문제점을 없애므로써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¹³⁾

계획의 세부화는 북한경제에 있어서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 취해지는 계획의 원칙적 체계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중요한 것만을 계획화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경영활동을 빈틈없이 맞물리게 함으로써 사소한 자연발생적인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 계획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¹⁴⁾

이러한 계획의 세부화는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중앙집권화의 기본 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계획의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4단계를 거쳐왔다.¹⁵⁾

제1단계는 예비숫자 작성단계로서 하부 생산단위에서부터 상향으로 작성 제출된 계획 숫자를 지구계획위원회 및 내각의 각 위원회와 성(省)에서 이를 통합,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이다.

제2단계는 당중앙위원회가 별도로 제시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기초로 하여 보고된 예비숫자를 통제숫자로 작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통제숫자는 계획시기의 경제발전 방향과 규모 및 균형을 규정한 정부의 지령

13) 앞의 책, p.438.

14) 앞의 책, p.437.

15)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582~608.

V. 경제

이며 계획작성의 기준으로서 예비숫자와는 달리 당의 지령으로서 거의 법적 의무성을 띠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공업총생산액과 주요 공업제품의 생산규모, 농업생산 규모, 수송 규모, 상품유통액, 각종 소비재 생산관련지표, 기본건설 투자 규모 등이 통제숫자를 통해 명시된다. 통제숫자는 국가계획위원회가 하부로부터 올라 온 예비숫자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며 당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제3단계에서는 비준된 통제숫자가 국가계획위원회를 통해 다시 하부단위기관으로 전달되는데, 이 통제숫자를 근거로 해당 계획부서에서 계획초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국가계획위원회는 종합적인 계획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때 각각의 하부단위기관들은 하달된 통제숫자에 의거하여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다. 통제숫자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획초안에 그 근거를 밝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통제숫자가 법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4단계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출한 계획 초안을 내각 전원회의나 당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는 마무리 과정이다. 여기에서 전망계획¹⁶⁾에 대해서는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에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확정된 계획의 수행은 법적 의무로 되며, 이러한 전 과정은 국가에 의해서 지도·통제된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전략적, 국가적인 중요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수립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지방행정단위 등이 수립토록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에 대한 독립채산제 강화, 국가경제기관의 규제 완화 등의

16) '전망계획'은 계획기간이 2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을 말하며, 1년 이하의 단기계획은 '현행계획'이라고 한다.

조치를 통해 기관, 기업소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세부계획의 신속적 운영도 허용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국가계획을 제멋대로 변경시키거나 계획권 밖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아주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다. 즉 계획작성으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법적 요구에 맞게 조직, 추진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인민경제계획을 어겨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2. 경제정책의 기초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북한은 경제체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이후 지금까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오고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기본정신이 되고 있는 자력갱생에 대하여 북한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립장과 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⁷⁾ 자력갱생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대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란 정책기조는 국가간 자원과 상품의 교류에서 오는 국제분업의 이익을 얻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선진기술과 해외자본의 도입을 비롯한 국제협력의 부진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가장 큰

17) 『조선대백과사전 16』(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216.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내자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1984년 9월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자유치를 시도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동구사회주의권의 연이은 붕괴로 북한이 의존해 왔던 주요 경제협력기반을 상실하게 되자, 19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¹⁸⁾ 북한은 대외적으로 과거보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거듭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역설하면서, 이 노선이야말로 “제국주의 세계경제 일체화 책동에 강경하게 맞서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¹⁹⁾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외형상으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표방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실리 추구의 입장에서 ‘자기완결적 자력갱생’으로부터 ‘새로운 자력갱생’으로 변화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²⁰⁾ 또한 북한은 남북교역 및 경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2년에는 신의주, 개성, 금강산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종전보다 폭넓은 개방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련의 태도 변화는 북한이 기존의 자력갱생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 폐쇄적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18)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 선봉, 청진 등 3개항을 ‘자유 무역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19) 『로동신문』·『근로자』 공동사설,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로동신문』(1998. 9.17)

20)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로동신문』(2001. 2. 8)

나. 중공업 우선정책

북한은 중공업을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공업부문에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의 기간공업부문들과 임업이 포함된다.²¹⁾

북한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 하는 초기과정에서부터 시종일관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김일성은 “중공업은 인민경제 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²²⁾ 그러나 이와 같은 중공업 우선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산업부문간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공업의 발전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 시기도 있었다. 북한이 1989년에 ‘경공업발전 3개년 계획’ (1989.7~1992.6)을 발표하고 1989년도를 ‘경공업의 해’로 설정한 것이나²³⁾ 제3차7개년계획의 완충기(1994~1996) 중점과업으로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 방침을 제시한 것을²⁴⁾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1998년부터는 실리 추구를 위해 농업, 경공업 등 여타 산업부문과의 유기적 연관을 보다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인 경제침체로 심대한 타격을 입고있는 전력, 석탄, 금속 등 ‘선행부문’을 비롯한 중공업 부문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1) 『조선대백과사전 19』(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445.

22) 『김일성저작집 19』, p.294.

23) 1989년도 김일성 신년사 참조.

24)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보고(1993.12. 8) 참조.

다. 군사·경제의 병진

북한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로선'을 채택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공산권의 이념분쟁과 중·소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제창하고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군사력 강화와 경제건설의 병진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²⁵⁾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 정책은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제기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채택된 이래²⁶⁾ 지금까지 경제 운용의 기본방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66년까지는 예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67~1971년 동안은 군사비가 30% 이상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동서화해와 남북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북한은 군사비를 종전의 절반 정도(예산총액의 17% 이하)로 축소시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²⁷⁾ 그러나 북한이 군사비 지출규모를 실제로 감축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대외적으로 평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수산업이 대부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과 계열화되어 있어 민수산업과 엄격히 구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군사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병력이나 장비 등 군사력은 매년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국방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논리를 기초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²⁸⁾

북한이 한정된 자원으로 군사력의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25) 『조선대백과사전 2』(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p.79.

26) 『로동신문』(1966.10. 8) 참조.

27) 이 책의 제Ⅳ장-제5절 '분야별 현황' 중 '재정' 부문 참조.

28) 『김일성저작집 19』, p.294.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민의 소비부분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이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된 것이다. 더욱이 2003년에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례적으로 ‘국방공업에의 선차적인 역량집중’을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를 경제·사회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라. 경제관리 개선

북한은 1998년 이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경제관리개선을 강구하는 등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의 실리추구를 도모해오고 있다.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2000.6) 및 서방과의 수교 확대 등 대외환경 개선 및 중국과 러시아의 개혁·개방 현장을 시찰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2001년 10월에는 당·경제기관 일꾼들과의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 원칙 고수 아래 최대의 실리 도모,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 방식을 혁신할 것”을 강조하는 ‘경제관리 개선지침’을 하달하였다.

그 이후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에는 대대적인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계속적 추진의지를 피력하면서²⁹⁾ 후속 조치 마련에 주력해오고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은 ① 물가 및 임금 인상 ② 환율 현실화 및 관세조정 ③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④ 식량·생필품 등의 배급제 단계적 폐지, 개인 경작지 확대 등이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물가는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가격을 전면적으로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임금도 평균 18배 인상하고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 원칙’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하게

29) 2003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관리 개선’을 중점과업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2003. 9. 3)에서 박봉주 내각총리 역시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조치들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V. 경제

되었다. 또한 종래 고평가되어온 북한 원화 환율의 경우 달러당 150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입관세를 2배로 인상하였다.

나아가 동 조치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독자성, 세부생산계획의 자체수립 등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는 개인의 경작 면적을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하였고, 유통부문에서도 종래의 배급제를 구입제로 전환시켰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경제 전분야에 걸쳐 진행된 광범하고 획기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는 국가가 총체적인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새로운 자력갱생노선을 모색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격 왜곡문제 시정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³⁰⁾

3. 경제관리

가. 관리원칙

북한은 경제관리 원칙을 “사회주의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관리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¹⁾

첫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이다.

이것은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노력조직, 협동 생산조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직사업’에 있어서 당의 노선과

30) 2003년 3월말부터 농민시장을 시장 또는 종합시장으로 개칭하고,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중앙통신』(2003. 6.10)

31) 『조선대백과사전 2』(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pp.81~84.

정책을 위주로 지도·관리한다는 원칙이다. 북한은 경제조직사업이 정치사업, 즉 사람과의 사업과 결합될 경우에만 원만히 수행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를 위해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근로자 등에 대한 동기부여도 물질적 자극 보다는 정치사상적 자극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 각종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이 끊임 없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정치사업의 우선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시키는 원칙이다.

이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배합하는 원칙을 말한다. 당위원회는 각 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해당조직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당조직사업과 사상교양사업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경제관리 운영과 생산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당위원회는 집체적 지도의 역할을 한다. 한편 행정지휘관은 당위원회에서 그 방향과 방도가 토의·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지휘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따라서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하는 원칙은 기업의 의사결정조직과 수행조직 사이의 의견 차이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시키기 위해 ‘균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생산과 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이다.

계획의 일원화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화 사업을 유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은 계획경제체제의 취약점인 경제부문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경제관리의 중앙집권적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에 의한 방만한 계획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줄곧 중앙집권적 기능을 강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의해 모든 부문, 모든 생산단위들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독립채산제 실시의 원칙이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위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자와 자금(화폐자금)을 받아서 생산활동을 조직하며, 생산을 위한 지출은 자체의 수입으로 보상함은 물론, 공장·기업소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물자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원리상 중앙집권적 계획체제하에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축소하기 위해 하부단위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급 관리기관으로부터 강요된 계획과 주어진 생산요소의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공장·기업소가 경영활동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한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들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지도 및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당의 중앙집권적 지도 강화’, ‘균중로선 관철’ 등을 통해 생산자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열의’를 고취시킴으로써 물질적 자극의 결여로 야기되는 생산성 저하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기로 이상과 같은 경제관리 원칙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평균주의 철폐,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정치·사상 우선의 원칙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으며,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 독립채산제 실시의 원칙 등도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강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경직된 사회주의적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관리방법

(1)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은 북한의 경제관리에 있어 기본적 지침이 되고 있다.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현지도도를 실시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북한은 이를 “주체 사상과 혁명적 군중로선에 기초한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대중지도원칙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과학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대중지도 사상이며 방법”이라고 주장한다.³²⁾

청산리정신과 방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② 늘 현지에 내려가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며 ③ 모든 활동에서 정치 활동을 선행함으로써 노동자 각자의 열의와 창의를 발휘시키며 ④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부시켜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내며 ⑤ 사업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⑥ 모든 사업은 계획화 하여 힘있게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³³⁾

이러한 청산리방법은 북한 농업부문의 관리방법인 동시에 북한 공업 관리방법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다.

32) 『조선대백과사전 21』(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57.

33) 위의 책, 같은 페이지.

(2) 대안의 사업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 12월 남포시 대안구역 대안전기공장 현지 지도시 김일성이 지시한 공업부문 관리방법으로서 공장·기업소에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공업관리 형태라고 강조하고 있다.³⁴⁾ 북한은 공업관리에 있어 처음에는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채택하여 지배인이 관리·운용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여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초기단계에서 강력한 리더십 아래 공업생산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부문별 연관성이 중요시되면서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관료주의와 기관본위주의와 같은 부작용과 기업관리에 하부직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결함이 지적되기에 이르렀다.³⁵⁾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관리책임 아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며, 공장당위원회에는 당간부, 행정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자, 근로자(생산 핵심당원) 등이 참여한다.

둘째, 계획작성,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은 기사장의 지도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며 자재공급과 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경제 활동은 지배인의 지도하에서 통일적으로 수행된다.

셋째,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부 관리국, 공장·기업소, 직장, 생산현장의 순으로 생산을 조직 지도하면서, 상급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해 자재를 책임 공급한다.³⁶⁾

34) 『조선대백과사전 7』(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p.136.

35) 『경제사전 2』(1970), p.821.

36) ‘직장’이란 북한에서의 생산단위조직의 하나로서, 규모가 큰 공장·기업소의 경우 공장·기업소 아래에는 몇개의 직장이 있고 각 직장은 다시 몇개의 ‘작업반’으로 나누어진다.

넷째, 종합적 후방공급체계로서 기업소가 근로자들의 후생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종래에는 근로대중의 생활문제는 기업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상으로는 근로자의 물질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다.

(3)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에 독자성을 일부 허용하여 사회주의체제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영관리 기법으로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와 지방의 공장·기업소를 포함한 공업부문은 물론 농업부문과 비생산적 부문인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모든 국영 공장·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때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대상기관과 실시정도에 따라 완전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독립채산제에서는 각 국영기업이 은행 신용을 이용하고 독자적인 대차 대조표를 보유하고, 물자 구입과 판매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지니게 된다.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는 화폐지표를 활용하며 이익금은 국가가 먼저 ‘국가기업 이익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이 있을 경우 기업소의 운영 상태 개선과 종업원의 물질생활 제고에 활용하게 된다.

북한은 독립채산제를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경영활동의 독자성, 물질적 자극과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과 관련되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가장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⁷⁾ 말하자면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과도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관리방법이라는 것이다. 1998년 9월 개정된 북한 헌법과 1999년 4월 공포된 ‘인민경제계획법’에서도 이와 같은 독립채산제의

37)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p.381.

양면성(계획성 및 독자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개정 헌법 제33조에서는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가격·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도록 한다”라는 조문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그 어떤 분권화나 자유화도 허용하지 않으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해 나갈 것”³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독립채산제는 운영면에서 기업이 일정한 수준이나마 경제적 자율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종래 정치사상적 자극 위주에서 물질적 자극을 통한 경제관리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결국,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경제운용에 있어서 기업소 등 일부 경제단위에 다소나마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사회주의 노력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생산수단의 소유가 허용되어 각자가 보상적 권력을 가지므로 동기부여 원천이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생산적 자산이 국가에 집중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보상적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책임을 지게 된다.

북한에서 근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운동이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이다. 이 노력경쟁은 개인별, 작업분조별, 작업반별, 직장별, 공장·기업소 또는 협동농장별로 진행되는데, 노력경쟁의 주된 기준은 부과된 생산과제를 얼마만큼 초과 완수하느냐에

38) 『로동신문』(1999. 4. 9)

달려 있다.

1946년 12월부터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라는 경쟁운동을 시작한 이래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은 오늘날까지 강력한 추진력을 과시하여왔다.

1950년대 전쟁기간 중에는 ‘증산돌격대 운동’ 으로부터 ‘3·1절 증산운동’, ‘5·1절 증산운동’, ‘상시증산돌격대’ 등이 전개되었고³⁹⁾ 전후의 1954년 초부터는 3개년 복구계획과 함께 ‘복구돌격대운동’, ‘민청순회 우승기쟁취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노력경쟁으로서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부터이다.⁴⁰⁾

북한은 노동 강화를 통한 생산 증대의 도모는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개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천리마운동을 전개하였다. 노동당의 총노선으로 채택된 이 운동은 1959년 3월 ‘천리마작업반운동’ 으로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1961년 8월까지 2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 운동에 동원되었다고 한다.⁴¹⁾

1975년 말부터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력경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목적은 혁명과 건설에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3대혁명을 촉진하자는 것으로 검덕광산과 청산리 협동농장에서 1975년 12월 1~2일에 각기 쫓기대회를 가짐으로써 발단되었다.⁴²⁾ 이 때부터 노력경쟁운동은 작업반 단위가 아닌 공장·기업소, 협동농장과 같은 광역 단위로 전개되었다.

39) 『조선중앙년감』(1949), p.97.

40) 『김일성저작선집 3』, p.101; 『김일성저작선집 4』, p.115.

41) 『김일성저작선집 5』, p.426: 천리마작업반운동은 1959년 3월 강선제강소에서 발단된 것이며, 『민주조선』(1965. 7.17)에 의하면 1965년 6월말 현재 87만 3,000명의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학생을 망라한 2만개의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받았다고 한다.

42) 『로동신문』(1975.12. 2); 『근로자』(1976. 1), pp.12~17.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종래의 천리마운동에 ‘속도전’의 의미가 추가되었는데 1982년 7월 9일 김책제철소의 쫓기모임을 시발로 하여 김정일의 주도하에 추진된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이 그것이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1998년 1월 강계정신을 강조한 이후 일련의 경제슬로건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1998년 1월 자강도 강계트랙터공장에 대한 현지지도시 자력갱생에 입각한 강행군 사례를 ‘강계정신’으로 개념화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으로 구체화시켰다.

이후 김정일이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성강의 봉화’(1998년)라는 새로운 경제슬로건을 제시한 데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락원의 봉화’(2000년), ‘라남의 봉화’(2001년) 등을 경제 슬로건으로 잇달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김정일 시대의 경제슬로건들은 단순히 자력갱생에 중점을 두었던 종래와는 달리 기술혁신과 업종 전문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제슬로건들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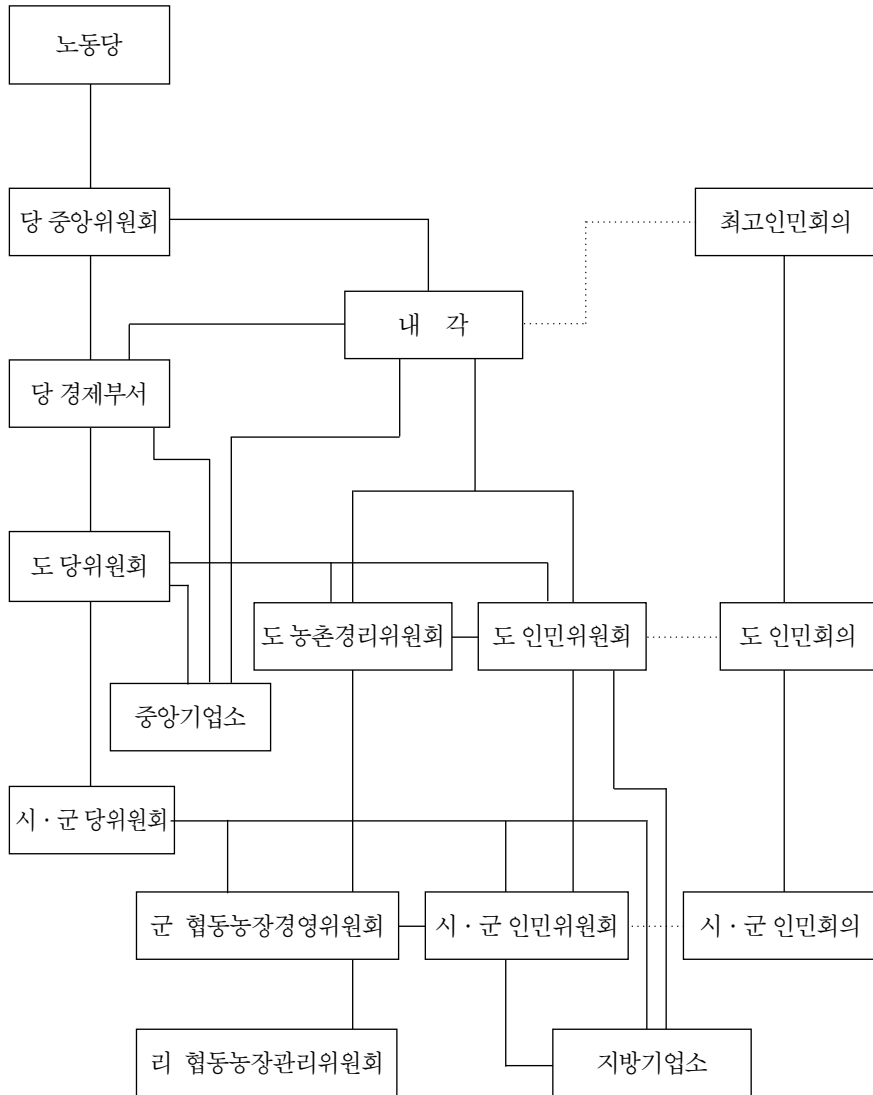
다. 관리체계

(1) 농업관리

북한의 농업관리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위 “주체농법을 실현시킨다”는 노동당의 정책노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농업관리 조직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형태에 따라 두가지로 대별된다.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이며, 협동적 소유로는 협동농장을 들 수 있다. 전자는 농업 전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 관리조직의 구성면에서는 협동농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관리 체계



V. 경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농업관리의 기본방향을 보면, ①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하에 정치사업을 앞세운 농촌 지도 ② 군(郡)단위로 공업적·기업적 방법에 의한 농촌 관리 ③ 중앙집권적 일원화체계의 원칙 반영 등이다.

북한의 농업관리체계는 농업성, 도 농촌경리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계획단위가 중앙집권적 체제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업성은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군 종합농장, 관할 국영 농·목장과 농업기업소를 직접 통제·지도한다. 농업성 산하에는 각 도마다 농촌경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관할 국영 농·목장, 농업기업소의 생산 계획지표를 맡아 작성한다.

도 농촌경리위원회 산하에는 15~20여개 협동농장을 관리하는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있다.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종래의 군인민위원회에서 농촌경리부를 분리하고 국영 농기계작업소, 농사시험장 등 농업지도기관을 흡수 재편한 것으로⁴³⁾ 1961년 12월 12일 내각결정 157호로 군 단위 국가농업 지도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협동농장들의 생산계획과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종자관리소, 자재공급소를 비롯한 국가농업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나타난 북한 ‘농촌경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군을 단위로 한 기업적·종합적인 관리 : 군내 협동농장들의 생산활동과 관련 기업소의 재정활동 등 모든 기업활동을 총괄적·집체적으로 지도한다.

②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 협조 강화 : 군내의 농기계작업소,

43)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144~165.

농기계수리공장, 수의방역소 등 국가단위의 기업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이용함으로써 군협동경리 전반에서 생산의 조직성을 제고시키고 군을 단위로 하여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준비를 갖춘다.

1962년 말부터는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농촌경리의 말단 단위로 하여 이를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중앙의 농업위원회와 일원적으로 연결시켰다.

북한에서 농업 기본단위가 되고 있는 협동농장의 관리운영은 농장관리 위원회가 담당하며 협동농장 생산조직의 기본단위는 작업반이다.

협동농장의 작업반은 일정한 경지, 노동력 및 작업도구를 가지고 부과된 연간 생산과제를 수행한다. 작업반은 몇개의 분조로 다시 나뉘어지고 있으며 분조단위로 작업을 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부분적이거나 농업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 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일부 협동농장을 전인민적 소유(국유)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김일성은 1994년 2월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30주년 기념서한’ 에서 협동농장들을 전인민적 소유형태인 ‘농업연합기업소’ (또는 국영 농장)로 점차 전환시켜 농업의 공업화를 실현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북한은 같은 해 12월 평양시 만경대구역내 협동농장들과 평남 속천군내 협동농장들과 농업관련 기업소들을 각각 통합하여 전인민적 소유 형태의 ‘만경대구역 국영농장’ 및 ‘속천군 농업연합기업소’ 로 개편하였다.⁴⁵⁾

북한의 농업관리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분조관리제’ 이다. 분조관리제란, 1965년 5월 김일성이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현지지도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것으로서 연간 농업생산계획을 10~25명으로 구성된 분조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분조에 대한 분배는 연말 생산실적에 따라 확정, 지급하는 일종의 책임노동제도라고 할 수 있다.

44) 『로동신문』(1994. 2. 25)

45) 『조선중앙방송』(1994. 12. 20, 12. 31)

V. 경제

북한은 이후 ‘협동경리’의 약점인 책임성과 노동의욕의 결여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1960년부터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하였다. 분조관리제는 분조의 책임성 제고의 측면에서, 작업반 우대제는 노동의욕 고취의 측면에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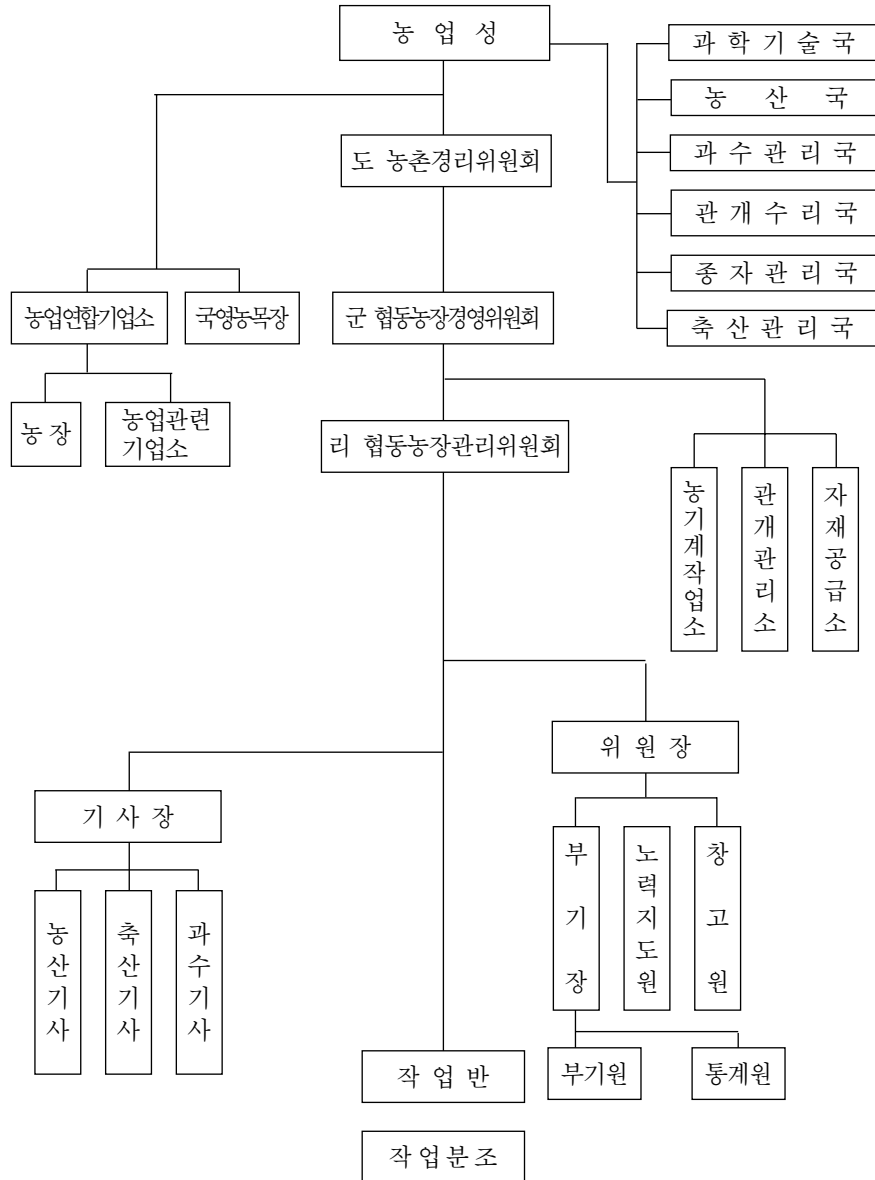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 대책은 보다 많은 초과분 할당을 의식한 생산실적 과대평가 및 비현실적인 생산목표량 설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1970년대 초반 이래 유명무실화되었다.

북한은 1996년부터 농업생산성 저하로 인한 현실적 요구에 따라 개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분조관리제에 대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였다. 이 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은 ‘분조규모의 축소 및 우대제 적용’, ‘생산계획의 하향조정’, ‘초과분 자유처분권 인정’ 등이다.

이러한 분조관리제 개선 내용은 계속된 자연재해,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 등으로 위기상황에 봉착한 식량사정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수단으로서 협동농장에 대한 관리방식을 성과주의로 전환, 노동의욕을 자극함으로써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최근에는 종래 개인이 임의로 개간·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되는 등 농업 관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단기적으로 종자혁명·두벌농사·축산업 발전·감자농사혁명·양어사업의 전개 등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정리사업의 확대와 농업의 기계화를 통해 농업생산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관리조직 체계



(2) 공업관리

북한의 공업관리는 ‘대안의 사업체계’ 하에서 집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생산수단이 모두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초점은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 제고를 위한 정치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을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며 그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사업”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⁴⁶⁾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관리운영에 있어서 집단적 지도체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경제단위의 최고기관인 당위원회에서 경제관리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함으로써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공업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집중적인 생산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해 1985년 7월 연합기업소 조직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연합기업소는 중앙계획기관의 지도하에 직접 계획을 세우고 생산하는 계획·생산·집행의 단위이다.

연합기업소는 내각의 위원회·부가 수행하던 일부의 지도기능을 직접 인수하여 수행하고 자재상사를 장악하고 있으며 하부의 공장·기업소에 대한 물질적, 기술적 보장을 책임진다. 따라서 연합기업소는 하부 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을 통제·장악하고 있다. 현재 연합기업소는 북한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단위이다.⁴⁷⁾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조직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모체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생산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장·기업소를 편성해 조직한 형태이다. 또 다른 형태로는 일정지역내에 있는 동일한 부문의 기업소와 보조부문의

46)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p.410~412.

47) 『주체의 경제관리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p.103~105.

공장·기업소를 구성해서 조직한 형태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에서 동일 부문이나 상이한 부문을 망라해서 조직된 것도 있다. 현재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명칭도 연합기업소, 회사, 연합회사, 총회사, 관리국, 총국 등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으며 그 기능도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⁸⁾

북한은 2000년 두 차례에 걸친 산업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1차 개편시에는 연합기업소 조직을 폐지하였고, 2차 개편시에는 연합기업소를 재복원함과 동시에 연합회사 조직을 확대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개편은 종합적 생산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산업전문화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북한의 공업관리는 그 내용에 따라 계획작성, 설비관리, 자재관리, 노력관리, 생산지도, 재정관리, 후방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공업관리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공장·기업소 뿐만 아니라 농업건설 등의 생산조직 체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소유형태별로 보면, 국영 공장·기업소와 지방 공장·기업소로 나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단일기업소, 종합기업소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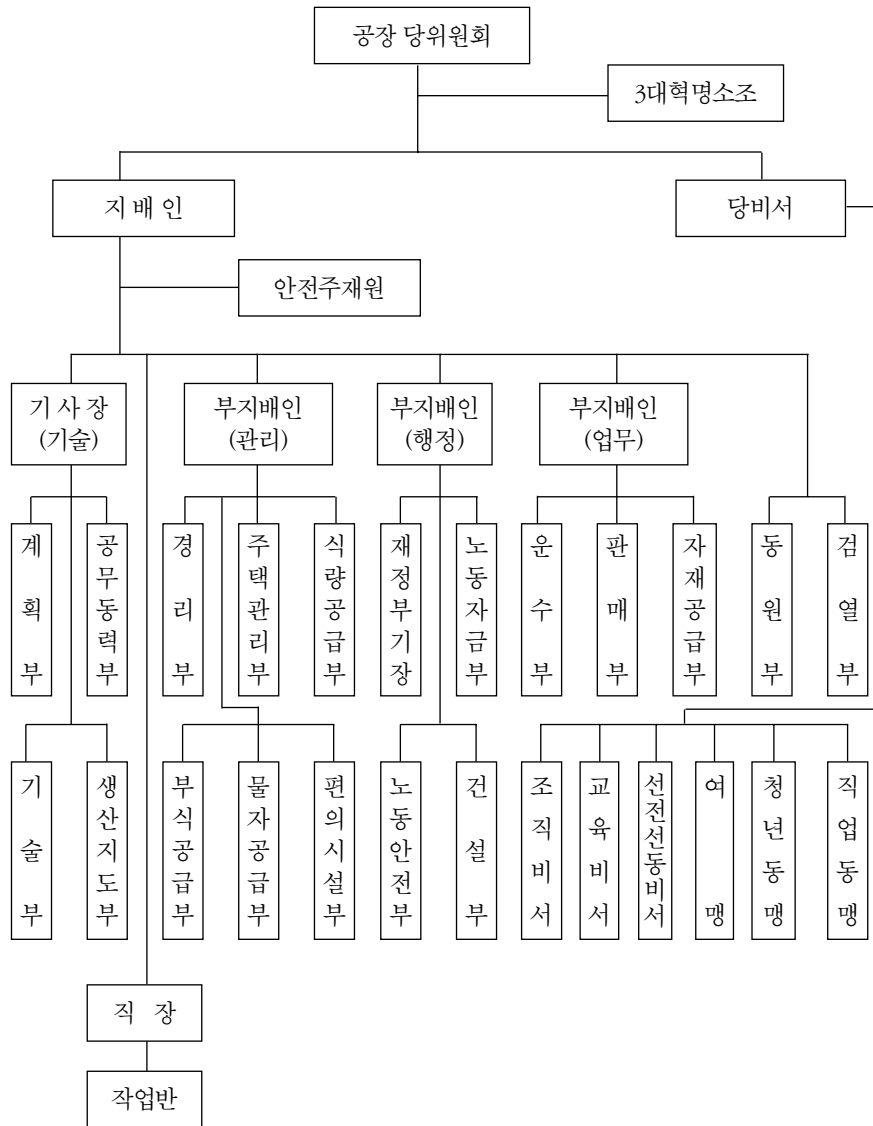
공장·기업소의 생산조직 및 관리는 생산기술적 특성과 생산의 전문화, 그리고 협동화 수준에 따라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공장·기업소의 생산공정별, 생산품목별로 직장이 조직되며, 각 직장은 여러 개의 작업반으로, 작업반은 다시 분조들로 나뉘어진다. 특히 3급 이상의 중요한 공장·기업소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중앙당 및 내각의 경제 관련부서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 공장·기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의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원래 공장·기업소의 관리 운영은 공장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실무적 차원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지배인을 별도로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운영상의 이원적 구조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기로 당간섭 배제 및 지배인의 전문성이 강조됨으로써 지배인 중심의 운영체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8) 박영근, “共和國の工業管理制度と聯合企業所(上),” 『月刊朝鮮資料』, (1989. 4), p.27.

공장 · 기업소 생산조직



(3) 유통관리

북한경제에서 유통은 국가의 계획과 통제속에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말하는 상업이란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상업과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북한에서의 상업은 자본주의 경제와 같이 시장구조가 존재하는 상업이 아니라 국가유일체제하에서 상품공급을 위한 유통 내지 관리수단으로 기능하는 상업이다.

상업체계는 원칙적으로 행정지도 기능과 관리기능, 그리고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이 분리되어 있는데 도매상업은 중앙에서, 소매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는 상품유통의 전 과정을 국가에서 유일적으로 지휘함과 동시에 특히 소매상업의 지방관리(管理)를 통해 지방관리(官吏)들로 하여금 상품공급에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⁴⁹⁾

북한의 상업망은 도매상업망, 소매상업망, 사회급양망, 수매망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매상업망으로서 이를 규모에 따라 상점, 매점, 매대로, 그리고 취급품종에 따라 전문상점과 종합상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업기업소의 운영은 상업부가금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상업부가금은 상업기업소의 유통비와 이익금을 고려하여 상품에 반영하는 부가금을 말한다. 이를테면 생산기업소에서 상품을 넘겨받을 때 적용되는 도매 가격에 상업부가금이 첨가되어 소매가격을 이룬다.

상업부가금은 국가에서 상품가격을 정할 때 그 상품의 유통비와 상업기업소의 이윤 규모를 감안하여 계획적으로 책정한다. 그러나 상품이 생산지에서 최종소비지에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상업부가금을 1회만 적용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⁵⁰⁾

49) 앞의 책, 같은 페이지.

50)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711.

V. 경제

상업부가금의 수입은 상업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맞추고 수익을 보장하는 원천으로 활용한다. 그러므로 상업부가금의 증대는 국가기업이익금을 늘이고 재정수입을 확대시키는 기본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상업유통 부문에서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상업유통에 자본주의적 상업유통 기능이 상당부분 가미된 것이다.

북한은 2002년 12월부터 공식 공급망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시장'의 보완적 기능을 적극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초기에는 국영상점망을 강화하고 농민시장, 장마당 등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물자공급 부족으로 인해 같은해 12월 초순부터는 장마당에서 농산품외에 공산품 거래까지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3월말부터는 평양에 종합시장의 개설을 추진하고, 북한 전역으로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⁵¹⁾

(4) 가격관리

북한에서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필요노동'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제정된다.⁵²⁾ 투하된 노동비용을 근간으로 하여 산출되는 사회적 필요노동 지출이 상품가격 결정의 기본적인 척도가 되고 있다.

가격 제정의 중요한 원칙 중 다른 하나는 가치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리시키는 것이다.⁵³⁾ 예를 들어 대중소비품의 가격은 낮게 정하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소비품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노동지출과는 관계없이 높게 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 임의성이 크게 작용하는 까닭에 가격은

51) 『조선중앙통신』(2003. 6.10): “시장의 운영이 처음인 만큼 다른 나라로부터 전문가 양성, 경험도입을 비롯한 협조를 가능한 받으려고 한다”

52) 『김일성저작집 23』, p.462.

53)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p.11~12.

시장가격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해소시키기 위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동조치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의 왜곡현상이 시정되는 듯 하였다.

가격 제정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 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이 때에 요구되는 것이 가격제정사업을 중앙집권원칙에서 유일적으로 정한다는 가격의 일원화이다.

가격의 일원화는 국가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동경리에서 생산되는 일부 채소와 과일, 수산물의 가격은 일원화하지 않고 국가가격 제정기관에서 정해진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다.⁵⁴⁾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가격의 일원화 원칙은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에 따라 지방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등 사실상 가격의 일원화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모든 가격과 임금이 핵심 필수품인 쌀을 기준으로 실제 생산비와 수급상황 및 국제가격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가격체계를 현실화하였다. 물가는 식량·생필품의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과 비슷한 평균 25배로(쌀1kg당 8전→44원, 옥수수 1kg당 6전→24원, 세수비누 1개당 2원→20원 등) 인상하였으며, 공공요금도 버스·철도요금을 20배 이상(버스·지하철 요금 10전→2원, 전기료 kW당 3.5전→2.1원) 인상하였다.

(5) 분배관리

북한의 소득은 “사회의 공동적인 소비(기관관리, 과학, 교육, 보건, 기타)와 예비의 조성, 기타에 돌려지는 몫과 직접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54) “가격의 일원화방침을 관찰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1. 3.26, 김일성 담화), 앞의 책, p.10.

뚝으로 구분되어 계획적으로 분배” 된다. 생산수단은 기자재 공급계획에 의거하여, 노동임금은 노동보수계획에 따라 분배·관리된다. 특히 노동보수계획은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지불할 노동보수의 규모와 수준을 규정하는 노동계획 기본항목의 하나인데 주로 노동자·사무원의 생활수준, 상품유통규모, 소비와 축적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이 노동보수계획은 보수의 형태에 따라 생활비계획, 장려금계획, 상급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비계획에는 기본적으로 계획기간내 지출되는 생활비의 총규모를 미리 규정하는 총생활비계획이 있고, 계획시기에 노동자·사무원 1인당 평균지출 규모를 규정하는 평균생활비계획이 있다.

장려금계획은 ‘국가기준 노동정량’ 보다 계획년도의 ‘노동정량’ 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 지불되는 ‘노동보수계획’ 이다. 이 계획은 장려금계산 노력수와 기준평균생활비, 계획년도의 노동정량제고율, 장려금률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또한 상급계획은 노동정량을 높이게 되면 기본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더 지불하는 근로자의 노동의욕 제고 목적의 보수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기초로 한 노동보수 분배방식은 달리,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에게는 노력일을 기준으로 분배되고 있다. 연말(보통 10월~12월)에 각 협동농장을 단위로 결산분배를 진행, 농업협동경리에서 연간 생산실적 및 재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수입을 확정하여 분배한다.

결산분배사업은 ① 결산분배의 준비 ② 결산서의 작성과 비준 ③ 결산분배총화회의 진행 ④ 현물 및 현금 분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⁵⁵⁾

결산분배를 위한 준비사업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확정, 노력일의 확정과 재평가, 채권·채무의 청산, 재산 실사 등이 진행된다.

결산서에는 생산계획 수행과 관련한 지표들과 수입분배 관련 지표들, 그리고 생산 및 재정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55) 『조선대백과사전 1』(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p.634.

결산서는 농장원총회(대표자회의)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해당 상급 기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다. 이 때 상급기관은 제출된 결산서를 심의하고 매개 단위의 생산 및 재정활동을 평가하며 경리운영상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준다.

상급기관의 결산서 비준절차가 끝나면, 협동농장 결산분배총화회의에서 총화보고에 이어 결산분배서를 통과시키고 감사위원장이 결산기간중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검열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금 및 현물 분배가 실시된다.⁵⁶⁾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북한은 보수체계에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노동자·사무원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도 평균 18배 인상하고,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 원칙’ 아래 차등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임금의 평균주의를 철폐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4. 경제계획 및 실적

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구축

북한은 분단 직후부터 토지개혁, 주요산업의 국유화,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와 같은 사회주의화 개혁을 단행하여 계획경제 추진의 기초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1958년 8월에 농업의 협동화와 수공업 및 중소상공업의 협동화를 끝냄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완료하였다.

북한에서의 국가적 소유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⁵⁷⁾ 협동단체 소유를 제외한 토지, 지하자원, 산림자원, 기타 자연자원, 주요 공장과 기업소, 은행, 항만시설 그리고 그밖의 교통운수 및 체신시설 등이 포함된다. 협동적

56) 『조선대백과사전 1』(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p.634.

57) 사회주의 헌법 제21조.

V. 경제

사회주의 경제 구축과정

시 기	개혁 내용
1946. 3.5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공포
1946. 8.10	주요 산업의 국유화 법령 공포
1946. 12.22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 법령 공포
1954. 4	협동조합화에 착수
1958. 8	농업·수공업·중소상공업의 협동화 완료
1958.10~12	협동조합을 리 단위로 확대·개편(협동농장으로 개칭)

소유에는 농업·어업부문의 협동 단체에 소속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기업소 등이 포함된다.⁵⁸⁾

(1)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고, ‘무상 몰수 무상분배’⁵⁹⁾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 지역의 농경지 약 200만 정보중 100여만 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었고, 이 중 90여만 정보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화되었다.⁶⁰⁾

그후 ‘토지관개관리령’ (1946. 9), 국영 농·목장의 규모 확장(1949.12) 농기계 임경소 설치(1950. 2) 등을 거쳐 휴전 후인 1953년 8월 5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1954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⁶¹⁾

노동당은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를 규정하였는데,⁶²⁾ 제1형태는 고정적인 ‘노력협조반’ 이고, 제2형태는 출자한

58) 사회주의 헌법 제22조.

59) 『조선로동당력사교재』(1964), p.16.

60) 『조선중앙년감』(1949), p.71.

61) 『김일성저작집 4』, p.21.

62) 『정치경제학(하)』(동경: 학우서방, 1967), pp.66~67.

노동과 토지에 의하여 분배를 실시하는 ‘반사회주의적 형태’이며, 제3 형태는 토지·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해 분배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이 세가지 형태중 농민들의 실정에 따라 농민들이 스스로 적당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말부터 1954년초에 걸쳐 1개 군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년부터 집단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은 농업집단화를 착수한 지 5년만인 1958년 8월에 이미 전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였다. 당시의 농업협동조합의 수는 13,309개였는데, 1개 협동조합은 평균 80호의 농가로 조직되었고, 경지 면적은 130정보였다. 그러다가 1958년 10월 협동조합을 리단위로 통합하게 됨으로써 3,843개 조합으로 그 수가 줄어든 반면, 1개의 협동조합은 농가 300호, 경지면적 500정보로 그 규모가 커졌다.

농업의 집단화

연도	농업협동조합 총수(개소)	협동조합에 가입한 농가호수		협동조합에 편입된 경지면적	
		호수	총 농가호수에 대한 비율(%)	경지면적(1,000정보)	총 경지면적에 대한 비율(%)
1953	806	11,879	1.2	11	0.6
1954	10,098	332,662	31.8	576	30.9
1955	12,132	511,323	49.0	885	48.6
1956	15,825	864,837	80.9	1,397	77.9
1957	16,032	1,025,106	95.6	1,684	93.7
1958	3,843	1,055,015	100.0	1,791	100.0
1963	3,732	1,066,896	100.0	1,837	100.0

*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경제발전 통계집(1946~63)』(동경: 조선연구소, 1965) 참조.

V. 경제

그 후인 1961년에는 11월 군(구역) 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시켜 전문적 농업 지도기관인 군(구역)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내에 있는 농기계작업소, 농기계공장, 관개관리소, 자재공급소, 수의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62년부터 농업협동조합도 협동농장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오늘의 협동농장 경영체계가 확립되었다.

(2) 산업의 국·공유화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발표하여 주요 공장·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⁶³⁾ 그 결과 전체 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었다.⁶⁴⁾

한편 개인이 경영하는 소규모의 공장·기업소와 상업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이전은 물론 휴전 후까지도 부족한 생활 필수품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장려·이용·제한’이라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거쳐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는 농업의 집단화와 같이 다음 세가지 형태가 활용되었다. 즉 제1형태는 도시의 수공업자들에 대한 생산협동반화이며, 제2형태는 중소상공업자들의 협동반화이며, 제3형태는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된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 등이었다.

북한은 농업의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상·공업의 협동조합화를 1958년 8월에 완료하였다.

63) 『조선로동당력사교재』(1964), p.17.

64) 『조선중앙년감』(1949), p.73.

소매상품 유통액의 소유형태별 구성

(단위 : %)

구 분	1946	1949	1953	1956	1957	1959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	3.5	56.5	67.5	87.3	87.9	100.0
개인상업	96.5	43.5	32.5	12.7	12.1	0.0

* 출처: 『조선중앙년감』(1959), p.355.

공업 총생산액의 경제형태별 구성

(단위 : %)

구 분	1946	1949	1956	1959	1960	1963
사회주의경제형태	72.4	90.7	98.0	100.0	100.0	100.0
(국영)	(72.4)	(85.5)	(89.9)	(89.5)	(89.7)	(91.2)
(협동경영)	(-)	(5.2)	(8.1)	(10.5)	(10.3)	(8.8)
소상품 경제형태	4.4	1.5	0.7	-	-	-
자본주의 경제형태	23.2	7.8	1.3	-	-	-

* 출처: 『조선중앙년감』(1964), p.171.

(3) 단기 경제계획의 실시

북한의 경제계획은 1947년부터 실시되었다. 당시는 단기계획으로서 1947년과 1948년 2회에 걸쳐 1개년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1949년에는 2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2개년계획에서는 산업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지적 잔재와 폐해를 제거하고, 각 부문의 생산을 급속히 늘릴 목표를 세웠으나, 2개년계획은 한국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전후 북한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복구에 목적을 둔 전후 복구 3개년계획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구축에 목적을 둔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V. 경제

195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회의에서 채택된 전후복구 3개년계획은 생산수준을 전쟁 이전인 1949년 수준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 계획은 중·소의 원조 등에 힘입어 4개월 조기 달성되었다고 발표하였다.⁶⁵⁾ 그러나 실제로는 석탄, 시멘트, 곡물 등 대부분이 계획에 미달되었다.

경제계획의 목표

계 획	과 업	계 획 목 표
1차1개년계획 ¹⁾ (1947)	· 기업소 복구 조업 · 국영상공업 확대 · 생산의 급속한 증대와 생활 개선	· 공업총생산: 1946년 대비 약 2배 · 곡물수확고: 1946년 대비 30만톤 증산
2차1개년계획 ²⁾ (1948)	· 공업의 편파성 극복 · 생산품의 품질 제고 및 원가 절감	· 공업총생산: 1947년 대비 41% 증가 · 곡물수확고: 1947년 대비 13.5% 증가
2개년계획 ³⁾ (1949~50)	· 낙후된 산업과 농업의 발전 · 전지역의 경제복구 토대 조성	· 국영산업총생산: 1948년 대비 194% · 곡물총생산: 1946년 대비 158%(쌀 잡곡)
전후복구 3개년계획 ⁴⁾ (1954~56)	· 한국전쟁 이전 수준 도달	· 국민소득: 1953년 대비 75% 증가 · 공업총생산: 2.6배 · 곡물수확고: 1949년 대비 119%
5개년계획 ⁵⁾ (1957~61)	· 공업화의 기초 구축 · 식의주문제 기본적 해결	· 국민소득: 약 2.2배 · 공업총생산: 2.6배 · 곡물수확고: 376만톤

* 출처: 1)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 보고(1947. 2. 19)
2) 인민위원회 제4차회의(1948. 2. 6)
3) 1948년 계획실행 총화 및 1949~50년 2개년계획 법령 발표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1954. 4. 23)
5) 제3차 당대회 보고(1956. 4. 23)

65) 제3차 당대회 보고(1956. 4.23)

1957년부터 착수한 5개년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공업기반 구축과 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계획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중국, 소련 및 기타 공산국의 지원에 힘입어 계획기간을 2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였다고 발표되었다.

나. 사회주의 경제계획 추진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경제계획을 추진한 것은 1961년 제1차 7개년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6개년계획, 제2차 7개년계획을 실시하였으며 1993년까지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한 바 있는데, 각 계획기간별 당면과업과 계획목표 및 실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

구분	기본과업	주요 목표	실적
제1차 7개년계획 ¹⁾ (1961~ 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공업 발전 ·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 · 전국적 기술혁신 ·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 · 국방·경제 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 2.7배 · 공업총생산 : 3.2배 · 곡물수확고 : 600~700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총생산 : 3.3배 ·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 18.4% · 노동생산성 성장률 : 147.5% <p>*계획기간 : 3년 연장</p>
6개년계획 ²⁾ (1971~ 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 견고화 · 산업설비 근대화 · 기술혁명 촉진 ·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 1.8배 · 공업총생산 : 2.2배 · 곡물수확고 : 700~750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 1.7~1.8배 · 공업총생산 : 2.5배 ·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 19.1% · 노동생산성 성장률 : 155% · 곡물수확고 : 800만톤 <p>* 1976~1977 원총기 설정</p>

V. 경제

구분	기본과업	주요 목표	실적
제2차 7개년계획 ³⁾ (1978~ 1984)	·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 생산원가 인하 · 절약운동 강화 · 수송의 근대화 · 주민생활 향상 · 독립채산제 강화 · 대외무역 증대	· 국민소득 : 1.9배 · 공업총생산 : 2.2배 · 곡물수확고:1,000 만톤 · '80년대 10대전망 목표와 4대자연개 조사업 추진	· 공업총생산: 2.2배 · 전력생산 성장률 : 178% · 철강생산 성장률 : 185% · 공작기계 생산 성장률: 167% · 곡물 수확고:1,000만톤 · 시멘트· 합성수지· 직 물 생산 목표 달성 · 철도 60% 전철화 * 1985~1986 원총기 설정
제3차 7개년 계획 ⁴⁾ (1987~ 1993)	·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 기술혁신 ·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 국민소득 : 1.7배 · 공업총생산:1.9배 · 농업총생산:1.4배	· 공업생산 : 1.5배 · 전력 : 1.3배 · 석탄 : 1.4배 · 유색금속광물 : 1.6배 · 강철 : 1.3배 · 화학비료 : 1.5배 · 지방공업 : 1.7배 · 주택건설 : 100여만 세대 * 1994~1996 원총기 설정

- * 출처: 1) 제4차 당대회 보고(1961. 9. 1)
2) 제5차 당대회 결정서(1970.11.12)
3)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1977.12. 5)
4)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 회의(1987. 4.12) 및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1993.12. 8)

(1)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

북한은 1950년대 후반의 5개년계획에서 구축된 공업기반의 견고한 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1961년부터 제1차 7개년계획에 착수

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초보적인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내지향적 공업화정책의 한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1962년 10월의 쿠바 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중·소 이념분쟁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한 원조가 격감함에 따라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을 맺었다.

(2) 6개년계획(1971~1976)

북한은 1970년 11월 12일 제5차 당대회를 통해 3대기술혁명 수행과 산업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한 6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71년부터 착수하였다. 6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서구로부터의 자본, 기술 및 설비의 도입에 큰 관심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서방제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연불수입대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7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외채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남으로써 당초 계획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1975년 8월 갑자기 동 계획을 1년 6개월 조기 완수했다고 발표하고, 그 후 무려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 부진한 부문을 조정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계획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제2차 7개년계획의 초기부터 공업 생산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3)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1978년부터 착수된 제2차 7개년계획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표방하고, 1977년에 비하여 국민소득 1.9배, 공업총생산 2.2배, 알곡 1,000만톤 생산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획종료 년도인 1984년이 지나도록 동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해 일절 발표가 없다가 1985년 2월16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이 1984년말을 기해 동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뒤늦게 발표하였다.⁶⁶⁾

한편 북한은 ‘1980년대말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 ‘4대 자연개조사업’⁶⁷⁾ 등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기간중 대외경제사업 및 무역 확대 발전방침 채택,⁶⁸⁾ 합영법 제정 공포 등을 통해 경제적 대외개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 역시 당초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며 동 계획이 종료된 이후 제3차 7개년계획에 착수하기까지 2년간의 조정기를 거쳐야 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할 점은 제2차 7개년계획 후반기부터 북한에서도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욕구충족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66) 이 발표에 의하면, 동 계획기간의 주요 성장지수는 기준년도에 비해 공업생산액 2.2배를 비롯하여 전력 178%, 석탄 150%, 강철 185%, 공작기계 167%, 트랙터 150%, 자동차 120%, 채탄기 4.2배, 화학비료 156%, 화학섬유 180%, 시멘트 180%, 천 145% 등으로 생산이 증가되었다.

67) 4대 자연개조사업이란 20만정보 새땅찾기, 30만정보 간석지 개간, 태천발전소 건설, 서해갑문 건설 등을 말한다.(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 1981.10)

68)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1984. 1.25~27).

(4)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제2차 7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에 두고 국민소득 1.7배(연평균 성장률 7.9%), 공업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등 성장목표와 이미 발표되었던 10대 전망목표를 일부 수정하여 주요 생산 및 건설 목표를 설정하였다.⁶⁹⁾

제3차 7개년계획은 그 추진방침이 제2차 7개년계획과 크게 다를 바 없고, 특히 계획목표는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전의 경제계획에 비해 하향 책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당시 북한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동 계획에서 주목할 것은 ① 기술혁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② 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기술혁신을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⁷⁰⁾ 또 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1991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을 발표,⁷¹⁾ 대외개방면에서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제3차 7개년계획은 계획초기부터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1987~1989년 기간중에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경제계획수행률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기본건설 및 연관산업부문에 집중적으로 노동력과

69)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회의(1987. 4.21)

70) 김일성 신년사(1986. 1. 1)

71) 이 계획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투자재원을 투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부터 지나친 정치우선적 경제운영과 기본건설부문 중심의 성장전략은 재정 부족→투자 부진→기본건설 부진→여타 산업침체 확산 등의 경로로 후유증이 확대되었다.

특히 구소련 및 동구제국의 붕괴 이후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 유대에 기초했던 북한의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북한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과 세계 사회주의 시장 붕괴로 이 나라들과 맺었던 장·단기 무역협정들이 헝클어지고 그 이행이 거의 중단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⁷²⁾

제3차 7개년계획의 실질적인 수행실적을 보면 국민소득이 목표대비 61% 수준, 연평균 대외무역실적은 목표의 52.5%, 그리고 기타 주력산업 부문의 목표수행률은 20~5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⁷³⁾

(5)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1994~1996)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1993.12.8)에서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주요 지표들이 목표에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후 3년간(1994~1996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추진할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제시했다.

북한은 과거 제1차 7개년 경제계획(1961~1970년) 이후에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획기간을 1~3년간 연장하거나 완충기를 두어 왔는데 경제계획 실패를 인정한 후 완충기를 설정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72)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1993.12. 8):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수행 정형에 대한 보도.

73)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1994) 참조.

제3차 7개년계획의 목표 및 수행실적 평가

(1993년 현재)

구 분	목 표	실 적	수행률 (%)
국민소득	1.7배	1.04배	61.1
공업생산	1.9배	(1.5배)	(78.9)
무역	3.2배	0.74배	연평균 23.1
곡물	조곡 1,500만톤	조곡 571만톤	38.1
쌀	700만톤	183만톤	26.1
수산물	1,100만톤	109만톤	9.9
전력	1,000억kWh	221억kWh (676억kWh)	22.1 (67.6)
석탄	12,000만톤	2,710만톤 (10,710만톤)	22.6 (89.3)
철강	1,000만톤	186만톤 (875만톤)	18.6 (87.5)
비철금속	170만톤	16.4만톤	9.6
화학비료	720만톤	160.9만톤 (560만톤 이상)	22.3 (77.7 이상)
합성수지	50만톤	(9.2만톤 이상)	(18.4 이상)
시멘트	2,200만톤	398만톤 (1,200만톤 이상)	18.1 (54.5 이상)
지방공업	2.5배	(1.7배)	(68.0)
직물	15억m	1.9억m	12.7
화학섬유	22.5만톤	5.3만톤	23.6
주택건설	매년 15~20만세대	매년 4.1~4.9만세대 (총100여만세대)	20.7~32.4 (1971.4~1995.2)

* 출처: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1994), p.145.

* 주: ()내 수치는 북한 발표치에 의거 산출

V. 경제

이와 같이 완충기를 설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사회주의권 시장 상실로 경제협력과 무역거래가 거의 단절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중공업우선정책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공업부문이 낙후되는 등 산업구조 불균형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완충기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의 공업화·현대화 실현을 통해 식량부족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며,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외무역부문에서는 수출을 촉진시키고 대외경제협력관계의 확대를 도모하며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완충기 설정을 통해 경제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소해 보겠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북한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었다.

처음부터 경제관리방식이나 국가예산지출상의 우선순위에 근본적인 변화없이 경제회복의 실질적인 추진 원동력이 부재한 완충기의 설정만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또한 구소련과 중국의 우호가격 철폐와 경화결제 요구조치가 각각 1991년과 1992년 이래로 지속되었는데, 이것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완충기 첫 해인 1994년에 -2.1%, 1995년에 -4.1% 그리고 1996년에는 -3.6%를 기록함으로써 199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마이너스 성장이 3년간의 완충기 동안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⁷⁴⁾

이에 따라 북한은 199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의 철저한 관철을 재천명함으로써 1996년 종료하기로 한 완충기 경제전략을 사실상 또 다시 연장하였다.

74)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년도 참조.

다. 내부정비 조치 및 부문별 경제계획 추진

북한은 완충기가 종료되는 해인 1996년 이래 새로이 종합적인 중장기 경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의 자체 해결능력 부족, 대외경제여건 불리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98년부터 북한은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내부적 정비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이완된 계획부문의 질서회복을 통해 체제내부를 정비하려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⁷⁵⁾ 경제관련 헌법조항들을 수정하여 변화된 내부의 경제현실을 공식화하고 향후 대외지향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유구조의 조정, 경제관리운영에서의 자율성 확대, 채산성 원칙의 중시 그리고 대외 경제개방의 확대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제관련 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 운영 및 경제효율성 제고를 모색했다.

둘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1999.4.7~9)에서 국가예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였다.⁷⁶⁾ 5년만에 발표된 1999년도 예산안에서 농업, 전력, 석탄, 광업, 금속, 기계 등의 기간산업 부문과 철도운수부문의 예산증가율이 10~15%에 이르렀는데, 이는 북한이 농업 및 중공업부문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향후 경제정책운용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인민경제 계획법 채택은 비계획부문의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계획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1998년에 경제과업 관철을 위한 ‘내각결정’을 채택한 이후 당면

7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1998. 9. 5)

76)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1994. 4) 이후 북한은 김일성 사망, 극심한 경제난 등으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오고 있다.⁷⁷⁾ 이 내각 결정은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 이후 최초로 설정된 종합적 경제대책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주요 실천적 대책은 석탄·전력·금속·공업 등 선행부문 역량집중, 식·의·주 문제 해결, 이완된 계획질서 정비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각결정은 김정일 60회 생일을 맞는 2002년까지 성(省)·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 등이 달성해야 할 경제적인 목표의 성격을 갖는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이 에너지, 농업, 과학기술, 도시건설 등 집중해야 할 당면부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에너지부문에서 ‘연료·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계획’ (2003~2005년)을 수립·추진하고 있다.⁷⁸⁾ 북한은 경제 침체의 주요한 원인이 에너지난에 있다고 보고 발전소 기술개선, 석탄 증산, 관련 기계설비 조달 등을 포함한 에너지 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영농 사업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정보농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는 2007년에는 8백만톤의 식량을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⁹⁾ 이러한 식량증산계획의 1단계로서 2003년부터 황해남도 안악군 등 4개군에서 정보농업을 도입하는 등 영농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문에서는 1998년부터 두차례에 걸친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1차 : 1998~2002년, 2차 : 2003~2007년)을 추진해 오고 있다.⁸⁰⁾ 한편 도시건설부문에서도 ‘평양시 현대화계획’ (2002~2004년)을 수립하여 영광거리 등 평양시 중심거리 보수·정비, 통일거리 등에 종합시장 건설, 평양시에 2만 2,800여 세대의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다.⁸¹⁾

77) 『민주조선』(1998.10.17)

78)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 국장 인터뷰, 『조국』(2003. 4)

79) 『조선신보』(2003. 4.22)

80) 리광호 과학원장은 「과학원 창립 50돌 기념보고회」(2002.11.29)에서 “2003년부터 시작되는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81) 국가건설감독성 강태흠 부상 인터뷰, 『조국』(2002. 11)

북한의 이와 같은 부문별 중장기 경제계획은 실질 중시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⁸²⁾ 그러나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 및 대외환경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부문별 계획 추진에는 적지 않은 애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5. 분야별 현황

가. 국민소득

북한에서는 총량부문의 경제지표로서 사회총생산과 국민소득이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총생산물(GSP : Gross Social Product)이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⁸³⁾

즉 사회총생산물은 공업, 농업, 건설, 화물수송 등 물질적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 생산물의 총계이므로 국가관리, 교육·과학·예술, 여객수송, 주택건설 등 많은 비생산적 부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개념상의 특징이다.⁸⁴⁾

이러한 사회총생산물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의 두 형태인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에서 생산되며, 극히 적은 부분은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다. 사회총생산물은 현물 형태로는 생산수단과 소비재로 이루어지며,

82)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 국장은 일본 아사히신문과 가진 인터뷰(2002.10.25)에서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경제계획 초안은 지금까지의 입안 방식과는 달리 실질을 중시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83)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688.

84) 북한의 사회총생산물(GSP)에 상품생산 만을 포함하고 서비스 부문은 모두 제외하고 있다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비생산적 서비스 부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예컨대, 과학, 교육, 문화, 보건과 같은 비생산 부문의 생산도 일부 포함되고 있으며, 물자 수송과 물자 통신, 그리고 무역 등은 GSP에 포함되는 서비스 부문이다.

가치 형태로는 생산 과정에서 소모된 생산 수단의 가치 또는 가치 형태와 노동에 의해 새로 창조된 가치 또는 가치 형태로 구성된다.⁸⁵⁾

한편 국민소득(NMP : Net Material Product)은 “사회총생산물 중에서 생산하는 데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한 나머지 부분, 즉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이란 사회총생산물에서 고정자본 감가상각충당금과 중간재 투입비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국민순생산(NNP : 협의의 국민소득 NI + 純간접세) 개념과 유사한 면도 있으나, 북한의 국민소득에는 비생산적 서비스부문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본질상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래수입금’과 농업생산이나 생필품 생산 등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가감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의 국민소득과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되는 국민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거래수입금이나 보조금의 규모, 비생산적 부문의 생산액 등)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북한은 그들 개념에 의한 국민소득조차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발표되는 1인당 국민소득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정되고 있어 통계적 신뢰도는 극히 낮은 형편이다.

예컨대 북한은 1997년 5월 UN회원국 분담금 결정시 회원국 분담금을 최빈국 수준으로 인하시킬 목적으로 1988~1995년 기간중의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과거보다는 이례적으로 대폭 축소시켜 UN분담금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1년 뒤인 1998년에는 UNDP·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지원 획득을 목적으로 1992~1996년 기간중 5년간의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UN분담금위원회에 제출한 통계보다 다소 높여서 제출하였다. 이들 통계자료는 모두 같은 조선중앙통계국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목적, 시기,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85) 『재정금융사전』(1995), pp.688~689.

북한이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연도	1인당 국민소득	근 거
1946	64.44원	“1967년 소득은 1946년 대비 9배” ¹⁾ 에서 산출
1949	131.82원	“1967년 소득은 1949년 대비 4.4배” ¹⁾ 에서 산출
1962	416.67원	“1966년 소득은 1962년 대비 1.2배” ²⁾ 에서 산출
1966	500원 ²⁾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 보고(1967.12.16)
1967	580원	조선중앙방송 보도(1979.9.17)
1970	605.73원	“1970년 소득은 1946년 대비 9.4배” ³⁾ 에서 산출
1974	1,029.75원	“1974년 소득은 1970년 대비 1.7배” ⁴⁾ 에서 산출
1979	1,920달러	김일성 신년사(1980.1.1)
1982	2,200달러	1983.9.12, 김우중 대외문화연락협회 부위원장, 일본기자와의 회견
1986	2,400달러	방완주, 『조선개관』(1988)
1987	2,400달러	이명소 사회과학원 교수, 서방기자단과의 회견(1988. 9)
1988	2,530달러	뉴욕타임스(1989.7 평양발 기사)
1988	868달러	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89	911달러	”
1990	835달러	”
1991	2,460달러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일본기자와의 회견 (연합통신, 1992.2.24)
1991	753달러	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92	659달러	”
1992	1,005달러	UNDP · IMF 제출자료(1998.5)
1993	547달러	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93	994달러	UNDP · IMF 제출자료(1998.5)
1994	432달러	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94	721달러	UNDP · IMF 제출자료(1998.5)
1995	239달러	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95	590달러	UNDP · IMF 제출자료(1998.5)
1996	481달러	”
1998	467달러	APEC 각료회의의 제출자료(2001.1)

* 출처: 1) 『조선중앙년감』(1970), p.276.
 2) 『조선중앙년감』(1968), 문헌자료편, p.2.
 3) 『조선중앙년감』(1974), p.242.
 4) 『조선중앙년감』(1976), p.371.

* 주: ‘원’화는 북한화폐 기준임.

V. 경제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정보 또는 군사분야 전문연구 기관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나름대로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하는 북한의 GNI⁸⁶⁾와 1인당 GNI 추정을 시도하였다.

북한의 GNI를 추정한 바 있는 대표적인 외국의 정보 또는 전문연구 기관으로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IPRI Yearbook),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 The Military Balanc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외국의 각 기관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GNI 평가치를 대외에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발표하지 않거나 추정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주된 이유는 북한의 원화표시 생산액을 달러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 국민소득 개념상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각종 조정 계수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추정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또한 GNI나 1인당 GNI 자체도 추정상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후생수준이나 분배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물며 경제체제가 다르고 경제이론상 개념도 상이한 북한의 국민소득을 지극히 제한된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의 GNI 개념에 맞게 추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만큼 오차 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GNI 또는 1인당 GNI를 가지고 북한의 후생수준을 평가하거나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부터 UN의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북한의 국민소득을 추정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연도별 GNI 및 1인당 GNI는 다음 표와 같다.

86) GNI(Gross National Income)는 소득수준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1993년부터 UN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동 개념을 1998년부터 도입 적용하였다.

북한의 GNI 추정결과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GNI(억달러)	94	135	151	231	223	168	157	170
1인당 GNI(달러)	579	758	757	1,142	1,034	757	706	762

* 출처: 1985년 이전은 통일원, 1990년 이후는 한국은행 추정결과

* 주: 1998년 이전의 통계는 GNP 개념

나. 재정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북한은 재정의 개념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들이 화폐자금을 형성, 분배, 이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⁸⁷⁾ 즉 북한에서는 재정을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 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 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재정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북한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인 만큼 재정의 기능 및 그 포괄범위는 자본주의국의 재정보다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경제는 집단적(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소유 또는 협동적 소유로 된 경제조직까지 모두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우, 재정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주의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북한은 재정의 기능을 분배적 기능과 통제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설명

87) 『조선대백과사전 20』(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272.

하고 있다.⁸⁸⁾

재정의 분배적 기능이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기업소와 기업소간, 인민경제부문간,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그리고 축적과 소비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의 통제적 기능이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동원,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의 분배적 또는 통제적 기능 수행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재정의 주체들이 수립하는 재정계획이다. 재정계획은 크게 기본 재정계획과 인민경제부문 및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으로 구분된다.

기본 재정계획은 사실상 ‘국가예산’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인민경제부문 및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은 국가적 또는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된 기업 및 경제조직의 개별적 재정계획으로서, 연차별 경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적 계획을 말한다.

재정의 통제·감독과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를 비롯하여 내각에 재정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을 통제·감독하는 방법으로는 ‘재정총화’ 제도와 ‘원에 의한 통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재정총화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말단 직장단위에서부터 내각의 위원회·성(省)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기업소가 일정기간 동안(월별, 분기별, 연간)에 수행한 재정예산 집행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한편, ‘원에 의한 통제’란 주로 재정은행기관이 기관·기업소로부터 수입금을 받아들이거나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로부터 재정계획과의 연계하에 예산집행의 적절성, 경영활동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화폐적 통제를 말한다.

북한은 최근들어 탈법적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은행기관들과

88) 앞의 책, 같은 페이지.

검열, 통제기관의 재정검열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다. 즉 2급 이상 공장·기업소들은 적어도 2~3년에 한번씩 재정검열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위원회와 성을 비롯한 중앙기관들과 연합기업소 재정부서들은 산하 기업소들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1년에 1, 2개 이상의 대상기업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재정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2) 예산제도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가예산’은 내각이 편성, 제출한 예산초안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심의한 후 ‘법령’의 형식으로 채택함으로써 성립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내각이 제출하는 국가예산 초안을 심의·승인하며,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결산의 승인권도 가지고 있다.⁸⁹⁾ 지방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가 법령으로 승인한 지방예산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자체예산을 심의·승인한다.

내각은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데, 부문별 집행기관의 하나인 재정성을 통하여 국가예산 초안을 편성한 다음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분기별 집행계획과 집행대책을 세우며, 지방인민위원회의 예산 집행을 지도한다.

또한 내각은 재정성을 통해 국가예산 집행에 관한 분기별 결산과 연간 결산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연간 결산내용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예산편성 과정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연차별 예산편성이 재정계획 작성과 동시에, 또는 이들 재정계획 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내각에서 제출한 예산 초안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는 점도

89) 북한에서는 이를 ‘예산총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재정의 통제기능 가운데 사후적 통제 기능을 의미한다.

특징이다. 이는 내부적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승인 이전이라도 내각이 최초로 작성한 예산 초안 혹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함으로써 최고인민회의의 심의가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년도(북한은 이를 ‘예산년도’라고 부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산편성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수입부분과 예산지출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수입·지출 항목은 각각 행정기관 조직별,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되고⁹⁰⁾ 다시 관, 항, 목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면 국가예산수입 중에서 거래수입금(관)은 경공업성(항)으로, 그것은 다시 방직공업총국(목)으로 구분된다. 이들 예산의 항목별 내용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임의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다.

북한의 예산체계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되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이 합쳐진 전체예산을 국가예산이라고 부른다.

중앙예산은 “국가 중앙기관들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형성, 이용하는 예산”으로서, 국가예산의 기본을 이룬다. 이에 반하여 지방예산은 “일정한 행정지역 단위의 범위에서 지방살림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형성, 이용하는 예산”으로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지방행정기관 자체로 편성, 집행된다.⁹¹⁾

국가예산체계를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주의 재정 원칙상 공통적인 현상이다.⁹²⁾ 북한은 지방예산제를 1972년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였으나, 1973년 당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이 지방예산 실시에 관한 방침을 제시하고⁹³⁾ 지방예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한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90) 북한에서는 행정기관 조직별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관할별 징표에 의한 구분’이라고 하며, 성질별로 편성하는 것을 ‘경제적 징표에 의한 구분’이라고 한다.

91) 『조선대백과사전 19』(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544.

92) *Russia Encyclopaedia*(London: 1982) 참조.

93) 『김일성저작집 7』, pp.240~241.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구분

구분	대상기관	주요 수입원천	주요 지출대상
중앙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적 국영 기업소와 기관 ·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기관, 기업소와 사회문화기관 · 사업상 특성을 가지는 사회안전, 사법, 검찰, 재판기관, 철도 운수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집중적 순수득(거래수입금) · 국영기업소의 국가기업이익금 · 지방예산으로부터의 이전금, 가격편차 수입, 국가재산 판매수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기본건설, 유동자금 등) · 인민적시책에 대한 지출(교육, 의료, 연금 등) · 군사비 · 중앙기관의 관리비
지방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규모의 기관·기업소 ·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기관·기업소와 사회문화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예산 대상기관·기업소의 거래수입금, 협동단체이익금, 편의봉사료 · 중앙예산의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산업 및 농촌경리와 지방산업 건설 · 지방의 도시경영, 교육, 문화, 보건부문 · 지방기관 관리비

특히 1975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5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지방예산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데 대하여” 라는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방예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978년 12월에는 지방재정체계에 관한 특별법규가 채택되었는데, 이 법규는 지방공업기업소에 대한 지방 정권기관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의 주요 내용은 소비재 증산, 지방공업 기업소의 채산성 향상, 지방 행정기관의 감축, 은행의 재정 감독 기능 강화, 화폐 상여기금의 조성·승인·사용방법, 지방예산·결산제도의 강화 등이다.⁹⁴⁾

94) 소련과학원 세계사회주의체제경제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모스크바: 1985)의 한글 번역판 『북한의 정치와 경제』(서울: 국토통일원, 1988) 참조.

오늘날의 지방예산제는 경제난으로 경제건설 투자재원 마련에 큰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앙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행정 단위별 경쟁의식 고취로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예산의 수입과 지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예산수입의 원천으로는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사회협동단체이익금, 봉사료 수입금, 기타 수입 등이 있다.

거래수입금은 원칙적으로 소비재를 생산 판매하는 국영기업소나 생산협동조합이 그 제품의 도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수입으로서,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북한은 거래수입금을 사회순소득 가운데에서 기업소 순소득을 제외하고 남은 중앙집중적 순소득이라고 설명하나, 성질상 소비재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거래수입금은 그동안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⁹⁵⁾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소비재 공급유통이 격감함에 따라 거래수입금도 크게 줄었다.

한편 국가기업이익금이란 생산부문은 물론 유통부문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국영기업소가 그 기업경영 활동에서 얻어지는 기업소 순소득 가운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기업소에 남겨 놓고 쓰기로 된 금액(자체 소요자금과 기업적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국가기업이익금은 기업이윤에 부과되는 일종의 법인소득세로 볼 수 있다. 국가기업이익금은 그동안 거래

95)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산활동 결과 얻어지는 생산물을 자기를 위한 생산물 부분과 사회를 위한 생산물 부분으로 나누고, 후자를 사회순소득이라고 부른다. 사회순소득은 다시 국가의 중앙집중적 순소득과 기업소 순소득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앙집중적 순소득은 거래수입금의 형태로, 기업소 순소득은 계획이윤 혹은 계획초과이윤 등 국가기업이익금의 형태로 국가예산에 동원된다.

수익금 다음의 중요 수입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예산 총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⁹⁶⁾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사회순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예산으로 동원하는 하나의 형태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납부의무자, 부과 대상 및 성질 등에서 다음 표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차이점

구 분	거래수입금	국가기업 이익금
납부의무자	생산재, 소비재 생산·유통 부문 (상업편의 봉사부문 제외)의 국영기업소나 협동단체기업소	소비재, 생산재, 유통부문을 포함하는 모든 국영기업소
부과율 또는 부과금액	도매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	국영기업소 순소득 중에서 국가가 미리 정한 기업 유보 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 전액
부과대상	중앙집중적 순소득	국영기업소 순소득(이윤)
조세적 성질	소비재 거래시 부과되는 간접세	기업이윤에 부과되는 직접세

사회협동단체이익금은 각종 사회단체와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등이 국가로부터 각종 생산수단을 공급받거나 국가의 지도 하에 경영활동을 한 대가로 국가에 납입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적 성격의 납부금이다. 이는 생산협동조합과 편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분기별 결산이윤에, 수산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에 일정한 비율로 부과된다. 사회협동단체이익금은 지방예산 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

봉사료 수입금은 편의봉사부문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봉사료 수입에서 자체 경비와 이윤을 공제하고 남은 수입금으로서, 업종별 봉사요금에

96)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3.27)를 통해 2002년도 예산수입의 77.6%를 국가기업이익금에서 충당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부과대상 업종에 따라 편의봉사료 수입금, 사회급양 봉사료 수입금, 수송운임 봉사료 수입금, 체신업무 봉사료 수입금, 극장·영화관 관람료 수입금 등이 있다.

국가예산의 기타 수입으로는 기업소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국가재산 판매수입, 가격편차 수입 등이 있다.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에서 특이한 것은 조세라는 명목의 세입원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1974년 3월 21일 세금제도의 완전 폐지원칙을 발표한 이후, 체제전전의 소재로써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없는 나라’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등으로 명칭만이 바뀌었을 뿐, 사실상 예산수입은 각종 조세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철도·버스요금, 전기사용료, 주택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예산수입의 주요 원천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북한의 예산수납체계는 종래의 기업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수납체계’와 더불어 성·관리국 중심의 ‘부문별 수납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⁹⁷⁾

부문별 예산수납체계의 특징은 첫째, 중앙정부의 경제담당지도기관인 성·관리국을 수납체계의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하부 단위 기업소들이 성·관리국으로부터 예산 수납 계획을 받아 개별적으로 예산을 납부하였으나, 새 수납체계에서는 예산수납이 생산관리 지도기관인 해당부문 성·관리국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며 성·관리국은 자기 부문에서의 예산 수입과 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다. 둘째, 생산부문 성·관리국들이 자체의 자금원천을 조성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과거에는 기업소들이 성·관리국을 거치지 않고 해당지역 재정기관을 통해 예산 납부하였으나, 새 수납체계에서는 성·관리국들이 자체의 자금 원천을 가지고,

97) 『경제연구』 제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

그에 기초하여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성·관리국들이 산하 기업소들로부터 수입금을 현물로 수납받게 된 점이다. 과거에는 성·관리국들이 산하 기업소들로부터의 수입금을 통계상으로만 종합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에서 채택된 새로운 예산수납체계에 의해, 예산수입면에서는 내각 재정성이 성·관리국을 통하여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예산수입 원천에 맞게 화폐 자금을 제때에 정확히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산지출면에서는 재정성에서 직접 관장하는 자금 몫과 매개 성·관리국에서 관장하는 자금 몫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호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가예산지출은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국가관리에 대한 기관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인민경제비는 생산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건설자금, 원자재나 중간재를 생산·유통하는 데 소요되는 유동자금, 기타 식량이나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보조금, 독립채산제 공장·기업소 지원자금, 농촌에 대한 지원자금, 과학기술발전사업비, 도시경영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등이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이다.

인민적시책비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추가적시책,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등 사회의 공동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 포함되며, 군사비는 군수공업 발전과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투자, 장비 현대화, 병력 유지 및 전인민무장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포함한다.

기관관리비는 국가관리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2001.4.5)에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예산의 비목별 예산지출 구성비를 다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1년부터 북한의 예산지출비목을 일부 변경하는 등 새로운 결산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인민경제비’에 포함하던 ‘추가적시책비’를 ‘인민적시책비’로 변경 계상하고 있고 세부

비목 변경에 따라 각 예산 항목의 비중도 많이 달라졌다.

북한은 매년 4월경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소위 ‘재정보고’의 형식을 빌어 내각의 재정상이 전년도 국가예산의 결산내용과 당해년도 국가예산을 공개한다. 그러나 국가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의 총규모 및 성질별 내역의 총괄적 사항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공개할 뿐이다. 예컨대 2003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와 당해 연도 계획을 구체적 절대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지·배수 형태로 발표하였다.⁹⁸⁾

북한이 매년 재정보고시 발표하는 자료와 ‘조선중앙년감’을 토대로 파악된 연도별 예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북한이 발표하는 세출예산중 군사비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군비증강에 노력하여 왔으며, 김일성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4대 군사노선을 재강조한⁹⁹⁾ 이래 1978년 북한정권 수립 기념행사에서 이의 완성을 공언한 바 있다.

북한은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장’을 사실상의 최고 직위화하면서 강성대국 기치하에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가운데 군비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의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1967년부터 30% 수준을 상회하다가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2년부터는 20% 이하로 급격히 하락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전체예산액의 12% 수준으로 낮추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1999.4.7)에서는 군사비 비중을 14.5%로 다시 상향 책정한 이래 14~15%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이나 군사비로 분류되는 지출대상의 포괄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발표하는 군사비 규모는 신뢰성이 없으며,¹⁰⁰⁾ 세출예산에 대한

98)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2003. 3.26)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2002년 예산집행 결과는 계획의 99.8%를 지출, 2003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4.4%를 증액 지출한다고만 발표하였다.

99) 제5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1970.11. 2)

100) 보유 군사력(장비, 병력 포함)을 기준으로 적정 군사비 소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OB(Order of Battle) 방식이 있다. 북한에서 군사비의 범주에 포함되는 비목은 ‘국가 예산지출’ 항목을 참조.

군사비 구성비의 증감추세는 인민경제비의 구성비 증감추세와 역(逆)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군사비의 상당부분이 인민경제비 등 여타 비목에 은폐·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북한 만원)

구분	세입	세출	성질별 지출내역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1965	357,384	347,613	236,376	68,422	27,809	15,006
1970	623,220	600,269	282,126	119,394	187,884	10,805
1975	1,158,630	1,136,748	650,688	275,762	186,427	23,872
1980	1,913,923	1,883,691	1,139,777	417,434	275,019	51,461
1985	2,743,887	2,732,883	1,762,789	535,387	393,535	41,172
1990	3,569,041	3,551,348	2,399,145	669,279	426,162	56,762
1991	3,719,484	3,690,924	2,504,707	692,704	446,602	46,911
1992	3,954,042	3,930,342	2,662,504	750,891	448,058	68,879
1993	4,057,120	4,024,297	2,929,067	765,908	462,794	66,528
1994	4,160,020	4,144,215	-	-	472,440	-
1998	1,979,080	2,001,521	-	-	292,222	-
1999	1,980,103	2,001,821	-	-	290,264	-
2000	2,090,343	2,095,503	840,297	800,482	299,657	155,067
2001	2,163,994	2,167,865	917,007	825,956	312,172	112,729
2002	-	-	-	-	-	-

* 출처: 북한의 각 연도별 예산결산 발표 내용

* 주: 2002년도 예산집행 결과는 절대수치 없이 지·배수로만 발표

김일성 사후 5년만에 처음으로 발표된 예·결산안의 특징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반영하여 예산을 현실화했다는 점과, 1998년도 결산을 적자 처리했다는 점, 그리고 경제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1999년도 예산은 1994년도의 예산수입총액 416억 2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1994~1998년의 4년 동안 연 평균 6.6%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식량이나 생필품 등의 배급체계가 붕괴되어 실물 경제에서 국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반증해 준다. 또한 1998년도 이후 재정수지는 2001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소폭의 흑자재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화폐 · 금융

(1) 화폐 · 금융의 기능과 제도

(가) 화폐 · 금융의 기능과 결제방식

실물공급경제인 북한경제에 있어서 화폐 · 금융부문은 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올바른 독립채산제 시행을 위한 감독 등 재정통제적인 기능이 매우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부문과 별도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화폐에 대해 “상품세계에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해 주고 교환을 증개해 주는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으로 정의하고 가치척도와 유통수단, 축재수단, 지불수단,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폐 개혁 · 교환 현황

구분	시기	내 용
1차 화폐개혁	1947. 12	· 일제시대 발행 · 통용되던 화폐중 보조화폐를 제외한 전 화폐를 1 : 1 비율로 교환 · 1949.5 이후 새 보조화폐 발행, 1949. 8.15이후 『조선중앙은행』 발행 화폐만 통용 * 북조선인민위원회 법령 제30호에 근거
1차 화폐교환	1959. 2	·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 방지, 새로운 재정금융 토대 구축 및 새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목적 · 구화폐 100원 : 신화폐 1원 비율로 교환 * 내각 결정 11호에 근거
2차 화폐교환	1979. 4	· 금액의 제한없이 1 : 1 비율로 교환 ·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보유화폐를 은행에 입금시킨 후 필요한 만큼 새 돈을 지불받음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
3차 화폐교환	1992. 7	· 화폐제도의 공고화, 화폐유통의 원활화 ·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 5종의 중앙은행권 발행 · 유통 - 동전은 계속 유통 · 신 · 구권 교환비율 1:1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

그러나 북한 화폐는 가격이 국가에서 경제부문별 균형유지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화폐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1차례의 화폐개혁과 3차례의 화폐교환을 실시하였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는 1992년 7월 북한이 사장통화환수를 통해 부족한 재정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새로 발행된 화폐들이다.¹⁰¹⁾ 제3차 화폐교환의 주요 내용은 신·구화폐를 1:1로 교환하되 주민보유 현금은 일정한도까지만 교환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후 지불토록 하였으며¹⁰²⁾ 기관·기업소, 단체도 필요한 만큼만 교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에는 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 8종과 주화 5종 등 일반화폐 13종이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화와 교환해주었던 조선무역은행 발행의 특수화폐(‘8종의 외화와 바꾼 돈표’)는 폐지되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물가 및 임금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1,000원권, 5,000원권 등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물가인상, 임금인상 등으로 고액권 화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한 데 기인한다.

한 때 북한에서는 주민 개인이나 기관·기업소의 ‘외화와 바꾼 돈표’에 대한 선호 및 사용 확대로 상품 유통상의 왜곡과 혼란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태환성 화폐 사용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995년 11월 21일부터 1개월동안 새로운 ‘외화와 바꾼 돈표’를 발행·교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997년 6월에는 경제개혁·개방 조치의 하나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북한 원화와

101) 중앙인민위원회 정령(1992. 7.15) “새 돈을 발행함에 대하여” 참조.

102) 당시 가구당 신화폐의 교환 한도액은 399원이었으며, 400~5,000원까지는 일정기간 동결조건으로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5,000~10,000원까지는 5년간 예치조건으로 예금이 허용되었으나, 30,000원 이상은 교환해주지 않았고 예금으로도 받지 않았다.

V. 경제

미 달러화를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7월에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종래에 고평가되어 온 북한 원화의 환율을 달러당 2.2원→153원으로 현실화한 후 전지역에서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를 폐지하고 외화를 통용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2002년 12월 1일부터 대외결제 기준통화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화폐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지 폐 (8종)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 1992년 7월 제4차 화폐교환 실시 · 조선중앙은행 발행 · 500원권은 1998년부터 발행 · 1,000원권, 5,000원권은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발행
주 화 (5종)	1전, 5전, 10전, 50전, 1원	· 1전, 5전, 10전 주화는 1959년 2월부터 사용 · 50전 주화는 1979년 4월, 1원 주화는 1987년 10월부터 유통

특수화폐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외화와 바꾼 돈표 (8종)	1전, 5전,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	· 종전에는 조선중앙은행권으로 발행, 1988년 9월부터는 조선무역은행권으로 발행 · 1995년 11월 새로운 돈표로 교환 · 1997년 6월 1일부터 나진·선봉지대에 국한하여 ‘외화와 바꾼돈표’ 제도 철폐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전지역에서 ‘외화와 바꾼돈표’ 제도를 폐지하고 바로 외화를 통용

한편 결제방식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형태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등 국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결제적용 장소에 따라 국내결제와 국제결제로 구분된다.

국내결제는 현금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결제와 무현금결제로 구분되며, 무현금결제는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자금이 체뿐 아니라 기본계약내용의 정당성 여부까지 심사하고 있어 지불결제는 인·허가와 같은 행정심사 성격을 갖는다.

국제결제는 거래내용에 따라 무역결제와 비무역결제로 나뉘는데, 무역결제는 상업신용장, 보증장, 대금청구서, 송금 및 지불위탁서에 의한 결제 등의 방식이 적용되며, 비무역결제는 송금결제방식과 증권결제방식이 적용된다.

(나) 금융의 개념과 형태

북한에서의 금융이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관계”를 말한다.¹⁰³⁾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는 생산, 투자, 소비 등의 모든 경제활동이 경제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자금의 이동은 실물이동과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실물순환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즉 금융은 국가경제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실물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간주됨에 따라 비생산적 경제활동분야로 인식된다.

북한에서 금융은 자금융통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구분된다. 국내금융은 북한 원화의 유통에 기초하여 북한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이동 형태로서, 화폐자금이 이동하는 성격과 형식에 따라 신용, 자금공급, 화폐유통으로 다시 구분된다.

신용이란 서로 다른 소유형태들 사이에서 일시적인 유희 화폐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반환적 성격의 자금이동(대부, 저금, 국

103) 『재정금융사전』(1995), p.242.

가보험 등)을 말하며, 자금공급이란 같은 국가적 소유 안에서 정상적인 경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해 계획적으로 국가자금을 동원·이용하는 일방적(불반환적) 성격의 자금이동(기본건설 자금이나 유동자금의 공급, 경비예산의 지급 등)을 말한다. 화폐유통이란 신용과 자금공급 관계에 기초하여 화폐자금이 구체적으로 이동하는 형식으로서,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나뉘어 진다.¹⁰⁴⁾ 한편 국제금융은 외화유통에 기초하여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이동 형태로서 외국환자거래, 국제신용, 국제결제, 국제보험으로 구분된다.

북한은 금융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⁰⁵⁾ 즉 사회주의 금융의 기능은 생산과 유통을 자금적으로 보장하여 경제건설을 도와주는 자원배분적 기능, 올바른 독립채산제 시행을 위한 감독 등 재정통제적 기능, 외화거래의 합리적 조직기능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북한에는 자본주의국가에서와 같은 단기 자본시장, 증권시장, 기타 유사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책당국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정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주의국가에서 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게 된다.¹⁰⁶⁾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 소유로 되어 있고,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인 북한에서는 재정계획과 예산제도를 통하여 국가가 직접 자원배분기능을 맡고 있으므로, 이자율과 수익률, 환율 등을 매개로 금융시장에서의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하의 금융기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금융의 주임무를 맡고 있는 은행들이 기관·기업소에게 화폐자금을 공급하거나 이들로부터 수입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 재정계획과의 연계하에 예산집행의 적절성, 경영활동의 타

104) 현금유통이란 주로 기관·기업소와 주민간 또는 주민들 상호간에, 특별한 경우는 기관·기업소 상호간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말하며, 무현금유통이란 주로 국가기관·기업소들 사이에서 인민경제계획과 맞물린 재정계획에 따라 현금의 직접 이동없이 은행에 설치된 예금돈자리(계좌)에서 계산상으로만 화폐자금을 이동, 상호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말한다.

105)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242.

106) 북한은 은행에 의한 재정통제를 ‘원에 의한 통제’라고 부른다.

당성 등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바,¹⁰⁷⁾ 금융은 오히려 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재정통제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상품 부족으로 주민들이 잉여화폐를 보유함에 따라 야기되는 인플레이 압력을 없애기 위하여 강제저축, 공채발행, 임금수준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 금융체계

북한의 금융체계는 대내금융사업을 관장하는 조선중앙은행 등의 은행 금융기관과 국가보험기관, 체신저금기관, 협동적 신용기관, 투자기관 등의 비은행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업무의 일부도 은행이 취급하고 있어 북한의 금융체계는 곧 은행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은행체계는 과거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와 감독에 의해 움직여지는 단일은행제도 (mono-banking system)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은행은 조선중앙은행과 전문분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은행 등 몇 개의 특수은행들이 있다.

1946년 10월에 설립된 조선중앙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명목상 타 은행을 지도·감독·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 기업소들에게 기본건설 자금, 유동자금 등 일체의 자금수요를 보장하고 국가수입금을 수납하며, 고정자산의 형성, 보수, 이용사업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중앙은행은 중앙의 본점,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는 총지점(도), 지점(군)등을 통하여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한 저금, 보험 사업은 물론 귀금속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특수은행으로는 무역은행, 대성은행, 금강은행 등이 있다. 무역은행은 대외무역에 따르는 결제업무, 외국환업무, 무역기관들을 위한 지불보증, 환율의 결정 공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금강은행과 대성은행은 1970년대

107)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p.146.

후반에 대외무역 증대방안의 하나로 설립된 무역결제업무 전담은행이다.

한편 북한 은행제도의 최상위기구인 조선중앙은행은 조직편제상으로는 내각 직속의 독립기관에 위치해 있으나, 수행업무의 특성상 재정성의 직접적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각 은행들은 소속된 경제체계의 관할 하에 상급기관의 지도·통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저축은 자본주의국가에서와는 달리 재산증식을 위한 자발적 저축이라기보다는 주로 재정계획상의 자금동원 목표달성을 위한 강제 저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축의 종류로는 보통저금, 준비저금, 저금권저금, 당첨금을 지급하는 추첨제저금 등이 있다.¹⁰⁸⁾

일반주민들은 저축 또는 저금 인출시 조선중앙은행의 총지점이나 지점 이외에 우편, 전화업무를 취급하는 체신소를 이용한다.

한편 북한에서는 대상에 따라 국영기업소 대부, 협동단체 대부, 기타 대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영기업소 대부는 국영기업소에 대해, 협동단체 대부는 협동농장이나 협동조합에 대해 행해지며, 기타 대부는 외화벌이 자금이나 부업경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부, 부업반과 가내작업반, 기타 기업들에 대한 대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부의 이자율은 대상에 따라 2~6%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 신청자의 대부사유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기도 하나 실제로는 은행의 준비금 고갈로 대부가 어려운 실정이다.

(2) 환율 및 외환관리

사회주의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거래 쌍방간의 협정에 의거하여 환율을 정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환율의 결정방법은 이론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국의 화폐가 대표하는 금(金)의 양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각국의 상품가격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

108) 『조선대백과사전 16』(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532.

주요 은행의 업무

구분	주요 업무	비 고
조선중앙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발권 및 현금유통 조절 · 국내 기업소간, 정부와 기업소간 각종 무현금 결제 정산 · 현금 및 예산출납을 포함한 국고업무 · 국가예산자금의 공급 및 이용에 대한 재정적 통제, 저금 및 대부, 인체보험 · 금, 은 등의 귀금속의 수매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6년 10월 설립 · 발권은행으로서 타 은행 지도, 감독, 통제 · 평양 본점, 200여 개의 지점 설치
조선무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과 비무역거래 결제와 지불, 보증 · 외화의 수납 및 지출에 대한 통제 · 환율 결정 및 공포, 이율 결정 · 외국은행과의 협정 체결과 집행 · 대외거래 관련 기관 · 기업소에 대한 재정적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9년 11월에 중앙은행의 외국환부문이 분리 독립되어 설립된 대외결제 전문은행 · 평양 본점과 각도에 지점 배치, 세계 주요 은행과 거래
조선금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 및 개도국과의 무역결제 · 조선봉화무역총상사, 조선평양무역회사 등의 대외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8월 설립된 외국환 전문은행
조선대성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회사의 대외결제 등 외국환업무 · 귀금속거래와 신용카드업무에도 관여 · 1996년 홍콩 페레그린투자(株)와 페레그린-대성은행의 합영은행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11월 설립된 외국환 전문은행 · 세계 여러 은행과 코레스 계약 체결
조선창광신용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룡악산무역총상사(무기수출 전담 회사)의 대외결제 업무 · 외국환 등 국제금융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6월에 설립

이다. 후자의 경우, 쌍방 화폐간에 적용할 환율의 결정은 상호간에 거래되는 일정 상품 등을 미리 정하여 놓고 그것을 두 나라의 화폐로 각각 가격과 총금액을 산출하여 대비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¹⁰⁹⁾

109) 『재정금융사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1428.

북한의 환율은 과거에는 공정한환율, 무역환율, 비무역환율(여행자환율)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 복식환율제를 채택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들어 공정한환율 및 무역환율만을 사용하여 오다가 2002년 8월 이후부터는 달러당 150원 내외의 무역환율만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한환율은 북한당국이 국민소득 등 총량지표를 외국화폐로 발표하거나 수출입상품의 대내가격으로의 환산시 적용하며, 기본환율이라고도 한다. 이 환율은 북한의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무역환율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한다.

무역환율은 표본으로 선정한 몇가지 상품에 대해 거래국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외국상품가격에 대한 국내상품가격의 비율로 결정한다. 이 환율은 외국과의 무역거래에 적용하며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은 이를 수시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실상의 북한환율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국가가격제정위원회를 위시하여 전문가격 제정기관에 의해 국정유일가격이 정해지고, 수출입상품 가격도 국가가 통일적으로 책정하는 시스템(무역 유일가격제)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무역상품 가격을 국제시장 거래가격과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 또는 현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하고, 매년 또는 수년에 1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해당국가의 가격체계가 다를 경우, 동등한 구매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어, 북한의 무역환율도 북한 원화를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97년 6월에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내에서 환율을 200:1로 대폭 평가절하하여 현실화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를 폐지하고, 그동안 고평가되어온 북한 원화의 환율을 나진·선봉지역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공식환율 대신 시장환율에 가까운 비율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한 것은 이미 북한내의 일반거래에서도 북한 원화의 사용을 회피하고 달러나 엔화, 유로 등이 직접 이용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외화를 내는 고객에게 먼저 상품을 판매하여 오히려 외화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를 폐지하고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외환분야에 행한 또 다른 개혁은 환율을 시장환율에 가깝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혁으로 환율은 종전 1달러 당 2.2원이던 것이 150원으로 70배 이상 인상하였으며 외환의 수요 공급에 따라 일정 한도내에서 변동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새롭게 정해진 달러 환율은 이미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 거래되는 달러당 200원인 환율과 다른 지역의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준을 고려하고 달러화의 수급을 함께 포괄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는 외환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시장기능을 일정한 정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북한이 2002년 12월 1일 미 달러화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대외 거래를 유럽연합(EU) 단일화폐인 유로화로만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¹¹⁰⁾ 외국기업들과의 모든 대금 결제를 유로화로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로화 부족으로 인해 미 달러화·일본 엔화의 유로화 교환에 차질을 빚고 있어 유로화, 달러화, 엔화 등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추이

(북한 원/미 달러)

구 분	1980	1985	1990	1992	1994	1995	2000	2001	2002
공정환율	0.87	1.07	1.01	0.99	1.01	0.96	1.02	1.02	-
무역환율	1.79	2.43	2.14	2.13	2.16	2.05	2.19	2.21	153

* 출처: 통일부

* 주: 2002년도에 공정환율은 폐지되었으나, 무역환율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현실화

110) 중국 『신화사통신』(2002.11.23)

V. 경제

북한 원화 환율

구 분	단위	현금매입	현금매도
유럽연합	EUR	156,000	160,000
스위스	CHF	105,000	108,000
스웨덴	SEK	17,000	17,400
영 국	GBP	228,000	235,000
홍 콩	HKD	18,900	19,500
싱가폴	SGD	83,000	85,000
호 주	AUD	87,000	89,000
일 본	JPY	1,210	1,250
캐나다	CAD	98,000	101,000
중 국	CNY	17,500	19,000
서아프리카	XAF	0,200	0,230
미 국	USD	147,200	151,000

* 출처: 조선무역은행 발표자료(2003. 3.24)

라. 산업부문별 실태

북한이 그들의 산업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산업발전 정책의 기초가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북한은 산업을 크게 중공업, 경공업, 농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¹⁾ 이런 점에 비추어 북한의 산업분류 개념은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중공업이란 생산설비 및 그 중간재를 주로 생산하는 광공업부문의

111) 『경제사전 1』(1985), p.90.

총체로서 여기에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 기간공업부문과 임업이 포함된다. 북한은 이들 개별 공업부문 중 석탄공업, 광업, 임업을 채취공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나머지 공업부문을 가공공업이라고 부른다.¹¹²⁾

한편 경공업은 소비재를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으로서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 일용품공업, 제지공업 등이 포함되며,¹¹³⁾ 생산되는 재화가 주로 소비재라는 점에서 생산설비나 그에 소모되는 중간재를 주로 생산하는 중공업과 구분된다.

농업은 토지를 기본 생산수단으로 하는 산업분야로서 농산업,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이 포함된다.¹¹⁴⁾ 북한은 수산업을 “어업, 천해양식업, 물고기 기르기, 수산물가공업” 등으로 세분하고 어업은 채취공업 범주에, 수산물가공업은 경공업 범주에, 그리고 천해양식업과 물고기 기르기는 농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¹¹⁵⁾

여기서는 북한의 산업부문을 분류함에 있어 편의상 농림수산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등 3부분으로 나누고, 북한 개념에 의한 산업부문별 실태를 우리 개념에 맞도록 재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농림수산업

(가) 농업

북한은 국토가 거의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지면적은 약 185만 ha(논 58.7만ha, 밭 126만ha)로 추정된다. 주요 재배작물은 벼·옥수수·콩·감자 등이며, 이중 벼·옥수수가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12) 『경제사전 2』(1985), p.42.

113) 『경제사전 1』(1985), p.80.

114) 『경제사전 2』(1985), p.99.

115) 앞의 책, 같은 페이지.

V. 경제

연도별 곡물생산량

(단위 : 만톤, 정곡기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45 (121)	369 (134)	349 (150)	389 (146)	422 (162)	359 (142)	395 (168)	413 (173)

* 출처: 농촌진흥청 추정결과

* 주: ()은 쌀 생산량

1946년 토지개혁으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농업정책은 주로 열악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소위 ‘자연개조사업’에 초점을 두어 왔다. 북한은 196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라는 농업강령을 발표하였다.¹¹⁶⁾ 이 강령에서는 사회주의 농업의 낙후성 극복을 위해 ① 농촌에서의 기술·문화·사상혁명 수행 ②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과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강화 ③ 협동적 소유형태를 포함한 ‘전인민적 소유화’(국유화) 추진 등을 3대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의 실천 방안으로 농업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추진하였다.

1976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자연개조 5대방침’을 결정하고¹¹⁷⁾ 곡물증산을 위한 장기적인 자연개조사업에 착수하였다. 1981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회의에서는 30만정보의 간석지 개간, 20만정보의 새땅 찾기, 남포갑문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사업 등 ‘4대 자연개조사업’을 새로이 제기하기도 하였다.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농업정책은 토지정리사업·관개시설 확충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 사업과 농업의 과학화를 위한 농업정보화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116) 『조선중앙년감』(1975), p.12.

117) 『자연개조 5대방침』이란 ① 밭 관개의 완성 ② 토지정리·토지개량 ③ 다락밭 건설 ④ 치산치수 ⑤ 간석지 개간을 말한다.

토지정리사업은 총 60만정보의 토지정리를 목표로 1998년 10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하여 평안북도·황해남도·평안남도·평양시·남포시 등의 순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은 2003년 현재 토지정리 면적은 총 27.2만정보, 경지확대면적은 6.1천정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¹¹⁸⁾ 관개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도 2002년 10월 ‘개천-태성호 물길’ 공사를 완공한 바 있으며 2003년 5월부터는 평안북도 관개시설 복구를 위해 새로이 ‘백마-철산 물길’ 공사를 착수하였다.

농업정보화는 컴퓨터를 활용한 과학적 영농공정을 산출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적용시킨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농업과학원 컴퓨터센터가 중심이 되어 황해남도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축산업은 1963년 9월 9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회의 결정에 따라 축산물 생산의 전문화를 목표로 국영축산(국영농목장), 협동축산(협동농장), 농민부업축산(농가)의 3원체제로 확립되어 왔다.

북한의 사육 두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사료부족 등으로 인해 협동축산과 부업축산에 의한 가축두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6년부터 별도의 사료가 필요하지 않은 염소, 토끼 등 초식가축 중시의 축산업 발전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북한의 과수정책은 1961년 4월 함경남도 북청군 문화협동농장에서 개최된 이른바 당 중앙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이 지시한 30만정보의 과수원 조성 과수종의 다양화 방침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북한은 과수재배에 비교적 유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수종은 사과, 배, 복숭아 등으로 이중 사과가 40%, 복숭아는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수원 면적은 총경지면적 가운데 8.9%를 차지하며, 농지의 8%, 국토면적의 1.3%를 차지한다. 과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황해남도와 함경남도이며, 평안남북도·황해북도·함경북도·강원도의 과수원

118) 『조선중앙방송』(2003.10. 4)

V. 경제

재배면적은 1만ha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황해남도 구월산 줄기 서부지역에는 대규모의 과수 종합농장이 있으며, 서부와 동부의 해안 지역에도 대규모 과수농장들이 있다.

(나) 임업

북한의 임야면적은 총 920만정보로 북한지역 전체면적의 약 74%에 달한다. 특히 주요 원목생산지인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과 백두산 지역에는 침엽수 및 활엽수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요 원목 생산지에는 60여개의 임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를 설치하고, 기타 지역에는 임산협동조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기간중 150만정보의 조림사업 목표를 세워놓고 경제림 위주의 산림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주요 수종은 낙엽송, 포플러, 은행나무, 분홍꽃 아카시아나무 등이다.

북한의 목재 수요량은 산업용재를 비롯해서 연료재, 농업 및 자재용 목재 등 연간 약 900만^m에 달하는데 반해 연간 생산량은 약 300^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99년 3월 산림조성과 수종 교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성 10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림자원의 복구 및 녹화 사업에 주력 하고 있다.

(다) 수산업

북한의 근해에는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수산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있어 세계적인 어장으로 꼽힐 만큼 어족이 풍부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유용 수산자원은 약 300여종이나 되며, 이중 120여종이 많이 잡히고 있다. 주요 수산자원은 명태, 조기, 멸치, 꽁치, 이면수 등 연근해 어족과 잉어, 붕어, 초어, 송어 등 담수어, 기타 김, 미역 등 해조류와

게 등 갑각류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서해안 간척사업의 추진에 따른 어장 감소와 연근해 지역의 환경오염 및 남획으로 인한 주요 어족자원의 감소, 어로장비 및 기술 낙후, 선박용 유류 부족 등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양어사업의 대대적인 전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2002년 현재 수산물 생산량은 아직까지도 1990년대 초반의 약 80% 수준을 밑돌고 있다.

수산물 생산실적

(단위: 만톤)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14	109	100	105	88	65	63	66	70	75	81

* 출처: 통일부

한편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 김정일은 1997년 6월 황해남도 용연군을 시찰하면서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과학원 수산과학분원 산하 양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양식 어종의 개발·보급, 양어장 보수 및 건설에 치중해 왔다. 이와 함께 '수산 자원 조성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 (1997.7), '물자원법' (1997.8), '바다오염 방지법' (1997.12) 등 수산사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 광공업

(가) 채취공업

채취공업은 “자연부원을 노동대상으로 하여 시초원료와 연료를 생산하는 공업부문의 총체”로서, 석탄공업, 광업, 원유 및 가스채굴업, 임업, 어업 등이 이에 속하며, 그 중심은 석탄공업과 광업이다. 채취공업은 가

V. 경제

공공업보다 시간적으로나 순차상으로 먼저 발전하여야 가공공업에 원료와 연료를 제 때에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하에 북한은 채취공업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즉 새로운 탄광과 광산개발을 위한 지질탐사의 강화, 갱도 굴착 및 채취공정에서의 기술혁명, 채굴설비 및 탐사에 관한 과학연구사업 추진 등이 그것이다.¹¹⁹⁾

북한의 부존자원 현황을 개관하면, 지금까지 총 360여종의 광물부존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유용광물만도 140여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이 36억톤으로써 전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위 이내에 드는 광물도 중석, 폴리브덴, 흑연, 중정석, 형석 등 7종이나 된다.

이처럼 북한지역에는 금속광물과 에너지광물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어 공업원료 및 연료의 70%를 국내에서 자급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공업이나 에너지산업의 기초자원인 석유는 아직 산출되지 않고 있으며, 석탄도 무연탄과 갈탄의 매장량은 풍부하나 제철·제강공업에 반드시 필요한 역청탄(코크스의 원료)은 거의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광업에서 비중이 큰 부문은 석탄, 철광석, 연·아연 등 비철금속광,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생산부문이다. 철광석은 무산광산을 비롯하여 은률, 재령, 하성, 천동, 이원, 덕성, 용원, 풍산 등 20여개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 무산광산은 매장량이 약 10억톤, 연간 생산능력이 800여만 톤에 이르는 북한의 최대 철광산이자 세계적인 노천광산이다.

철광석 및 석탄 생산량

(단위: 만M/T)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철광석	476.3	458.6	422.1	344.0	291.0	289.0	379.0	379.3	420.8	407.8
석탄	2,710	2,540	2,370	2,100	2,060	1,860	2,100	2,250	2,310	2,190

* 출처: 한국은행

119) 『조선대백과사전 21』(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382.

철광석 생산량은 철광석 광산의 지속적인 확장 및 개발로 1970년대 이후 매년 2% 정도씩 증가해 오다가, 1990년 이래 새로운 철광석 광산의 탐사·개발 부진과, 기존 광산의 설비 노후화로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89년 당시 900여만톤에 이르던 철광석 생산량이 1998년에는 289만톤까지 감소하였다가 2002년 현재에는 408만톤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북한의 석탄 총매장량은 147억톤에 달하며 그 중 채굴이 가능한 가채량은 약 79억톤으로 알려져 있다. 무연탄은 평안남도의 순천, 덕천, 강동, 개천군 등과 평안북도의 구장, 함남 고원, 강원도의 천내, 자강도의 전천 그리고 평양 등지에 대량 매장되어 있고, 갈탄은 함경북도의 은덕(아오지) 일대를 비롯한 새별, 온성, 명천과 평안남도의 안주, 함경남도의 금야(영흥)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 석탄생산을 1억 2천만톤으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평안남도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각지의 탄광연합기업소를 중심으로 생산능력 확장공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석탄생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북한은 석탄생산량을 1989년도에는 8,500만톤, 1993년도에는 10,710만톤(1986년 대비 1.4배)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¹²⁰⁾ 1993년의 실제 생산량은 2,710만톤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후 신규 탄광의 개발 부진, 채굴의 심부화,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2년 현재 2,190만톤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¹²¹⁾

이와 같은 석탄 생산의 부진은 원유 도입량 감소와 함께 북한의 에너지 부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북한은 저열탄과 초무연탄을 취사와 난방용 및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의 에너지원으로 개발·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120) 제3차 7개년계획 수행 정형에 대한 당중앙위 전원회의 보도(1993.12. 9)

121) 한국은행, 『1998년 북한 GDP 추정 결과』(1999. 8)

V. 경제

비철금속광산으로서 연·아연 광산은 검덕광산, 계생광산, 성천광산, 화풍광산 등이 있으며 검덕광산은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광산으로서 생산 능력은 연간 납 5만 2,000톤, 아연 12만 4,000톤에 이른다. 이 광산은 1983년에 이미 연간 1,000만톤의 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선광장(제3선광장)을 건설하였다.

그 외에도 증석은 만년광산, 경수광산, 전창광산에서, 금·은·동은 운산광산, 대유동광산, 홀동광산, 상농광산, 성흥광산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 현황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마그네슘의 원료인 마그네사이트는 함경남·북도 및 양강도 지역에 집중 매장되어 있고 채굴조건도 유리한 편이다. 주요 광산으로는 함경남도 단천시의 용양광산, 대흥광산, 백암군의 남계광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용양광산은 세계적인 규모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연간 30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 금속공업

북한은 금속공업, 특히 철강공업의 발전이 나라의 공업화 수준과 경제력, 군수생산의 잠재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자체의 원료와 연료에 기초한 금속공업의 발전, 흑색금속 생산과 유색금속 생산의 균형 발전 및 금속생산공정의 완비, 금속공업의 기술적 토대 강화 등을 금속공업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북한에서는 금속공업을 흑색금속공업과 유색금속공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¹²²⁾ 전자는 철광석을 주 원료로 하여 선철, 입철, 강철, 압연강재, 2차금속 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제철·제강공업부문을 말하며, 후자는 금, 은, 구리, 연, 아연, 알루미늄 등을 생산하고 그 가공품을 제조하는 비철금속부문을 의미한다.

122) 『조선대백과사전 3』(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531.

먼저 흑색금속공업 실태를 보면 주요 제철·제강공장으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함북 청진), 황해제철연합기업소(황북 송림), 성진제강연합기업소(함북 김책),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남포), 청진제강소(함북 청진), 4.13제철소, 8호제강소, 대동강제철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이 자체 건설한 것은 4.13제철소, 8호제강소, 대동강제철소 뿐으로 나머지는 일제때 건설된 시설들을 개건·확장한 것이다. 특히 1995년 이후부터는 투자재원 부족으로 생산시설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제철·제강시설의 정비·보수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철강생산 능력은 2002년 현재 선철 541만톤, 강철 600만톤, 압연강재 404만톤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북한 최대의 제철소로서 연간 생산능력이 제선 217만톤, 제강 240만톤, 압연강재 147만톤에 달한다.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연간 생산능력은 제선 114만톤, 제강 145만톤, 압연강재 75만톤이며,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연간 생산능력은 제선 48만톤, 제강 73만톤, 압연강재 42만톤이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연간 강철 76만톤, 압연강재 55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철강 생산능력

(단위: 만M/T)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선철	346.6	507.6	517.0	541.3	541.3	541.3
강철	398.3	430.0	594.6	598.0	600.2	600.2
압연강재	276.0	339.0	494.0	404.0	404.0	404.0

* 출처: 통일부

북한의 철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각 공장의 시설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의 공장이 일제하에 건설된 소규모 시설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 전쟁 이후 부분적인 시설의 개건 확장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일관공정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등 기술수준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 제2차 7개년계획기간(1978~1984)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일부 주요 공장에 대해 산업텔레비전화, 원격조종화를 추진하였으며, 2002년 들어서도 김책제철·황해제철 및 성진제강·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를 대대적으로 보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아직 우리의 19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유색금속(비철금속)공업 부문의 발전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 비철금속 공장은 문평제련소, 흥남제련소, 해주제련소, 북창알루미늄공장, 단천제련소, 9.21 제련소, 평북제련소 등이 있다.¹²³⁾

북한은 지금까지 연·아연, 동을 비롯하여 금·은, 니켈·몰리브덴 등을 생산해 오고 있으며 1983년 북창알루미늄공장 건설을 계기로 알루미늄과 텅스텐, 니오비움, 세리움 등 희유금속 생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소련 및 서방 등지로부터 설비를 들여와 건설된 북창알루미늄공장은 연간 생산능력이 2.2만톤 규모인데, 원료인 알루미늄은 순천에 있는 부산리알루미늄공장(연간 4만톤 규모)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1990년 2월에는 스테인레스강, 내열강 등 합금특수강 생산의 주요 원료인 니켈광산이 함남 정평군에서 새로 조업되었는데, 동광산은 연간 약 20만톤의 원광(Ni 0.5%)을 처리하여 니켈정광(Ni 3%) 약 3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991년 4월에는 북한에서 채굴되는 희유원소 광물의 정련 및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용악산 무역총회사와 조총련 국제트레이딩사간에 설립된 함흥화학합영회사가 조업(이트륨 등 연 1,000톤 생산)하였다.

123) 이외에도 남포제련소가 있었으나, 2002. 12월 설비노후화, 공해문제 등으로 폐쇄·철거되었다.

1998년 4월에는 금속가공품과 주물품 등을 생산, 수출하는 북한·중국간 합작공장인 청진금속합작회사가 설립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의 비철금속공업은 제철·제강공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제련기술 및 생산 설비가 국제수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어, 이들 시설의 근대화가 당면한 과제로 되고 있다.

(다) 기계공업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기계공업은 “생산도구, 기술수단을 생산보장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경리, 기본건설과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기술장비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중공업의 핵심부분이며 기술적 진보의 기초”라고 한다.¹²⁴⁾ 따라서 북한은 일찍부터 기계공업부문을 가장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왔으며, 그 수준도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가장 앞서 있다.

주요 공장으로는 각종 공장건설에 필요한 대형설비를 제작하는 용성기계총국,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금성트랙타공장, 김중태전기기관차공장, 남포조선소, 함북조선소 등이 있으며,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자동화기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이 있다.

제3차 7개년계획 기간(1987~1993)에는 기존 생산기반의 개건·확장과 기계설비의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에 중점을 두면서 1986년에 비해 1993년에 2.5배의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의 생산시설 건설실적은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시설확장(1989.8),¹²⁵⁾ 후라이스(fraise)반 5,000대 생산능력의 희천-고리끼합영회사 완공(1989.10), 구성공작기계공장내 수치제어 공작기계 생산기지 조성(1993) 등에 불과하

124)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268.

125) 북한은 확장된 승리자동차공장이 연건평 10만여㎡에 30여개 생산건물이 건설되어 있고 ‘자주-82형’의 자동차를 계열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정이 갖추어졌다고 한다.

V. 경제

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기간중 로봇·집적회로 등 전자, 자동화에 필요한 부품생산부문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였으나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최근 남포시에 남북한 합영공장인 평화자동차종합공장이 준공(2002.4)되어 2006년까지 총 15,400대의 피아트(FIAT) 자동차의 조립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기계공업은 일부 대형 기계 및 공장설비의 생산은 질적으로 국제수준에 미달되나, 내부적으로 필요한 공정설비들은 자체생산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동차, 조선, 통신 기계공업의 수준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주요 기계공업부문 생산능력

(2002년말 현재)

자동차	공작기계	농기계	TV수상기	조선
4.3만대	3.5만대	3.2만대	26만대	21.4만G/T

* 출처: 통일부

(라) 화학공업

화학공업은 ‘식·의·주’ 문제의 해결과 밀접히 관련된 공업부문으로, 북한은 식량 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 및 농약공장 건설과 화학섬유 증산을 위한 비날론공장 건설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공업은 석유보다는 석탄에 의존하는 발전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시설들이 계열화되지 못하고 원료산지를 중심으로 상호 독립적인 생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경공업, 자동차 등 후방산업의 침체로 소재산업인 화학공업의 발전 역시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주요 화학비료공장으로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이 있다. 북한 최대의 화학비료공장인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연간 생산능력이 86만톤

으로 전체 생산능력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큰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등 정상적으로 가동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화학비료공업은 1990년대 들어서 설비 노후화,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 현재 화학비료 생산량은 50.3만톤에 불과하였다.

특히 화학비료 생산체계는 단비(單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소별 생산능력의 불균형이 심하며, 카리비료의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화학비료 생산량

(단위 : 만톤)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90.0	73.8	67.6	53.6	43.1	39.2	57.2	53.9	54.6	50.3

* 출처: 한국은행

석유화학부문을 보면 정유공장은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봉화화학공장(평북 피현군)과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승리화학공장(나선시)이 있는데, 각각 150만톤, 200만톤의 정유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솔린, 나프사, 등유, 경유, 제트연료, 중유, 윤활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의 원유도입량은 199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원유도입은 경화결제로의 전환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도입량도 현저하게 감소되어 2002년 현재 연간 원유도입량이 60만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석유화학공장으로는 서구로부터 설비를 도입하여 건설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평남 안주)가 있는데, 이 공장은 봉화화학공장으로부터 나프사를 공급받아 요소비료, 폴리에틸렌, 에틸렌그리콜, 아닐론 섬유(폴리에스텔 섬유), 펄프 등을 생산하고 있다.

V. 경제

원유 도입량

(단위 : 만톤)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36	91	110	94	51	50	32	39	58	60

* 출처: 한국은행

(마) 건재공업

북한에서의 건재공업이라 함은 “기본건설에 이용되는 시멘트, 철재, 목재, 벽돌을 비롯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물질적 생산부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멘트공업, 목재가공공업, 금속건재공업, 요업건재공업, 화학건재공업, 유리건재공업, 돌건재공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철근, 형강, 판강 등의 압연강재는 금속공업에 속하고, 통나무는 임업부문에 속하므로, 건재공업부문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자재는 시멘트, 유리, 기타 내화물 등이다.¹²⁶⁾

북한의 시멘트공업은 1970년대 후반에 완공된 순천시멘트공장, 1989년 4월에 완공된 상원시멘트공장을 비롯하여 2·8, 해주, 승호리, 천내리, 만포, 고무산, 부래산, 구장시멘트공장 등 10여개의 주요 공장과 50여개의 중소규모 시멘트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멘트공업은 생산 설비가 낙후되어 있고 자체 제작한 저급한 내화벽돌 사용 등으로 장기운전이 곤란한 실정에 있다.

주요 공장별 생산능력을 보면,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300만톤,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200만톤, 2·8시멘트연합기업소 160만톤, 해주시멘트공장 125만톤, 승호리시멘트공장 95만톤, 천내리시멘트공장 80만톤, 만포시멘트공장 60만톤, 고무산시멘트공장 57만톤, 부래산시멘트공장 30만톤, 구장시멘트공장 20만톤 등이다. 이 중에서 순천시멘트공장의 생산품은

126) 『조선대백과사전 1』(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544.

‘금강’이란 상표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다.

북한의 시멘트 생산량은 1998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1999년부터 다소 증가하여 2002년 현재 532만톤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와 주택단지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으로 건설용 시멘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멘트 생산량

(단위: 만톤)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98	433	422	379	334	315	410	460	516	532

* 출처: 통일부

북한의 판유리공업은 제조기술 및 품질면에서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유리공장들은 판유리 이외에도 광학유리, 유리병 등도 생산하고 있는데 판유리의 경우 평활성이 낮아 자동차용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연간 총 50만 상자의 판유리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화물공업은 세계 최대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에 힘입어 발전하여 왔는데, 이중 단천마그네샤종합공장은 연간 200만톤 능력의 북한 최대 공장이다. 북한은 도자기제품을 해외수출 전략 품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자기공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주요 생산공장으로는 경성도자기연합회사, 문덕도자기공장, 안변요업공장 등이 있으며, 1990년 9월에는 경성도자기연합기업소 산하에 7·6도자기공장을 새로 완공하였다.

벽돌 및 기와공장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평양벽돌, 순천벽돌, 강남벽돌공장 등 25개 공장은 비교적 규모가 크다. 또한 표면이 고르고 단단해 별도의 외장공사가 필요없고,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이 가능한 씨리카트벽돌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안주씨리카트

벽돌공장은 5억매, 함흥씨리카트벽돌공장은 3억매의 연간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 8월 완공된 강계기와공장은 자강도 내 주택보급의 확대를 목적으로 자체 건설된 것으로 연산 300만장의 기와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 경공업

북한의 산업정책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편향된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이 분야에만 국가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공업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현상도 심각한 실정이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경공업의 발전이 주민들의 소비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표면상으로는 경공업 발전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4년부터 김정일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¹²⁷⁾ 1989년의 ‘경공업의 해’ 설정과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1989.7~1992.6)의 추진,¹²⁸⁾ ‘전국경공업대회’ 개최(1990.6),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통한 경공업 제품의 공급증대 모색 등이 그 예이다. 특히 1994년부터는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1993.12.8) 결정에 따라 완충기(1994~1996) 중점과업의 하나로 경공업제일주의 방침을 설정,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을 증대시키는 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다.¹²⁹⁾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공업 발전에 관한 각종 운동 전개나 계획 수립에도

127)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이 평양에서 개최된 경공업제품 전시회를 현지지도하면서 각지의 공장·기업소내에 가내작업반을 확대조직하여 폐설물과 부산물을 이용해 생필품을 공급할 것을 지시한데서 유래하였다.

128) 동 계획은 제6기 제16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89. 6. 7~11)에서 채택되었다.

129) 북한은 1993년 12월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이후 2~3년을 완충기로 설정하였으며, 동 기간중에는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당의 전략적 방침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불구하고, 중공업우선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생산시설의 영세성, 시설장비 및 생산공정의 전근대성 등으로 여전히 제품의 질적 향상과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최근 연간 수천만 개의 칫솔을 생산할 수 있는 평양일용품공장(2002.4)과 연간 7만kl의 생산능력을 갖춘 대동강맥주공장(2002.11)의 조업이 시작되는 등 부분적으로 경공업공장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경공업제품 생산체계는 대규모의 중앙공업, 중·소규모의 지방공업,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자재, 폐자재를 활용하여 소위 ‘8·3인민소비품’을 만들어내는 공장·기업소의 생필품직장이나 작업반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1973년부터 지방예산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주민생활품 생산은 지방행정기관 책임하에 중·소규모의 지방 경공업공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조달의 한계로 인해 지방 경공업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신규 투자가 원활하지 못하였다.

북한 발표에 의하면, 군(郡)마다 평균 25개 이상의 지방 경공업공장이 가동중에 있다고 하나,¹³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설비가 낙후하여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구소련의 체제 붕괴 이후 대외관계 축소 및 북한의 경공업 기술수준 낙후, 납기지연 속출 등으로 양국간 경공업분야 협조가 감소됨에 따라 북한은 일본의 조총련계 상공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경공업부문(특히 섬유공업)의 위탁가공에 주력하고 있다.

경공업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공업 실태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섬유공업은 화학사(인건사와 화학섬유)와 모사, 면사를 혼방한 혼방직 계열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석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비날론 공업이 발달하였다.

130) 『조선중앙통신』(1990.10. 8)

V. 경제

직물 · 섬유 생산량

(단위 : 직물 : 억m², 섬유 : 만M/T)

구분 \ 년도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직물	1.7	1.9	1.5	1.1	1.1	1.0
섬유	4.2	5.8	5.6	3.5	2.9	2.6

* 출처: 한국은행

화학섬유공업은 함흥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청진화학섬유공장과 함흥모빌론공장 등에서 연간 약 17.7만톤의 화학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방직공장으로는 북한 최대의 종합방직공장인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하여 강계 · 사리원 · 개성 · 구성 방직공장 등이 있다.

또한 모방직계열로 함흥모방직, 신의주모방직공장 등이 있고, 견직계열로는 평양비단합영회사(평양공장, 박천공장), 영변견직, 함흥견직공장 등이 있으며, 헤산아마방직공장, 평양제사공장, 청천강합영회사(희천제사공장) 등도 중요한 섬유공장이다.

피복공업은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 · 합작 사업으로 봉제의류, 임가공 부문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관련 공장의 설립을 활발히 추진하여 북한 최대의 합영회사인 모란봉합영회사의 대동강피복공장 등 15개 공장을 건설하였다. 1992년에는 UNDP의 지원하에 은하무역총국이 컴퓨터 피복 설계기술을 도입하는 등 공장 현대화가 추진되었다. 2002년 들어서는 ‘흐름식’ 생산공정을 갖춘 평성피복공장의 조업을 시작하고¹³¹⁾ 신의주 신발공장에서 제화 컨베이어를 도입하는 등 생산공정 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31) 『로동신문』(2002.12.21)

(3) 사회간접자본

(가) 전력

북한의 전력생산은 수력발전과 무연탄 위주의 화력발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수자원이 풍부한 데다 지형상 산악지형이 많은 유리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일제 때부터 수풍, 장진강, 부전강발전소 등 수력발전소 위주의 건설을 추진한 결과 1960년대까지는 거의 수력의존적인 전력생산구조였다.

그러나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발전량의 기복현상과 원거리 송·배전상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는 자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무연탄을 이용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에도 중점을 두어 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까지 수력 대 화력의 설비 비율은 5 : 5 정도가 되었다. 북한의 발전소 건설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건설 추진이 급속도로 둔화되었다.

북한의 수력발전시설은 시설용량 80만kW의 수풍발전소를 비롯하여 운봉, 서두수, 허천강, 장진강, 강계청년, 부전강, 대동강, 태평만, 위원, 태천발전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수풍, 운봉, 태평만, 위원 등 4개 수력발전소는 중국과 공동으로 관리·이용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의 소규모 공장과 가정용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설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기간도 짧은 설비용량 1만kW 이하의 중소형발전소¹³²⁾ 건설을 추진하여 2002년말 현재 총 7,78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완공하였다

132) 중소형발전소 건설은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 전원회의(1979.12)결정에 따라 본격 추진되었으나 낮은 발전효율, 빈번한 설비고장 등으로 1990년대 초반 정책적 관심이 약화되었다가 김정일시대에 들어와 '전력법'(1996. 1) 및 '전력법시행규칙'(1997. 1) 채택시 중소형발전소의 '전군중적 건설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형 발전소가 용량이 지나치게 작고 갈수기 등 계절적 변화에 민감하여 전력 증산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1999년부터는 금야강발전소 등 1만kW 이상의 대규모 수력발전소¹³³⁾ 건설에 주력하는 한편 계단식 건설을 통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용량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발전설비용량 160만kW의 북창화력을 비롯하여 평양화력, 선봉화력, 청천강화력, 청진화력, 순천화력, 동평양화력 등이 있다. 이 중 평양, 선봉, 북창, 청진화력은 구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된 것이며, 동평양화력도 당초 구소련 지원하에 착공되었으나 이후 투자재원 부족으로 건설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만 가동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보다는 기존 화력발전소의 설비 보수에 주력하고 있다. 2002년말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총 777만kW로서 수력 대 화력의 설비 비율이 6 : 4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밖에 북한은 1992년 9월에 '자연에너지개발이용센터'를 창립하여 풍력, 조수력, 태양력 등 자연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1998년 10월 평양시 강서구역에 200여개의 소형 풍력발전기 설치, 황해남도 벽성군에 수천kW급 조수력발전소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아직 시험단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전력공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먼저 수력발전소의 경우 산림 황폐화에 따른 수자원의 감소, 기존 수력발전소의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가동률이 낮고 계절에 따라 전력생산의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며, 화력발전소의 경우도 주된 연료인 석탄 생산과 수송이 한계에 도달하여 발전소의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송배전체계의 불합리로 누전율이 높고 전압이 고르지 못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133) 김정일이 1999년 1월 18일 태천발전소 현지지도시 북한 전역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이후 금야강발전소, 예성강발전소, 안변청년발전소 등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다.

2003년에 다국적기업인 ABB사와 ‘초고속 송전망사업 양해문’에
 조인¹³⁴⁾하는 등 발전 및 송배전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 및 송배전체계 상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력
 사정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전설비 능력 및 발전량

연도	발전설비능력(만kW)			발전량(억kWh)		
	계	수력	화력	계	수력	화력
1985	596.0	336.2	260.0	252.8	124.4	128.4
1990	714.2	429.2	285.0	277.4	156.1	121.3
1991	714.2	429.2	285.0	263.0	150.3	112.7
1992	714.2	429.2	285.0	247.0	141.9	105.1
1993	714.2	429.2	285.0	221.3	132.9	88.4
1994	723.7	433.7	290.0	231.3	138.4	92.9
1995	723.7	433.7	290.0	230.0	142.0	88.0
1996	738.7	443.7	295.0	213.0	125.0	88.0
1997	738.7	443.7	295.0	193.0	107.0	86.0
1998	738.7	443.7	295.0	170.0	102.0	68.0
1999	738.7	443.7	295.0	185.7	102.7	83.0
2000	755.2	459.2	296.0	193.6	101.6	92.0
2001	775.2	479.2	296.0	201.5	105.5	96.0
2002	777.0	481.0	296.0	190.4	106.2	84.2

* 출처: 통일부·한국은행

134) 『조선중앙방송』(2003. 5.19)

(나) 수송

북한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철도 및 도로망은 비교적 지대가 낮은 서해안지대에 발달되어 있으며, 동해안 지대에는 해안선을 따라 철도와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다.

수송체계의 특징은 철도수송이 주축을 이루고 도로수송, 하천 및 해상 수송은 철도수송과의 연계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망은 서해안축, 동해안축, 동서횡단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서해안축으로는 경의선(개성-신의주), 황해청년선(사리원-해주), 평남선(평양-평남 온천), 평덕선(대동강-덕천-구장청년), 평북선(정주-청수), 만포선(순천-만포)이 있으며, 동해안축으로는 평나선(평양-나진), 강원선(고원-평강), 신흥선(함흥-부전), 허천선(단천-홍군), 금골선(여해진-금골), 백두산청년선(길주-혜산), 함북선(반죽-회령-나진), 무산선(고무산-무산)이 있고, 동서횡단축으로는 평원선(평양-고원), 청년이천선(평산-세포청년)이 있다.

국제철도 노선으로는 현재 신의주-단둥(중국), 남양-투먼(중국), 만포-지안(중국), 두만강역-햏산(러시아)의 4개 노선에 화물열차 또는 여객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대중국 철도노선의 경우 국제열차가 평양-베이징간 주 4회 정기운행되며, 청진-남양-투먼-옌지로 연결되는 노선은 중국과의 중계화물 수송에 이용되기도 한다.

북한은 철도수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1차 7개년계획 이후 기존 철도의 전기화·광궤화와 함께 새로운 철도를 부설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지역내에서 수송수단이 가장 취약한 북부지구의 자강도 만포에서 양강도 혜산을 연결하는 북부순환선(북부철길)을 완공(1993.2)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중점추진 목표를 철도전기화의 완성 및 철도운영의 과학화를 이루어 철도화물 수송량을 1.6배로 늘린다는 것이었으나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그 성과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말 현재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235km(그 중 98%가 단선철도)이며 전철화 구간은 4,211km, 지하철 총연장은 34km이다.

북한의 도로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경사가 심하고 노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포장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도로운영체계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되는데 일반도로의 경우 1급에서 6급까지 나뉘어지며, 고속도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관리하고, 1~3급도로는 도에서, 4~5급도로는 군에서, 6급도로는 리에서 관리한다.

도로 총연장은 2001년말 현재 2만 4,449km인데, 이중 포장도로는 3,016km로서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2002년말 현재 고속도로는 평양-순안(15km), 평양-남포(44km), 평양-원산(189km), 평양-개성(170km), 평양-향산(120km), 사리원-신천(30km) 등 8개 노선으로서 총연장 길이는 724km에 달한다.¹³⁵⁾

해상운송은 해안선이 동서로 단절된 불리한 여건과 주요 무역대상국인 중국, 러시아 모두 육상운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부문의 수송 분담률은 매우 낮다. 항만은 입지조건이 유리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발달되어 있으나, 1986년 5만톤급 선박의 통과가 가능한 서해갑문(남포갑문)이 완공됨으로써 서해안의 해상수송능력은 물론 대동강, 재령강을 이용한 하천수송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항만 하역능력은 1970년대까지는 기존시설의 복구 및 정비 등 현상 유지에 그쳐 매우 빈약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외무역 증대 방침에 따라 주요 무역항인 청진, 남포, 해주, 송림항 등의 확장공사를 적극 추진한 바 있어 해운무역수송량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2002년 말 현재 항만하역 능력은 연간 약 3,55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의 경우 국내노선으로는 평양의 순안에서 삼지연, 어랑, 선덕, 원산 등의 11개 구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승객이 적고 비용이 비싸 부정기적이다. 이용자는 주로 업무상의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용객은 주로

135) 북한의 고속도로는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것이다.

당 간부나 외국인 등이다.

국제공항으로는 순안비행장이 유일한데, 북한의 고려항공은 2002년 말 현재 중국과는 평양-베이징, 평양-셴양, 평양-마카오 등 3개 노선이, 러시아와는 평양-모스크바-베를린, 평양-블라디보스톡, 평양-하바로프스크 등 3개 노선이 있으며 이외에도 평양-방콕 등의 노선을 주1회 내지 2회 운항 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항공노선은 승객부족 등으로 결항상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58년 구소련과 처음으로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파키스탄, 이라크 등의 서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유고, 아프카니스탄, 독일, 불가리아 등 세계의 약 40여개 국가와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다) 통신

북한에서의 통신이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보도매체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한다.¹³⁶⁾ 따라서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분류하는 통신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을 ‘체신’으로 부르고 있으며, “인민들의 통신 및 방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전신, 전화, 우편, 방송 등 여러가지 체신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¹³⁷⁾

체신사업은 전기통신(유·무선 전신, 전화), 우편통신(편지, 소포, 송금), 방송(유·무선, 라디오, TV) 등 3개부문으로 분류되며, 내각의 체신성을 비롯하여 체신관리국과 체신소, 전신전화국, 방송국 등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된다.

북한의 통신부문은 지금까지 그 기능이 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에게 정책을 전파하는 데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대내전화망은 평양과 도·시·군·리간에 종적으로 연결된 중앙집

136) 『백과전서 4』(1983) 참조.

137) 『경제사전 2』(1985), pp.514~515.

중계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교환시스템에 의존하여 왔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기간중 평양을 중심으로 대도시간의 현대적인 통신망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였다. 1995년 1월에는 300km에 이르는 평양-함흥간 광케이블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1998년 2월에는 평양-신의주, 신의주와 평안북도내 16개 시·군 및 3개 노동자구 사이의 400km에 달하는 광섬유케이블공사 및 전화 자동화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50개 시·군 가운데 36개 시·군의 광섬유 통신망 공사를 완료한데 이어¹³⁸⁾ 2003년 10월에는 북한 전역의 시·군까지 동공사를 확장·완료하였다.¹³⁹⁾

국제통신망은 1986년 3월 평양 근교에 일본, 프랑스 기술진의 참여로 위성통신지구국이 건설되어 위성통신을 통한 직접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3년 10월 현재 총 6개국과 위성 또는 광케이블을 통해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타 국가들과는 이들 6개국을 통한 중계방식으로 통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북한의 조선체신회사는 2002년 11월에 평양시·나선시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북한이 개통한 휴대전화는 유럽형 GSM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화망 분포와 같은 체계로 전 지역에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주요기관간 「광명」(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우편을 교환하고, 자료도 공유하는 등 인터넷처럼 사용하고 있다.¹⁴⁰⁾

한편 북한은 1990년 8월 정지위성과 궤도위성으로부터 기상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기상수문국 기상위성 수신소를 준공함으로써 중장기 기상예보가 가능하게 되었다.¹⁴¹⁾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 감소 및 해상,

138) 『평양방송』(1998. 9.28)

139) 『조선중앙방송』(2003.10. 1): 북한은 전국체신부문일군대회를 통해광섬유통신망 구축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140) 『조선신보』(2003. 2. 1)

141) 『평양방송』(1990. 8.27)

항공운수의 안전운항은 물론 해류분석으로 어족자원의 분포실태 파악 등 농수산업 분야에서 기상예보의 활용도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마.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1) 대외무역

(가) 대외경제정책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을 국가독점의 원칙, 자급자족경제의 원칙,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경제 완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왔다.

국가독점의 원칙이란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모든 대외경제활동을 국가의 직접적 혹은 통일적인 통제와 사전적 계획하에 집행한다는 것이며, 자급자족의 원칙은 대외경제기능을 계획경제의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물자 조달을 위한 역할로 국한시킨다는 의미이다. 호혜평등의 원칙이란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모든 무역관계를 선·후진국간의 불균등 교환을 통한 약탈적 관계로 인식하고, 북한과 정치적·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폐쇄적·소극적 대외경제정책 추진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제분업에 의한 무역의 이익과 효율성이 경시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은 주로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시기별로 보면, 1960년대까지는 사회주의국가로부터의 유·무상 원조정책을, 1970년대는 선진자본주의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정책(기술 포함)을,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각각 합영법과 경제특구에 의한 외자유치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대내적으로 자본주의 풍토를 배격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편입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대외무역 활성화 및 경제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변화된 국제환경에 부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대내적으로는 6개년계획이 착수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1960년대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삭감된 데 이어 원조가 대부분 차관으로 대체되었고 그 이전에 받았던 차관의 상환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심각한 외채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말부터 북한은 서방의 선진 기술과 자본의 도입과 함께 수출증대와 외화 수입증대를 위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대외무역 전담회사인 대성무역상사와 봉화무역상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대성은행과 금강은행 등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⁴²⁾ 1970년대는 북한이 서방으로부터 상업차관 도입을 적극 추진한 시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기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 가격이 급락하고 수입품목인 기계류와 석유 등의 가격은 급등함에 따라 북한은 외채지불 불능 상태에 빠져 서방으로부터의 신규차관 도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제6차 당대회(1980.10),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1984.1) 등에서 자본주의국가 또는 제3세계국가와의 교역 증대를 위한 여러가지 방침들을 제시하면서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¹⁴³⁾ 특히 ‘합영법’ (1984.9)을 통해 1970년대의 차관도입 형태를 넘어 북한내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도입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1975년 이후의 외채상환 및 상업차관 도입 불능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중국의 중외합작경영 기업법(1979.8) 제정과 경제특구 설치의 성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1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모스크바: 소련과학원 세계사회주의체제 경제연구소, 1985)의 한글 번역판 『북한의 정치와 경제』(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204~208.

143) 제6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에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에서는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여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외경제 정책으로의 변화는 1990년대에 들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에서 계획 착수 이전에 비해 무역량을 3.2배로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나, 완충기(1994~1996) 과업의 하나로 설정된 무역제일주의 방침, 그리고 새로운 무역체계 도입¹⁴⁴⁾ 등은 대외경제부문 강화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1991년 12월에 실시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특구 정책과 지대활성화조치(1997.6), 잇따른 외자유치 관련법령의 제·개정과 대규모 외자유치설명회, 개정헌법(1998.9)에서의 대외무역 및 경제개방 확대 강조 등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대외경제 정책의 변화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은 대외경제 정책에 있어 그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남한, 동남아, 유럽 등에 연평균 300여명의 경제시찰단·연수단을 파견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을 실시하는가 하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신의주(2002. 9), 금강산(2002.10), 개성(2002.11)등 경제특구를 잇따라 지정, 보다 개방적인 대외경제협력의 모습을 보였다.

(나) 대외경제담당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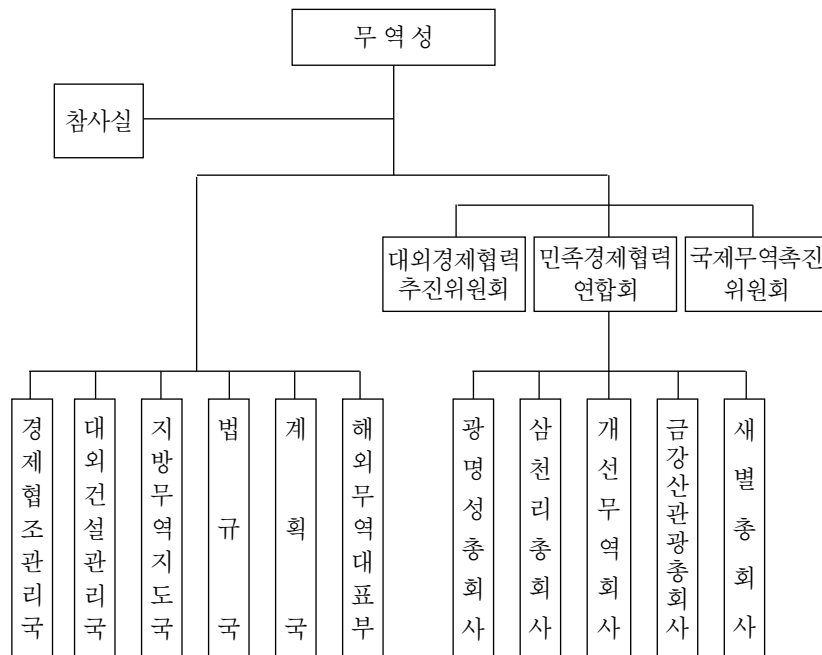
북한은 1998년 9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한 이후, 대외무역 관련조직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한 조직개편의 특징은 무역성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점과 무역상 아래 6명의 부상이 지역별 담당체계를 갖췄다는 점이다. 또한 각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실무경험이 많은 젊은 인물들이 많이 등용되었다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144) 리신호,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 진중합출판사, 1992. 4), pp.30~32.

북한은 종래의 정무원을 내각체제로 바꾸면서 대외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 내각에 무역성을 신설하여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도(직할시)는 1개의 무역회사만 보유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무역성의 통일적인 관리를 받게 함으로써 무역성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시켰다.

즉 무역성은 무역업무는 물론 세관업무, 외국회사와의 합영사업 및 운송, 대남교역 등을 담당한다. 무역성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제협조관리국, 대외건설관리국, 지방무역지도국, 법규국, 계획국, 무역대표부 등의 조직을 두고 있다.

대외경제 관련 조직



특히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 유치 및 개방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을 주로 관장하고 있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산하에 많은 무역회사를 둔 무역업무 전담기구로서, 당초에는 일본과의 무역관계를 주로 맡아 왔는데 최근에는 전반적인 서방국가와의 무역뿐 아니라 외자유치 부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사한 조직을 통폐합시키고 무역 정책 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에 역점을 두었다. 기존의 대외경제위원회 소속의 13개 회사도 무역성 소속으로 이관시켰으며, 종전의 대외건설총국과 남남합작회사를 '대외건설관리국'으로 합병하고, 경제합작국과 합영지도국은 '경제협조관리국'으로 통폐합하였다.

한편 대남교역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에는 피복·경공업·농수산물을 전문으로 다루는 광명성총회사, 대우남포공단사업을 비롯하여 전자·중공업, 화학분야에서의 무역 및 투자사업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삼천리총회사, 계약재배 등 주로 농업부문의에서의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는 개선무역회사, 그리고 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금강산관광총회사 등을 두고 있다.

(다) 거래형태와 결제방법

종래 북한의 무역거래 형태는 호혜평등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주의국가나 일부 개도국과는 쌍방간의 장기무역협정을 통해 매년 수출입 품목, 규모 등을 결정하는 한편, 1년간의 교역결과에 대해서는 쌍방의 결제은행간에 청산결제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련 및 동구제국의 붕괴로 사회주의권 시장이 상실됨에 따라 북한의 무역거래형태 및 결제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북한과 구소련은 1990년 11월 '조·소 무역결산체계 변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쌍방간에는 1991년부터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중국간에도 1992

년부터 이와 같은 결제방식을 적용키로 합의하였다.¹⁴⁵⁾

한편 서방권 국가와의 무역은 교역절차나 대금결제방식에서 자본주의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역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즉 자본주의 국가와는 청산지불협정을 거의 맺고 있지 않아 거래건별로 대금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일반 상업신용장 방식의 결제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라) 대외무역 현황

북한의 무역추세를 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1980년도와 1980년대 말 무역 규모는 1970년도 비해 각각 4.7배, 6.6배나 증가하였다.

다만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전반에는 다소의 기복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유류과동과 주력 수출품인 비철금속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1980년대 전반에는 대서방권 외채상환 문제 및 광산물의 수요가격 폭락 등에 따라 무역이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보였다.

북한의 무역추이

(단위 : 억달러, %)

구 분	1970	1980	1990	1995	1998	2000	2001	2002
수출	3.4	15.7	19.6	7.4	5.6	5.6	6.5	7.3
수입	4.0	18.8	27.6	13.1	8.8	14.1	16.2	15.3
계	7.4	34.5	47.2	20.5	14.4	19.7	22.7	22.6
증가율	9.1	16.6	3.2	△15.3	△11.3	33.1	15.1	△0.4

* 출처: 통일부 및 KOTRA 추정 결과

* 주: 증가율은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145) '1992년도 조·중 무역협정' (1992. 1.26)

V. 경제

북한의 무역규모는 1988년의 52.4억달러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였다. 특히 1991년과 1994년에는 최대 교역상대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거래방식이 경화결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전년보다 각각 42.4%와 20.2% 급감하였다. 1998년 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중국과의 교역 감소 등으로 북한의 무역규모는 14.4억 달러로 1970년대 중반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북한은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에 따른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무역이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북한의 무역 총액은 22.6억달러, 무역의존도는 13.3%, 무역적자는 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국가별 무역량 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1990	1998	1999	2000	2001	2002
중 국	합 계	4.8	4.1	3.7	4.9	7.4	7.4
	(수출)	(1.2)	(0.6)	(0.4)	(0.4)	(1.7)	(2.7)
	(수입)	(3.6)	(3.5)	(3.3)	(4.5)	(5.7)	(4.7)
일 본	합 계	4.8	3.9	3.5	4.6	4.7	3.7
	(수출)	(3.0)	(2.2)	(2.0)	(2.6)	(2.2)	(2.3)
	(수입)	(1.8)	(1.7)	(1.5)	(2.0)	(2.5)	(1.4)
러 시 아	합 계	25.7	0.6	0.5	0.5	0.7	0.8
	(수출)	(10.5)	(0.1)	(0.1)	(0.1)	(0.1)	(0.1)
	(수입)	(15.2)	(0.5)	(0.4)	(0.4)	(0.6)	(0.7)
기 타	합 계	11.1	5.8	7.1	9.7	9.9	10.7
	(수출)	(5.5)	(2.7)	(2.6)	(2.6)	(2.5)	(2.2)
	(수입)	(5.6)	(3.1)	(4.5)	(7.1)	(7.4)	(8.5)

* 출처: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과 관련하여 남북한간의 교역규모를 보면, 1988년 7월의 '7·7 특별선언' 및 동년 10월의 '남북한 물자교역지침' 시행 이후 집계된 지난 14여년 동안에 교역건수 및 품목수, 교역량에 있어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1995년부터 남한은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02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북한의 2대 교역국으로 올라섰다. 2002년 말까지의 남북교역은 35.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남북간 연도별 반출입 통관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증 가 율
1989	18,655	69	18,724	-
1990	12,278	1,188	13,466	-28.1
1991	105,719	5,547	111,266	726.3
1992	162,863	10,563	173,426	55.9
1993	178,167	8,425	186,592	7.6
1994	176,298	18,249	194,547	4.3
1995	222,855	64,436	287,291	47.7
1996	182,400	69,639	252,039	-12.3
1997	193,069	115,270	308,339	22.3
1998	92,264	129,679	221,943	-28.0
1999	121,604	211,832	333,437	50.2
2000	152,373	272,775	425,148	27.5
2001	176,170	226,787	402,957	-5.2
2002	271,575	370,155	641,730	59.3
총계	2,066,292	1,504,613	3,570,905	

* 출처: 통일부

* 주: 1) 남한의 반·출입 기준

2) 1995년 교역금액에는 대북 쌀지원 2억 3,721만 달러 제외

2002년말까지 남북교역 누계를 살펴보면,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은 20.7억달러로서, 남북교역이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89년의

V. 경제

0.4%에서 2002년에는 37.0%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반출은 15.5억달러로서 1997년 이전까지는 남한의 절대적 반입 위주의 교역구조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위탁가공 원부자재, 식량 등 대북지원물품, 금강산관광 개발 등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자 반출이 크게 증가하여 반출이 반입을 초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도 교역품목의 구조를 살펴보면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36.8%), 섬유류(31.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출의 경우는 농림수산물(29.8%), 섬유류(18.2%), 기계류(10.2%)의 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합영사업

합영기업이란 “한 나라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가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의 공동분배,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창설하는 기업”을 말한다.¹⁴⁶⁾ 이러한 합영기업은 국제간 경제협작의 한 형태이나 기업의 경영과 손실에 대하여 출자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기업이윤을 공동분배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전문 5장 26개조의 ‘합영법’¹⁴⁷⁾을 제정하여 서방 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 회사, 기업소가 북한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이 이와 같이 합영기업 유치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야기된 외채문제로 서방국가로부터의 외자도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채무상환 부담이 없는 새로운 외자유치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1979년 8월에 중국이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제정, 시행한 데 자극받은 바 크다.

146)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1201.

147) 동 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1994. 1.20)으로 이후 다시 전문 5장 47개조로 개정되었다.

북한은 합영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1985년에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및 ‘외국인 소득세법 시행세칙’ 등을 제정한 바 있다. 1986년 8월에는 조총련과 합영사업의 주선·조정·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각각 60만달러씩 출자하여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자유치를 통한 기술 및 선진설비 흡수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합영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사업이었고 유치실적도 미미하였다. 북한이 1984년 합영법 발표 이후 주로 조총련 상공인을 대상으로 합영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모란봉합영회사, 평양피아노합영회사, 국제화학합영회사 등 일부 대표적인 합영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운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일 조총련계 기업의 취약한 자금사정 및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금의 대부분이 100만달러 내외의 소액 투자였기 때문에 실제 북한 경제에 대한 발전 기여도가 낮았다. 뿐만 아니라 조총련기업이 북한이 당초 희망하고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중화학 및 첨단산업 관련부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생필품 중심의 소비재 경공업과 서비스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1989년을 고비로 감소세를 보이던 조총련과의 경협이 김일성 사후에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조총련과의 합영사업은 합영사업이라기보다는 조총련 동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현금·애국사업 성격의 태생적 한계로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체제붕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기반이 와해되고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북한은 서방자본유치를 위해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서방자본과 기술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지속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1995년부터 대내외 투자설명회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나진·선봉특구 설정을 통한 외자유치사업 역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3) 대외원조

해방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무상원조 12.8억 달러, 유상원조 34.7억달러 등 총 47.5억달러의 외국자본을 들여와 전후복구사업, 군사력 증강, 경제개발 등에 투자하였다. 이 중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20.4억 달러는 1960년대 이전에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도입된 유·무상 차관이었으며, 12.4억달러는 1970년대 들어와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유상차관이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외채상환 불능상태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서방권 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주로 구소련, 중국 등에서 약간의 차관이 제공되었을 뿐이다. 구소련은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기간 중 약 1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쌍방간에 종래 군사장비, 원유 등의 거래에 적용해 오던 소위 '우호가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물성 원조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 또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도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UNDP는 1979년 6월 북한이 동 기구에 가입한 이후 UNDP자금에 의한 대북경제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중에는 국제기구로서는 북한의 최대 경제협력상대가 되었다. UNDP의 경제적 지원은 사회주의권 붕괴 및 북한 핵문제 등으로 외국과의 경제협력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UNIDO는 북한의 기술개발과 관련한 경제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그 지원규모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995년부터는 인도적 목적의 대북 식량 무상지원이 재개되고 있는데,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체계는 UN산하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각국 정부의 직접 지원, 국제적십자사나 NGO(비정부기구) 혹은 개인·기업 등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UN산하 각종 국제기구들의 대북지원의 대부분은 공여국가의

기여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은 각국 정부의 지원과 많은 부분이 상당히 중첩된다.

국제기구에 의한 대북지원은 1995년 8월 23일 북한의 UN대표부가 유엔인도지원국(UNDHA)에¹⁴⁸⁾ 긴급 지원을 공식 요청함으로써 개시되었는데,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의 대북식량지원의 주된 창구는 WFP가 맡고 있는데, 1995년 이후 2002년말 현재까지 지원된 규모는 약 11억 5,556 만달러이며, 국제 NGO를 통한 지원규모는 1억 7,342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과 EU,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별 정부차원의 무상 지원규모(누계)는 2002년말 현재 약 10억 7,978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지원으로 인해 북한에서 매년 부족한 식량 150만~200만톤중 많은 부분을 국제사회의 무상지원 물량에 의존하고 있다.

148) 국제기구를 통한 무상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은 UNDHA가 담당하였으나, 1997년에 UNDHA가 OCHA로 개편됨에 따라 현재는 OCHA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VI. 과학기술



1. 과학기술정책

가. 정책기조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27조는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0조는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51조는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각각 규정하였다.

북한헌법에 규정된 과학기술 관련 조문을 근거로 하여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정리하면, ① 기술혁명의 지속적인 추진 ②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 강화 ③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이다.

기술혁명은 사상·문화혁명과 함께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3대 혁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①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해소 ②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해소 ③ 여성들의 가사 부담 해방 등 3대 기술혁명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는 과학연구사업의 결과를 직접 생산 기술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제 경제건설과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과학기술자들과 생산노동자들이 협조하여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대중적 지혜의 발양과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은 주체사상 및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도 자체 연구인력과 독자적인 이론개발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며, 연구사업의 중점과업도 내부의 원료·연료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우선을 둔다는 것이다.

1999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제시한 이후 2000년대 들어 IT산업 등 선진 첨단기술의 개발·도입 및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1) 제1단계(1945~1960) : 과학기술기반 정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그들이 추진해온 경제계획 기간별 목표와 범위 내에서 전개되어 왔다.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기간중의 과학기술정책은 일제하에서 일본인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가동되던 각종 산업시설을 재가동하는 데 필요한 내부 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전문분야별로 재배치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¹⁾

북한은 1946년 8월 17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2호 및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 지령을 통해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 및 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북한은 당시 전문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기술자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기술이 소용되는 기관에서 종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같은 해 8월까지 조사등록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을 국영직장에 배치하였다. 같은 해 10월 2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

1) 『북한법령집 4』(서울: 대륙연구소, 1990), p.232.

원회 결정 제89호로 ‘공업기술자 사정과 검정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공업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크게 기술등급과 기수등급 2종으로 분류하고, 기술등급은 다시 고급기사, 기사로 기수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 관리하였다.²⁾

1947년에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정비에 착수하여 같은 해 2월 7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81호를 발표, 중앙연구소를 설치하였다.³⁾ 당시 중앙연구소는 지질·광업·금속·화학·섬유·기계·전기·서무 등 8개 부로 조직되었다.

같은 해 6월 20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4호인 ‘기술교육진흥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결정서는 “과행적인 일제식민지적 경제조직을 숙청하고 자주적인 인민경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기술의 획득과 기술자의 확보는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기본 임무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기술교육의 강화, 전문기술교육자의 이직 금지, 기술전문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실험기구·기계자료·실습장 등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확보에 착수토록 하였다.⁴⁾

다음 해인 1948년 11월 12일에는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에 의해 설치하였던 ‘국가기술자격검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국가기술자격심사위원회’를 내각결정 제71호에 의해 신설하고 기술자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였다.⁵⁾

전쟁기간 중인 1952년 2월 28일에는 내각결정 제38호에 의해 교육성 산하에 있던 각종 기술전문학교들을 관련 성(省)과 내각 직속의 국(局)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산학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전쟁수행과 전후복구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952년 4월 27일에는 평양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제1회 전국과학자

2) 앞의 책, pp.234~236.

3) 앞의 책, p.242.

4) 앞의 책, pp.243~244.

5) 앞의 책, p.237.

VI. 과학기술

대회를 소집하고 토의 결과에 따라 5월 7일에는 내각결정 제86호로 과학 아카데미를 설치하였다.⁶⁾

과학아카데미는 전후 시설복구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과학연구사업의 통일적이고 계획적인 조직·지도를 위해 창설되었다. 그러나 이때 창설된 과학아카데미는 같은 해 10월 9일 또다시 내각 결정 제183호인 ‘과학원 조직에 관하여’를 채택함으로써 과학원 조직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⁷⁾

전후복구 3개년계획 기간 중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지원과 함께 기술협조를 얻어냄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전후복구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구소련을 비롯한 동독, 체코, 불가리아, 중국, 알바니아 등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과 과학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와 과학기술자의 상호 파견을 통해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북한은 1956년 3월 26일 구소련과 ‘연합 핵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핵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1959년 9월 7일에는 ‘조·소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원자력 연구의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였다.

1960년 8월에는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를 개최하고 1960년대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결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인민경제 전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개선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과학원 직제 변경을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6) 앞의 책, p.228: ‘과학아카데미’의 실제 창립일은 1952년 8월 15일이다.

7) 앞의 책, p.229: ‘과학원’의 실제 창립일은 1952년 12월 1일이다.

(2) 제2단계(1961~1977) : 3대기술혁명 추진

이 기간은 북한의 제1차 7개년계획과 6개년계획 추진기간에 해당하며, 중공업 우선정책과 4대 군사노선을 강화하기 위해 3대기술혁명⁸⁾에 주력했던 시기이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과학기술정책을 보면, 짧은 기간 내에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자체 부존자원에 입각한 자립적 공업체제 확립에 과학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과학분야의 개척과 원자력을 비롯한 최신 과학 연구성과들을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수행, 기초과학부문의 적극적인 발전 추구하고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⁹⁾

과학기술 연구의 세부목표는 첫째, 무연탄에 의한 제철방법 연구 둘째, 무연탄 가스화에 대한 연구 셋째, 산소열법에 의한 카바이트 생산방법 및 갈탄의 고온 건류와 같은 과제의 완전 해결 넷째, 방사선 초음파, 고주파 등의 연구 및 이를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 다섯째,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 연구 강화 여섯째, 기간중 46만명의 기수 및 중등 전문가와 18만명의 기사 및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당대회 개최 직전인 1961년 7월 28일에는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시킬데 대하여’ (내각 결정 제127호)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결정에서는 첫째, 교수 교양사업에 필요한 교과서·교재 및 출판 사업을 뒷받침하는 문제 둘째, 대학에서 과학연구사업과 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 셋째, 대학교원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들을 공장·기업소에 파견하여 실습을 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¹⁰⁾

8) 『현대조선말사전』(1988)은 3대기술혁명을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9)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2』(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52~56.

10) 『북한법령집 4』(서울: 대륙연구소, 1990), pp.248~252.

VI. 과학기술

북한은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계획의 과학기술 발전 목표에 따라 과학자·기술자의 대량 양성을 위해 40개의 4년제 공장대학을 새로이 설치하였다.¹¹⁾

1961년에는 고급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박사원을 증설한데 이어 그 이듬해인 1962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분야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어 1963년 12월 17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과학기술분야 사기 진작을 위해 과학상을 제정하였다. 1964년부터는 학사(우리의 석사)양성기관인 연구원의 연한을 종래의 3년에서 2~4년으로 조정하였고 1967년부터는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¹²⁾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 기간중에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요구되는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낙후된 각종 산업생산기술의 개발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다.¹³⁾ 특히 1972년 12월에는 ‘자연과학부문일군대회’를 소집하고 김일성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6개년계획 기간 중 과학연구사업은 금속·화학공업부문의 자재와 설비의 질을 제고시키며, 특히 석유화학에 기초한 유기합성공업과 알루미늄 등 경금속기지 창설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도체, 원자력, 전자공업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분야 연구사업을 추진할 것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사회주의 경쟁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상훈 제도를 강조하였다. 1970년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인민설계가·공훈설계가 칭호’를 제정한 바 있고, 1972년 2월에는 ‘공훈기계제작 칭호’를, 1973년 7월과 9월에는 중앙인민위원회가 각각 ‘새 기술혁신 봉화상’과

11) 40개 공장대학중 24개는 1960년대 말에 신설하였다.

12) 9년제 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 회의(1966.11.12)에서 결정되었다.

13)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3』(서울: 국토통일원, 1988), p.147.

‘인민과학자·공훈과학자 칭호’를 제정하였다.¹⁴⁾

기술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기간중 기술자와 전문가의 수를 6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또한 전후복구가 완료된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대북경제지원 감소와 기술협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6개년계획 기간중 서방으로부터 설비와 기술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3) 제3단계(1978~1994) : 3대정책(주체화·현대화·과학화) 추진

이 기간은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제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등 3대 정책을 추진한 시기이다. 따라서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치는 것”과 “기술혁명을 심화 발전시키는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세부 목표를 보면 ① 공업의 주체성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 ② 북한 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설비 제작을 위한 기계공학의 연구발전 ③ 벼, 옥수수 등 곡물과 원예작물의 품종개량 연구 ④ 과학연구 여건 강화 등이다.¹⁵⁾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1978년 2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각 전문 분야별로 ‘과학자·기술자 돌격대’를 조직하여 생산현장에 파견하고 기술혁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987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 회의는 제2차 7개년 계획 기간중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화되고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자동화가 실현되는 등 생산기술 공정과 생산방법 개선에서의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였다.

14) 『북한법령집 1』(서울: 대륙연구소, 1990), p.448.

15)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4』(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42~47.

VI. 과학기술

제3차 7개년계획의 과학기술정책은 사실상 제2차 7개년계획의 연장선 상에서 추진되었다. 다만 1980년대 중반까지 과학연구사업의 주체성이 강조된 결과 기술 낙후가 심화되어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투자를 증대시키고 첨단산업에 관심을 돌린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과학기술의 고도발전을 기본과업의 하나로 내세워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함으로써 전면적인 기술개조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기간 중 국민소득의 3~4%를 과학연구사업 강화에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기술개조와 함께 극소형 전자계산기·광통신·생물공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기로 계획하였다. 특히 북한은 과학기술의 낙후가 경제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김정일 주도하에 2차에 걸친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 (1차:1988.7~1991.6, 2차:1991.7~1994.6)을 추진하였다.¹⁶⁾ 이들 계획은 당초 기계공업, 전자·자동화공업, 화학공업, 농업 등 경제 주요 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추진되었으나 그 성과는 부진하였다.

(4) 제4단계(1995~현재) : 과학기술중시사상 표방

북한은 단기간내 과학기술 발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1991년 10월 개최된 ‘전국과학자대회’를 통해 중장기 계획인 ‘2000년 과학기술발전 전망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2000년까지 기초과학 발전 토대 구축 ② 컴퓨터·원자력 이용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 ③ 금속·전자·기계공업, 경공업, 농업 등 산업 전부문의 과학기술 발전 ④ 2000년까지 연간 국민소득의 5%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박사, 준박사 등

16)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1988. 3. 7~11)에서 결정되었으며,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의 내용은 『민주조선』(1991. 8)을 통해 보도되었다.

20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 ⑤ UNDP 등 유엔산하 과학기술기구와의 교류 증대 및 지원기금 확보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 ⑥ 연구단지 조성, 공장·기업소 등 현장 연구소의 현대화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¹⁷⁾을 내세우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여 왔다. 19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면서 “온나라에 과학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도처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설정하고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를 2차례(1999. 3, 2003.10) 개최하는 한편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¹⁸⁾을 2차(1차 1998~2002, 2차 2003~2007)에 걸쳐 수립·추진하였다.

2.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체계

가. 과학기술 행정체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된 기본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당에서 과학기술정책 방향이 제시되면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술계획처에서 당 정책과 합치되도록 성안되어 과학원¹⁹⁾ 및 각급 연구기관과 각 성에 시달된다.

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은 하달된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17) 『로동신문』(1998. 6. 5)은 “주체혁명위업을 과학기술로 담보해야 하는 것이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이라고 언급하였다.

18) 과학원 창립 50돌 기념보고회(2002.11.29)에서 리광호 과학원장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기술개건과 현대화에 걸실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19) 북한은 종래의 과학원을 1994년 2월 국가과학원으로 개칭하였다가, 1998년 9월 최고 인민회의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과학원으로 다시 환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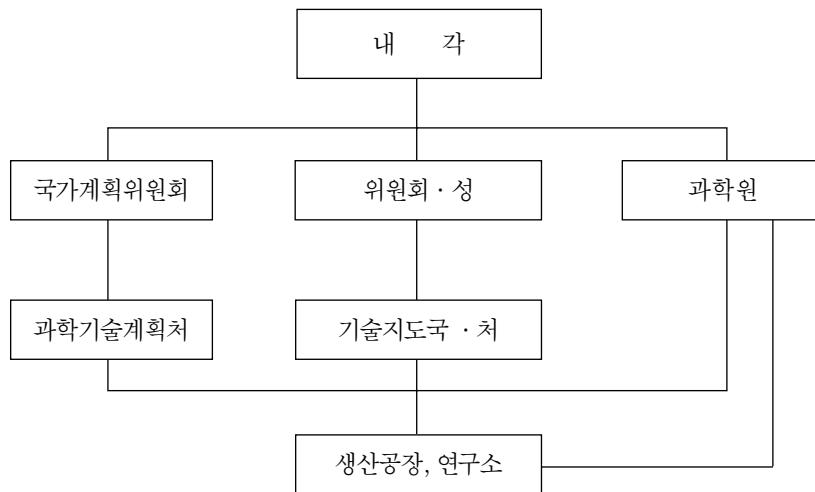
VI. 과학기술

연구개발 목표를 각 부문별로 수립하여 연구소,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 하달하고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각 직할 연구소에서 자체 연구를 추진하게 하는 동시에 타부서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한편 각 성은 해당분야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수립, 공장 및 농장에 시달하여 각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책수립 체계나 계획, 통제방식이 지나치게 당에 의존적이고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다. 정책 내용도 국가 경제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도 있는 기초과학 연구보다 실용적 차원의 응용적인 고안이나 기술개발에 치중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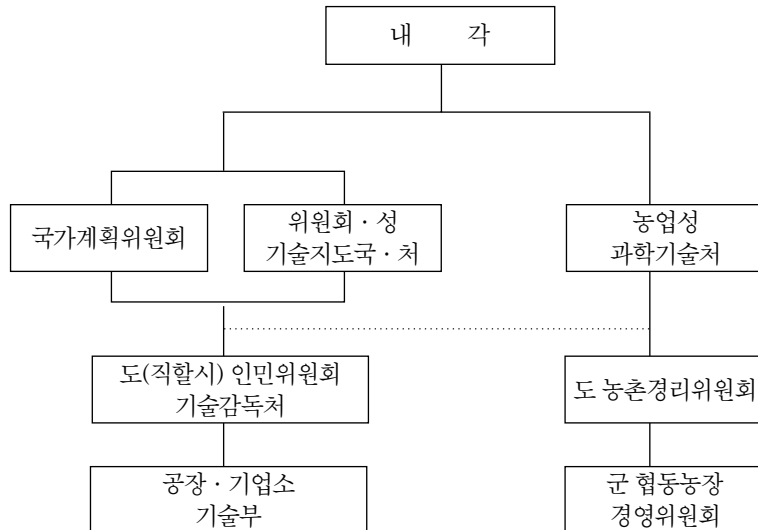
북한내각에서 경제관련 부서는 위원회·성 등의 각 행정부서로 독립 세분화되어있다. 과학기술부문은 각 행정부서내의 위원회·성별로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각종 생산 및 운용분야의 기술지도는 물론 품질 감독, 신기술 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의 중앙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중앙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국가계획위원회의 과학기술계획처는 내각에서의 과학기술 계획부서로서 당에서 결정한 정책이나 방침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각 행정 부서의 기술지도국이나 처로 전달한다. 각 위원회·성의 기술지도국이나 처에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생산기술 지도와 산하 연구소의 연구계획, 기술발전 전망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지방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과학원은 국가의 기술정책에 의거하여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외국과의 과학연구 교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17 과학자·기술자 돌격대'를 조직하여 공장·기업소 등 생산현장 기술지도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지방기술행정은 주로 시·도에서부터 공장·기업소 등 생산현장까지 이르는 공업, 농업, 수산업 등의 기술보급체계를 말한다. 중앙 기술행정 기관에서 수립한 정책과 세부지침, 시행요령 등은 각 성마다 시·도의

VI.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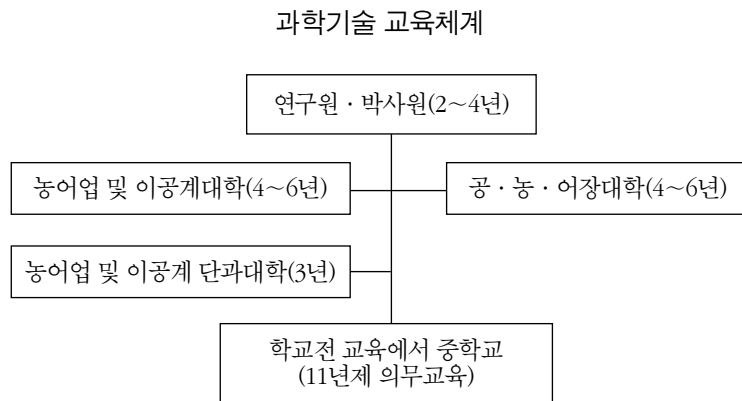
기술감독처에 하달되며, 이러한 방침은 직접적으로 지방 공장·기업소의 기술부에 전달된다. 한편 농업성의 과학기술처는 농업과학원의 연구내용과 행정적인 계획을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거쳐 각 협동농장과 농업과학지식 선전실로 지시하여 추진한다.

나. 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체계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체계는 11년제 의무교육을 받은 이후 정규교육 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규교육과정으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은 3~4년제 단과대학, 4~6년제 대학 등으로 되어 있으며²⁰⁾ 의무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을 입학시켜 인민경제 각 부문의 현장 기술간부, 전문가, 기술자 등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 및 과학부문의 중간 핵심간부 후보를 육성하는 기관으로는 연구원·박사원(2~4년) 등이 있다.

비정규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을 마친 후 공장대학과 각 대학에서 생산과 사무에 종사하면서 교육을 받는 체계이다. 현재 북한에는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 공장대학이 있다.



20) 이들은 대부분 기계대학, 의학대학, 광산금속대학 등 단과대학들이다.

1994년 북한은 기술자·전문가 수가 총 170만명이며 노력인구 6명당 1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²²⁾ 1999년에는 과학자·기술자들을 비롯한 지식인 수가 총 180여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³⁾

북한의 고급기술자 및 과학자의 양성기관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설대학, 평양체신대학 등 16개의 공업대학이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업지역에 분산되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극히 전문화된 과목만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공업대학은 소재지역의 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한 산·학협동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박사원과 연구원은 각각 박사과정과 학사과정(우리의 석사 과정에 해당)을 가지며 대학 뿐만 아니라 각종 과학원 산하 연구소에도 설치되어 있다.

연구원은 대학졸업 후 학사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2년, 통과하지 못하면 4년이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박사원은 대학교원,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자, 연구소의 고급 연구원 등 고급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61년 3월 내각 결정 제124호에 의거 설치되었는데 연구원과는 달리 통신연구생은 없고 전임연구생만 모집하고 있다.

박사원 및 연구원의 입학자격은 당성이 강하고 혁명과업 수행에 모범적인 사람중에서 선발된다. 박사원에는 학사학위 및 학직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자이고, 연구원에는 3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있다.

박사과정 및 학사과정을 밟으려면 박사원 및 연구원에 적을 두어야 하나 교육방법은 강의를 통한 방법은 채택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연구를 수행하고 나면 그 논문이나 학적의 결과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22) 『평양방송』(1995. 5. 29); 방완주 『조선개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에서는 북한의 과학자·기술자 수를 131만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23) 『조선중앙통신』(1999. 2. 9)

VI.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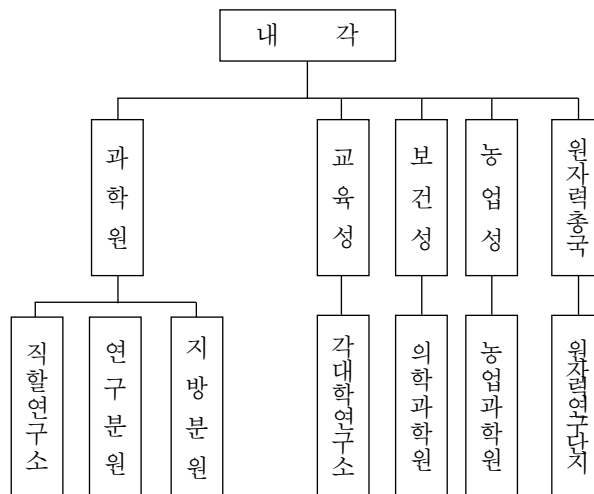
연구과정은 박사과정과 학사과정의 경우가 약간 다르다.

북한에는 박사, 학사 등의 학위 외에도 원사, 명예원사, 후보원사 등 명예 칭호가 있는데, 이는 학위보다 한 단계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 명예칭호 가운데 원사는 과학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원로학자를 과학부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학위학직 수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과학기술 연구기관

북한의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은 과학원을 비롯 농업과학원, 의학 과학원, 제2자연과학원, 각 대학 연구소 등과 각 성 산하 연구소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소는 연구실과 실험실 및 중간 실험공장 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수는 약 300여개로 추산되며 확인된 것은 200여개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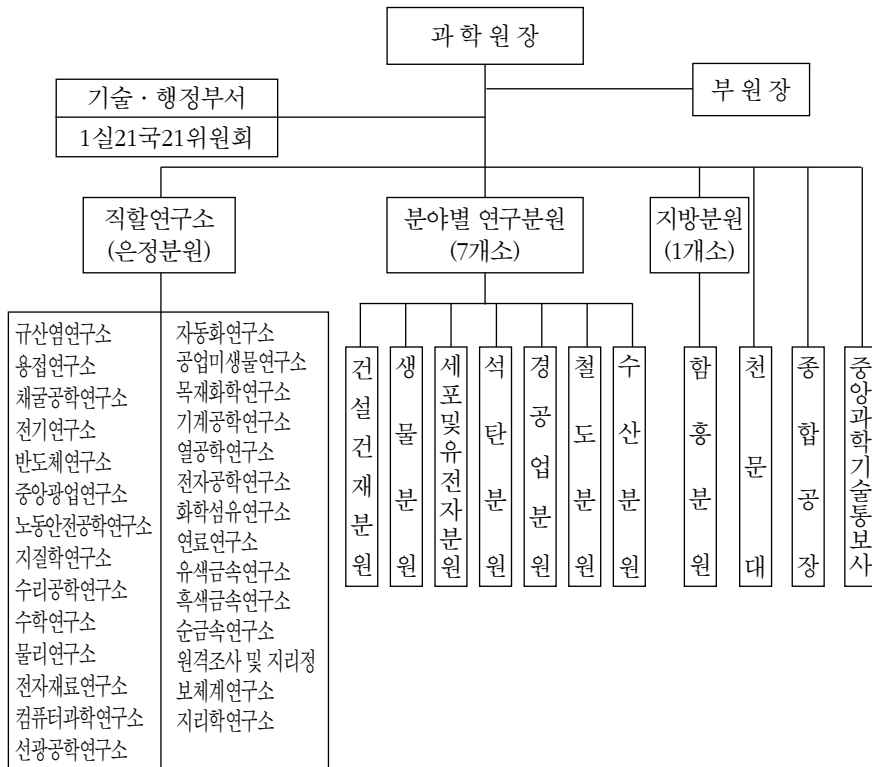
과학기술 연구기관 체계



과학원은 북한 최고의 과학연구기관으로서 평양시 은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2년 12월 창립되었다. 북한은 1982년 4월 과학원을 정무원의 행정부서로 격상시킨 바 있으며, 1994년 2월에는 국가과학원으로 개칭, 각 부·위원회 산하 연구기관들을 통합하면서 기구를 확대하였으며,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명칭을 다시 과학원으로 환원하면서 일부 조직을 분리하였다.

과학원의 기구로는 1실·21국·21위원회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그 아래에 직할연구소인 은정분원, 7개의 분야별 연구분원, 지방의 함흥분원, 자체 실험기구를 생산하는 종합공장과 천문대,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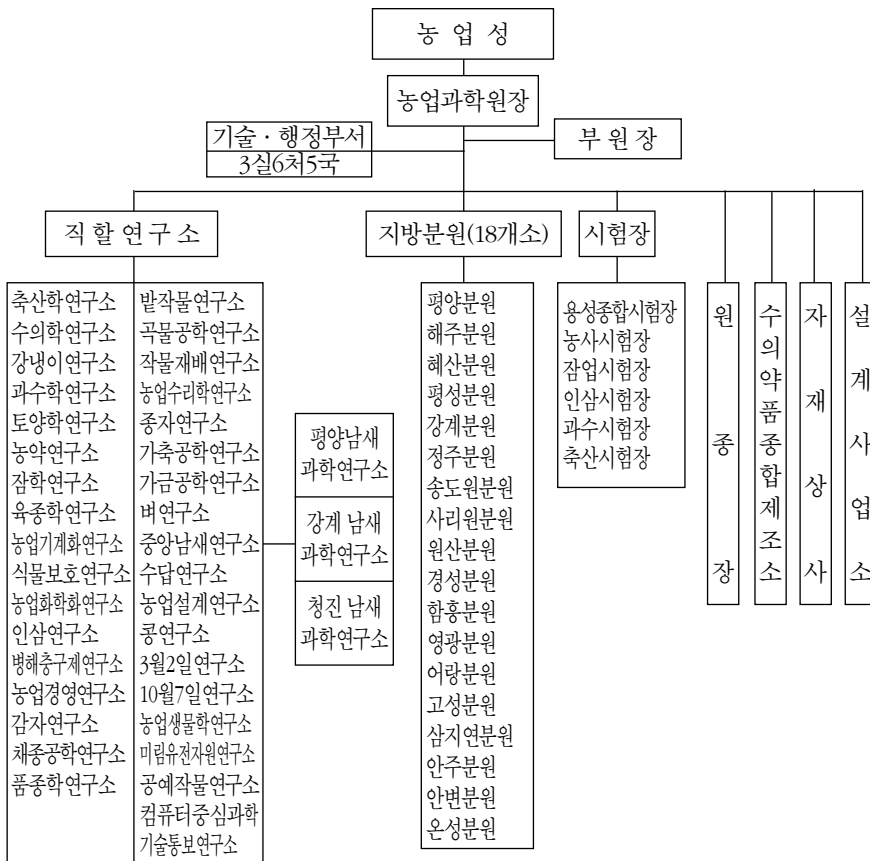
과학원 체계



VI.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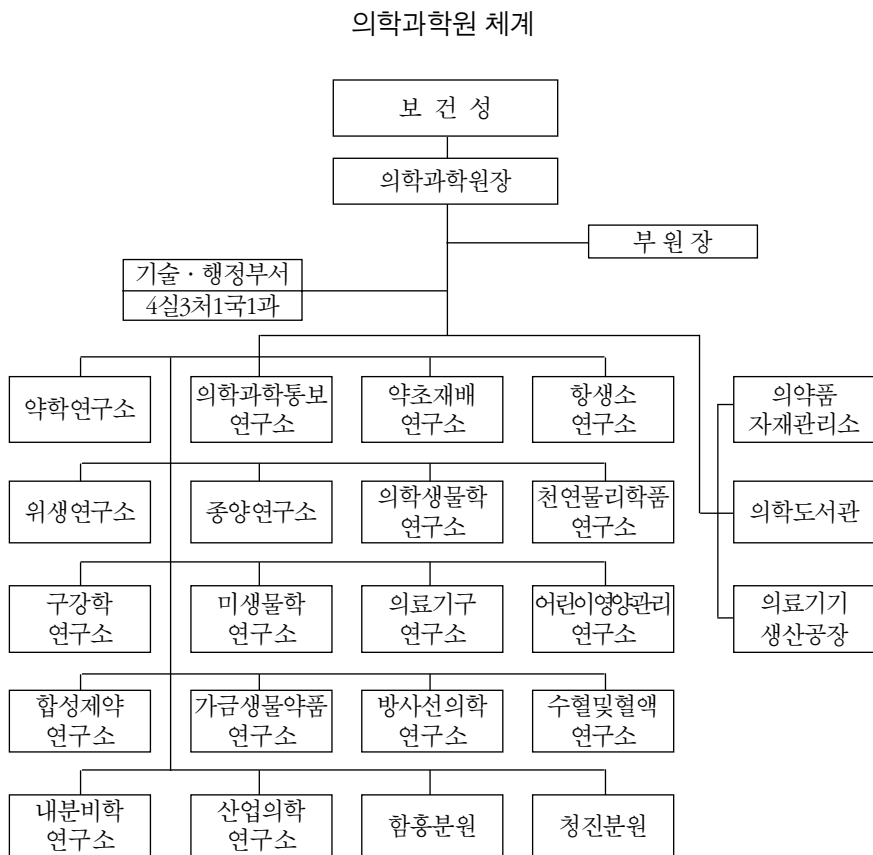
농업과학원은 1952년 3월 농업성 중앙농업연구소와 과학원 농업연구소가 통합되어 농업연구과학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58년 8월에는 농업과학 위원회로 되었다가 1963년 8월 다시 농업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농업과학원은 1994년 2월 과학원 확대 개편시 과학원 산하기관이 되었다가 1998년 9월 내각 개편시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농업성 산하 연구기관으로 되었다. 농업과학원의 기구로는 3실·6처·5국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산하에 직할연구소, 18개의 지방분원, 1개의 종합시험장과 5개의 전문시험장 그리고 원종장과 수의약품종합제조소, 자재상사, 설계사업소가 있다.

농업과학원 체계



의학과학원은 1958년 6월 과학원 산하의 의료과학연구소 및 약초원과 보건성 산하의 의학분야 연구소를 통합하여 의학과학연구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63년 11월 의학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본원은 1994년 2월에 다시 의학과학연구원으로 그 명칭이 환원되면서 과학원 산하기관이 되었다가 1998년 9월 내각개편시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보건성 산하 연구기관으로 되었다.

의학과학원은 현재 산하에 18개의 직할연구소와 2개의 분원과 의약품 자재관리소, 의학도서관, 의료기기 생산공장 등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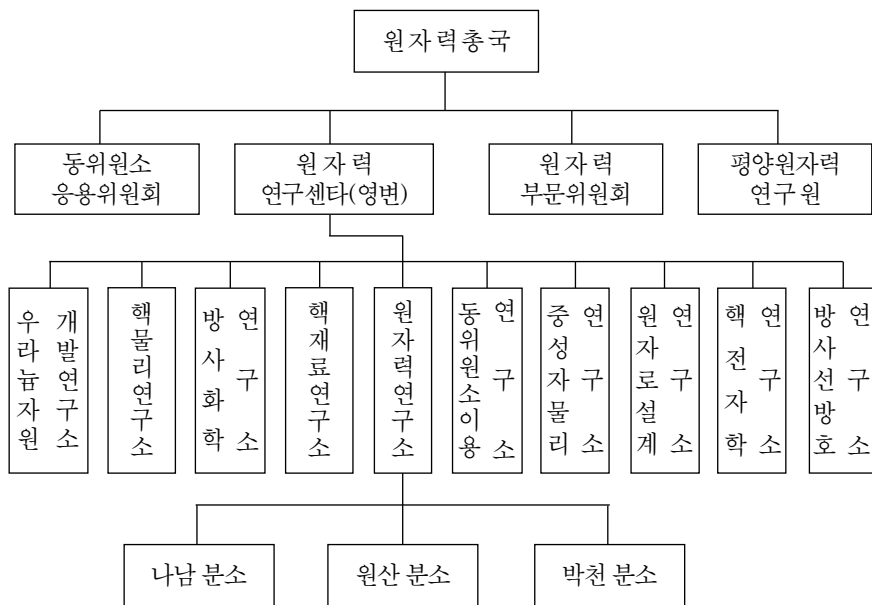
VI. 과학기술

제2자연과학원은 1960년대 초에 설립된 국방과학원을 1970년대 중반 이후 개칭한 연구기관으로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원은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군수공업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본원에는 유도무기, 전기 및 전자, 금속 및 화학소재, 기술경제 등 40여 개의 부문별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1952년 12월 과학원 창설과 함께 부속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초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업, 농업, 의학분야 이용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였다.

북한은 1974년 1월 23일 ‘원자력법’이 제정된 바 있으며, 원자력관련 연구소는 크게 2개의 위원회와 1개의 연구원, 1개의 연구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행정체계상으로는 내각의 원자력총국에 소속되어 있다.

원자력관련 연구소 체계



3. 최근 과학기술부문 동향

가. 각종 과학기술 행사 강화

최근 북한 과학기술부문의 주요한 특징중 하나는 각종 과학기술 행사의 개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축전, 경연, 발표회, 전시회,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의 대내외 과학기술 행사를 확대해 오고 있다.

북한은 과학기술행사의 개최를 통해 대학·연구소 및 각급 생산현장 일꾼들을 대상으로 부문별 과학기술 성과를 공유시키고 기술혁신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효과도 유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핵심과제인 물자공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²⁴⁾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각종 과학기술행사의 개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의 행사내용을 보면 IT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농업, 의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이외에도 가설 및 착상분야, 나노과학분야 등 첨단분야로 행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나. IT산업 육성 동향

2001년 이후 북한은 “21세기=정보산업시대”, “첨단과학기술= 컴퓨터 산업”으로 등식화하면서 인민경제 각 부문의 정보화 없이는 강성대국

24) 북한은 동 조치 이후 과학기술 행사의 강화 이외에도 첨단기술 도입 및 외국과의 교류, 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VI. 과학기술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는 가운데, IT산업 육성을 경제회복을 위한 '단번도약'의 중심고리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각종 과학기술 행사, 언론선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IT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산업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의 열악한 기술·자본 여건하에서는 본격적인 IT산업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인재양성 및 IT마인드 조성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IT관련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보급률, 이용가능 인구 등에서 취약한 개발초기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당국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IT산업 육성을 위해 조선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S/W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일부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수준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여 왔을 뿐이다.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IT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컴퓨터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자력갱생'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1월에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인트라넷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적으로 컴퓨터 통신망 운용을 실시하는 등 인터넷부문에도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트라넷은 아직까지 국제 인터넷망과 연결되지 않고 있는 초보적인 수준이며, 이로 인해 IT산업 발전에도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VII. 사회



1. 사회정책 및 구조

가. 사회정책

북한의 사회정책 기조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당이 추구하는 당면 목적을 충실히 성취시킨다는데 두고 있다. 즉,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정책도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기본은 계급정책으로 북한사회의 계급적 성격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헌법 제8조에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서 기본계급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및 모든 근로인민으로 분류하고,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계급노선을 견지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지향하고 있다.¹⁾ 다시 말해서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당면 목표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지닌다.

1) 사회주의 헌법 제12조.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주의 사회정책이란 ‘온 사회를 정치적으로 단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해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이 생성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없애는 계급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른 구체적 수단으로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소위 ‘반당 반혁명분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전 주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데 주력해 왔다. 한편으로는 전 주민에 대한 성분조사 사업과 계층구분 사업, 노동당의 조직적 지도사업과 감시계통의 조직화를 통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모든 주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 사회적 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나. 사회계층 구조

북한은 ‘온 사회를 정치적으로 단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분단 이후 수차례 걸친 성분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분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인에게 사회적 직종과 직위를 맡기고 있다.

결국 북한사회의 계층구조는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계급정책에 의한 의도적 산물인 것이다. 즉 북한사회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표방하는 평등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국가 보다도 계층간의 차이가 큰 불평등 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사회계층간에 불평등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반당·반혁명적 색채를 가진 인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김정일체제에 반감을 가질 소지가 있는 사람을 원천적으로 격리시키려는데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계층구조가 설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성분 분류에 의해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 직장 선택 등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으며 자기가 속한 계층에 대한 순종과 아울러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을 위한 당과 수령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심을 강요당하고 있다.

주민성분 조사사업

구 분	시 기	내 용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58.12~1960.12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 이주
주민재등록사업	1966. 4~1967. 3	100만 적위대의 사상결속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직계 3대·처가·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1967. 4~1970. 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요해사업	1972. 2~1974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파악, 전 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사업	1980. 1~19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갱신으로 불순 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1980.4~19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 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1981. 1~1981. 4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과학화
주민증 갱신사업	1983.11~1984. 3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주민재등록사업	1989.10~1990.12	주민등록부 재조사 정리, 이산가족 개인신상 카드 작성
공민증 갱신사업	1998. 2~1998.10	수첩형태에서 양면 비닐코팅 카드형으로 교체

2.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가. 조직생활 통제

북한에서 노동당은 최고 권력기관으로 행정·사법·입법부의 상위에 위치한다. 기관의 간부들은 노동당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모든 기관에는 각기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당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일반주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노동당의 하부조직은 도·시(구역)·군당위원회와 최일선 조직인 당 세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당 조직은 분기별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 김일성·김정일 ‘노작’, 당 정책 해설, 자본주의 병폐 등 주민사상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상·하반기별로 3~4일의 당원 집중학습 기간을 정해 놓고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당적 통제 이외의 주민통제 방법으로 조직생활을 통한 통제를 꼽을 수 있다. 모든 주민들은 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인 각종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단체들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그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이중으로 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각종 사찰기관들이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통제하여, 반당·반혁명 세력과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있다.

사찰기관으로는 1945년에 조직된 인민보안성과 1973년 5월 정치사찰전담기구로 조직된 국가안전보위부가 있는데, 인민보안성은 치안유지 및 반당·반국가행위자의 색출·검거와 주민 이동사항을 통제하며, 국가안전보위부는 반당·반국가 음모자 색출, 주민 사상동향 감시, 첩보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주민통제를 위한 조직으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시(1977. 12.15) 신설된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당의 사상적 지침위반 내용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직장별·세대별로 주 1회 정도의 생활 총화를 통해 개개인의 생활에 대한 사상적 검토를 받는다.

주민들은 각자가 속한 인민반에 의해서도 일상생활을 통제·감시받고 있다. 인민반은 통상 20~40세대 단위로 조직되고 인민반장, 세대주반장, 위생반장, 선동원(인민반 당 분조장 겸임) 등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감시·감독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이 극심해지면서 생존을 위해 당의 지시나 통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등 집단주의 정신이 약화됨에 따라 주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경제·사회적 통제

주민에 대한 경제적 통제는 국가에서 일반주민들에 대한 생존의 기본 수단을 장악하여 주민들을 통제에 이용하는 것이고, 사회적 통제는 출신 성분과 계층에 따라 직장 배치 등 사회적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다.

경제적 통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북한은 의식주 생활의 기본수단에 대해 배급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경제난이 심화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중앙배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필요한 생필품을 개인적으로 장마당 등을 통해 조달하여야 했으며 북한주민들 사이에 “이제는 더이상 국가에 의존할 것 없이 스스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통제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한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폐지 조치도 종래의 식량배급을 축으로 한 주민통제 방법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통제로는 당에 의한 직장 배치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법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

기능 수준에 맞게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²⁾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장 배정시 개인의 소질, 능력, 희망 보다는 출신성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한 번 배치된 직장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 오직 계획적인 직장의 조정, 불순분자의 벽지 이주, 도시인의 농촌 이주와 같은 중앙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시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사회통제가 다소 이완되는 틈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인 직장이동이 묵인되기도 한다. 특히, 배경을 이용하여 더 좋은 직장에 배치받거나 배치받은 후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사회적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반주민들의 사적인 목적의 여행을 통제하여 왔으나 1995년 이후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여행증 없이 타행정구역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8년 9월 사회주의 헌법 개정시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제75조) 하였지만 지금도 여행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 사회일탈행위 및 범죄자 처벌 실태

북한에서는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절도·강도 등 생계형 범죄와 부정·부패 등의 사회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난의 심화에 따른 생계형 범죄는 단순절도는 물론이고 생계유지를 위해 일부 여성들이 매춘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물자부족과 관련된 횡령·착복·배임 등과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행위의 일반화는 사회적 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표출 정도도 최근에는 더욱 대담화, 노골화되고 있다.

또한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조직화되고 있는

2) 사회주의 노동법 제30조.

실정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범죄조직은 주로 20~30명 규모로 무리를 지어 암시장에서의 생필품 밀매, 자릿세 갈취 등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민보안원 등과의 부패고리를 형성하며 특히 변경지역에서는 밀수(담배, 술, 의류, 의약품 등)에 개입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범죄는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이후 외부사조 유입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변화에 근본적으로 기인하고 있으며,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진출 좌절, 경제난에 따른 가정 붕괴 등으로 청소년 범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절도에서 강력범죄로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사회에는 상당수의 청소년 폭력조직이 있는데 이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폭력조직은 원산, 함흥, 남포 등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절도, 강간, 소매치기 등을 자행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외부 사조의 유입때문에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증가는 통제사회에 대한 반감, 물질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 등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이는 개혁과 개방의 정도에 따라 더욱 촉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편 북한은 범죄자 수용시설로 인민보안성 산하에 각 시·군 마다 집결소(유치장)를 설치하고 있으며, 각 도에는 교화소를 설치하고 있다. 집결소에는 수사가 진행중인 범죄가담자나 6개월 미만의 경범죄자를, 교화소에는 1년이상 15년 미만의 중범죄자를 수감하고 있다.

각 도의 교화소는 범죄종류·수감대상에 따라 성격별로 특화되어 있는데, 강·절도범은 함북 회령 교화소, 여성 범죄자는 평남 개천 교화소, 전염병 환자는 강원도 원산교화소 등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죄수들은 매일 8~9시간씩 목표량이 부과된 중노동에 종사하며, 일과후에는 2시간씩 김일성·김정일 사상학습 등 의식개조 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있다.

라. 사회적 부조리

북한 사회는 일당 지배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체제 경직성과 왜곡된 중앙집권적 자원 배분구조, 이데올로기 유지를 위한 과도한 통제 시스템으로 사회적 부조리의 태생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체제운용 과정에서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부조리 현상이 노정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김일성·김정일 교시와 선전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계속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 적결의지도 무수히 강조되어 왔다.

특히,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에는 경제난이 사회적 부조리를 부채질하여 당 및 경제지도 간부들의 월권, 무사안일주의 등의 사업태도에 대한 비판과 자본주의 사조유입에 대한 경고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북한의 각종 보도 매체에서 나타난 사회적 부조리 사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사상학습에 대한 기피, 당 조직생활의 태만·외면, 소극성·열성 부족, 노동기피,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등 부정적 태도가 만연되어 있다. 노동력과 원자재 낭비·국가재산 낭비 및 유용, 뇌물수수 등 반사회적 범죄와 관련된 것과 보수주의, 봉건 유교사상 등 낡은 사상 잔재, 청년인테리의 반사회적 행동, 자본주의 사조유입 등은 사상적 이완과 관련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보다 악랄해지고 있다고 하면서³⁾ 주민들이 자유화 바람에 휘말려 드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공식 모임 및 보도매체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부조리 현상들은 지나친 통제와 당권 만능이 빚어낸 결과로, 이는 북한주민의 통제에 대한 매너리즘적 수용과 내면적 저항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미제의 교활하고 악랄한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 『로동신문』(2003. 5. 2)

마. 정치범 수용소

북한은 1956년 이후 정적(政敵)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처형을 면한 대상자들을 산간오지에 집단수용하여 특별관리해 왔다. 1966년 4월부터 새로운 성분분류에 따른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반당·반체제 분자들은 특별독재 대상구역이라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였다.

또한 1973년부터 김정일의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투쟁조직인 3대 혁명소조가 본격적으로 활동,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기까지 후계체제에 대한 비판자와 정적들을 적발, 그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다.

이에 따라 현재 20여만명의 정치범이 평안남도 개천,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화성, 회령, 청진 등 5개 지역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5년 4월 국제사면위원회 조사단 방북시 전체수감자 800~1,000명 중 정치범은 24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은 주로 반국가음모자, 유일사상체계반대자, 일부 납북인사들과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당정책위반자 등 소위 북한 당국이 말하는 혁명화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관리아래 수용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 일단 들어가면 가족·친지의 면회, 서신연락 금지 등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수용자들의 일과는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새벽 5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 등 모든 개인적인 일을 마치고 6시부터는 작업장에 들어가 작업량을 부여받고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오전 작업은 오후 1시까지 진행되고, 오후 작업은 오후 9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어,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이 부과되고 있다.

일과후에는 1시간 이상의 자아비판 등 사상개조 학습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석탄과 광물을 캐는 갱도작업과 벌목, 개간 등이다.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색출된 정치사상범의 이송 및 경비업무는 인민보안성 산하의 인민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치범으로 분류되었던 탈북자들은 그 동기가 식량 구입으로 판명될 경우, 탈북기간에 따라 형량이 경감되어 일반 범죄자와 같이 교화소, 집결소에 수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주민생활

가. 의식주 생활

(1) 의생활

북한은 주민들의 복장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부합되도록 규격화하여 의복을 공급해왔다. 경공업성 피복공업총국 산하 피복연구소에서 직업·체격·연령 등에 맞는 옷의 형태와 규격을 제정하여 각 지역 피복공장에서 일괄 생산해 왔다.

1990년대초까지 기본 일상복의 조달은 배급제도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1995년 이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의복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입거나 농민시장 등에서 구입해 오고 있다.

1960년대의 주민복장은 ‘천리마시대의 생활양식 준수’를 표방함에 따라 남자는 인민복(레닌복)과 노동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의 한복으로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는 북송교포를 통한 의복에 대한 인식 변화와

남북간 회담과 교류의 영향으로 색상·디자인 등 복장이 과거보다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복의 다양화 추세는 일상복보다 외출복에서 먼저 나타났는데, 1980년대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와 맞물리면서 조금씩 확대되었다. 다시말해 북한주민의 기호변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 사회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민족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조선옷(한복)’ 착용을 적극 권장⁴⁾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간편한 평상복 차림을 선호하고 있다. 한복은 호텔의 접대원 등 각종 행사에 동원된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남성복에 있어서는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를 전후하여 넥타이 양복차림에 이어 간편복 차림까지 등장, 서구적인 세련미를 가미하였으며 김일성 자신도 1984년 5월 소련 및 동구권 순방이후 인민복 대신에 넥타이 양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세계 각국 청년학생들의 다양한 옷차림을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계기가 되어 의복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이후 대학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바지, 스커트 등 서구유행이 일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북한당국이 ‘자본주의 사조 침습’을 통한 사상적 해이를 우려하여 단속하고 있다.

(2) 식생활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주·부식에 대한 배급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이후에는 배급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식량은 농민시장을 통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4) ‘민족 옷에 깃든 사랑’, 『로동신문』(2003. 5.27)

또는 텃밭에서 경작하여 일부 조달하고 있으나,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의한 식생활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개인 소비의 절대량마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식량증산과 절약을 강조하여 왔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부터 식량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1982년 김일성은 ‘쌀은 곧 공산주의다’ 라고 선언하고 1986년부터는 종래의 ‘의·식·주’ 라는 용어를 ‘식·의·주’ 로 변경 사용하는 등 식량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김정일도 “옷감이나 집 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량증산을 위해 ‘1,500만톤 알곡고지 점령’, ‘30만정보 간척지 조성’, ‘20만정보 새땅찾기’ 와 ‘다수확군 칭호쟁취운동’ 등의 각종 사업과 운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1992년을 ‘대농의 해’ 로 지정하는 등 식량증산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이 실패하고 식량사정이 호전되지 못하자 다시 완충기(1994~1996) 중점과업으로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앞세워 농업생산력 제고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 평양과 지방, 신분, 시기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주민들에게 주로 쌀과 잡곡을 6:4에서 3:7 정도의 배합비율로 배급해 왔다. 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하였으며, 배급절차는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급카드를 리·동 배급소에서 수령하도록 하였다.

출장이나 여행의 경우에도 ‘양표’ 라 불리우는 양권을 미리 발부받아 매식시 양권과 식대를 함께 지불해야 하는 양표제도를 시행하였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식량난으로 인해 양표를 식당에 제시해도 매식하기가 힘들었고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로 핵심계층을 제외한 주민들에 대해 배급제가 축소·폐지됨에 따라 이와 같은 양표제도는 유명 무실해지고 있다.

다만, 주민 식생활문화 향상, 수익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요리 경연 활성화, 지방특산요리 발굴 장려, 민족음식 전문식당 및 외화식당 확대 등 음식문화 발전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기타 부식의 경우 김치, 콩나물, 두부, 야채 등은 농민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들어 먹는다. 특히 고기류는 국가적 명절에 특별 배급되는데, 이를테면 김일성·김정일 생일, 노동당 창건일 등에 세대당 돼지고기 등을 수급사정에 따라서 공급품목과 수량을 다소 달리하여 배급하고 있다.

(3) 주생활

북한은 민법 제50조에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노동자, 농민, 사무원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주택 공급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주민에게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주택은 주로 ‘고층살림집’이라 불리는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의 형태가 많다. 입주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그 형태 및 구조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평양시의 경우 1990년대 건설된 아파트(20~30층)를 제외하고는 10층 이내의 저층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주택형은 1종부터 6종까지 6단계로 구분되며 계급과 성분에 따라 차등 배정되고 있다. 다른 기본생활 사정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택 사정도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올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방 1개, 부엌 1개의 2칸 주택이 보통이고, 방 2개, 부엌 1개의 3칸 주택에 2가구가 동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대부분 일반주민들의 경우 국가에서 배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등록 후 세대주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돈을 주고 집을 구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편법매매는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사회에서 불법이지만 그 동안 사실상 묵인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대도시에서는 당 간부가 아니어도 부를 축적한 계층에서 보다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평양에 1981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10만여 세대의 주택을 문수·창광·광복·통일·안상택 거리 등에 건설하였으며, 원산·함흥·청진 등 지방도시에도 같은 시기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공동주택을 건설하였으나 공급부족 현상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 기간 중 매년 15~20만세대 주택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재원 부족 및 건설자재 공급난으로 목표에 크게 미달되었고, 평양시 주택건설 및 시가지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평양과 지방과의 주거생활 격차가 현저하다.

이는 평양을 중심으로 1998년에 5만여세대, 1999년에 3만여세대를 건설하고 2001년에도 3만여세대의 주택건설을 추진한 것에 비해 지방은 1998년에 황해남도가 6,800여세대, 1999년에 함흥시가 3,700여세대, 평안남도가 17,500여세대, 평안북도가 3,600여세대, 2000년에 해주시가 1,200여세대를 건설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도 당·기관·기업소 등의 간부들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일반주민들의 주택사정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북한에서 주택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주택건설계획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는 현재 경제적 여력의 부족으로 주택문제 보다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의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나. 직장생활

(1) 직장 배치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당과 행정기관의 조정·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주민의 직장 배치는 각 부문별 수요에 따라 중앙의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 배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성분과 당성이라는 이른바 정치적 기준이다. 직장 배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부차적 기준은 실무적 기준이다. 이는 직무수행능력으로서 학력, 자격, 실무능력, 활동력, 근무년수, 근무평점 등이 고려된다.

특히 이 가운데 학력은 사회적 신분 상승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데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의 진학 등은 엄격한 심사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직업 및 직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기는 사실상 어렵다.

직장 배치는 일반적으로 간부와 노동자로 구분된다. 간부는 도·시·군 당(리당 포함) 간부부에서 하며, 대상은 대학졸업자, 국가사무원, 노동현장에서 충실성과 당성이 높은 노동자 등이다.

노동자의 경우는 각 도·시·군(리 포함)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일률적으로 배치한다. 이와 같은 직장 배치의 경우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이며, 국가에서 배치한 생산현장으로부터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은 사실상 힘들게 되어 있어 처음 배치된 직장이 평생직장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권계층들의 자녀나 친인척 등 성분이 좋거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배경과 성분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좋은 기관과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 또 사회통제가 낮은 틈을 타 뇌물을 주고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들어 북한은 경제난으로 사회통제가 이완된 틈을 이용하여 뇌물로

편안한 기관과 직장으로 옮겨 다니는 노동기피 현상 내지 직장 이탈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2002년 7월 단행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도 이와 같은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제난의 여파로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지면서 외화벌이가 가능한 외교관, 무역일꾼, 외항선 타는 선원, 부수입이 많은 서비스업부문에 배치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임금

북한은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에 의해 임금기준을 결정한 이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까지는 대체로 이를 준용해 왔다. 이 기준은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중노동 가운데서도 유해노동 종사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있고, 동일 직종에서도 숙련도나 생산성 등 노동의 질에 따라 급수가 결정되어 임금수준이 변화한다. 또 일반 사무원 보다는 당·정 기관종사자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1992년 12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발표한 당·정기관, 공장·기업소, 노동자, 사무원, 편의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당·내각의 상급 370~350원, 특급기업소 지배인 250~300원, 광부·제련공 90~100원 및 서비스업 50~80원 등이었다.

이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각 직종에 따라 이전보다 20~30배로 임금이 인상되어 2,000원 이상을 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노동자, 사무원 등 전직종을 대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면서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 원칙’ 아래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실적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휴일·휴가

북한은 직종 또는 지역을 구분하여 휴일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평양은 일요일, 함경북도(북)는 수요일, 함경남도(남)는 목요일, 평안북도(북)는 화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매월 1일, 11일, 21일 등 10일에 하루씩 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식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용무로도 휴가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노동자에게는 연간 300일 출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료부족,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자는 사회주의 노동법이 규정한 대로 연간 14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1978년 제정된 사회주의 노동법 상에는 산전·산후 77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986년 2월 20일 정령 2464호에서 150일간으로 연장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기휴가 이외에도 휴양권 및 정양권이 있는데, 이는 각 직장마다 생산경쟁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로써 모범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실시되고 있다.

휴가제도

종 류	대 상	기 간	비 고
정기휴가	일반노동자, 사무원	연간 14일	유급휴가
보충적휴가	지하 및 유해직 근로자	정기휴가 14일외 7~21일	유급휴가
산전산후 휴가	임산부	150일	유급휴가
임시휴가	부득이한 특수사정이 있는 자	단기간	무급휴가

* 출처: 사회주의 노동법

다. 가정생활

북한은 혁명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종래의 전통적 대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권의 실현을 추구하여 왔다. 여성 해방의 실질적 내용은 여성 전체가 사회적 노동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가족의 개념과 형태를 집단주의체제에 알맞는 형태로 변형시키려 한 것이다.

가족제도의 변화과정

시 기	변화 내용
1945~1953년	· 가족중심의 경제활동 유지 · 봉건적 유습 청산 · 혼인과 이혼의 자유보장
1954~1960년	·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
1961~1990년	·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 사회주의적 인간 구조 · 가정의 혁명화
1991년 이후	· 가족법 제정(1991. 4.11) *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7조)

그리하여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동족집단의 조상숭배 관념은 배제되고, 그 대신 소위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으로 대체시켰다. 또한 가족제도의 변형은 호적제도를 말살하는 것으로부터 진행되었는데,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이 봉건사회의 잔재라고 이를 폐지하고 공민증제도를 1946년 9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한편 친족범위를 6촌까지로 제한함과 동시에 주민행정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40~1950년대의 사회주의적 개혁정책(토지사유제 폐지, 재산 상속제 소멸 등)과 1960년대의 사회주의 공업화정책의 시행으로 가족 중심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파괴와 함께 대가족 제도의 붕괴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가정이 인간적인 삶의 터전이기에 앞서 당의 통제단위로서 당적 과업을 촉진하는 정치적 매개 집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북한은 가정의 혁명화를 표방, 전래의 전통적 가정을 낡은 생활 방식의 온상지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낡은 사상과 관습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가정을 ‘온 사회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기층생활단위’, ‘최저생산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리론의 학습장’으로서 기능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1년 4월 11일 가족법을 제정하였고, 제18조에서 가정생활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평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사회전반에 ‘선군사상’의 확산과 함께 가정에서도 군대식의 생활기풍을 숭상수범하여 실천할 것을 여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라. 여가생활

북한의 모든 일터와 직장은 일원적으로 국가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사무원, 노동자들은 계획된 일과표에 의해 생활하게 된다.

하루의 일과는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오전작업전 30분간의 독보회⁵⁾를 갖고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오후 6시경 하루 일과가 끝난다. 일과후에는 ‘작업총화’라 하여 지배인 및 당비서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작업총화가 끝나면 직장별로

5) 독보시간에는 『로동신문』의 사설이나 당의 지시문을 주로 읽는다.

정치학습이 있기 때문에 퇴근은 통상 오후 7~8시경에 하게 된다. 휴일에도 각종 회의, 학습, 근로봉사, 군사훈련, 사회정치활동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북한은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게을러지고 개인주의화되며 의식이 자유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필요 이상의 여가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집단규율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무용·연극 등 개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보다는 직장파 인민반을 통한 집단관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포츠 역시 “체육은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한 정신 및 육체적 힘을 키워줌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 실현에 적극 기여한다”⁶⁾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스포츠 활동은 국가적 관리와 통제하에 계획·운영되며, 체육이 여가선용이나 개인의 취미활동 보다는 집단주의 정신 함양과 체력 향상을 통한 노동력과 국방력 증대, 정치적 일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취미나 오락시설도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 등 대도시의 경우 가끔 공휴일에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는 정도이다. 평양주민들은 휴일에 만경대유회장, 문수유회장 등 오락시설을 이용하거나 온수목욕이 가능한 창광원에 가기도 한다.

최근에는 청년중앙회관 등 평양 시내 여러곳에 ‘화면반주음악실’(노래방)이 많이 보급되어 청년들이 이를 즐기고 있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지방에서는 직장이나 지역단위의 문화회관에 간단한 체육 및 오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주민들이 여가활동에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여가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아직까지 힘든 실정이다.

6) 『조선대백과사전 21』(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 418.

4. 노동문제

가. 노동정책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⁷⁾고 하여 노동을 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법에서는 노동을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⁸⁾고 정의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노동에 대해 당에서 직접적으로 개입, 모든 근로자는 당국이 배정해 주는 일자리에 근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사회는 외형상으로는 일종의 ‘완전고용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개인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북한의 노동관련 법령의 연혁을 보면, 1946년 6월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이 제정된 이후 몇차례 내각결정 등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오다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기존의 노동자·사무원 외에 농민까지 포함한 ‘사회주의 노동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후 동법은 노동력의 강제동원과 동원된 노동력의 최대 활용이라는 노동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사회에 대한 통치수단으로서의 노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활용되고 있다.

7) 사회주의 헌법 제70조, 제83조.

8) 사회주의 노동법(1999. 6.16) 제2조.

나. 노동조직과 노동조건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국가는 사회적 노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장·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행정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조직에서 균중노선을 구현하며 노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⁹⁾고 명시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에 기초한 노동조직과 조직에서의 균중노선 구현을 표방하고 있다.

즉 노동조직은 집단주의 정신에 의거해 근로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¹⁰⁾고 규정, 8시간 노동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는 노동생활을 조직화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사생활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제도화시켜 놓은 것이다.

노동사업을 일별·월별·분기별로 계획화해 놓고 과업의 초과달성을 위해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새로운 90년대 속도 창조운동, 우리시대 영웅의 모범따라 배우기 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벌여 왔다. 사회주의 헌법 제14조에서는 "국가는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헌법 제31조와 노동법 제15조에는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11년제 의무교육제에 따라 15세까지가 의무교육기간이므로 직업적인 노동에 참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 결과이다.

9) 사회주의 노동법 제26조.

10) 사회주의 노동법 제33조.

노동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노동, 금요노동, 농촌지원 등의 명목으로 연간 4~14주에 걸쳐 무보수 노력동원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법은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일시적 부조금의 지급, 일정한 근속노동 연한을 가진 자에 대한 연로연금(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등도 규정하고 있으나,¹¹⁾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당 간부 등 일부 계층과 극소수의 노동자들만이 노동법에 명시된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다.

5. 사회복지

가. 사회보장제도

북한 헌법은 노동을 전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하면서 “노동능력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¹²⁾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¹³⁾고 하여 노동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요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¹⁴⁾고 하는 등 선진 복지국가의

11) 사회주의 노동법 제74조, 제75조.

12) 사회주의 헌법 제70조.

13) 사회주의 헌법 제71조.

14) 사회주의 헌법 제72조.

제도를 모방해 놓았다.

노동법은 질병·부상·임신·해산에 관한 의료상의 방조, 질병·부상·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보조금, 임신·해산으로 인한 경우의 보조금, 질병·부상으로 불구 또는 폐질이 되었을 때의 연금, 부양의 책임을 진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의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 연로한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등 다양한 명목상의 사회보장·복지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¹⁵⁾

이처럼 북한은 헌법에 사회보장에 관한 원칙을 망라하면서 노동법령에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해 놓아 명목상으로는 마치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1일 8시간 노동제, 사회보장제가 규정과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사회복지시설

(1) 탁아소·유치원제도

탁아제도는 원래 근로여성,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북한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정립된 유아교육제도로서 의의가 더욱 크다.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1조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 탁아소·유치원이 북한의 조기 정치사상 교육기관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동법 제6조에서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15) 사회주의 노동법 제73~79조.

어린이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설치목적이 노동력 부족을 여성노동으로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탁아소와 유치원에 관한 주요 조치 및 활동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어린이 보육에 관한 주요 조치

시기	조치 내용
1947. 6	탁아소 규칙에 대한 보건국 명령 제5호
1964. 7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결정
1966.10	전국 보육교양원 대회
1968.	유치원 교육과정제도 심의회 구성
1972. 5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줄 데 대한 김일성 교시
1975. 9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1976. 4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 어린이보육교양법 채택
1979. 3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3차회의 교육부문 보고 -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을 가일층 강화
1993.2	어린이보육교양법세칙 제정, 출산·육아 등에 대한 여성 권익 강화
1996.4	어린이보육교양법 발표 20주년 기념대회 개최
1998.9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고 다산 운동 전개
2002.5	박길연 주유엔대사,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아동복지 강조

(2) 특수 사회복지시설

북한은 특수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은 만3세 이하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며 애육원은 만4세 이상 학령전 고아들을 수용하여 양육하는 기관이다.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고 있었으나 경제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부 도에서는 통·폐합되고 있다. 양로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를 수용하여 부양하는 곳이다.

그 외에도 북한에는 전쟁 또는 군복무시 불구가 된 자를 수용하여 장기 치료를 해주는 영예군인병원, 장기치료와 요양을 해주는 영예군인정양소, 휴양소 등이 있다. 2002년말 현재 북한에는 근로자들이 휴양생활을 할 수 있는 휴양소가 100여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사회보험

(1) 연금제도

북한의 연금제도는 ‘국가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연금의 종류는 유가족연금, 연로연금, 공로자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

1986년 11월부터 임금노동자에게만 실시하던 연금제도를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¹⁶⁾하고 1992년 3월 1일부터 주민복지향상시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연금을 기존보다 평균 50.7% 인상조치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¹⁷⁾ 또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는

16) 『조선중앙년감』(1987), p.200.

17) 중앙인민위원회 정령(1992. 2.13)을 통해 1992.3.1부터 생활비(임금) 43.4%, 사회보장연금 50.7%, 장학금 33% 등을 인상조치하였다.

사회보험제 등 사회적 시책들을 강화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당 간부, 군 장성급 등을 제외한 기타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남자 60세, 여자 55세에 정년을 맞지만 퇴직금과 같은 노후보장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부진으로 근로자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사회보장 혜택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정년전에 김일성 훈장, 김정일 표창장, 영웅 칭호, 인민·공훈칭호, 국기훈장 1급 등 국가표창자만이 근무시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 혜택이 주어질 뿐이다.

(2) 산재보험(사회보험)

북한의 산재보험(사회보험)은 앞에서 살펴본 '국가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 노동법' 제73조, 75조, 77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일시적(통상 6개월 이내)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으로써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매월 수입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

보험급여는 취업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하여 1급부터 5급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1급은 임금의 75%, 5급은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성분이 좋은 열성당원에게는 보험급여를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고의, 과실 사고 등)를 들어 재해를 노동자들의 귀책사유로 하여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실업보험

북한의 실업보험은 '국가사회보장법'에 의해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표준 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하고, 자발적 실업 및 노동규율 위반, 범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수당이 지급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보건·의료

가. 보건·의료정책

사회주의 헌법 제56조는 형식적으로는 ‘전반적 무상치료제’,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 치료에 예방을 선행시키는 ‘예방의학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한 ‘로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실시와 산업의료시설 개편에 관한 결정서’에서 윤곽을 나타낸 이후 1948년에 개정된 치료비 관련 규정에 “산모의 해산료, 3세미만의 유아, 혁명가 및 그 가족, 고아원·양로원 수용자, 정신병자, 2급환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전문학교 학생과 대학생은 무상치료제의 대상에 포함시킨다”¹⁸⁾고 함으로써 초기에는 특정대상에 국한하여 시행하였다.

그 후 무상치료제 적용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1952년 11월 ‘내각결정 제203호’에 의하여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¹⁹⁾ 1960년 2월 2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무상치료제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수술비, 치료비, 외래약값, 입원환자 식사비, 료양

18) 승창호·리복희 편, 『인민보건사업 경험』(평양:인민보건사, 1985), p.62.

19) 위의 책, p.63.

치료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보철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²⁰⁾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상으로는 완전 무상치료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봉급에서 1% 정도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에도 치료비 항목을 포함시켜 청구하는 등 주민에게 상당부분 부담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예방의학제도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예방사업 강화지시에 의하여 실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58년 5월 4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중앙 및 각도·시·군의 ‘위생지도위원회’와 읍 및 노동자구의 ‘위생검열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직을 정비하고 1966년 10월 20일 김일성의 노작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를 발표하여 예방사업 내용을 제시한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의사의 ‘호담당구역제’는 의사가 담당지역 주민의 가정을 연 1~4회 순회하면서 의료상담, 치료 및 위생교육 등 체계적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의료대상의 과다, 진료범위의 무한정, 의약품부족 등으로 대부분 형식적 진료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의 ‘호담당구역제’는 1963년 평양시 ‘경림종합진료소’ 소아과에서 처음 실시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건시설과 보건일꾼이 어느정도 확보된 이후인 1969년부터서야 각 시·군에서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이 중심이 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김일성이 1988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의사호담당제’ 강화를 지시한데 따라 1990년부터는 일반의사가 담당구역의 전염병 파악, 진단서 발급과 환자 발생시 전문분야 의사와 연결시켜 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탄광·공장 등에서는 개별·직장별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에 대해서 “전 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 의사

20) 『조선중앙년감』(2001), pp.219~221.

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책임제로서 구역담당사업을 맡고 있는 시·군(구역)병원, 산업병원의 외래임상과 전체의사들 및 리 인민병원, 진료소 의사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지역에 나가 위생선전, 위생개조, 소독, 예방접종을 비롯 검진·상담 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그러나 북한의 방역 시스템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그런대로 유지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재정사정 악화로 각급 위생방역소 및 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종래의 ‘예방의학제’에 의거한 ‘지역담당의사’의 주민 순회진료, 위생교육 등은 형식적 진료행위에 그치고 있다. 병원 치료·식사·의약품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환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어 무상치료제는 유명무실해졌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에 따른 주민 영양상태 악화와 경제난으로 빚어진 영양실조, 필수 의약품 부족, 의료시설 손괴 등으로 보건의료체계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정책들을 1980년 4월 3일 ‘인민보건법’(7장 49조)으로 법제화하였고 1998년에는 이를 보완한 ‘의료법’을 채택하였다.²²⁾

특히 1997년에는 10월 20일을 ‘민족면역의 날’로 제정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은 2003년 3월 사스²³⁾ 피해가 중국 및 그 인접국으로 계속 확산되자 4월 20일 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하고 전역에 비상방역주의보를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가방역위원회 중앙지휘부책임자 최응준은 북한이 단 한명의 사스환자도 발생치 않은 것은 ‘우월한 사회주의 예방의학 제도’ 때문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²⁴⁾

20) 『조선중앙년감』(2001), pp.219~221.

21)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4), pp.289~292.

22) 『민주조선』(1998, 1.21·23·25); 『조선중앙통신』(1998, 1.30)

23)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24) 『조선중앙TV』(2003, 6.18)

나. 의료시설

북한의 의료시설로는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이 있으며 위생·방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위생방역소도 있다.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3단계의 의료체계에 따라 거주지 의료시설을 이용하나 특수질병·의학연구대상 환자는 적십자병원 등으로 후송된다. 2002년말 현재 1차 진료기관은 리·동 인민병원, 진료소 약 4,000개, 2차 진료기관은 시(구역)·군 인민병원 약 200개, 3차 진료기관은 도·직할시 인민병원 약 40개 등으로 병원수는 총 4,240여 개이며 의료일꾼은 약 72,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시설 규모

(2003년 현재)

구분	병원수	의료일꾼 (병원당)	진료과목	병상수	주요장비
도(직할시) 인민병원	약 40개	12,000여명 (약 300명)	전과	800~1200	기본진료 및 치료용진장비
시(구역)· 군 인민병원	약 200개	20,000여명 (약 100명)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실험과, 물리치료과, 결핵과, 간염과, 구강과, 고려치료과 (14개과)	100~ 200	앰블런스 X-선 기자재
리·동 인민병원 (진료소)	약 4,000개	40,000여명 (약 10명)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 고려 치료과(6개과)	5~20	규모가 큰 경우 X-선 기자재
합계	4,240여개	72,000여명			

특수병원으로서는 도(직할시)·군에 각각 결핵병원, 정신병원, 간염병원, 구강병예방원 등이 있으며, 주요 군급에는 결핵요양소가 있다. 그 외에 주요 산업지역에는 기업소병원 및 구급소가 있고 주요 어선단에는 선의(船醫)가 배치되어 치료 및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보건·의료요원 양성

북한에서는 보건·의료요원을 “인민들을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영예로운 혁명가”²⁵⁾로 규정짓고 있다. 또한 북한의 보건요원들은 “자기업무에 대한 높은 명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²⁶⁾고 되어 있다.

주요 보건·의료요원 양성기관으로는 의학대학, 약학대학 등이 있다. 과거에는 농촌병원의 의료요원 확보를 위해 2년제 도 보건간부학교가 있었으나 수료생들이 농촌배치를 기피함으로써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되자 단계적으로 통폐합하였다.

의학대학²⁷⁾은 6~7년제로 의사의 자격은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재학중 의사자격에 필요한 과목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본 학부 외에 특설학부와 통신학부가 설치된 대학도 있는데, 특설학부에서는 기초학부를 제외한 임상학과가 있어 여기에 준의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추천을 받아 입학, 의사가 되는 과정이다.

통신학부는 본과 6년제로 대학과 근거리에 있는 자는 야간에 2시간씩 수강하고, 원거리 거주자는 통신수강으로 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25) 인민보건법 제38조.

26) 위의 법 제41조.

27) 대표적인 의학대학인 ‘평양의학대학’의 경우 임상학부(7년), 기초의학부(7년), 고려의학부(7년), 위생학부(6년), 구강학부(6년), 약학부(6년), 재교육학부(2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기간에는 예과 1년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학생은 예과를 거치지 않으나, 군대 및 직장을 거쳐 입학한 학생은 예과를 거쳐야 한다.

약학대학은 고려약학대학(구 함흥약학대학) 하나뿐이고 교육기간은 7년이다. 교육내용은 의료기구학부, 약제학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고, 각 학부에는 수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다.

그밖에 각도의 의학대학에는 약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 간호원 양성을 위해 별도의 1년제 간호양성소가 있으며 교육기간 3개월인 보육원 양성소가 각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다.

라. 고려의학²⁸⁾

북한은 고려의학에 대하여 “역사적 과정에 창조된 민족의학으로서 독특한 치료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병치료와 건강보호 증진에 이바지해 온 민족의 귀중한 의학유산”으로 규정²⁹⁾하고 있다.

북한이 고려치료법을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은 1954년 6월 4일 내각결정 제76호로 ‘인민보건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결정’이 있는 후 고려의사에 대한 자격시험을 실시하였고, 1956년 4월 내각명령 제37호 ‘동의학을 발전시켜 동의치료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국가치료기관에 동의과를 새로 설치케 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 평양의학대학에 동의학부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1970년대까지 함흥의학대학, 개성의학대학 등 각 도 의학대학에 11개의 고려의학부를 설치하여 고려의사를 양성하였다.

또한 북한은 고려의학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1961년 의약학연구소내의 동의학연구실을 동의학연구소로 확대·개편하였다. 1989년에는 동 연구소를 ‘동의과학원’으로 분리하였으며 1993년에는 동의학을 고려의학으로 개칭하고 ‘고려의학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확대·개편하였다.

28) 1993년부터 ‘동의학’을 ‘고려의학’으로 개칭하였다. (변경 명칭: 동의사 → 고려의사, 동의요법 → 고려치료법, 동약 → 고려약, 동의학부 → 고려의학부, 동의과 → 고려치료과)

29) 『동의학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p. 254.

한편 각 지역 의학대학 및 도 병원 등에도 각기 고려의학연구부를 설치하여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향약구급방’ 등 10여종의 고전서적들을 번역·출판하고 ‘고려의학사전’, ‘고려약처방집’ 등 160여권의 관련 서적들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고려의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수만 건의 민간요법을 수집, 이를 과학적으로 검토한 후 이 중에서 가치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9,000여 건의 민간요법을 내각 보건성에서 책자로 출판, 이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평양의 고려병원 등 각급 고려의료기관과 의학과학연구소, 의학대학 등에서 고려의학의 과학화 연구사업을 추진, 고려약의 성분, 약리작용, 고려치료법의 치료효과, 고려약과 침·뜸·부항을 비롯한 가치있는 민간요법의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난치나이치료법³⁰⁾, 광천요법 등을 고려의학의 연구 성과로서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동구권국가들의 붕괴로 수입에 의존하던 신약공급체계가 와해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고려의학(한의학) 발전 및 민간요법 개발에 더욱 치중하였다.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제약공장도 고려약 위주로 생산하였다. 1995년 이전에는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가 80% 정도이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80% 이상을 전통의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 ‘난치나이’란 고치기 어려운 병을 낫게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치료법을 의미한다.

7. 도덕 · 풍속

가. 도덕

(1) 윤리 · 도덕

북한은 해방후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특이한 해석과 의의를 부여하고, 소위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덕관을 형성시켜 놓았다. 그러나 공산주의 도덕교양에서는 도덕을 계급투쟁의 측면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둔 전통적 유교적 도덕관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오히려 이를 “반동적이며 반사회적인 낡은 도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 도덕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며 그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원칙과 규범”이라고 규정하고 “공산주의 도덕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공산주의 도덕의 특징은 풍부한 인간성과 집단주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철두철미한 당적이며 인민적인 도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도덕을 전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충성 및 가계 이상화와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도덕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새롭게 형성된 도덕적 가치관에서는 공산주의적 품성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정신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필승의 신념, 고상한 혁명적 동지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적 품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³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31) 『조선말대사전 1』(1992), p.273.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난의 심화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위 공산주의 도덕관념은 점차 해이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생활총화'를 비롯한 각종 사상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공산주의적 품성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2) 예의범절

북한은 통제사회의 특성상 외형적으로는 공중도덕이나 질서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일반주민의 질서의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제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다. 즉 예의범절이라는 도덕적 행위 규범까지 '규찰대'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복장을 비롯한 두발, 위생상태에 이르는 모든 생활영역이 통제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통제의 이완으로 평양 및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갈수록 사회통제가 어려워져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고위층 또는 교포자녀 등이 옷차림, 두발을 자본주의 유행방식으로 모방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까지 있다.

현재 북한의 50대 이상층의 구세대는 아직도 전통적 관습과 예의범절을 중요시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풍조와 상부상조 의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최근 사회환경 변화로 사회분위기가 해이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세대들은 외부사조 유입에 따른 의식변화로 체제나 상급자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물질적인 면에 더 큰 관심이 있으며, 중노동·군 입대 회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나. 관혼상제

(1) 결혼

북한의 ‘가족법’³²⁾ 제9조에 의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함으로써 만혼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남자의 경우 군복무 관계로, 여자의 경우는 노동력 확보 등의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상 남자는 군에서 제대하는 30세 이후에, 여자는 24~25세 이후에 결혼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결혼 평균나이를 남자는 27.3세, 여자는 24.8세라고 발표함으로써 결혼연령이 다소 앞당겨졌다.³³⁾

배우자 선정시 과거에는 상대자의 출신성분이 가장 중시되어 당·정 기관의 간부나 군관 등이 인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외무역 종사자, 외화벌이 일꾼 등 경제능력이 중시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의 자유연애가 증가함에 따라 연애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결혼식은 통상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요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식 택일을 길흉을 보고 선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예식을 마을의 공공회관이나 신랑·신부의 집 등에서 올리지만, 상류층과 일부 귀화교포는 대형 음식점에서 올리기도 한다.

예복은 남자의 경우 양복, 여자는 한복을 주로 착용하며 양가 친지와 동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을 진행한다. 주례는 대체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 상사, 협동농장 간부 또는 당이나 근로단체 간부가 서며, 주례사는 신랑·신부의 새 출발에 대한 격려보다도 당과 수령에 대한 헌신적 충성에

3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1990.10.24)에서 정권수립 이후 처음으로 ‘가족법’(6장 54조)를 채택하였다.

33) 『조선중앙통신』(2003. 7.11)

대한 내용으로 대신한다.

신혼여행은 거의 가지 않으며, 지역내 사적지를 방문하거나 김일성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2) 회갑·생일

회갑연은 1950년대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와 식량절약이라는 명분하에서 모두 금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회갑·돌잔치가 묵인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70년대 말부터는 ‘60청춘, 90환갑’이라는 구호 아래 회갑연 실시를 통제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친척·친지 등이 모여 회갑연을 간소하게 치르고 있으며, 이 외에도 칠순·팔순 등의 장수잔치가 있기는 하나 식량사정의 악화로 인해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인덕정치’를 과시하기 위해 노력영웅 등 공로가 있는 주민들에게 환갑상, 칠순상 등을 자신의 명의로 차려주기도 한다. 특히 최근 북한은 ‘60회 생일을 쇠는 것은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고상한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권장하고 있다.³⁴⁾ 그리고 생일의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3) 장례

장례는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라 지극히 간소화되어 있다. 3일장이 일반적이는데, 상복은 착용하지 않으며 평상복에 검은 완장을 하는 정도이다.

장례식과 매장은 편의협동조합 등이 맡아서 처리하며, 운구는 전래의 상여 대신 트럭이나 달구지를 이용하여 공동묘지까지 간다. 화장은 거의 없고 매장이 일반적이며 3일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34) 『로동신문』(2003. 6.15)

(4) 제사

제사는 한국전쟁 전까지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으나, 휴전후부터는 물자낭비, 분과주의, 종파주의 조장 등의 이유로 단속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농촌을 비롯한 일부 가정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은밀히 제사를 지내왔다.

그후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추석에 성묘하는 것과 직계가족에 대한 탈상까지의 제사는 묵인되었다. 특히 1974년 1월 13일 전국농업대회에서 김일성이 연설을 통해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제사 지내는 것은 낡은 생활습성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사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날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강조한 이후 제사는 어느 정도 허용되면서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상교육의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례를 미신으로 간주하고 조상숭배를 복고주의적 병폐와 봉건적 잔재라고 비판하는 공산주의적 시각 때문에 제사의 전통적인 의미와 의식은 사라지고 간소화 되었다. 북한의 제례는 지방 대신 사진을 놓고 간단한 음식을 장만하여 치른다. 최근들어 음력설·추석 등 민족의 고유명절 때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가까운 곳의 경우 성묘를 가기도 한다.

다. 명절

북한에서의 명절은 국경일·기념일·전통민속명절 등을 총칭³⁵⁾하고 있는데, 이 중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국가적 명절에 가장 큰 비중을

35) 『조선말대사전 1』(1992), p.1104.

VII. 사회

두어 왔으며 전통 민속명절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되어 왔다. 그러나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추석때 인근에 조상묘소가 있는 경우에 성묘를 허용하였고, 1988년 이후부터는 추석을 휴식일로 정한데 이어, 1989년부터는 음력설과 단오절까지 휴무일로 인정, 민속고유명절을 부활시켰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전래명절의 부활이라는 측면보다는 과도한 주민 노력동원 등에 따른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교포들의 북한방문이 점증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로 보인다.

국가명절 및 민속명절

명 칭	구 분		비 고
	국가명절	민속명절	
설날		1. 1	
음력설날		1. 1(음)	2일 연휴(음1,2은 휴무일)
정월대보름		1.15(음)	
김정일생일	2. 16		2일 연휴(2.17은 휴무일)
국제부녀절	3. 8		
김일성생일	4. 15		2일 연휴(4.16은 휴무일)
인민군창건일	4. 25		
국제노동자절	5. 1		
수리날(단오)		5. 5(음)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7. 27		
해방기념일	8. 15		
한가위(추석)		8.15(음)	2일 연휴(8.16은 휴무일)
정권창건일	9. 9		
노동당창건일	10. 10		
헌법절	12. 27		
계	10개	5개	총 15개, 19일 휴무

기념일 현황

기 념 일	일 자	제정 일자
건재공업절	1. 8	1983.12. 9
무역절	1.28	1997. 1.23
기계절	2.20	1972. 1.13
식수절	3. 2	1971. 3.25
농업근로자절	3. 5	1971. 3. 5
어부절	3.22	1962. 5.23
보건절	4. 5	1980. 4. 5
체신절	4. 8	1972. 1.13
탄부절	4.24	1990.10.31
철도절	5.11	1963. 3.18
지질탐사절	5.15	1970. 2. 3
건설자절	5.21	1971. 4.30
국제아동절	6. 1	1950. 4
해군절	6. 5	1972. 6. 3
소년단창단일	6. 6	1946. 6. 6
지방공업절	6. 7	1970. 4. 6
포병절	6.20	1982.10.28
선박공업절	6.23	1988. 4.21
광부절	7. 1	1957. 7. 5
육해운절	7.24	1972. 2.26
임업근로자절	8.10	1963. 8.10
공군절	8.20	1972. 5.20
청년절	8.28	1991. 2. 1
도시경영절	9. 5	1982. 8. 2
교육절	9. 5	1977. 9.19
상업절	9.15	1971.11. 6
피복공업절	9.20	1998. 2. 4
전기절	9.24	1971. 9.15
금속노동자절	10. 9	1970. 4.17
방송절	10.14	1970.10.14
체육절	10월 둘째 일요일	1949. 8. 2
방직공업절	10.15	1973.10.15
출판절	11. 1	1970.12.20
화학공업절	12. 6	1976.10.16
총 기념일수	34개	

현재 북한의 명절은 소위 10대 국가명절과 5대 민속명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대 국가명절은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창건일, 노동당창건일 등 이상화 및 체제선전에 맞추어 지정하고 있고, 5대 민속명절은 음력설을 비롯하여 양력설,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양력설을 대신하여 음력설을 ‘기본 설 명절’로 정하고 정월대보름과 함께 크게 쇠고 있으며, 단오·추석도 예로부터 불러오던 수리날, 한가위로 바뀌 부르고 있다. 이는 남북한이 ‘같은 전통, 같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속명절의 경우는 휴무일로 지정하고는 있으나 휴무일을 전후한 일요일을 대신 선정하여 보충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대휴’라고 일컫고 있다. 북한의 명절은 전래명절 부활추세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사상 고취와 김일성·김정일 이상화를 위해 새로 설정한 소위 ‘사회주의 명절’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여 충성의 편지전달 이어달리기, 예술공연, 체육행사, 그리고 토론회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김일성 사망 후에도 생존시와 같이 김일성 생일기념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34개에 달하는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기념일은 해당부문 종사자들끼리 모여 생산을 독려하는 기념행사를 갖은 뒤 하루 쉰다.

라. 민속놀이

전래의 민속놀이는 거의 소멸되었으나 민속명절의 부활과 함께 1990년부터 정책적으로 주민들에게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각종 정치학습과 생활총화에 쫓기는 관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TV, 라디오 등 보도매체를 통해 민속놀이를 소개해 주고 있다.

한편 북한은 추석에 주민들이 민속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선전해 왔지만, 농약은 노동절이나 정권창건일 등 특별한 기념행사때 극장 또는 야외에서

공연되며, 널뛰기는 곡예의 한 종목으로, 그네뛰기와 활쏘기는 민속체육의 경기종목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민속놀이는 각종 명절에 형식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속놀이의 변화과정

시 기	내 용
한국전쟁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민속놀이 존속 - 그네, 씨름(단오) -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음력설) - 농악무,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등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놀이 일부가 생산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 - 농악을 행사에 이용(5·1절, 8·15 등) - 노동자의 놀이로서 씨름, 그네, 줄다리기 장려
196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형태로 변형 - 군중적 집단놀이로 변형 - 활쏘기 등을 계급교양과 결부(표적은 미군) - 씨름, 그네를 '민족경기' 로 채택
199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족제일주의' 에 의한 전통문화 부활 - 민족정서가 들어 있는 민속놀이를 긍정적으로 평가 - 각종 명절, 아동절 등에 민속놀이 활성화 - 음력설을 크게 쇠고 정월대보름이 민속명절로 지정되면서 민속놀이 전지역에 확산

8. 환경

가. 환경정책

북한에서 환경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0년대 제1차 7개년 계획에 따라 중공업 우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단지 건설 등 공업규모의 양적 팽창과 광산자원 등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산업공해가 나타나면서 부터이다.

이에 따라 1972년 12월에 개최된 ‘전국자연과학일군대회’에서 김일성은 광공업분야의 공해방지를 언급하면서, 공장·기업소를 분산 배치할 것과 주택지구와 공장을 격리 건설하고 각 공장·기업소에 수질오염 및 매연 방지 설비를 구비토록 촉구하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제정³⁶⁾,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그 동안의 각종 시책을 체계적으로 입법화하면서 부터이다.

이에 따른 대표적 시책으로는 북한 전역에 자연환경보호구 및 특별보호구 지정, 10여 개의 환경오염관측소 및 기상수문관측소 신규 설치, 평양의 평천오수정화장을 비롯한 10여개의 정화장·침전지 건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남흥청년연합기업소·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등 산업시설에 대한 공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두차례에 걸친 수해로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한 북한은 1995년 12월 전 5장 55조로 구성된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일반원칙, 환경보호지도·관리,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재 등을 구체화하였다.

36) 환경보호법은 모두 5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제1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제2장), 환경오염 방지대책(제3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지침(제4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조치(제5장) 등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대외적으로도 나타났다. 1963년 5월 IUCN(국제 자연 및 자연자원 보존연맹)에 가입하고 UNEP(유엔환경계획) 회의에 참가해 오고 있다. 그리고 1990년 12월에는 평양에서 UNDP(유엔 개발계획), UNEP 대표 및 환경보호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업오염의 감시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93년 2월에는 부문별로 산재된 환경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정무원 산하에 비상설기구로 설치하였으며 1996년 10월에는 동 기구를 정식 정무원 기구로 ‘국토환경보호부’를 신설하였다.

1998년 9월에는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더불어 국가권력 개편을 단행한 결과 ‘도시경영부’와 ‘국토환경보호부’를 합쳐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통합 개편하였다가 1999년에 이를 다시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1993년 6월 평양에서 북한 최초로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6년 9월에는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군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매년 계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또 1996년 10월에는 기존의 ‘모범산림군’ (시·구역) 칭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환경보호 모범군’ (시·구역) 칭호를 제정하였으며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수년에 걸친 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황폐화된 국토의 복구·재건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동원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권수립 50주년을 맞았던 1998년에는 각 기관은 물론 공장·기업소·가정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을 벌인 바 있다. 종전의 ‘식수월간’ (4~5월, 10~11월)을 ‘국토환경보호월간’으로 바꾸어 조림사업 이외에 도로관리, 준설공사, 주거 및 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1999년에는 식수절을 종전의 4월 6일에서 3월 2일로

변경하였다.

한편, 북한은 국토환경보호 차원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자연보호구를 설정, 관리해 오고 있으며³⁷⁾ 현재 자연보호구는 백두산, 묘향산, 오가산, 금강산, 구월산, 칠보산 등 6곳으로 되어 있다³⁸⁾.

이 가운데 백두산은 특별보호구로서 1979년에 국제생물권보호구역으로 확정되어 국제적 보호사업과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동물보호구 15곳, 식물보호구 17곳, 바다새 번식보호구 8곳, 수산자원보호구 4곳, 습지보호구 12곳 등 100여개의 보호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오염실태

북한은 그들 스스로 ‘공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다.³⁹⁾ 그러나 지속적인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금속·화학공장, 탄광 및 광산 등 공업지대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공해방지를 위한 자본력, 기술의 절대부족으로 오염방지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요 공장지대인 흥남, 함흥지역에서는 흥남비료공장, 흥남제철소, 2·8

37) 북한은 자연보호구를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상태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선대백과사전 16』(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362.

38) 6개의 자연보호구중 백두산·묘향산·오가산 자연보호구는 1959년 3월 내각결정 제29호에 의해서, 금강산·구월산·칠보산 자연보호구는 1976년 10월 정무원 결정에 의해서 지정되었다: 『조선대백과사전 16』(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362.

39)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1986. 4. 7)에서 부주석 리중옥은 연설을 통해 북한은 ‘공해없는 나라, 공원속의 도시, 인민의 지상낙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날론연합기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염소가스, 일산화탄소 등으로 각종 공해병을 유발시키고 있다.

공해병의 경우 청진내륙지역의 김책제철소와 청진화학섬유공장, 원산지역의 문평제련소, 원산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유해가스로 인해 상당수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및 기관지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수질오염

수질오염은 공장이나 광산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의한 오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분뇨처리 정화시설 부족과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 등이 있고, 농촌에서는 분뇨를 비료로 사용함으로써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평양의 상수원인 대동강은 서해갑문 건설이후 남포지역의 공장폐수가 역류하면서 부영양화가 심화돼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는 광경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두만강 중·상류 지방에서는 무산탄광, 회령제지공장, 회령시멘트공장 등으로부터 탄광폐수, 표백제, 생활오수 유입으로 인해 수생식물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압록강의 경우 두만강보다는 심하지 않으나 중·상류 지방에 산재해 있는 광산과 만포시멘트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 뿐만 아니라 중장진, 신의주, 혜산 등의 도시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및 도시내 소규모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점점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자연훼손

북한에는 생태적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편이나 각종 대형 사업 실시로 인해 크게 훼손되어져 있다.

즉, 1960년 이래 계속된 4대군사노선에 의한 전국토의 요새화, 1970년대부터 시작한 자연개조 5대 방침에 의한 다락 밭 개간 및 1980년대에 시작한 '새 땅

찾기' 사업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등은 자연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자연훼손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백두산·금강산·묘향산·칠보산·수양산 등 명산의 절경지역 천연바위에 김일성·김정일의 이상화 글귀를 새겨놓고 있다.

특히 경관이 수려한 금강산의 자연훼손이 가장 심각하다. 관동팔경의 하나인 삼일포를 비롯하여 만물상 등의 절경과 내금강 만폭동의 오선봉, 외금강 구룡연의 옥녀봉, 금강산 온정리 매바위산, 그 밖에 묘향산 상원동·만폭동의 자연바위, 백두산의 정일봉 등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자연훼손 사례는 금강산 지역에만도 70여개소에 4,500여 글자를 새긴 것을 비롯하여 북한 전역으로는 약 390개소 2만여 글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분야의 주요 조치

시 기	주 요 내 용
1986. 4	·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 '환경보호법' 제정(전 5장 52조)
1990. 12	· 산업오염의 감시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개최
1991. 4	· '모범산림군' (시·구역) 칭호 제정
1993. 2	· 정무원산하에 비상설기구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신설 - 부문별로 산재한 환경업무를 총괄·조정
1993. 6	· 북한최초로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실시 -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주최, 북한주재 UNDP 대표부 직원 참가
1995. 12	·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채택(전 5장 55조)
1996. 9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꾼회의 개최 (1996년 이후 매년 개최)
1996	·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제정(4장 34조) · 기존의 '모범산림군' 칭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환경보호 모범군' (시·구역) 칭호 제정 · 정무원 부서로 '국토환경보호부' 신설
1996. 11	· 매년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 로 제정 ('96. 11. 27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1997	· 물자원법제정 (5장 37조) · 수자원 조성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정 · 바다오염방지법 제정
1998	· 종전의 '식수월간' (4~5월, 10~11월)을 '국토환경보호월간' 으로 변경 · 국토환경보호단속법 제정 · 헌법개정에 따라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 보호성' 신설
1999	· 식수절 변경(4월 6일 → 3월 2일) ·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 을 '도시경영성' 과 '국토환경보 호성' 으로 분리·개편 · 유용동물보호법 개정(1959년 '유용동식물 보호할데 대하여' 를 수정·보완) · 유용동물보호법시행규정 제정(4장 37조)
2002	· 금강산관광지구법 제정(29조 부칙3조)
2003. 2	· 하천법 제정(5장 39조)

VIII. 문화



1. 교육

가. 교육정책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43조에서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 교육이념이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의 육성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이념에 따른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침으로는 김일성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설, 교시와 명령을 정리하여 1977년 9월 5일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¹⁾이다. 여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제시, 충직한 혁명투사로서 필요한 소양을 길러주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99년 8월에는 교육법을 채택하여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각종 교시와 지침을 종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동 법은 제1장 교육법의 기본, 제2장 전반적 무료의무 교육제,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꾼,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제5장 교육조건보장, 제6장 교육사업 등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교육법은 지난 1977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교육테제’에서 ‘혁명인재 육성’을 ‘인재육성’으로 이념성을 완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 ‘교육과 실천을 결합하여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강조, 이념성보다 실리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1)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제1장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제2장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제3장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제4장 사회주의 교육제도, 제5장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교육은 이러한 이념과 목표에 따라 계급의식을 고양, 공산주의 인간으로 육성하며 또한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칠 것을 교양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4월부터는 각지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써 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선택과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2년 10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초등교육기관인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각각 개칭하면서 학제를 개편하였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양질의 기술 인력을 조기 배출하여 산업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수업연한을 4년으로 축소 조정하고 종래의 점수제에서 학점제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북한은 교육체계 및 내용 개편을 통해 실용주의적으로 교과내용과 교수의 질을 개선하며 과학기술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실력있는 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나. 교육관리체계

북한의 교육정책 수립과 총괄적 지도·통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에서 하고 정책집행과 교육행정의 총괄은 내각 산하의 교육성에서 하도록 분담하고 있다. 교육성 밑에는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를 두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대한 총괄지도는 도(직할시)·시 인민위원회 교육국이 담당한다.

학제는 4-6-4(7)제로서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은 4~7년으로 되어 있으며, 11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 반 1년부터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까지로 되어 있다.

(1) 의무교육

북한에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全民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 북한에서 말하는 의무교육의 취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기에 사회주의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학생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두고 있다.

의무교육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4차회의(1949.9.8)에서 1950년 7월 1일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고 195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4년제 인민학교)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 3년제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1967년에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4년제 인민학교(현 소학교)와 5년제 고등중학교(현 중학교)를 의무제로 한 것으로, 고등중학교의 5년과정은 처음 3년간은 일반적인 중학교교육을, 그 후의 2년간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기술교육으로 되어 있다.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10년제 의무교육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1972년 당 제5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10년제 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전 의무교육’을 동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75년 9월부터는 이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라 하여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을 유치원 높은 반, 취학전 나이인 만 5세로 1년을 낮추었다.

북한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은 이 기간동안 중등 일반지식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결합시켜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한다.

2)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9. 5) 참조.

(2) 고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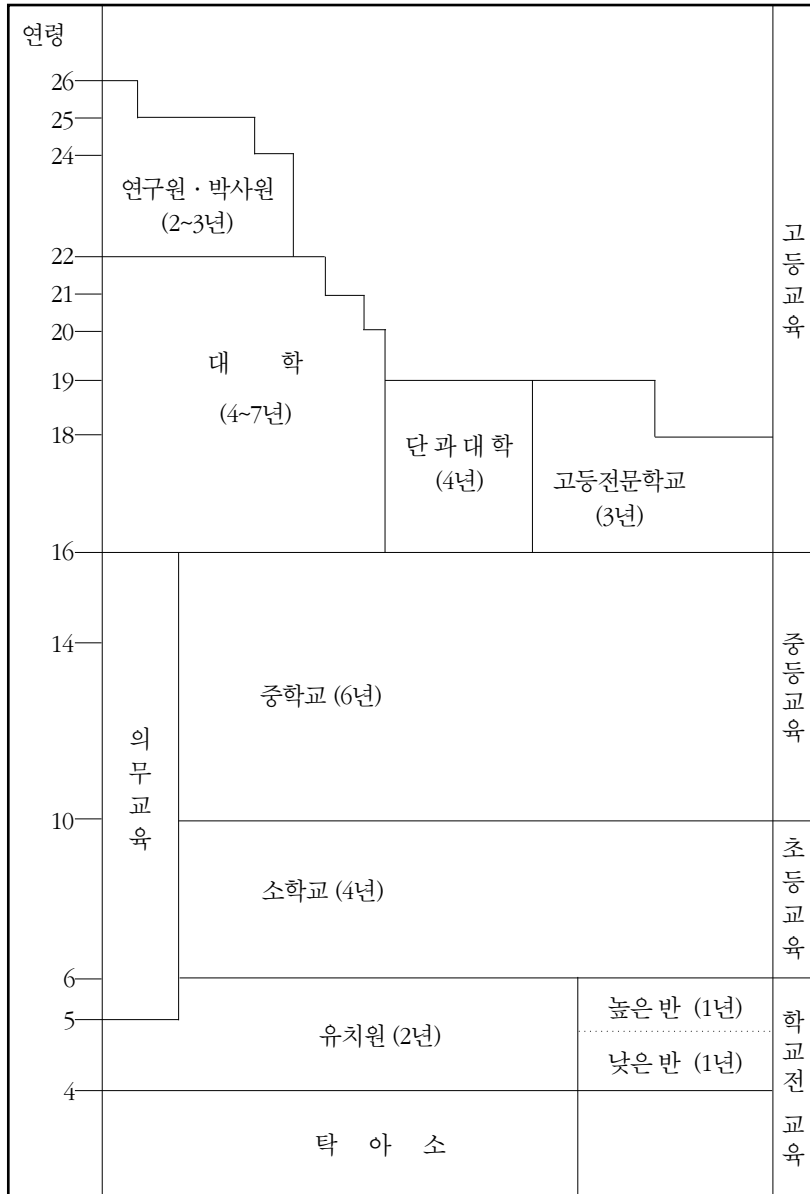
북한에서 고등교육기관은 1946년 조직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동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을 평양에 건립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48년 7월 7일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제157호 결정’에 의해 고등교육 확장 시책이 발표되었다. 한국전쟁 휴전 후 ‘3개년 복구건설기’(1954~1956년)에는 정치·경제분야 대학들이 신설되었으며, 1957년부터 시작된 ‘5개년계획’ 기간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중등교원의 대량 양성을 위한 교원대학과 사범대학 확장에 주력하였다.

1960년 8월에는 노동당 확대전원회의를 개최, 6개년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야간대학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7개년 인민경제계획(1961~1970년) 기간동안 공장대학이 증설되었다. 이어 제2차 7개년경제계획(1978~1984년) 기간에는 부족되는 각급 학교건설을 당면과업으로 설정하고 소규모의 공장대학·통신대학·전문학교 등의 증설에 주력하였다.

현재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을 위시하여 280여개의 대학이 있는데, 각 도에 공업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공산대학 등이 있다.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는 공장대학이, 대규모의 협동농장과 수산사업소에는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부설되어 있다. 이외에 체육 및 예술전문학교와 기술계 전문학교가 있다.

최근 과학기술증시 요구에 맞게 관련분야 인재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199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자동화학부와 물리학부를 일부 개편하여 ‘컴퓨터과학대학’을, 2001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도 ‘정보과학기술대학’과 ‘기계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였다. 또한 ‘평양컴퓨터기술대학’과 ‘함흥컴퓨터기술대학’을 설립하고 일부 전문학교를 단과대학으로 승격시켰으며 각 대학에도 컴퓨터 관련 학부나 학과를 신설하였다.

교육 체계



* 출처: 『조선중앙년감』(2002), p.171.

다. 교육내용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과 기술교육의 양대 과목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소학교는 4년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을 위시하여 '공산주의 도덕', '국어', '수학' 등 총 12개 과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학교 교육과정

번호	구분 과목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2	경애하는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1	1	1	1
3	공산주의 투사 김정숙어머니 어린시절	1	1	1	1
4	공산주의 도덕	1	1	1	1
5	수학	5	5	6	6
6	국어	8	8	7	7
7	자연	2	2	2	2
8	위생	1	1	1	1
9	음악	2	2	2	2
10	체육	2	2	2	2
11	도화	1	1	1	1
12	공작	1	1	1	1

* 북한 교육성의 1996년 교육과정안을 기초로 하여 이후 변화내용 반영

* 1학기 16주, 2학기 18주

* 여름(8. 1-31), 겨울방학(1. 1- 2.16)

중학교 교육과정

번호	구분 과목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2	2	2
3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장군님 혁명활동	1	1	1			
4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2	2	2
5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니 혁명역사				1		
6	공산주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당정책				1주	1주	1주
8	국어	5	5	4			
9	문학				4	3	2
10	한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역사	1	1	2	2	2	2
13	지리	2	2	2	2	2	
14	수학	7	7	6	6	6	6
15	물리		2	3	4	4	4
16	화학			2	3	3	4
17	생물		2	2	2	3	3
18	체육	2	2	2	1	1	1
19	음악	1	1	1	1		
20	미술	1	1				
21	제도				1	1	
22	컴퓨터				2	2	
23	실습(남·여)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 북한 교육성의 1996년 교육과정안을 기초로 하여 이후 변화내용 반영

* 1~3학년은 연간 50주, 4~6학년은 연간 40주

중학교는 6년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혁명활동', '현행 당 정책', '수학' 등 총 23개 과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일과후에는 하루 1~2시간씩 체육 등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학생들은 견학 명목으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파견되어 1주일간 노동을 하여야 하며 방학기간에는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전적지·사적지 등을 답사하기도 한다.

대학은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공통과목으로 '주체철학', '혁명력사', '주체정치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하고 전공에 따라 20~30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어, 러시아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1개 이상 수료하도록 하는 등 외국어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라. 교원양성

교원양성제도는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정규과정은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 교원이 되는 과정이며, 비정규과정은 통신대학, 교원·사범대학의 야간학부 등을 졸업후 '교원자격검정시험'을 통해 교원이 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사회경력자 중 6월~1년의 단기과정의 교원양성소를 거쳐 교원이 될 수도 있다.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실태를 보면 교원대학은 3년제로 유치원 교양원과 소학교 교원(교사)을 양성하며, 각 도·직할시에 1개씩 총 13개가 있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중학교 교원(교사)을 양성하며, 각 지역에 19개가 분포되어 있다.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원(교수)은 6년제인 김형직사범대학에서만 양성해 왔으나 1994년부터는 각 사범대학에 교육기간 3년인 박사원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탁아소에 종사하는 보육원을 양성하는 기관인 '보육원양성소'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주로 사회경력이 있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교육기간은 1년으로 북한내 총 20개가 있다.

한편 북한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교육은 각 도·시·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재교육강습소’에서 실시하며, 재교육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매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재교육 강습소’에서 ‘자질향상시험’을 통해 교원들의 정치사상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스스로 자질 향상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마. 특수교육

북한의 특수교육기관으로는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제1중학교’, 혁명유가족 및 특권층 자제교육을 위한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해주 혁명학원’,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의 각급 예·체능전문학교, 외국어의 중점교육을 위한 ‘평양 외국어학원’ 등이 있다.

‘제1중학교’는 정규 중등학교 과정으로서 1984년 9월 평양 제1중학교 설립을 시발로 하여 전국에 20개가 설립되었으나 1999년 시·군에 까지 확대신설³⁾하여 현재 200여개가 있는데 주로 과학·수학·물리 분야의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중점 실시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1년제(유치원 높은반~중학교과정)로서 1947년 10월 12일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입학자격은 혁명 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 자녀들로서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군사적 체계하에서 교육을 받는다.

‘평양 외국어학원’은 6년제 중학교 과정으로서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 기타 각 시·도에도 각각 1개교씩 외국어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북한은 영국·독일 등 EU 13개국과 외교관계 수립 이후 대외개방과 시대적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영문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영·중국어 등의 국제공용어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등과정에서 1990년대 초반 까지는 영어와 러시아어의 비율이 50:50이었으나 소련 붕괴 후에는 영어 비중이 증가되는 대신 러시아어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3) 『조선중앙방송』(1999. 3.31)

2. 문학·예술

가. 문예정책 및 이론

(1) 문예정책의 기초

북한에서 ‘문학예술’은 문학을 비롯하여 음악·미술·공연예술 등 모든 예술 장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북한은 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자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목적주의 예술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술관 아래 북한에서는 예술의 본질적 특성과 이념을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으로 보고 있다. 원래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은 마르크스-레닌의 문예관으로부터 비롯된 예술의 기본 이념이지만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대두된 이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주체문예이론으로 대체하고 그 내용을 변형하여 문예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북한 예술에서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⁴⁾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은 ‘당의 로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에서는 노동계급을 ‘어느 계급보다도 혁명성이 강한 가장 선진적인 계급’⁶⁾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그 본질적 특성인 ‘로동계급성’에 따라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복무하며 인민대중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 하는 것”⁷⁾이라 주장한다.

4) 『김일성저작집 35』, p.378.

5) 위의 책, p.378.

6) 위의 책, p.249.

7)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364.

‘인민성’이란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인민들의 사상 감정에 맞는 예술로 만드는 것”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민대중에게 맞도록 예술을 대중화함으로써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떠밀고 나가도록”⁹⁾하는 수단으로 예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념이 ‘인민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예술의 세 가지 본질 중에서 ‘당성’을 ‘로동계급성의 가장 철저한 표현이며 인민성의 가장 높은 형태’로 규정하여 당성을 노동계급성이나 인민성보다 우위에 놓고 당성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과 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철저한 복무성’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로 모든 예술을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북한의 예술은 오직 김일성 유일사상과 당의 정책과 지도에 의해서 창작되는 철저한 체제 종속의 예술이 되었다.

(2) 주체문예이론

북한에서는 1970년대까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예술의 기본 원리로 삼아왔다. 그러나 1980년 10월에 열린 제6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화하고 “맑스-레닌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라는 당규약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바꿈으로써 김일성 권력과 주체사상을 절대화하게 된 이후부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주체문예이론으로 대체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이 공식화하게 된 것은 1980년 12월 김정일이 ‘전국선전 일군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고 창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

8) 『김일성저작집 13』, p.345.

9)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88.

시키며 그에 기초한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을 제창 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72년부터 문학예술 부문에 하달된 김정일의 지시를 종합하여 ‘주체의 문예이론’이라고 일컫고 ‘말씀 시리즈’로 발간하여 예술분야의 종합적인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주체문예이론의 등장에 대하여 ‘세계 문예이론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형성 과정을 김정일이 주도했듯이 주체문예이론 역시 김정일에 의해 형성된 문예이론이다. 주체문예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문예관, 기본이념, 창작방법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중국적으로는 모든 문학예술의 기본 원리를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종속시키고자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문예이론은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고 ‘당의 문예정책 관철과 당의 유일사상이 정확히 구현된 문학예술작품을 만들어 낼 것’¹⁰⁾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주체문예이론은 주체사상의 기본 원리인 ‘공산주의적 인간학’을 기초로 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 이념인 ‘당성·로동계급성·인민성’을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종속시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형화론, 종자론, 속도전 등을 기본 이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형화론이란 공산주의적 인간을 기본 주인공으로 중심에 내세우고 그의 사상성과 생활을 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인물’을 말한다.

이러한 전형화 이론에 따라 문학예술은 ‘비타협적 투쟁으로 긍정인물이 승리’하고 ‘부정적 인물은 결국 교양·개조’되며 사회주의 우월성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에서는 갈등을 설정하지 않는다¹¹⁾ 획일적인 예술

10)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p.20.

11) 한중모 외,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195~208.

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종자론은 1970년대부터 도입된 이론으로서, 종자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¹²⁾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자에 있어 기본은 사상에 두어야 하고 소재와 주제의 요소들은 사상적 알맹이에 의하여 제약되며 거기에 복종된다.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¹³⁾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결국은 종자론은 예술을 통해 김일성 유일사상과 당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귀착된다.

특히 종자론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정치 사상적 이념으로 확대하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종자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자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속도전이란 예술창작에서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창작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 나가면서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¹⁴⁾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예술에 대한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높아가고 있어 더 우수하고 많은 작품을 창작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속도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의 사상의 핵인 ‘종자’를 바로 쥐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결국 김일성과 당이 제시하는 노선과 정책을 빠른 속도로 예술 창작에 반영함으로써 예술을 인민대중의 사상의식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주체문예이론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이론들은 문학예술을 통해 김일성의 교시와 당 정책을 관철하고 이를 통해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12) 김정일, 『영화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p.17.

13)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769.

14) 한중모 외, 앞의 책, p.186.

무장시킴으로써 김일성 유일사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예관’을 잘 드러내주는 이론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붉은기 사상’, ‘고난의 행군’ 등 매 시기마다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고 이를 예술작품에 반영하도록 문학예술인들을 추동하고 있다.

2002년 10월 북핵문제 발생 이후에는 국제적 고립 심화에 따른 체제위기감 속에서 문학예술인들에게 김정일의 선군정치 찬양, 주민들의 반미투쟁 제고 등을 주제로 한 선군문학 예술작품 창작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

특히 2003년 4월 7일에는 ‘제2차 전국예술교육일군열성자 회의’를 개최하여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 인재들을 양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나. 문예단체

직업예술인의 조직체이자 문학·예술을 총괄하는 단체로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이 있다. 이에 소속된 예술단체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사진가동맹 등 7개 동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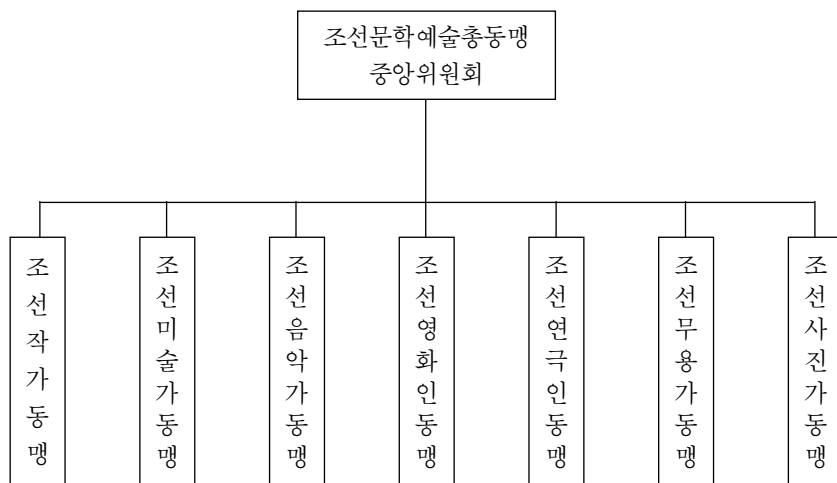
문예총은 김일성에 의하여 이룩되었다는 혁명문학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당의 문예정책 관철을 위해 투쟁¹⁵⁾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예총은 1946년 3월 25일 북조선문학예술총연맹으로 발족되었다가 1951년 3월 10일 월북한 남한 예술인들을 흡수하여 개편된 조선문학예술동맹의 후신이다.

이 조선문학예술동맹은 1953년 9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립화, 리원조, 김남천, 설정식 등 남로당계 문예인들의 숙청으로 해산되고 개별단체로 작가동맹, 작곡가동맹, 미술가동맹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15) 『문학예술사전(中)』(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502.

2월 무용가동맹, 사진가동맹 등 몇 개의 예술동맹을 다시 망라하여 현재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재조직된 것이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조직



* 주 : 각 동맹 산하에는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각 시·도에는 총동맹 시·도위원회와 부문별 동맹 시·도위원회가 있다.

북한의 모든 작가·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소속된 철저한 조직인으로서 주체의 구성과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 평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문예총의 각 하위 동맹들은 각각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월간지로서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조선예술’ 등이, 계간지로서 2001년부터 ‘예술교육’ 이 발행되고 있다.

주체문예이론의 대두와 주체사상체계의 확립 이후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위대성과 령도의 혁명성’ 을 그려내기 위한 집체창작이 각 예술

분야의 창작단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문학 분야의 4·15문학창작단, 공연예술분야의 피바다가극단, 만수대예술단, 미술분야의 만수대창작사 등이 대표적인 창작 및 예술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는 작가·예술인 전문 조직인 문예총과는 별도로 아마추어 작가와 예술인의 모임인 문예소조가 전지역에 걸쳐 조직되어 있다. 문예소조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각급학교, 인민군대에 폭넓게 조직되어 있는데 문학소조, 연극소조, 음악소조, 미술소조 등 장르별로 구성되어 있다.

문예소조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문화혁명의 한 조직체가 된다. 문예소조원들의 창작품은 각 동맹의 기관지를 통해 발표되기도 하고 이들 중 일부는 후보맹원으로 발탁되어 일정기간 정맹원의 지도를 받은 후 문예총의 정맹원으로 가입하여 전문 작가나 예술가가 되기도 한다.

다. 분야별 현황

(1) 문학

북한의 문학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50여년을 거치며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이 변화는 문학 자체 내의 변화 논리에 의하여 변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체제와 정책의 변화에 종속된 변화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소위 '평화적 건설시기' (1945. 8~1950. 6)로부터 1967년 김일성의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방침'이 나오면서 주체사상이 등장하기 전까지, 북한 문학은 인민대중의 사상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김일성에게로 권력을 집중하는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서 주로 이용되어 왔다.

해방 직후에는 문학이 인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선전 선동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중화론'이 주요한 이론으로 등장하고 작가는 '인간

의지를 개조하는 기사'로 규정되었다. 이때의 문학은 주로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거나 사회주의 제도로의 변화를 찬양하거나 또는 소련과의 우호친선을 주요한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전쟁의 시기에 이르면, 문학은 '사상 개변의 교양적 역할'에서 '투쟁의 무기'로 바뀌게 되었고 문학은 격렬한 어조로 반미 투쟁의 전면에서 나서게 되며 이때부터 정론문학, 실화문학 등이 등장하게 된다.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시기'(1953. 7~1960)에 이르면 정치적 숙청과 함께 문학에서도 '사상투쟁'이 벌어짐으로써 사회주의 문학이론이 점차 강화되었다. 1960년부터를 소위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투쟁 시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3대 혁명 이론과 그 방법으로 천리마 운동이 제시된다.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권력 집중화가 가속되고 이에 따라 문학은 당시의 현실과 당 정책을 반영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당정책 가요' 등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반영하는 작품들과 남한 현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 항일혁명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67년 김일성의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방침'이 나온 이후의 시기를 일컬어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시기'라 부르고 있다. 이때부터 '주체사상'이 확립되고 김일성의 권력이 점차 절대화되어 가게 됨에 따라 '유일사상체계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를 위한 문학의 임무가 강조된다.

이때 북한에서 '제1차 문예혁명'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백두산창작단¹⁶⁾, 4·15문학창작단 등이 창설되고 김일성 유일사상을 체계화하는 작업과 예술 활동을 통해 이를 선전·선동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때

16) '백두산창작단'은 1967년 6월 창립되어 예술영화 '내나라'(1988년) 등을 제작했으나 1993년에 해체되었다.

부터 문학예술의 주요한 이론인 ‘전형화론’, ‘종자론’, ‘속도전론’, ‘집체 창작방법’ 등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이르러 5대 혁명가극의 완성을 보게 된다.

문학작품들은 김일성의 소위 ‘항일혁명 투쟁’ 을 중심으로 한 수령 형상화 문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김일성 일가에 대한 찬양 작품들 그리고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주체시대의 인물 전형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김정일이 후계자의 지위를 공식화하기에 이르자, 김정일의 주도로 문학예술은 김일성과 그의 주체사상을 우상화·절대화 하는 일을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문학, 예술 분야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가 사라지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지적’ 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1980년대부터는 ‘주체시대의 문학’ 이라고 불리우는데 1972년부터 4·15문학창작단에 의해 창작되기 시작된 김일성 우상화 시리즈물인 ‘불멸의 력사’ 총서는 1988년에 이르러 항일혁명투쟁의 시기까지가 15권으로 총정리되었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해방후 편이 창작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개선’, ‘푸른산악’, ‘번영의 길’ 등이 출간되어 현재 20여편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와 대비될 수 있는 김정일 우상화 총서로 ‘불멸의 향도’ 총서도 1992년 ‘푸른하늘’ 을 시작으로 2003년 ‘총대’ 에 이르기까지 10여편 간행되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시문학에서 서정화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소설에는 도시와 농촌의 갈등, 세대간의 문제, 여성문제, 애정 윤리 문제 등 다양한 현실문제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시문학에서는 ‘휘파람’, 소설문학에서는 ‘청춘송가’ 가 이 시대 남녀의 애정을 다룬 작품으로 유명하다. 1990년대에 이르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인 ‘수령형상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김정일을 형상화하는 예술작품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북한에서 소위 ‘지도자 형상화’ 작품이 대량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김

정일이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인 1991년 말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원수’로 추대된 1992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기간에는 무려 1천6백여편의 찬양시를 창작·발표하였다.

1990년대를 ‘일대 전환의 시기’로 간주하면서 그 이유를 ‘수령형상 문제 해결’과 ‘지도자 형상화’에서 찾고 있다. 이때부터를 북한에서 제2차 문예혁명이 일어난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변화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등이 강조되면서 북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결속시키려는 문학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문학은 김정일 우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오고 있다.

김정일과 김일성을 동일시하는 작품들을 통해 김정일이 김일성을 잇고 있는 유일한 계승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식량난,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 정신과 ‘래일을 위한 오늘’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사상적 해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식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작품들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사상 교육을 강화해 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선군혁명문학’ 창작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면서 선군사상, 선군 정치 선전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집중 창작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의 서정화 경향과 소설의 다양한 주제 취급 현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북한 영화에 남녀간 연애 장면을 다룬 것이나 부부간의 이혼문제를 다룬 소설 ‘벗’의 출간 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추후 북한 문학의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주목을 끈다.

(2) 미술

북한은 미술 역시 순수한 예술로서가 아니라 “미술은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로 되어야 한다”¹⁷⁾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당의 지도에 충실한 작품을 요구하고 있다. 즉 미술을 “조형적 언어를 가지고 현실을 사상미학적으로 파악하며 시각적 구체성, 직관적 명료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형적 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의 사상정서 교양에 이바지”¹⁸⁾하는 예술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술이 노동과정에서 생겨나서 인간생활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고 하면서도 지난날의 미술유산에는 착취 계급의 사상과 취미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이용된 것이 많으며, 일제식민지 통치에 의해 왜곡되어 민족적 및 계급적 대립과 투쟁을 심각하게 제기하여 예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은 참된 미술의 전통을 항일혁명미술에서 찾는데, 김일성이 이끈 항일혁명미술이 최초로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미술이었다고 주장한다.¹⁹⁾ 때문에 북한의 미술에는 기념비 미술이라는 명칭의 목적적 작품이 많고, 선전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²⁰⁾

북한에서는 미술의 분야를 사회적 기능에 따라 기념비 미술, 영화미술, 무대미술, 장식미술, 산업미술, 건축미술, 일반미술로 나누고 있다. 그 외에 재료와 기법에 따라서는 회화, 조각, 공예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주의의 원칙에 따라 추상화·추상조각 등은 ‘추상은 죽음’이라 하여 배척된다. 따라서 “인간성격과 인간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생동하게” 그려낸 사실화만 존재한다.²¹⁾

17) 『김일성저작집 20』(1982), pp.427~473.

18) 『문학예술사전』, p.377.

19) 『조선대백과사전 24』(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p.113~114.

20) 북한 최고의 주체미술가로 평가받았던 사람은 정영만이다. 김일성상 계관인, 인민예술가, 2중노력영웅인 정영만은 1999년 6월 사망하였으며, 그의 사망후 김정일은 유가족에게 친필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21) 『주체리론에 기초한 문예리론』(1976), p.146 참조.

북한의 회화는 조선화 · 유화 · 벽화 · 판화 · 역사화 등이 망라되는데, 조선화는 동양화의 맥을 이은 것이지만 채색과 서양화적 기법을 혼합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공예에는 금속, 자개, 나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만년화라고 하는 독특한 공예도 있다. 만년화는 조개껍질이나 유리구슬을 이용, 모자이크화처럼 그려 제작하는 것으로 만년화 작품으로 '만경대 고향집'이라는 장식화가 유명하다. 또한 '조선보석화'라 하여 조선화를 그린 바탕에 천연보석가루를 안료로 이용하여 그림을 형성하는 회화기법도 있다.²²⁾

공예품의 창작 · 보급은 평양의 중앙미술창작사를 비롯하여 각 시 · 도에 1~2개씩 있는 미술창작사에서 담당하는데, 가장 유명하고 해외에도 수출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곳은 평양 '만수대창작사'²³⁾이다.

(3) 음악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는 북한의 음악 역시 '생활과 인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을 따른다.²⁴⁾

김정일의 통치방식의 하나로 '음악정치'를 선전하며 음악을 통한 사상 교양을 강조함에 따라 북한에서는 기악곡보다 가사를 통한 의사전달이 가능한 성악곡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들 노래의 가사는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²⁵⁾ 혁명성, 노동의욕 등의 고취를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순수 서정적인 가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2) 『조선대백과사전 19』(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46.

23)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술창작단체로 1959년 11월 17일 창립되었다. 산하에 조선화 창작단, 벽화창작단 등 10여개의 창작단과 동상 · 기념품 등 6개 제작단이 있다. 주체사상탑 등 건축물과 평양지하철도 벽화를 비롯하여 수많은 조선화, 유화 등을 창작하였다.

24) 『문학예술사전』, pp.1171~1186.

25) 최초의 김일성 찬가는 '조선의 별'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 노래를 청년공산주의자 '김혁'이 창작하여 1920년대 후반기부터 널리 보급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1999. 2. 5)

‘조선음악 600곡집’에는 가극아리아 190곡, 가곡 302곡, 영화주제가 108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가곡중 80%에 가까운 232편이 직접 김일성을 찬양하는 가사로 되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찬양가요까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는 ‘김정일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노래’, ‘빛나라 정일봉’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널리 보급되었는데 주로 김정일 권력승계에 초점을 두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1995년부터 8년간 발표된 1,000여곡은 ‘선군혁명 음악’이라고 규정하는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승리의 길’, ‘강성부흥 아리랑’, ‘선군시대 인민의 노래’ 등이 대표적이며 김정일 및 당에 대한 충성과 체제결속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들 노래는 주제가 선명한 가사와 따라 부르기 쉬운 평이한 멜로디, 4·4조 혹은 4·3조의 전형적 박자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전통음악은 그 원형이 많이 변형되었다. 전통성악 중 판소리는 김일성이 특유의 탁성을 ‘쌩소리’라 하여 비판하였기 때문에 거의 소멸되었다. 유장하고 애절한 여운을 지닌 ‘서도소리’도 발성의 난이성 때문에 인민적인 것이 아니라고 거부되고, 전승되는 민요나 기타 노래도 목에서 쉽게 나오는 비성이 섞인 독특한 가성으로 발성하며 부른다. 따라서 전통음악 특유의 거칠고 유장한 맛은 남아 있지 않다.

전통 기악에서도 악기 개량으로 음색이 달라졌다. 1962년 이후 종래 악기의 제한성(오음계)을 극복하고 아무리 복잡한 곡도 자유자재로 연주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음계 개조운동을 벌여, 전통악기를 12음 반음체계로 변조시켰다. 예컨대 가야금은 명주실로 끈 줄 대신 쇠로 만든 줄을 사용하며 부들을 없애고 현을 18줄 또는 그 이상으로 개량하였다. 전통악기를 새로이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와공후를 개량한 33현의 옥류금이 제작되어 전통음악에서 필수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전통음악은 그들이 인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요나 노동요 외에 대중적으로 연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비롯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민요를 전자악기와 양악기만으로 연주하는 북한식 경음악으로 편곡하여 연주하기도 한다.

또한 일제시대 불렀던 대중가요, 동요, 가곡 등도 반일·애국의 신념을 심어준 계몽기 노래들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변화이다. 서양음악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연주가 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엔 대외용의 연주 및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외에는 연주가 거의 되지 않는다.

대중가요는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경제선동가요 등이 경제현장에서 연주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악기는 아코디언이나 멜로디언, 멜로디카, 관악기 등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비정치적인 생활가요풍의 가요가 창작·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북한 전역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휘파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또한 팝그룹인 ‘보천보 전자악단’과 ‘왕재산 경음악단’²⁶⁾의 공연은 북한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에는 선군정치, 군민일치 미풍 등을 강조하는 가요 창작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전시가요도 다시 등장·보급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을 의식하여 ‘우리는 하나’, ‘반갑습니다’ 등 통일을 주제로 한 가요 보급에 적극적이다.

한편, 북한의 음악가 양성은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비롯하여 각 도에 하나씩 설치된 도 예술대학에서 조기교육을 실시, 우수한 소질을 가진 아동은 집중 교육한다. 그 결과 국립교향악단을 비롯한 북한 교향악단의 수준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4) 영화

예술을 순수예술로서가 아니라 목적예술로 파악하는 북한에서는 영화를

26) 인민배우 김광숙, 공훈배우 리분희 등은 ‘보천보 전자악단’에, 인민배우 럽청 등은 ‘왕재산 경음악단’에 소속되어 있다.

‘직관예술’이라 하여 선전·선동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어떤 예술장르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영화는 북한당국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노동당의 노선 및 정책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의 개인적인 영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도 영화발달에 기여를 하고 있다.

1973년 4월 발표된 ‘영화예술론’은 김정일의 저술로서 주체사상과 주체적 문예이론을 영화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문헌이라고 북한은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영화예술론’은 북한의 영화정책과 영화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로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제작된 모든 영화는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며, 김정일 체제에서의 영화제작의 지침이 되고 있다.

원래 북한 영화는 긍정 전형과 부정 전형의 대립에서 긍정 전형이 승리하는 구도로서, 악역은 미군·일제·반당분자·지주·자본가 등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 전형인 악역이 시대적 공감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김정일의 지시 아래 상대적으로 부정 전형이 없는 상태에서 ‘긍정 전형을 통한 감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²⁷⁾ 그 이후 절대적 악역은 없어지고 오직 긍정적 주인공의 감동적인 태도로 모든 오류가 시정되는 구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북한영화는 1950년대 천리마운동 이후 대형화 되어 20편까지 이어지는 대작시리즈 등 방대한 작품제작에 치우쳤으나, 대작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해외영화제에서 외면받자 1984년 이후 규모를 다소 줄이는 대신 서정성·사실성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김정일 지시에 의해 사회주의체제 선전을 위한 다부작 극영화 ‘민족과 운명’이 1992년부터 제작중에 있으며 2003년 8월 현재

27) 최윤섭, “부정인물형상에서 도식성을 극복하자”, 『청년문학』(평양: 문예출판사, 1988. 4), pp.43~47.

62부(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제9부)까지 제작되었다.²⁸⁾ 1992년 제작 당시에는 50부 제작을 구상하였으나 향후 100부까지 제작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일 출범 이후에는 선군정치가 강조되면서 군사물 영화제작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대외적인 선전에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제영화제에 참여하였고, 1987년 9월에는 ‘비동맹 및 개발도상국 영화축전’²⁹⁾을 창설하였다. 제1차 영화축전에서는 극영화 ‘도라지꽃’으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을, 1990년 9월 개최된 제2차 축전에서 극영화 ‘생의 흔적’으로 여우주연상, 기록영화 ‘통일의 꽃’으로 축전 최고상인 햇불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1992년 9월에 개최된 제3차 축전에서도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2부’가 햇불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에도 1994년의 제4차 축전을 제외하고는 매년 1개부문 또는 양대부문에서 북한영화가 햇불금상을 차지해 왔으며, 2002년 9월 제8차 축전에서도 북한영화 ‘살아있는 영혼들’이 남자배우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북한은 동 축전 개최와 관련하여 제7차 축전에서는 일본 영화를, 제8차 축전에서는 미국 영화를 상영하는 등 서방영화 초청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영화제로는 1991년 2월 김정일 49회 생일을 기해 신설한 ‘조선영화축전’이 유일한데, 여기서는 전년도에 제작된 영화 중 예술·기록·과학·아동영화 등 분야별 최우수 작품을 선정, ‘2·16 영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주요 영화촬영소로는 극영화 전문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³⁰⁾ 조선과학영화촬영소,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 등이 있다. 각 촬영소 내에는 2~3개의 제작진이 ‘창작단’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28) 『조선중앙방송』(2003. 6.29)

29) ‘비동맹 및 개발도상국 영화축전’은 2~3년을 주기로 개최되며, 금·은·동 햇불상과 촬영·연기상 등이 주어진다.

30) 경희극 ‘약속’(1996. 3), ‘축복’(1997. 3), ‘편지’(1998), ‘동지’(1998) 등도 창작하였다.

(5) 연극

북한의 연극은 영화의 등장으로 한때 쇠퇴하였지만 여전히 혁명 교양의 강력한 도구이다. 북한 연극은 항일혁명시기에 김일성이 오가자·무송 등지에서 공연했다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 3대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중심으로 이를 1969~1974년 사이에 대규모 혁명가극으로 각색 공연하여 당의 사상 선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리고 김일성이 일제 시기 직접 써서 공연했다는 연극 ‘성황당’을 김정일이 1978년 6월 14일 대규모 무대에다 음악·무용 등을 가미하여 새롭게 창작하도록 지시한 이후, 새로운 형태인 ‘성황당식 혁명연극’ 방식이 발전을 보게 된다.³¹⁾ 성황당식 혁명연극은 자주적 인간의 전형 창조, 대사를 과장없이 솔직하게 표현, 방창 등 음악적 요소 첨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정일의 지도 아래 찬란히 개화 발전하여 주체예술의 새 전성기’³²⁾를 열게 하였다고 주장한 ‘성황당식 혁명연극’은 5대 혁명연극으로 ‘성황당’, ‘3인 1당’, ‘정축대회’,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를 꼽고 있다.

이와 같이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꾸며진 연극들은 기존의 연극내용에 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와 음악·무용을 가미함과 동시에 “원작에 밝혀진 주제와 사상을 철저히 살리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폭넓게 심화시켰다”³³⁾고 선전하고 있다.

5대 혁명연극 외에 1980년대에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새롭게 창조된 현대극으로는 ‘초석’, ‘조국의 품을 찾아서’, ‘이 길을 간다’, ‘어머니와 아들’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선군혁명시기 연극으로 대표되는 데 연극소재는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각하는 잘못 보았소’, ‘약속’, ‘축복’, ‘끝장을 보자’ 등을

31) 『조선중앙방송』(1988. 6.14)

32) 『조선중앙방송』(1988. 6.14)

33) 『로동신문』(1988. 6. 4)

들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연극인 양성은 평양연극영화대학을 비롯하여 각 도 예술대학, 영화촬영소 양성반과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6) 가극

영화와 더불어 북한당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연 예술분야는 가극이다. 북한의 혁명가극은 오페라 형식을 띠고 있으나 구성면에서 다소 다르다.

우선 가극은 ‘절가’라는 형식의 노래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데, 절가란 여러개의 절로 나누어진 정형시를 하나의 곡에 맞춰 반복하여 부르는 노래로서 반복에 따른 강조의 효과를 띠고 있다.

이 절가는 북한 혁명가극의 기본적인 표현수단으로 혁명가극은 오페라의 대화창과 대화, 레시타티브 등을 모두 절가로 바꾸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혁명가극에는 방창이라는 형태가 있으며 이는 배경합창단이 주인공의 입장, 상대자의 입장, 군중 및 관객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해석하면서 극의 전개를 이끌어가는 합창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방창과 절가가 혁명가극의 표현상의 큰 특징이다.

북한의 혁명가극은 항일혁명기의 연극 ‘혈해’를 김정일의 지시로 개작한 혁명가극 ‘피바다’로부터 출발되어 웅장한 규모의 혁명가극을 속속 공연하였는데, 이로부터 ‘피바다식 혁명가극’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혁명가극의 대표작으로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등을 들 수 있는데 북한은 이를 ‘5대 혁명가극’이라 칭한다.³⁴⁾

특히 ‘피바다’는 1971년 피바다 가극단에서 초연되어 “오늘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참된 교과서가 되고 있으며 혁명적 가극예술의 불멸

34) 『평양방송』(1991. 7.17)

의 가치로, 고전적인 본보기로 되고 있다”³⁵⁾고 선전하고 있다. ‘꽃파는 처녀’ 역시 1972년 만수대예술단에서 초연하였는데, 서경·7장·중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예술단체 현황

단 체 명	내 용
피바다가극단	1946년 북조선가극단으로 발족 1971년 7월 17일 피바다가극단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600여명
만수대예술단	1946년 평양가무단으로 창립 1969년 9월 27일 만수대예술단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300여명
국립교향악단	1946년 중앙교향악단으로 창립 1956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120여명
국립민족예술단	1947년 평양모란봉예술단으로 출발하여 1985년 평양예술단으로 확대 개편, 199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500여명
국립연극단	1946년 중앙예술공작단을 전신으로 창립 197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국립희극단	1994년 창립, 단원수는 불명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1995년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독립
조선인민군협주단	1947년 조선인민군 보안간부훈련대 협주단으로 창립 1948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영화 및 방송음악단	1958년 창립, 단원수는 불명
평양학생소년예술단	1974년 조직, 단원수는 약 100여명

35)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901.

3. 언론 · 출판

가. 언론

(1) 언론정책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7조는 ‘국민은 언론 · 출판 · 집회 ·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언론의 역할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관철하는 한편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것을 맹세한다”고 함으로써³⁶⁾ 언론이 김일성 · 김정일 유일 체제 수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있어 언론은 이러한 김일성 · 김정일의 교시 관철과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복무한다는 역할과 함께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는 기본조건하에서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된다.³⁷⁾

특히 김정일은 1995년 11월 언론매체에 보낸 친필서한을 통해 언론매체가 사상교양 및 통제기능을 강화해 체제결속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⁸⁾

이와 같이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에 부과된 으뜸가는 임무는 김일성 · 김정일의 교시 관철과 당 정책 및 혁명사업을 선전 · 옹호하는 것이다.

36) 조선기자동맹 제8차 대회(2001.11.19)에서 결의.

37) 『로동신문』 2만호 발간기념 사설(2001.12. 1)

38) 김정일이 조선중앙통신사 · 조선중앙방송위원회 · 노동신문사 창간 50돌을 맞아 발송한 기념 축하서한(중방, 1995.12.13)

(2) 언론현황

(가) 신문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개념에 해당하는 신문은 없다. 다만 노동당·내각·사회단체들이 발행하는 기관지가 있을 뿐이다. 즉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기관지인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당위원회에서 발행하는 12개 지방지가 있다. 이상의 15개 일간지 외에 해외홍보용 주간지인 ‘The Pyongyang Times’와 내각의 각 성에서 발간하는 ‘교통신문’, ‘건설신문’, ‘교원신문’ 기관지들이 있으며 공장·기업소 발행의 공공신문과 각 대학발행의 ‘대학신문’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신문들은 우리와는 달리 정보전달 기능이나 비판기능보다는 당이나 정권의 선전선동 수단으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찬양을 비롯하여 각종 정치관련 행사와 선동기사들이 집중 게재되는 반면, 범죄·도난사건, 체제비판 기사나 광고 등은 전혀 취급되지 않는다.

① 노동신문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노동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노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 ‘정로’라는 제호로 창간되었으며, 1946년 9월 1일 현재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북한 언론의 ‘총참모부’라 지칭되고 있는 이 신문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전당과 전체인민을 김정일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 세우며 당 대열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³⁹⁾

또한 노동신문은 대내외 주요현안 및 계기발생시 정론이나 사설 등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현재 조간으로 연중무휴

39) 『조선대백과사전 7』(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p.489.

발행되고 있으며 하루 간지 2면 포함 총 6면으로 발행하고 있다.

노동신문사의 기구와 편제는 조선기자동맹 위원장직을 자동 겸직하는 책임주필이 최고책임자로 책임주필 밑에 3~5명의 부주필이 있고 그 아래 편집국, 당 역사 교양부, 당 생활부, 혁명교양부, 남조선부, 국제부 등 1국 12개 부서가 있다. 또 책임주필 밑에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주필, 부주필, 편집국장, 부국장, 부장 등 12~15명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신문사 운영과 신문제작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논의하고 논평·사설 기사에의 방향을 결정하며 책임주필 이하 신문사의 간부를 형식상으로나마 선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노동신문사는 신문 발행 뿐만 아니라 계기시마다 기념행사를 개최하는가 하면 주요 사설논집, 대내·대외일지, 노농통신원 등의 출판물을 발간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2001년 11월 30일에는 노동신문 2만호 발간을 기념하여 중앙보고회를 개최하고 ‘당의 붓대중시사상과 선군시대에 나아갈 방향과 방도, 언론인들의 과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② 민주조선

민주조선은 1945년 10월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직속기관지인 ‘평양일보’로 출발하여 1946년 6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 민주조선으로 창간되었다. 그후 1948년 9월부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행정적 집행기관인 내각의 기관지로 발행되고 있다.

민주조선은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 당정책 관철에 힘있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⁴⁰⁾

조직은 책임주필, 부주필 2~3명과 편집국, 인민행정부, 공업부, 사회문화부, 지방서한부, 사진부, 재정경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0) 『조선대백과사전 10』(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97.

민주조선에 실리는 기사들은 행정부 기관지의 특징상 당 관계기사 보다는 행정관련 기사가 비교적 많이 실리고 있다. 또 민주조선은 조선 중앙통신사와 노동신문 보도부, 국제부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 4면으로 제작되고 화요일 및 금요일과 특별한 날 등은 6면으로 증면 발행된다.

③ 청년전위

청년전위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1946년 4월 20일 ‘청년’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으며, 1946년 11월 7일 ‘민주청년’으로 개칭되었다. 1964년 5월 17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 대회에서 동 연맹의 명칭이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바뀌자 그 이름도 ‘로동청년’으로 개칭되었으며, 1996년 1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뀔에 따라 1월 19일 ‘청년전위’로 명칭이 바뀌었다.

“청년들 속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해설 선전하며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며 청년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 동원하는 것”에 그 임무를 두고 있다⁴¹⁾

따라서 청년전위는 청소년들이 당의 방침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선전·선동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당의 선전도구라고 할 수 있다.

④ 지방신문

지방신문은 각 시·도당위원회 기관지로 시·도 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발간된다. 지방신문은 “시·도 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의 혁명사상·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김일성·김정일의 지시 관철에로 조직 동원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⁴²⁾

41) 『조선대백과사전 21』(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31.

42) 『조선대백과사전 6』(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306.

지방신문의 기사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사무적·기술적인 면에서는 내각 출판총국의 지시를 받는다.

일간지로서 4면으로 발간되는 지방신문은 대부분 해방직후부터 1950년대에 창간되었다. 현재는 평양신문(1957. 6. 1), 평남일보(1950.12.12), 평북일보(1945.11.27), 함남일보(1945.11.15), 함북일보(1945.11.20), 자강일보(1949. 3.11), 양강일보(1955. 1. 1), 강원일보(1945.12.28), 황남일보(1945. 9. 6), 황북일보(1945.9.6), 개성신문(1952. 2.19), 남포신문(1982. 8.17) 등 12개가 있다.

(나) 방송

① 라디오 방송

북한의 방송사업은 일제하에 있던 평양방송국을 조선중앙방송국이라 개칭하고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 개최한 ‘조국개선환영 평양시군중대회’를 중계방송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55년 4월 9일에는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평양중앙방송의 출력을 150kW로 대폭 강화한 것을 시작으로 다시 300kW로 증강하는 등 방송 시설을 확장하고 평양시의 주요 가로들과 직장구락부, 각 도·시·군 소재지와 노동자구 등지에 유선방송을 설치했다. 또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 평양을 비롯하여 청진, 함흥, 원산, 사리원, 신의주, 개성 등지에 지방방송위원회를 두고 중앙방송의 중계방송과 지역방송을 실시했다.

1957년에는 각 방송국들의 시설정비와 기술을 개선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리원, 강계, 혜산 방송국의 무선방송출력이 증대됨에 따라 방송의 청취지역이 확장되었다. 또한 유선방송시설도 확장되어 234개의 농촌과 리가 새로 유선망이 설치되었고 2만대의 스피커가 증설되었다.

1967년 12월에는 조선중앙방송을 제1중앙방송(300kW)과 제2중앙방송(500kW)으로 분리하여 ‘제1중앙방송’은 대내방송을, ‘제2중앙방송’은 대외와 대남방송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1970년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제1방송, 제2방송, TV방송, 대외방송을 조직하여 각 도(직할시)와 시·군에 지방방송위원회를 설치했고, 1972년 11월 10일 제1방송을 조선중앙방송으로 제2방송을 평양방송으로 개칭하였다. 1989년 1월 1일부터 방송이 시작된 ‘평양FM방송’은 음악을 통한 대남선전용 방송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한편 북한은 정규방송과는 별도로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에서 관장 운영하는 대남 흑색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1967년 3월 평양 순안에 개설된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이 그것이다. 1970년 6월 남한에 ‘통일혁명당’이 1969년 결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으로 개칭했으며 1985년 8월부터 ‘구국의 소리방송’이란 명칭으로 운영하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동방송을 중단하고 8월 15일부터는 ‘조선중앙방송’을 중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3종류의 라디오방송 이외에 11개의 지방방송국과⁴³⁾ 11개의 유선방송국, 200여개의 군·구역방송국, 4,300여개의 방송실이 있다. 유선방송은 평양으로부터 각 도·시·군까지 연결되어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선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의 스피커로 중앙방송을 중계하고 있다.

② TV방송

북한은 1961년 9월 11일 제4차 당대회 이후 TV방송국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1963년 3월 ‘평양텔레비전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1970년 4월 김일성의 생일을 기해 ‘조선중앙 TV’로 개명하였다. 1971년 4월 15일에는 대남선전용으로 ‘개성TV방송국’을 개국했다. TV방송국을 개국한 북한은 TV수상기 제작기술 요원을 일본, 프랑스 등지에 파견 연수하여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연간 TV수상기 1만여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TV방송망을 더욱 강화하여 전국의 텔레비전 보급을 실현하도록

43) 11개의 지방방송국은 해주, 사리원, 개성, 원산, 강계, 평성, 혜산, 남포, 신의주, 함흥, 청진 등이다.

할 것을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⁴⁴⁾ 1971년 텔레비전의 전국적 보급을 위해 마식령, 황해, 원산, 자강도 일대에 중계탑을 건설하는 등 중계시설을 확장하였다.

1973년 12월 4일 평양시민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토·일요일에 한해 영화, 스포츠 등을 주로 방영하는 '만수대 TV방송국'을 개국하였다.

1974년 4월 15일 김일성의 62회 생일을 계기로 북한 유일의 대내용 TV방송인 조선중앙TV의 컬러방송을 실시하였다.

1997년 2월 16일에는 김정일 생일을 기해 대남선전용인 개성TV 방송을 개편하여 대남 방송은 조선중앙TV 방송을 그대로 받아서 방송하고 있으며, 대내 방송은 조선 교육문화TV를 신설하여 방송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 10월 10일 당창건 54돌을 맞아 위성 중계방송을 시작하였다.

최근들어 방송의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TV 방송 내용은 드라마 소재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시청률 제고를 위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드라마를 황금시간대(20:30~21:30)에 편성하고 있다. 작품주제도 당·수령·체제우월성 외에 '신사고' '대외관계' 등을 새로이 추가하고 드라마 내용도 선동·체제보위 중심에서 남녀문제, 주민생활, 사회적 갈등 해결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⁴⁵⁾ 조선중앙TV는 남한에서 개최된 '한일월드컵축구 경기대회' 및 '부산아시아 게임' 등 주요 경기내용까지도 보도와 함께 녹화방송하였다.

또한 2002년 9월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개최된 남북교향악단 합동 연주회를 최초로 남북동시 생중계하기도 하였다.

③ 방송체계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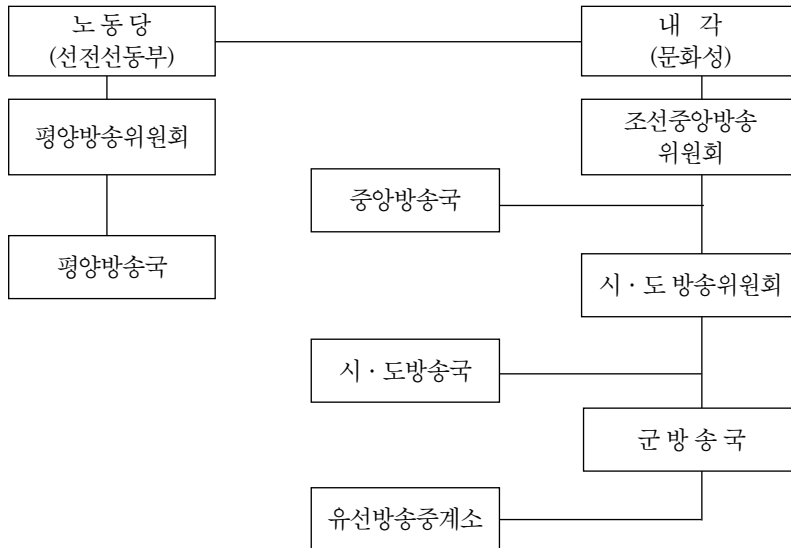
북한의 방송체계는 당과 내각의 이원체제로 되어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내각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44) 『로동신문』(1970.11.14).

45) 예컨대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TV드라마는 수중발레 선수를 소개하는 '갈매기'(2001. 7), 월남자가족의 생활상을 그린 '수평선'(2001. 8), 이혼문제를 다룬 '가정'(2001. 9), 평양냉면을 자랑하는 '옥류풍경'(2001.11), 맛벌이 부부를 소개하는 '엄마를 깨우지마라'(2002. 3) 등이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조직과 편제상으로는 내각에 소속되어 내각의 체신성이 각 방송국의 시설, 기재의 관리 및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방송의 내용이나 방송국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는 당과 내각의 지도·감독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직편제상으로는 내각에 속해 있지만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에서 임명하고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선전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방송 체계



북한 방송체계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 각 도(직할시)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군방송위원회가 있으며 그 하부기관으로서 유선방송중계소가 있다. 방송국의 시설이나 기재의 보급관리나 사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체신성의 하급조직으로는 시·도 체신국이 있고 그 아래에는 군체신소, 체신분소가 있다.

따라서 모든 방송내용은 당의 지도·감독에 따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검열을 거친 것이며 방송국은 검열된 내용만을 방송한다.

(다) 통신사

북한 유일의 국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사’는 1946년 12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직속 ‘북조선통신사’로 발족했다. 그후 1948년 10월 12일 내각 직속기관으로 조직체계를 바꾸고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노동당 및 내각의 공식 대변기관으로 존속해 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의 임무는 여타 언론매체와 같이 “모든 사회성원들을 수령님과 김정일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부수적인 임무로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 고수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⁴⁶⁾

조선중앙통신사의 책임자는 사장이나 통신사내에는 당관계 업무를 전담하는 정치국이 있어서 사실상 정치국이 통신사내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통제하고 당의 정책과 지시에 합치되도록 지도·감독한다. 부사장은 해외 및 각 도의 지부관계 업무와 사무적인 분야만을 책임지고 있고 통신내용은 주필이 담당하고 있다.

주필은 2명의 부주필의 도움을 받아 대내외 보도기사의 취재, 편집, 제작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의 통신사가 발행하는 출판물의 내용작성을 책임진다. 통신사의 편제상 특이한 점은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처럼 ‘남조선 보도편집국’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앙통신사는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중국의 신화사 등 40여개 통신사와 보도분야 협조협정을 체결하고 중국·러시아·이집트 등 9개국에 기자를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영·불·노·서반아어로 된 보도자료를 각국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조선중앙년감』을 비롯한 대내외 선전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다.

46) 『조선백과사전 19』(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70.

나. 출판

북한의 출판물은 노동당의 강력한 선전선동수단의 무기이다. 김일성은 출판물의 성격에 대해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힘있는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⁷⁾

북한은 김일성의 이러한 ‘교시’에 따라 출판활동에 있어 다음 3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주체의 원칙을 근본 초석으로 삼는 것이며 둘째, 당의 지도밑에 출판보도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며 셋째,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는 것이다. 종자라는 용어는 작품의 핵으로서 ‘사상적 알맹이’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상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출판물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양할 수 있고 보도성과 정론성, 과학성과 진실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출판사로서는 사상혁명과 관련된 도서출판을 주로 하는 조선로동당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등과 과학기술도서를 출판하는 사회과학출판사, 문예작품의 도서만을 취급하는 문예출판사, 사전을 출판하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등이 있다. 또한 교육도서를 출판하는 교육성 산하의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와 해외 선전책자를 출판 하고 있는 외국문출판사가 있다.

북한에서 출판되는 잡지로는 노동당의 이론지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조선문학’, ‘경제연구’, ‘과학원통보’, ‘조선예술’ 등 각 분야별로 70여 종이 있다. 이 중에서 ‘금일의 조선’, ‘조선무역’ 등 4종은 외국어판으로서 해외에 배포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문제 시사전문 계간지인 ‘민족문화유산’, 단행본으로는 ‘김일성전집’ 및 ‘회고록’과 ‘김정일선집’ 등이 발행되고 있다.

47) 『김일성저작집 10』, p.296.

4. 관광

가. 관광정책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관광을 부르주아 생활양태로서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주민의 대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북한여행을 ‘자본주의 타락’의 대표적인 형태로 단정하여 백안시하였다. 그나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로 체제선전 목적으로 행해졌을 뿐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외화수입 증대수단의 하나로 관광사업에 관심을 보여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시설 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동 법에 관광사업을 포함시켰으며, 1986년에는 여행관리국을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1987년에는 9개 관광개방지역을 선포하여 외국관광객 유치에 주력하였다.

한편 세계관광기구(WTO)에 가입하였으며,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 관광학과 등을 신설하고 제3차7개년계획에 관광개발을 추가하였다. 1995년에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에 가입한데 이어 1996년에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관광규정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등의 관광 휴양지 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10월 29일에는 현대·아태간의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 합의서가 체결되어 금강산관광이 실현되었다. 2002년은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에 있어 획기적인 한해였다. 2002년 5월 15~18일 세계관광기구(WTO) 사무총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 한 바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2002.11.13) 하였다. 또한 2003년 2월 시범육로관광에 이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었으며, 9월 15일에는 남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평양관광이 시작되기도 했다.

관광사업은 내각 산하 '국가관광총국'이 지도관리하며 관광계획, 관광조사 및 개발, 관광선전 및 시장개척, 관광재정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산하에는 조선국제여행사, 관광선전통보사 등을 두고 있다. 조선국제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여행계약과 판매, 관광안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베이징과 단둥 등에 지사를 두고 있다. 관광선전사는 관광선전을 위한 출판물, 비디오, 사진 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으며, 관광기념품전시관을 통해 북한의 특산물, 기념품 등을 외국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관광자원

북한은 통제사회의 특성상 사적, 유적, 문화재, 자연경승, 향토특산물 등의 관광자원이 대체로 잘 보호 관리되고 있다. 내륙 산간지대와 해안 지대에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경승지와 명소가 많은데 이 중 금강산, 묘향산과 같은 이름난 산과 명사십리, 몽금포 등은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또한 도처에 산재해 있는 맑은 호수와 깨끗한 심산계곡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백두산과 금강산 등의 명산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위상화와 관련 글씨를 수많은 암벽에 새겨 넣어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북한의 문화유적지는 주로 평양 일원이나 함흥, 개성에 편중되어 있다. 선사유적은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유역에서 많이 발견되며 고구려, 고려, 조선의 유적은 평양, 함흥, 개성에 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선사유적과 고구려고분, 산간지역 사찰 등 상당수의 유적과 문화재가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이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곳은 평양과 그 주위의 성곽, 사찰, 동명왕릉, 단군릉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외국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대표적 사찰은 묘향산의 보현사와 개성의 관음사 정도이며, 사적지의 경우에도 평양과 그 주변에 있는 유적과 개성의 왕릉, 성곽, 성균관, 고려왕궁터 정도이다.

다. 주요 관광지

(1) 평양지역

평양(平壤)은 ‘평평한 땅’이라는 뜻 그대로 벌판이 넓고 강을 끼고 있고 교통이 발달하였으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자 관광의 중심지이다. 평양은 계획된 ‘전시용 도시’로서 현대적 건물들과 이상화 건축물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100만년전 원시사회와 고대·중세사회의 유적, 유물 뿐 아니라 200여개의 공원·유원지도 조성되어 있다.

역사유적지로는 대동문, 보통문, 대성산 남문, 단군릉, 동명왕릉, 대성산성, 연광정 등이 있으며, 박물관으로는 조선혁명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등이 있고, 체제선전용 기념물로는 만수대기념비, 주체사상탑, 천리마동상, 개선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등이 대표적이며, 공원으로는 만경대유회장, 모란봉공원, 보통강유원지, 중앙식물원, 중앙동물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 선전하는 주요 명소로는 혁명사적지,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 평양교예극장, 김일성경기장, 평양지하철도 등이 있다.

(2) 백두산 지구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장군봉(2,750m)을 주봉으로 하여 여러개의 봉우리가 천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백두산은 전형적인 고산기후가 특징으로 바람 등 기후 변화가 매우 심하다. 빙설이 쌓여 있는 기간이 매우 길며, 눈의 깊이가 1.5~2m나 된다. 5월이 되어야 봄철이 시작되며, 여름에도 백두산의 기온은 20℃에 이르지 못한다.

북한은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이라 하여 곳곳에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전적지, 사적지를 조성해 놓았다. 백두산 중턱에서 향도봉까지 2km 구간

에는 지상케도식 삭도를 설치하였으며 향도봉에서 천지까지 1.3km 구간은 공중 케이블카를 설치하였다.

평양에서 백두산(삼지연)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기차로는 20시간이상 걸린다.

(3) 개성 지구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은 고려시기 유적과 유물, 고려인삼 등으로 유명하다. 관광지로는 시내에 자남산, 선죽교와 주변 유적들, 남대문과 연복사종, 고려박물관, 고려성균관 등이 있고, 주변에 판문점(8km), 왕건왕릉(6km), 공민왕릉(13km), 박연폭포(25km) 등이 있다.

북한은 개성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1992년 평양-개성 고속도로 개통, 1993년 왕건왕릉 복원사업 등 개성지역 문화재 복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2002년 11월 13일 발표된 '개성공업지구법'에 개성시를 관광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묘향산 지구

묘향산은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의 경계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남북간의 거리가 각각 28km이다. 주봉인 비로봉의 높이가 1,909m로서 산세가 아름답고 기묘하고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다고 하여 11세기부터 묘향산이라 불리어 왔다.

묘향산에는 1,170여종의 식물과 33종의 짐승류, 133종의 새류, 20여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단군의 유적이 있는 단군사와 고려 때 창건된 보현사 등 여러 유적·유물이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각종 선물들을 전시해 놓은 국제친선전람관이 위치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 총 120km로 건설된 평양-향산(묘향산)관광도로에 2000년 10월 노동당 창건 55돌(10.10)을 맞아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2층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버스는 묘향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다. 또한 2001년에 들어와서 묘향산 관광을 위해 상원동과 만폭동, 비로봉, 칠성동 지역에 약 70km에 달하는 새로운 등산로를 닦아 놓았다.

(5) 신의주-의주 지구

압록강 하류 연안에 위치한 신의주와 의주는 도시관광지로서, 국경 관문도시인 신의주에서 시작하여 압록강 상류 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의주까지가 주요 관광지이다. 여기에는 옛 성곽의 성문과 누각들을 비롯한 역사유적들이 남아 있으며, 공원·유원지들이 비교적 잘 꾸며져 있다.

북한은 2002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는 정령을 발표하였는데 향후 이 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의 단둥과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관광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 남포 지구

국제무역항구도시인 남포를 축으로 하는 이 지구는 강서와 대안의 공업 지대와 서해갑문, 태성호와 평양골프장, 덕흥동과 삼묘리 고분, 고구려 벽화무덤 등을 포괄하는 관광지이다. 평양-남포간 55km의 간선도로가 있으며, 평양-강서-청산리-남포의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북한은 평양-남포간 46.3km의 10차선 고속도로(청년영웅도로)를 2000년 10월에 완공하였다.

(7) 구월산-과일 지구

중서부 해안지구에 접하고 있는 문화휴양지, 피서지로서 구월산을 중심으로 과일군, 진강포 지역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은률의 장거리

콘베어벨트, 안악의 고국원왕무덤 등이 유명하다. 이 지구는 평양과 가깝기 때문에 평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관광, 등산, 해수욕 등 단기 관광을 오기도 한다.

2003년에 들어와서 북한은 평양과 개성을 연결하는 사리원에 '민속거리' 건설을 추진하는 등 이 지역 문화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 원산-금강산 지구

원산에서 세계적 명산인 금강산에 이르기까지 110km 전구간은 해안·호수·산의 명승지들이 잇닿아 있다. 원산(송도원, 명사십리), 통천(시중호, 총석정), 고성(삼일포, 해금강) 그리고 금강산이 대표적인 관광 지역이다. 금강산은 비로봉(1,638m)을 주봉으로 50여개의 큰 봉우리들과 각양 각색의 1만 2,000 봉우리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폭포, 연못들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1998년 11월 18일부터 개방된 금강산 관광지역은 외금강의 만물상 지역과 구룡연(구룡폭포) 지역, 그리고 삼일포를 포함한 해금강 지역으로서 온정리에서부터 구룡폭포 코스와 만물상 코스 또는 해금강 코스가 포함되어 있다.

(9) 청진-칠보산 지구

함경북도 도소재지인 청진과 온천휴양지로 유명한 경성, 함북금강으로 불리는 칠보산과 그에 면하고 있는 해안선을 포괄하는 관광지이다. 북동쪽으로는 황금의 삼각주로 알려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접하여 있고 청진항과 같은 큰 항구와 발달된 해안선을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구이다.

청진에서 남쪽으로 35km 정도 내려오면 경성이 있고, 경성에서 남쪽으로 65km 내려오면 칠보산에 이른다. 경성(주을)은 온천이 많고 자연풍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자기 공업지대로도 유명하다.

칠보산은 금강산과 마찬가지로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 나뉘며 개심사 등의 사찰과 신비로운 자연미로 널리 알려졌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관광지로 많이 이용되지 못하다가 지난 1996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으며 1999년에는 구월산(황남)과 함께 대외개방지역의 하나로 선포되었다. 2002년 이후에는 평양중심의 5박 6일 관광코스에 칠보산을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10) 나진-선봉 지구

나진-선봉 지구는 북한이 1991년 12월에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여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황금의 삼각주라 부르는 이 지역은 북쪽의 두만강 하류를 경계로 중국과 러시아와 접하고 있다.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100만년전의 원시유적을 비롯하여 구석기, 청동기시대 문화 발굴지로도 유명하다. 이 지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울창한 숲과 만포, 서만포 등의 천연호수와 21개 섬, 8개 만, 10개 곳으로 구성된 해안절경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라. 관광시설

북한의 관광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숙박시설은 주요도시와 관광 명소에 호텔, 여관, 야영각이 있으나 시설이 열악하여 전기와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이 많은 평양과 묘향산은 그런대로 수용시설이 좋은 편이다.

주요 음식점으로는 평양의 경우 9개의 지방 특산물 식당을 비롯하여 옥류관, 청류관, 청춘관, 민족식당, 평남면옥 등이 대표적이다. 9개의 지방특산물 식당으로는 통일관(개성), 옥계각(황남), 경암각(황북), 송도각(강원도), 압록강각(평북), 강계면옥(자강도), 압록각(양강도), 신흥관(함남), 갈매기각(함북) 등이 알려져 있다.

관광지별 숙박시설 현황

관광지	숙박시설
평양	평양고려호텔(500실), 양각도국제호텔(1,001실), 서산호텔(513실), 청년호텔(465실), 량강호텔(330실), 창광산여관(326실), 평양여관(170실), 보통강여관(162실), 해방산여관(113실)
묘향산	향산호텔(228실), 청천여관(63실), 청병여관(42실)
개성	개성민속여관(50실), 자남산여관(55실)
백두산	베개봉여관(47실), 혜산여관(49실)
금강산	금강산여관(219실)
남포	항구여관(109실)
나진	나진국제호텔(101실), 비파여관(46실)
청진	천마산여관(36실), 청진의국인숙소(37실)
원산	송도원여관(164실), 동명여관(53실), 송도원관광호텔(83실)
신의주	압록강여관(53실)

5. 체육

가. 체육정책

북한은 체육을 집단주의 정신함양과 신체발전을 통한 노동력과 국방력 강화의 수단적 가치로서 파악하고 있다.⁴⁸⁾ 말하자면 북한은 “체육의 대중화·

48) 북한체육에 대하여 “신체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굳센 의지, 규율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배양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치용어사전』(1970), p.604.

생활화를 통한 로동과 국방에의 기여”라는 정책기조하에⁴⁹⁾ 학교체육 강화 등을 통한 1인 1기 권장과 전문체육인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일은 체육선수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로서 체육에서의 ‘사상·투지·속도·기술전’ 방침 관철을 지시한 바 있다.⁵⁰⁾ 따라서 북한체육의 기본 목표는 체육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 그리고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지시에 의거 매월 둘째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고 지역 및 단체별로 각종 체육경기를 가질 것을 결정하는 등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독려하고 있다.⁵¹⁾

나. 지도·양성기관

북한의 체육정책은 체육지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지도·통제 관장하고 있다. 체육지도위원회는 1945년 10월 교육성 산하 ‘조선체육동맹’으로 발족하여, 1954년 11월 내각 직속 ‘조선체육지도위원회’로 독립한 데 이어 1989년 6월에는 ‘국가체육위원회’로 개칭되었다. 그후 1998년 9월 헌법개정으로 체육성, 1999년 11월에는 현재의 체육지도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체육지도위원회는 당의 지도하에 대내외 체육경기 조직 및 각종 스포츠 행사 조정통제, 인민체력검정 실시, 우수선수 발굴 및 양성 등을 그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체육지도위원회 밑에는 각 도별로 체육위원회를 두고 다시 시·군 체육지도위원회가 있으며 군중체육사업과 직장별·종목별 체육경기대회, 인민체력검정 등을 조직 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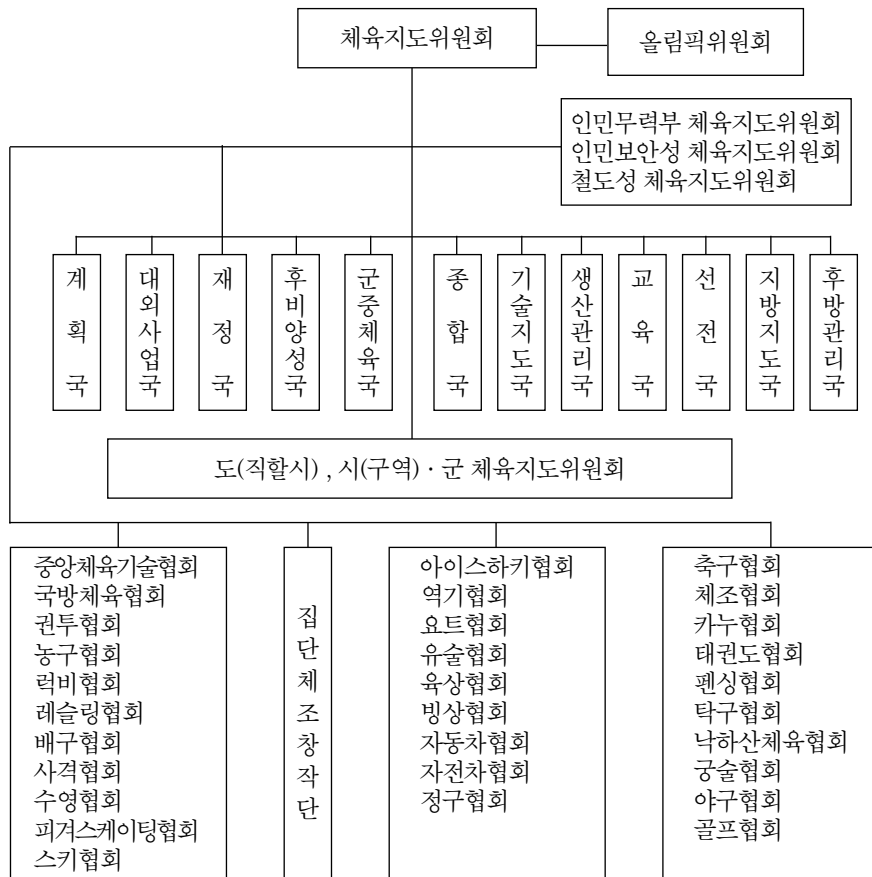
49) 1969년 11월 4일 개최된 ‘전국체육인대회’에서 김일성은 ‘체육을 대중화하여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하자’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사회주의 헌법 제55조에는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50) 『근로자』(1986.12) 참조.

51) 『중앙방송』(1992. 3. 8)

전문체육인 양성기관으로는 조선체육대학과 중앙체육학원, 각도의 체육전문학교, 그리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체육학부 등이 있으며, 기타 체육과학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앙체육학원은 9년제로서 소학교 졸업생 중 체육특기자를 선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타 각급 체육학교는 선수양성과 함께 졸업 후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할 능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체육지도위원회 조직 체계



한편 각 도·시·군(구역)에는 체육구락부가 조직되어 기본적인 체육 종목별로 선수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소학교 및 중학교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직업적인 체육인들은 국가대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종합팀을 비롯하여 26개 일반 체육단, 해양체육단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다. 주요 체육대회

북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는 김일성·김정일 생일, 노동당 창건일, 정권창건 기념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체육행사를 통해 주체사상과 당 지도 이념을 구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주요 체육대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체육대회 현황

대회명	목적	창설 및 개최	규모 및 종목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김정일생일 (2.16) 기념	· 1977년 창설 · 매년 2~3월	· 각 도·시 체육선수단 · 권투·유도 등 30여 종목 * 동계종목 포함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김일성생일 (4.15) 기념	· 1969년 창설 · 매년 4~5월	· 각 도 및 중앙체육선수단 · 육상·축구 등 40여 종목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김정숙생일 (12.24) 기념	· 1997년 창설 · 매년 12월	· 각 도 체육선수단 · 농구·탁구 등 10여 종목
전국체육 구락부생 체육경기대회	신인선수 발굴	· 1982년 창설 · 매년 8월	· 축구·무선통신 등 200여 종목

VIII. 문화

대회명	목적	창설 및 개최	규모 및 종목
공화국창건 기념 체육경기 대회	정권창건 (9.9) 기념	· 1977년 창설 · 매년 9월	· 각 도 · 시 체육선수단 · 사격 · 수영 등 30여 종목
당창건 기념 체육경기대회	당창건 (10.10) 기념	· 1975년 창설 · 매년 10월	· 각 도 · 시 및 중앙체육선수단 · 육상 · 축구 등 40여 종목
보천보혈투상 체육경기대회	보천보전투 승리 (1937.6.4) 기념	· 1960년 창설 · 매년 6~7월	· 각 도 · 시 체육선수단 및 각지 체육구락부원 · 국방체육과 육상 · 씨름 등 30여 종목
공화국선수권 대회	우수선수발굴	· 1979년 창설 · 매년 10~11월	· 전문체육단 및 도체육단 · 축구 · 농구 등 40여 종목
인민체육대회	체육활동 대중화	· 1960년 창설 · 1963(2회 대회) 부터 5년 주기 · 9~10월	· 체육선수단부문과 일반부문 으로 나누어 경기 · 구기 · 민속경기 · 국방체육 등 50여 종목
전승컵 체육 경기대회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	· 1994년 창설 · 매년 7월	· 체육선수단 · 축구 · 육상 등 40여 종목
9·5상 대학생 체육대회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기념	· 1979년 창설 · 매년 9~11월	· 각 도 대학생 · 농구 · 탁구 등 10여 종목
정일봉상 체육대회	학교체육 전문화 방침 지시 기념	· 1995년 창설 · 매년 3~4월	· 각 도 중학교 학생 · 축구 · 농구 등 10여 종목
장자산상 체육대회	학교체육 전문화 방침 지시 기념	· 1995년 창설 · 매년 10월	· 각 도 소학교 학생 · 태권도 · 탁구 등 10여 종목

라. 체육시설

북한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각종 체육시설의 건설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평양의 청춘거리에 종합체육단지인 안골체육촌을 건설한데 이어 능라도, 양각도 등에도 국제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북한의 체육시설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각종 정치집회·집단체조 등을 위해 대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대부분 평양에 집중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지방도시의 체육시설은 함흥, 청진, 사리원, 신의주 등에 잔디경기장을 갖춘 종합경기장이 있으며, 기타 도 소재지에는 소규모 종합경기장을 갖추고 있을 뿐 그 외 시설은 빈약한 형편이다. 현재 북한의 주요 실내체육관 및 옥외경기장 그리고 종합체육단지인 안골체육촌, 남포체육촌, 삼지연체육촌의 시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양소재 실내체육관 현황

명 칭	시설 내용	비 고
평양 체육관 (평양시 중구역 서성동)	· 개관 : 1973. 4. 8 · 좌석 : 2만 100석 · 용도 : 배구·농구·탁구·체조 등 18개 종목의 실내경기 및 군중집회 가능	· 북한 최대의 실내체육관 · 1979.4.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평양 빙상관 (평양시 중구역 서성동)	· 개관 : 1982. 4. 7 · 좌석 : 6,000석 · 용도 : 스케이팅·아이스하키·피겨스케이팅, 배구·농구·정구장 활용 가능	· 3층 원추형 건물
창광원 수영장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	· 개장 : 1980. 3. 21 · 좌석 : 2,000석 · 용도 : 수영·수구·다이빙 등 경기 가능	· 선수기록은 1/1,000초까지 측정 가능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 (평양 류경호텔과 보통강 사이)	· 개관 : 2003. 10. 6 · 좌석 : 12,309석 · 용도 : 농구, 배구, 탁구, 체조, 태권도 등 경기 가능	· (주)현대아산에서 남북체육교류 사업으로 건설

종합체육단지 현황

명 칭	시설 내용	비 고
안골 체육촌 (평양시 만경대 구역 안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 1988. 9. 3 · 총관람석 : 5만석 · 총부지면적 : 175만여m² · 연건축면적 : 26만 7,000여m² <p><주요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종합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축구경기장(3만명 수용) · 실내 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볼경기장 (2,500명 수용) - 탁구경기장 (4,500명 수용) - 경경기장 (4,500명 수용) - 중경기장 (2,500명 수용) - 배드민턴경기장 (3,500명 수용) - 수영경기장 (3,500명 수용) - 역도경기장 (2,500명 수용) - 농구경기장 (2,500명 수용) - 배구경기장 (2,500명 수용) - 태권도전당 (2,500명 수용)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회복관, 서산호텔, 체육인식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차 '평양축전' 에 대비, 건설된 종합체육 단지
남포 체육촌 (남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 1973. 9 · 총관람석 : 3만석 · 총부지면적 : 28만여m² <p><주요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1,800m²) - 야구장(9,800m²) - 정구장(경기용 4, 훈련용 2) - 빙상관(600m²) 그외 핸드볼장, 탁구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선수 양성을 위한 전용시설
삼지연 체육촌 (양강도 삼지연 군 백두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 1982 <p><주요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키장 : 슬로프 54km (리조트 3곳, 활강코스 1km) - 빙상경기장: 33,000m², 6천명수용, 국제규격 400m트랙 <p>※ 농구장, 배구장, 정구장 및 체육인 숙소 등 각종 편의시설 건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동계체육대회 개최지

평양소재 옥외경기장 현황

명 칭	시설 내용	비 고
김일성경기장 (평양시 모란봉 구역 개선동)	· 개관 : 1982. 4. 11 · 수용능력 : 10만명 · 용도 : 축구 · 육상 · 집단체조 및 각종 군중집회 장소로 활용 · 기타 : 인조잔디시설 및 야간경기가능	· ‘모란봉경기장’ 을 확장 · 개축후 (‘82.4.10) ‘김일성 경기장’ 으로 개칭
5월1일경기장 (평양시 능라도)	· 개관 : 1989. 5 · 수용능력 : 15만명 · 용도 : 육상 · 축구, 기타 각종 체육행사의 메인스타디움 · 기타 : 잔디, 야간경기 시설 전광모니터 설치, 프레스시설	· 제13차 ‘평양축전’ 에 대비 건설, 평양 축전 개 · 폐회식장
양각도 축구경기장 (평양시 양각도)	· 개관 : 1989. 4 · 수용능력 : 3만명 · 용도 : 축구 · 육상경기장으로 활용 · 기타 : 천연잔디, 야간경기 시설, 기자실	· 제13차 ‘평양축전’ 에 대비 건설
동평양경기장 (평양시 동대원구 역 울동)	· 준공 : 1960 · 수용능력 : 4만명 · 용도 : 축구 · 육상 등 종합경기장	

6. 종교

북한에서는 이미 해방전에 기독교, 천주교 등이 남한보다 먼저 전파되어 전통 종교인 불교, 천도교 등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속에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유지하는데 종교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내면적으로는 반종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즉 북한에서의 종교는 종교 본연의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유일사상 체계라는 테두리 속에서 한정적 · 상대적 가치만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가 아편, 미신으로 간주되어 투쟁과 척결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의 종교관은 김일성이 “종교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⁵²⁾,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⁵³⁾라고 발언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 결과 1955년경에는 북한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이 사라졌거나 지하화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 내에도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하던 이른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재개시키면서 종교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정책의 변화는 남한 종교인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종교단체 결성 및 활동에 관한 것이었지 순수한 종교 활동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1980년대들어 교포 종교인을 적극 초청, 이들과 종교인회담 및 해외에서 반한 종교인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 전략에 치중하는 한편,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종교단체 신설과 사찰을 복원하고 법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는 장충성당과 봉수교회를 건립하였고 1989년에는 칠골교회를 완공하였으며 2003년에는 러시아정교회 사원인 정백사원을 착공하였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는 등 서방국가의 종교단체들과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식량난에 따른 구호물자 지원 등을 계기로 남한의 종교단체와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종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고 남북한 동시미사, 공동예배, 동시법회들을 개최하는 등 대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종교단체를 활용하여 서구권에 접근하는 등 외형상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주민생활에서의 종교

52) 『김일성저작선집 1』, p.173.

53) 『김일성저작선집 5』, p.154.

활동 자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종래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해석 및 개념을 순화해서 표현하거나 삭제하는 등 과거나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회를 종전에는 ‘반동적 사상과 독소를 퍼뜨리는 거점’ 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신자들이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장소’ 라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헌법 제68조에서 1992년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누구든지 종교를 의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 에서 ‘누구든지’ 라는 단어만 삭제하였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종교관련 규정은 종래의 “종교적 신앙의 자유는 소위 종교의 간판 밑에 숨어서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반동적 음모와 책동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⁵⁴⁾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여전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⁵⁵⁾

북한은 1995년에 중단되었던 ‘평양신학원’ 을 2000년 9월에 개원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활동할 목회자 양성을 위해 학생 12명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2003년 3월에는 평양에 건립할 예정인 러시아 정교회 종사자 양성을 위해 모스크바 신학교에 유학생을 보내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불교는 여타 종교보다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9년 11월 개성 ‘영통사’ (27동) 복원에 착수하고 2002년 12월에는 각지 사찰(59개)에 대한 전면적 단청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찰보수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일의 사찰 방문도 2002년 6월 ‘양천사’ (함남 고원) 방문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종교단체를 이용한 남한과의 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03년 3월 1일에는 북측 종교인 105명이 서울을 방문하여 남북종교인들과 ‘3·1 민족대회’ 를 가지기도 하였다.

54)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평양: 로동당출판사, 1959)

55) 미 국무부가 1999년 9월 9일 발표한 『연례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도 북한에는 진정한 종교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종교단체 현황

단 체	시 기	현 황
조선종교인 협의회	1989.5	· 종교단체들의 협의체로 결성 · 회장: 장재언(장재철)
조선불교도연맹	1945.12	· 북조선 불교도연맹으로 발족(1965~1971: 비활동)
	1972	· 현 명칭으로 출현 · 위원장: 박태화(박태호) · 사찰 60여개, 승려(대처승) 300여명, 신도 1만여명 · 교육기관: 불학원(1989년 양강도 중흥사 → 1991년 평양 광범사)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1946.11	·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으로 발족(1964~1973: 비활동)
	1974	· 조선기독교도연맹으로 출현
	1999.2	· 현 명칭으로 개명 · 위원장: 강영섭 · 교회 2개(봉수교회: 1988년, 칠골교회: 1989년), 가정교회 520여개, 신·구약성서 및 찬송가 출판(1983년-1984년), 성경전서 및 찬송가 출판(1990년) · 목사 30여명, 전도사 300여명, 신도 1만2천여명 · 교육기관: 평양신학원(1972-1995, 2000)
조선카톨릭교 협회	1988.6	· 조선천주교인협의회로 출현
	1999.6	· 현 명칭으로 개명 · 회장: 장재언(장재철) · 성당 1개(장충성당: 1988년), 신도 3천 여명, 신부·수녀 없음.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1946.2	· 북조선 천도교종무원으로 발족 (1949~1973: 비활동)
	1974.2	· 현 명칭으로 출현 · 위원장: 류미영 · 천도교당 52개, 교직자 250명, 신도 1만 5천여명
조선정교위원회	2003. 6.23	· 위원장: 허일진 · 러시아정교회 '정백사원' 착공(2003. 6.24)

종교관련 용어 해석변화 비교

구분	현대조선말사전 1981년판	조선말대사전 1992년판	조선대백과사전 2000년판
기독교	넓은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우고 합리화하며 허황한 천당을 미끼로 하여 지배계급에게 순종할 것을 설교	교회의 주되는 이념은 평등과 박애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지키면 천당에 간다고 설교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크리스트로 내세우고 그에 의한 인류의 구제를 설교하는 종교
교회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들을 착취하도록 반동적 사상 독소를 퍼트리는 거점의 하나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도록 선전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예배, 세례, 성찬과 같은 의식을 진행하는 집합장소
성경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	주로 기독교에서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	-
불교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의 모든 고충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노예적인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	인간을 고뇌에서 해방하며 자비심을 베푸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속세를 떠나 도를 잘 닦으면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설교	고통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므로 온갖 집착을 버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지향을 억제하며 정신 수양을 통해 모든 것을 해탈하고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교

7. 역사

북한에서 역사학은 순수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체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정치사상적 역할수행의 도구로 전락되어 왔기 때문에 역사연구는 노동당 주도하에 사상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도 당의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결정되어 북한의 정치상황 변화, 즉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정략적 목적에 따라

왜곡·변질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북한 당국은 마르크스-레닌의 유물사관의 해석을 반 김일성세력 숙청의 도구로 사용해 왔고 한편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김일성 가계우상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가. 시대구분

북한의 역사인식에 따르면 역사의 시대구분 또한 남한의 시대구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원시시대를 선사시대부터 고조선의 성립 이전까지로, 고대를 고조선의 건국에서부터 진국의 멸망까지로, 중세는 고구려의 성립에서 1850년대말 까지로서 고구려사, 백제사, 전기 신라사, 후기 신라사, 고려사, 조선사로 구성된다.

고구려의 건국을 BC 277년으로 주장하고 있으며⁵⁵⁾ 최근들어 평양지역의 신성동 석곽묘, 약새봉 고인돌군, 낙랑시대 무덤군, 고구려 고분벽화 등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와서는 단군릉, 동명왕릉, 왕건릉을 개건·복원하고 고대시대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문화는 평양 중심의 ‘대동강 문화’로 명명한 바 있으며,⁵⁶⁾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를 남쪽에 기반을 둔 통일신라가 아닌 개성에 근거를 둔 고려로 인식하고 있다.

근대사는 1860년대부터 1925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현대사는 김일성이 인민대중을 지도하여 소위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고 혁명 활동을 개시했다는 1926년을 그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현대사는 일제하에 김일성이 벌였다고 선전하는 ‘항일무장투쟁사’, 해방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을 서술한 ‘민주건설사’, 한국전쟁을 다룬 ‘조국해방전쟁사’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의 북한사회를 다루는 ‘사회주의건설

55)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기원전 277년부터 668년까지 존속한 우리나라의 첫 봉건국가의 명칭이 ‘고려’ 또는 ‘구려’로 불렸다고 한다: 『조선대백과사전 2』(평양: 백과사전출판사), p.134.

56) 조선역사학회에서는 한반도 역사가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하여 평양지역의 옛 문화를 유물들에 대한 발굴과 연구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해 ‘대동강 문화’로 명명한 바 있다: 『조선중앙방송』(1998. 3.11)

사' 로 구성하여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왜곡· 변질시키고 있다.

나. 주체사관

북한의 역사사관은 마르크스-레닌의 유물사관에 기초하고 노동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부터 파생된 역사인식의 틀인 '주체사관' 이다. 즉 역사는 합법칙적으로 발전하며 그 발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사람' 으로 보면서, 여기에서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로서 '인류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 '사회 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 '혁명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 이라는 주체사관을 도출하고 있다.

주체사관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로 보아 외세의 침략에 대한 투쟁인 반제투쟁과 내적 모순에 대한 투쟁인 반봉건투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주체사관은 투쟁에서의 최고핵심으로 '지도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무지한 인민대중이 투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일성과 같은 영명한 지도자의 존재가 절실하다고 선전하여 유일사상체계 즉,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정통성 마련을 위한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8. 언어

북한은 언어를 "사회성원들 사이에 사상을 교환하며 한 세대로부터 다음세대로 역사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전달 보존하는데 쓰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언어가 없이는 사람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어떤 사상의 표현과 전달, 인식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인간의 활동은 언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상호관계도 언어의 역할을 떠나서 생각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는 인간생활의 힘있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⁷⁾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어를 사상교환의 수단, 혁명·건설의 중요한 무기로 보는 유물론적 언어관, 언어도구관의 관점에 서있다. 따라서 1966년부터 사상적 통일의 수단으로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언어에서 나타나는 ‘비혁명적·비문화적’ 요소를 정리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어’라 부르는 표준어정책을 전개하였다. 즉 서울말 중심의 표준말 대신 평양말과 김일성이 사용하던 방언들을 중심으로 문화어를 제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서울 표준어가 부르조아적 요소와 복고주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인민들의 의식속에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이 머리를 쳐들게 될 것”이며, ‘문화어’에 대해서는 “김일성동지가 항일혁명투쟁시기 힘있는 무기로 쓰였던 혁명적인 조선말에 깊은 력사적 뿌리를 둔 언어이다”라고⁵⁸⁾ 하면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고 김일성이 몸소 쓰는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제정된 문화어는 비문화적·비혁명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목 아래 다소 공격적이고, 피아를 명확히 구분짓는 적대적 용어와 어법으로서 혁명성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북한은 1966년 6월 이래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어휘선정, 사전편찬 작업을 하고 있다.

맞춤법은 1948년 ‘조선어 신철자법’, 1954년 ‘조선어 철자법’, 1966년 ‘조선말 규범집’, 1988년 ‘조선말 규범집’으로 이어져 왔다.

북한 철자의 특징은 된소리 5자와 이중모음 11자를 포함하여 자모의 수를 40자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음음소 19자중 우리는 자음문자 14자를 쓰고 있고, 북한은 된소리 5자(ㄱ·ㄷ·ㅃ·ㅆ·ㅉ)를 자음문자로

57) 『조선대백과사전 27』(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127.

58) 『조선대백과사전 9』(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487.

표기하여 19자를 사용하고 있다. 단모음(10)과 이중모음(11)중 우리는 단모음을 문자로 쓰고 있으나, 북한은 말소리의 성격을 반영하여 이중모음 11자(ㅐ·ㅙ·ㅑ·ㅕ·ㅓ·ㅗ·ㅛ·ㅜ·ㅝ·ㅟ·ㅠ)를 포함한 21자를 문자화하고 있다.

문법에서는 음운에 있어서 두음법칙을 무시하여 ‘ㄹ’, ‘ㄴ’을 모음앞에서도 그대로 표기·발음하고 있다. 품사의 경우 남한의 명사·대명사·수사·조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감탄사 등 9개의 품사와는 달리 ‘조사’를 빼 8개의 품사를 두고 있다.

특히 북한의 어휘는 남한의 어휘와 형태의 차이가 없으나 의미내용이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많으며 또한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제도를 가르키는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수령, 교시, 노력영웅, 공훈배우, 인민배우 등 정치성이 강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무’의 경우 우리사전에는 ‘늘 친하게 어울려 노는 사람’, 북한사전에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싸우는 사람’ 등 그 의미가 상이하다. 또한 어휘의 차이에는 북한방언이 ‘문화어’에 포함되어 우리의 표준어와 달라진 경우와 한자말 어휘가 토박이로 다듬어져서 달라진 경우가 상당한 실정이다.

한자사용에 대해서는 해방 후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오다가 1949년부터는 한글을 전용하고 있다. 신문·잡지·교과서 등 모든 출판물이 한글로 제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주민은 자신의 이름도 한글로만 쓰고 있다. 1958년 이후 중학교에서는 초보적 필수한자를 교육하고 있었으나 최근 교원부족 등으로 지방에서는 이마저도 교육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장부호의 표기는 남북한이 많이 다르다. 마침표, 물음표, 쉼표 등 기본부호 외에는 통상 사용되는 부호가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서명에 사용하는 인용표 《 》는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에서 사용하는 큰 따옴표 “ ”, 겹낫표 『 』 등은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언어 차이의 몇가지 사례

구분	개조 또는 신조어	비고
한자어 변형	이신작칙 만부하 만가동 직관물	솔선수범 완전가동 전시물
일상용어	칼바람 동강옷 료해	매운 바람 투피스 이해
스포츠 용어	구석차기 순간타격 룬밀 던져넣기	코너킥 스파이크 골밀숯
문학·예술 용어	나오기 소리너비	등장 음역
사회주의 신조어	밥공장 149호대상	밥을 사가는 곳 불순분자
적개심 고취용어	승냥이, 주구, 원쑤	
노력착취 용어	평양속도, 천리마운동, 충성의 사회주의 경쟁운동	

한글 맞춤법과 조선어 규범집의 부호법 비교

맞춤법(남)		규범집(북)		맞춤법(남)		규범집(북)	
은점	.	점	.	소괄호	()	쌍괄호	()
물음표	?	물음표	?	중괄호	{ }	대괄호	{ }
느낌표	!	느낌표	!	대괄호	[]	격외괄호	[]
반점	,	반점	,	줄표	—	폴이표	—
가운데점	·	×		붙임표	-	이음표	-
쌍점	:	두점	:	물결표	~	물결표	~
빗금	/	빗선	/	드리냄표	?,·	밑점
큰따옴표	“ ”	인용표	《 》	숨김표	〇〇,xx,pp	숨김표	〇〇
겹낫표	『 』	×		빠짐표	?	×	
작은따옴표	‘ ’	거듭인용표	◇	줄임표	줄임표	...
낫 표	「 」	×		×		반 두 점	;
				×		같은 표	”

9. 문화시설

북한의 문화시설은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라는 고유의 목적보다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혁명화라는 공산주의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이념에 따라 건립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김일성 체제 우상화라는 목적성을 띠고 있다.

즉 모든 건축물은 사상예술적 의미를 가지고 각각의 개성을 가진다는 원칙아래 건립되었으며, 이러한 대규모 시설물들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건설한다는 구실로 최근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의식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우월성을 과시하고 외형적 발전상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함과 동시에 김정일 체제의 구축을 위한 상징을 마련한다는 건립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시설물은 전국 각지에 건립되어 있지만, 특히 평양에 집중 설치되어 있고 평양에서도 중구역에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문화예술시설은 평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한편 기업소·공장 등에도 공장 문화회관이나 구락부, 선전실 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은 다른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기 보다는 주로 사상교양 등을 위한 선전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그 명칭만 보아도 건립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종류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박물관·기념관·전람관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1945.12.1	원시사회에서부터 19세기 까지의 역사적 유물과 문헌 자료 전시	1978.2.12 김일성 현지교시
조선혁명박물관 (평양시 만수대 언덕)	1948. 8. 1	김일성의 항일혁명 활동 및 사회주의혁명 투쟁과정의 사적물 및 자료 전시	1961.1 '국립중앙 해방 투쟁박물관' 을 개칭 1972.4.24 만수대로 신축 이전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1953.8.17	항일혁명기의 자료, 6·25 전쟁 당시 인민군 자료·병 기류 전시 및 김일성 업적 선전	1974.4.11 '조국해방기념 관' 을 개칭, 확장 건립
조선미술박물관(평양 시 중구역 대동문동)	1954.9.28	기원전 3~4세기부터 현재 까지의 미술품 진열	1965.3.11 김일성 현지교시
보천보혁명박물관 (양강도 보천군 보천읍)	1955. 8. 7	1937.6.4 '보천보전투' 관련자료 및 김일성의 현지 지도 사적자료 전시	1963.6 구건물옆에 현대적 건물 신축, 1977년 진열체 계 및 자료보충 정비
조선민속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1956.2.10	민속유물이 전시되어 있으 며, 연구사업 및 균중교양 사업도 전개	1960.6.10 김일성 현지교시
당창건사적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1970.10	노동당 창립과 관련된 자료 및 사적물 전시	해방 직후 김일성이 사용 하던 노동당 중앙위 건물
왕재산혁명박물관 (함북 은성군)	1975.10.19	김일성의 1930~40년대 '항일투쟁' 활동 자료 절시	당원 및 노동자들에게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학습시키는 정치학교 기능
금수산기념궁전 (평양시 대성구역 미암동)	1977.4.15	김일성시신 안치 및 김일성 유품 전시	김일성 집무실인 '금수산 의사당' 을 김일성사망 후 1995.6.12 현 명칭으로 개 칭하고 1995.7.8 개관
국제친선전람관 (묘향산)	1978.8.26	김일성에게 보내온 146개 국 인사들의 선물 28,000여 점 중 일부 전시	건물내부의 천정벽에 '김일성화' 치장

주요 회관 · 궁전 · 학습당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평양학생소년 궁전	1963. 9.30	평양시 청소년들의 특별 과외활동 장소	장서 (5만여권), 극장 (1,100석), 체육관 (500명수용), 도서관 (200석) 등
인민문화궁전	1974. 1. 1	문화·오락시설을 구비한 북한주민들의 휴식, 학습, 문화, 교양 장소	대회의장 (3,000석), 원탁회의장 (930㎡), 휴게실, 영화관, 당구장 등
4·25 문화회관	1975.10. 7	노동자 및 인민군의 사상· 문화 교양장소	극장 (6,000석, 1,100석) 영화관 (600석)
인민대학습당	1982. 4. 1	'전사회의 인텔리화' 를 위한 종합도서관	장서능력 (3,000만권), 1일수용능력 (1만2,000명)
만경대학생소년 궁전	1989. 4.	청소년들의 특별 과외활동 장소	극장(2,000석), 체육관, 수영장
청년 문화회관	1989. 5.		극장 (2,000석, 600석), 다기능홀 (1,000명)

주요 동 · 식물원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중앙동물원	1959. 4.30	500여 종 6,000여마리 사육	편의봉사시설 및 오락 시설 구비
중앙식물원	1959. 4.30	5,000여 종 식물 재배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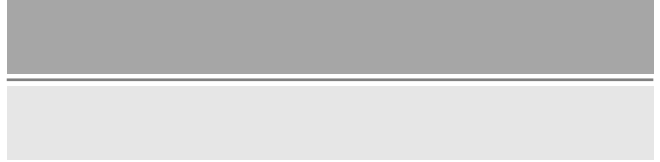
주요 극장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평양대극장	1960.8.13	관람석 : 2,200석 최대 무대출연 인원 : 2,000명 종합 연습실 : 700명	가극공연 외 각종 기념 행사 개최
만수대예술극장	1977.1.1	관람석 : 4,000석	북한 최대 극장
함흥대극장	1984.4.15	관람석 : 2,500석 소극장 : 700석	김정일 지시로 건설
봉화예술극장	1985.6	관람석 : 2,000석, 800석	현대적 무대공연 설비
평양교예극장	1989.5	관람석 : 3,500석	평양축전 시설
동평양대극장	1989.5.18	관람석 : 3,500석	평양축전 시설
평양국제영화회관	1989.5.18	관람석 : 3,150석	평양축전 시설

기타 위락시설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옥류관	1960. 8.15	250석의 좌석과 20여개의 기본실 및 50여개의 부속실, 600여명 수용능력 대연회장	종합음식점
청류관	1982. 4.15	1,000여석의 실내좌석과 6,000여석의 야외좌석 및 39개의 봉사실 구비	종합음식점
창광원	1980. 3.	목욕탕 (1만명수용), 물놀이장, 수영장(관람석 2,000)	종합적인 문화 위락 시설
만경대유회장	1982. 4. 8	5만명 수용규모, 29종의 유희 시설	종합오락시설

IX. 대남 · 통일



1. 대남전략 기초

가. 대남인식과 전략목표

북한의 대남 인식은 전통적으로 남한을 미국이 세계 제패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로 점령한 ‘식민지’로 보는 관점에 토대를 두어 왔다. 북한은 8·15광복 이후 줄곧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¹⁾고 선전해 왔다.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해 북한은 “조국통일은 나라의 한 부분을 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함으로써 국토와 민족이 인공적으로 분열된 특수한 조건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한다.²⁾ 따라서 북한은 통일을 분단된 국토와 민족을 단순히 재결합하는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와 남한 내부의 ‘매관세력’이라는 내외의 ‘분열주의세력’을 분쇄하고 그들에 의해 강요된 분단된 조국을 다시 통일된 조국으로 만드는 문제로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민족해방’과 파쇼적 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대남 전략의 목표로 추구해 왔다.³⁾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

1)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211.

2)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이론』(서울: 도서출판 태백, 1989), p.282.

3) 『김일성저작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479: “남조선 혁명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 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IX. 대남·통일

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목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차츰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추진과 맞물려 한반도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확인된 남북간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앞서 당면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게 만들었다. 즉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기에 앞서 '남한으로부터의 자본주의 혁명'을 방지하고 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또한 1990년 독일 통일은 북한에게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 주었고, 이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북한은 1991년 신년사⁴⁾를 통해 흡수통일 방식을 배제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민족통일국가 창립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UN 동시가입을 수용하였다. 또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공존논리'를 바탕으로 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 변화는 1993년 4월 김일성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김일성은 10대

4)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풀어 나가도록 후대에 맡겨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강령에서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 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 역시 1998년 4월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통해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연방제를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냈다.

북한의 대남인식은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남북합의로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북간에는 정치, 군사, 경제, 체육, 인도 등 분야별로 수십 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이 증대되는가 하면, 민간 차원에서도 교류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오던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남비방을 중단하였으며 각종 보도매체를 통한 대남비난 및 선전선동을 자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체제생존과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놓고 북한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전통적인 전략목표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제 북한은 남한을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이중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2년 10월 북핵문제가 불거져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더욱 대남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대남전략 및 전술

북한의 대남전략의 목표는 ‘로동당 규약’ 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데 있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 하에 다양한 대남전략전술을 운용해 왔으며,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초기 ‘민주기지론’에서 최근의 ‘민족공조론’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해 왔다. 오늘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종래의 공산화혁명 전략보다는 공존차원의 대남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구사해오고 있는 대남전략전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혁명적 민주기지론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하기 위해 개최된 서북5도 당대회에서 ‘혁명적 민주기지론’이란 형태로 그 기본구상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동시에 추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혁명적 민주기지론을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해방 직후 모든 면에서 북한지역이 남한지역에 비해 우세한 상황이었고

5) 『김일성저작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286: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대처하여 이미 해방된 북조선에서 혁명을 적극 밀고 나가며 북조선에 튼튼한 혁명기지를 창설하여야만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유리한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⁶⁾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따라 해방 직후부터 건당, 건국, 건군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북한지역에서 혁명의 참모부인 노동당을 제일 먼저 건설하고 무장력인 인민군을 창건하였으며 이어 1948년 9월에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이같은 혁명기지전략의 결정적 실행수단이었다.

(2)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은 초창기의 ‘민주기지론’ 이 한단계 발전된 것으로 1970년 11월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 는 일종의 ‘지역혁명론’ 으로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 이다.

북한이 초창기 혁명적 민주기지론 전략에서 이처럼 지역혁명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한국전쟁 이후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반된 정치·사회체제가 고착화되고 무력적화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이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으로 규정하고 혁명의 주인을 남한인민 자신이라고 선동하는 것과 혁명역량의 편성을 주력군과 보조역량으로 구분하면서 주력군 편성에 역점을 두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의 통일혁명당을 시작으로 1970년대 남조선민족

6) 허종호, 앞의 책, p.22: “공화국 북반부에 혁명기지를 꾸릴 데 대한 사상은 해방 직후 북반부에 마련된 유리한 조건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당이 있고 인민주권이 있으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었다”

IX. 대남·통일

해방전선, 1980년대 한국민족민주전선, 19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남한내 지하당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으며, 주한 미군철수 주장도 되풀이하하였다.

(3) 3대 혁명역량 강화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완성하는 실천적 요소로서 이른바 3대 혁명역량, 즉 북한 자체의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역량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⁷⁾ 이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의 내용은 우선 대내적으로 민주혁명기지노선에 기초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혁명기지로서의 북한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상적 무장 강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역량 강화,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역량 강화 등 세 가지 방도를 강조하고 있다.⁸⁾ 특히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적 군사노선에 따라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남 차원에서는 남한 내부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시키고 지하당 조직의 확대,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형성 등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하여 남한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혁명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용이

7) 김일성은 “3대혁명역량은 첫째,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3대역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8) 허종호, 앞의 책, pp.277~280.

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3대혁명역량 전략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북한의 경제 위기 및 국제적 고립 심화, 남한의 국력 신장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통일전선전술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의 수행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전술인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해 왔다. 이는 공산당이 일정한 혁명 단계에서 주적을 타도하는데 공산당 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전통적인 투쟁기법이다.⁹⁾

통일전선의 개념에 대해 김일성은 “통일전선이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해당한 혁명의 승리에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기 위하여 무은(조직한) 정치적 연합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¹⁰⁾

전술상의 원칙으로는 하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되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에서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¹¹⁾

9) 통일전선전술은 1921년 6월 제3회 코민테른 회의에서 레닌에 의해 처음 채택된 전술로, 레닌은 “너에게 3개의 적이 있거든 그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하고 나머지 둘중 하나와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하고 마지막 하나는 1대 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고 주장하였다.

10)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615.

11) 김정일은 이른바 『8·4노작』(‘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 하자’, 1997. 8. 4)에서 “남조선의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상층에 있건 관계하지 않고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상층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IX. 대남·통일

실제로 북한은 통일전선조직체로서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민주연합전선 등의 구축을 외치며 1980년대에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출범시켰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차원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등을 결성하였으나 오늘날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은 매우 미미하다.

(5) 민족대단결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수행과정에서 핵심은 ‘반미·자주와 연공·연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족대단결론’이다. 북한의 민족대단결 주장은 1972년 7월 4일 채택한 ‘남북공동성명’에서 처음 거론되었으나 그다지 강조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김일성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조국통일 5대방침’에서 다시 주장되었으며,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간부들과의 담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¹²⁾

이후 북한은 1993년 4월 6일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1998년 4월 18일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¹³⁾을

12) 김일성은 5대방침에서 “전체 조선민족은 계급적 차이와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오직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조평통’ 간부들과의 담화에서는 “조선반도 분단은 민족내부의 모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세에 의한 것으로 통일의 기본은 절차나 방법문제가 아니라 민족대단결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김정일은 ‘남북연석회의’(1948. 4)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1998. 4. 18)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자”에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③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북한이 이처럼 민족대단결 주장을 강조한 것은 동구권 붕괴로 인해 국제정세가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대남 전략 구사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한 국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북한의 민족대단결 주장은 ‘민족’이라는 혈연적 동질성을 내세워 남한내에 광범위한 통일전선조직을 구축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선동하여 한·미간 안보협력체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전술적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6) 민족공조론

북한이 ‘민족공조’를 주장하게 된 계기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동 선언 1항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명시하였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민족공조’로 개념화하였다.

북한이 ‘민족공조’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1월 10일 개최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였다. 이 대회에서 북한은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2002년 10월 핵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라고 하면서 “민족공조로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운동과 투쟁을 벌이는 것은 핵전쟁 위험을 막고 민족자주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⁴⁾

북한은 2003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한반도 정세를 ‘조선민족 대 미국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족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을 분쇄 해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14) 『로동신문』(2002.10.29)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미국·중국간 3자회담이 2003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북·미간 입장 차이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긴장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자, 북한은 각종 사회단체 및 보도매체 등을 동원,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조국전선’ 과 ‘조평통’ 은 2003년 5월 28일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 을 발표하고 “지금이야말로 전 민족이 단합하여 미국의 핵전쟁 책동을 저지하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할 때”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족공조는 미국의 대조선 침략전쟁 도발책동으로부터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서 필수적인 요구” 라고 강조하였다.¹⁵⁾

북한은 민족공조가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데서도 필수적인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자’ 제하의 글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의 생명선이다. 민족공조로 북남관계 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¹⁶⁾

이와 같이 북한이 민족공조론을 내세운 것은 핵문제로 인한 긴장된 정세하에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맞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명분을 확보함과 더불어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다. 대남사업기구

과거 북한의 대남정책은 대남선전선동 등의 정치심리적 차원과 간첩납파를 통한 한국내 지하조직망 구성·유지 등의 공작차원에서 이루어

15) 『평양방송』(2003.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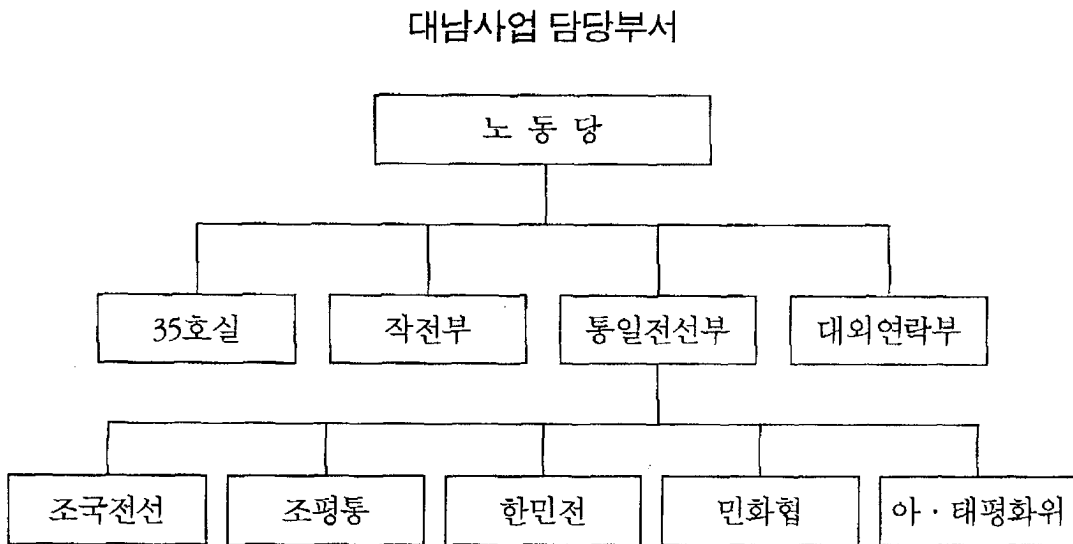
16) 『로동신문』(2003. 6.13)

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남협상, 남북경협, 대북지원 확보 등을 통한 실리 확보 차원의 남북간 협력이 주가 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사업체계를 보면 노동당 비서국에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대남사업담당 비서를 두고 그 밑에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구 사회문화부),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 등을 두고 있다.

아울러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외곽단체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정계,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 단체인사들로 구성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라는 단체를 구성, 민간부문에 대한 대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는 통일전선공작과 남북대화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대남사업의 핵심부서로서 1978년 설치되었으며, 남북회담,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사업, 국내 좌익운동권 지도 등의

IX. 대남·통일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통일전선부의 하부조직으로는 남북회담 및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남북회담과, 해외교포 및 외국인 포섭공작을 담당하는 해외담당과 등이 있다.

(2) 대외연락부

1947년 북로당 '5과'로 창설된 이래 연락부로, 그후 사회문화부로, 다시 대외연락부로 개칭(1997)되었으며 남한내 지하당 건설을 비롯하여 정당, 사회단체, 군부에 대한 공작 거점 구축 및 공작전술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간첩교육 및 파견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조총련에 대한 활동지도도 담당하고 있다.

(3) 35호실

일명 조사부로 불리우며 주로 대외 및 대남 정보수집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국제·대남 테러공작도 수행한 바 있다. 하부조직으로는 남한, 일본, 중국·동남아, 유럽 등을 담당하는 4개의 지역과로 구성되어 있다.

(4) 작전부

작전부는 공작원들에 대한 기본 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안내 및 복귀, 대남침투 루트 개척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공작부서이다.

작전부는 남파 공작원과 전투원들에 대한 정규 기본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 남파공작원 파견기지인 2개의 육상연락소(개성, 사리원)와 4개의 해상연락소(청진, 원산, 남포, 해주)를 보유하고 있다.

(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조국전선’은 노동당의 통일노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는 당의 전위 기구로서 1949년 6월 25일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72개 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해 결성되었다.¹⁷⁾

북한은 이 기구의 성격을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을 묶어 세운 정치조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24개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조국전선’은 남한에서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명·담화·기자회견 형식 등으로 대남선전과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는 한편, 남한 각계 각층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6)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조평통’은 1961년 5월 13일 결성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당의 통일·대화 노선 관철과 정책수행 및 통일전선 형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구는 4·19혁명 직후 우리 사회내에 통일논의가 분출되자 이를 대남혁명전략에 활용하기 위해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표방하면서 북한의 정당·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을 망라하여 설립되었다.¹⁸⁾

‘조평통’은 국내인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통일전선 형성, 남한내 친북 통일여론 조성을 위한 선전공세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남한의 정세변화와 사건 또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조직편성을 보면 중앙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참사실, 서기국이 있고

17) 『정치사전』, 앞의 책, pp.771~772.

18) 위의 책, p.773: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각계 각층 애국적 민주주의력량을 단합하여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하여 조직된 사회단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IX. 대남·통일

서기국 산하에 조직부, 선전부, 회담부, 조사연구부, 총무부 및 자료종합실 등이 있다.

(7) 조국통일연구원

1959년 12월 노동당 문화부 산하 '남조선연구소'로 신설된 이후 1978년 1월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으로 흡수되었으며, 1992년 '조국통일연구원'으로 개칭되었다.

원장과 부원장 밑에 종합정세연구실과 종합편집실이 있으며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제반 요소별 대남정책자료를 작성하고 남한 주요 인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미·일 등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정책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격주간지 『남조선문제 연구』 등을 발행하고 있다.

(8)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한민전'은 과거 남한내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던 통일혁명당(1969. 8.25 창당)의 후신으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전위조직이다. 북한은 정세변화에 맞춰 통일혁명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1985. 7.27)한데 이어 대남흑색방송인 '통혁당의 목소리방송'을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1985.8.8)하였다.

'한민전'은 그 동안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하여 남한내 좌익세력을 이념적·조직투쟁적으로 지도해왔으며, 남한내 중대 사건 또는 남북관계 현안 발생시 담화, 기자회견, 선언문 등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다. 한편 북한은 '구국의 소리방송'을 2003년 8월 1일부터 중단하고 8월 15일부터 '조선중앙방송'을 중계하고 있다.

(9)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아·태평화위’는 아·태 지역 미수교 국가들과 정치·경제·문화 교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1994년 5월 통일전선부 산하에 설립된 노동당의 외곽단체이다. 조직체계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이 있으며 그 밑에 정치, 경제, 문화, 관광, 종교 등 부문별 부서들과 연구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는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창구역할과 함께, 유력 외국인사에 대한 방북 초청 및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을 통해 북한의 폐쇄적이고 호전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남북간의 각종 민간교류와 경제협력 업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민화협’은 1998년 6월 8일 북한이 8·15 대축전 제의에 앞서 북한의 정계,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된 대남 단체의 하나이다.

이 기구는 북한이 ‘민족화해’를 내세워 결성한 최초의 협의체로서,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1998. 4)에서 언급된 ‘온 민족의 접촉·대화화 련대·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화협’의 조직은 회장과 부회장, 실장, 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대남전략 전개과정

1945~1953: 무력 적화통일 추구

북한이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무력통일을 추구하였던 시기이다. 당시 북한 지도층은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김일성은 정권수립 다음날인 1948년 9월 10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에서 미·소 양국 군대의 동시철수를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¹⁹⁾

이후 김일성은 ‘국토완정론’을 통일의 화두로 삼았다. 이는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북한 지역에서의 혁명기지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에 따라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1949년과 1950년 두 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승인과 전쟁지원을 약속받았다. 또한 북한은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 사건, 무장계릴라 남과 등 폭력도발을 통해 남한 군사력의 분산과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민족해방전쟁’이란 명분 하에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그들의 목표는 좌절되었고, 1953년 7월 휴전과 함께 한반도는 다시 분단상태로 남게 되었다.

1953~1969: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전략 적극 모색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서명된 이후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19)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p.45.

전후 복구사업에 주력하였으며, 복구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1960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대남전략을 구사하였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전후 북한 지도부에게 있어서 급선무는 무엇보다 전쟁으로 파괴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기반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겉으로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통일을 부차적인 위치로 내리고 국내의 경제적 부흥과 정치적 안정을 먼저 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연안파, 소련파 등의 파벌을 숙청함으로써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소련 및 중국의 지원하에 군사력을 재정비하는 등 전후 체제정비에 전력을 기울였다.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1954년 4월 제네바 정치회담을 계기로 평화통일론을 앞세웠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련방제’ 제안으로 이어졌다. 특히 1960년대는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공세적 대남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변화는 전후 체제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데 따른 자신감과 1960년대 초반 남한 내부의 정치사회적 격변상황²⁰⁾에 자극 받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소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북한지역의 군사기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6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3대 혁명력량 강화’ 노선을 내세워 대남혁명전략을 좀더 구체화하였다. 김일성은 1966년 10월 ‘3대혁명력량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혁명력량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옹기 배합해서 부단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²¹⁾

이러한 전략에 따라 북한은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1968. 1), 울진·삼척

20) 당시 남한은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60년대 중반의 한·일 국교정상화를 둘러싼 혼란 등으로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21) 『김일성저작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384~403.

IX. 대남·통일

무장공비 침투(1968.11), KAL여객기 납치(1969.12) 등 대남 무력도발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한편, 무력불행사 협정 체결 제의(1962. 6), 남북간 평화 협정 체결 제의(1963.12),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 제의(1966. 9), 남북자유왕래 제의(1968. 9) 등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위장 평화 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70~1989: 대결관계 속에서 대화전략 추진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동서 긴장완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남조선혁명 투쟁을 지속하는 양면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71년 4월 주한 미군철수 및 감군, 연방제 실시, 정치협상회의 개최 등 8개항의 대남 평화제안을 내놓았으며, 남북적십자회담과 정치적 대화를 위한 비밀접촉에 응해 오는 등 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한과의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1973년 6월 '고려련방 공화국 창설'을 포함한 '조국통일 5대방침'²²⁾을 발표하고 '대민족회의' 소집을 제의(1974.8)하는 등 다양한 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1972년 7월 4일 '조국통일 3대원칙'을 포함한 '남북공동성명'이 채택 발표되었고,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에서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였다.²³⁾ 그러나 닉슨 독트린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하고, 남 베트남이 패망하는 등 국제혁명역량이 강화되자²⁴⁾ 북한은 다시 대남 강경노선으로

22) 김일성의 '조국통일 5대방침'은 ①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긴장상태 완화 ② 제방면에 걸친 합작과 교류 실현 ③ 각계각층 인사들의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 참여 ④ 고려연방공화국 창설 ⑤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등이다.

23)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과 상호비방중상 및 무력도발 금지, 다방면의 남북간 교류,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하였다.

24)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6), p.450: 당시 김일성은 "만일 적들이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부터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남침용 땅굴과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1974. 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 8) 등은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1979년 10·26사건 이후 남한에서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1980.2~8) 등을 통해 남한 정세에 대한 탐색도 시도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일성은 더 이상 과도체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완전한 통일형태로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는 등 통일공세를 강화하였다.²⁵⁾ 이후 북한은 남한사회가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막고 사회혼란을 지속시키기 위해 아웅산묘소 폭탄테러(1983.10), 부산 다대포무장간첩 침투(1983.12) 등 대남도발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행위로 인해 서방국가들로부터 비난이 거세어지고 외교적 고립상태가 심화되자, 북한은 테러국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북한이 1984년 9월 수재물자 전달을 계기로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 체육 및 경제회담 등 각종 대화와 교류에 호응해 나온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성공적인 북방정책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진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자, 이를 저지하고 서울 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김포공항 폭탄테러(1986. 9), KAL기 폭파(1987.11) 등 또 다시 대남 폭력도발을 자행하였다.

북한이 이처럼 대남 폭력혁명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남한과의 접촉과 대화를 시도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 남북간의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하여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이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통일일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25)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기존의 연방제와 다른 것은 ① 기존의 연방제가 갖고 있던 ‘과도적 성격’ 배제 ② 연방형성의 원칙, 연방기구의 구성과 임무, 기능 구체화 ③ 남한의 반공정권 퇴진, 주한미군 철수 등 선결조건 제시 ④ 10대 시정방침 제시 등이다.

IX. 대남·통일

국력 격차가 차츰 심화되고 대외 정세가 북한에 불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와 함께 시작된 외교적 고립감을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듯 했으나, 1990년 10월 독일 통일이 서독 주도하에 실현됨으로써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90~1999: 체제유지 차원의 방어적 대남전략 구사

북한은 1989년 말을 기점으로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독일 통일(1990.10. 3)이 실현되자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정하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시하여 남측으로부터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시도하였다.²⁶⁾ 이어 김일성은 1993년 4월 발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해 ‘공존, 공영, 공리 도모’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 배제’를 주장하였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그 동안 반대해 왔던 남북한 UN 동시 가입(1991. 9.17)을 선택한데 이어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발효(1992. 2.19)시켰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앞세워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체제수호 차원에서 미사일 등의 개발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26)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본격적인 남북간 교류협력과 관계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체제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이 같은 방어적 성격의 대남전략은 김일성 사후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보다 강화되었다. 당국차원의 남북관계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중단상태가 지속되었다.

한편,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대북 비료지원문제를 놓고 베이징 당국대표회담이 개최(1998. 4)되는 등 당국차원의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비동시적·비대칭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진전을 거부하고 일방적 시혜만을 고집함으로써 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북한은 남한당국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는 달리 민간기업들과의 경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1996년 8월 대우 남포 공장의 본격가동과 함께 남한 기업과의 경협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남한 기업들과의 경협사업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98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 때 방북’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발전되었다.

당국차원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남한정부가 추진한 대북화해협력정책에 힘입은 바가 컸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당국차원의 관계개선에 수반될 수 있는 체제유지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면서 심화된 경제난국을 탈피하기 위해 남한 기업들로부터 대북투자 유치를 실현시켜 보려는 것이었다.

2000~현재: 공존·실용주의적 대남전략 전환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각종 남북대화, 경협 및

IX. 대남·통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치이념과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실리주의적 정책 기조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새 시대에 맞게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실리보장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 담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북장관급회담²⁷⁾을 비롯하여 경제·군사·적십자·체육 등 여러 분야 회담 개최에 적극 나섰다.

특히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보장조치도 마련하였다.

북한은 만성적이고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경제 교류협력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 6월 14일 철도 궤도 연결식을 가졌으며,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가졌다. 또한 금강산관광은 해로와 함께 육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경제시찰단이 2002년 10월 남한지역을 방문, 경제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투자보장·청산결제·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해결 등의 합의서가 발효(2003. 8.20)됨으로써 남북간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27) 남북장관급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분야별 실무접촉 등 여러 분야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조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도 성의있는 태도를 보였다. 2000년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8,051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으며, 16,672명이 생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언론·예술·종교·학술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2000년 8월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을 시작으로 TV뉴스 평양 생방송, 드라마 촬영(2002. 1), 남북방송인 토론회 개최(2003.10, 평양) 등 언론·방송분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2000. 8, 서울), 춘향전 평양공연(2001. 1), 고구려 유물전시회(2002.12 ~ 2003. 3, 서울)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또한 종교분야에서는 매년 ‘부활절’, ‘부처님 오신날’, ‘개천절’ 등을 맞아 관련 종단·교단별로 공동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교육·학술 분야에서는 일제식민지배 관련 남북공동토론회(2001. 3, 평양), 국호 영문표기문제 관련 남북학술토론회(2003. 8, 평양) 등이 개최되었다.

체육분야에서는 2000년 9월 시드니올림픽 개막식 남북선수단 동시입장, 남북통일축구대회(2002. 9, 서울) 등이 진행되었으며, 2002년 9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및 2003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여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진행되었으나 2002년 6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나타냈다.²⁸⁾

28)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2003. 8. 4):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통일을 위한 길에는 가슴 아픈 희생도 있고 난관도 있을 수 있지만 6·15 공동선언의 가치 높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려는 우리의 힘찬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측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북한으로서도 심각한 경제난 타개, 국제적 고립 탈피 등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3. 연방제 통일방안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통한 ‘조국통일’이라는 전략과 함께 ‘련방제’ 통일방안을 앞세워 대남 평화공세를 전개해 왔다. 연방제는 1960년 최초로 제안된 이래 대내외 정세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남북연방제’ 안

남한에서 1960년 4·19혁명 이후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은 같은 해 8월 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기하였다.

김일성은 “남조선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 련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고 하면서,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연방제의 성격을 규정하였다.²⁹⁾ 이어 북한은 그해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에서 최용건의 보고를 통해 “련방제가 실시되어

29) 김일성, 앞의 책, p.214.

최고민족회의가 조직되거나 남북한 경제위원회가 구성되면 수행할 과업”으로 과학·문화·예술·체육 등 7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연방제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 첫째, 남북한 자유총선거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둘째, 남북연방제를 과도적 대책으로 제시하면서 당분간 두 정치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 정부당국의 대표들로 일종의 협의조정기구인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함으로써 국가연합적 성격을 시사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넷째, 특수한 형태의 과도적 중앙정부격인 최고민족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내정권·외교권·군사권(군통수권)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이 이러한 내용의 연방제를 제시한 것은 4·19혁명 이후 남한사회에서 벌어진 활발한 통일논의에 고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남한의 장면(張勉) 정부에 의해 즉각 거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측 제안은 남한의 일부 혁신적인 학생·사회단체의 지지를 받는 등 남한내의 통일운동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고무된 북한은 이듬해 5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남북련방제’를 다시 한번 제의하였다.

1970년대: ‘남북연방제’ 안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연방제 통일론을 계속 주장하였다. 북한은 1971년 4월 허담의 8개항으로 된 평화통일방안³⁰⁾ 제의에 이어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의 이른바 ‘조국통일 5대방침’을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고려련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안’을

30) 허담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 회의(1971. 4.12)에서 ① 미군철수 ② 10만이하로 감군 ③ 한미방위조약 등 민족이익에 배치되는 조약폐기 ④ 남북총선거 ⑤ 정당사회단체 활동보장 ⑥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 실시 ⑦ 광범위한 교류실시 ⑧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 개최 등 ‘평화통일 8개항’을 제시하였다.

제시하였다.³¹⁾

그러나 이 제안은 같은 날 오전 남한 정부가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등을 내용으로 한 ‘평화통일 외교정책 특별선언’³²⁾을 발표하는데 대한 북한측의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남조선 반동들의 매국배족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당장 남북 총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조건에서 현실은 완전통일에 이르는 합리적인 중간걸음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과 북의 두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고 주장하였다.

‘조국통일 5대방침’의 주요 내용은 ①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②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의 실현 ③ 대민족회의 소집 ④ 고려연방공화국 창설 ⑤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으로 남북한 현행제도의 지속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향한 ‘과도적 조치’ 이기는 하나 몇 가지 측면에서 1960년대 연방제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남북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라는 기구가 없어지고 그 대신 통일전선 형태의 ‘대민족회의’를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그해 8월 28일 김영주 성명을 통해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간의 대화를 중단시키는 조치로 나타났다.³³⁾

31) 김일성,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73. 6.25): 『김일성저작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p.448.

32)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남북조절위원회, 『남북대화백서』(서울: 대한공론사, 1978), pp.261~264.

33) 북한은 김영주 성명을 통해 당시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을 구실로 “중앙정보부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락을 비롯한 중앙정보부 깡패들과는 마주앉아 국가대사를 논의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북대화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한편, 1960년대 연방제 방안이 ‘최고민족위원회’가 경제·문화 문제만 통일적으로 다루고 군사·외교분야에 있어서는 남북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고려련방공화국안’에서는 ‘대민족회의’에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고려련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를 제시하면서 단일국호에 따른 유엔 동시가입과 대외활동을 주장하였다.

결국 ‘고려련방공화국안’은 초창기 연방제 방안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통일지향적이라는 인식을 부각시키면서, 실제로는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의도는 1974년 1월 30일 개최된 남북 조절위원회 제3차 부위원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 회의에서 북한측 부위원장 류장식은 ‘대민족회의’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대표단의 인원수를 최소한 각각 350명 내지 1,500명 규모로 하고, 남한측 대표단 속에는 반공정당, 반공단체, 반공인사들이 참가할 수 없으며, ‘통일혁명당’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에서 기존 연방제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과 북에 두 개의 지역자치정부를 수립하고 그 위에 통일연방정부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의하였다.³⁴⁾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우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① 남한에서의 군사파쇼정권의 청산과 사회민주화 실현 ②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 ③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통

34)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1), pp.56~57.

IX. 대남 · 통일

일실현 등을 제시하였다.

연방공화국 창립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동수의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 지역정부들을 지도하고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며,³⁵⁾ 남북한 군대를 축소하여 ‘민족연합군’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방국가의 대외정책노선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천에 옮겨야 할 정책방향을 ‘10대 시정방침’으로 제시하였다.³⁶⁾

북한이 1980년에 제시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연방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과 함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통일방안의 명칭으로 ‘고려련방공화국’이라는 국호에 ‘민주’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 하였고 또한 방안 구성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연방형성의 원칙과 연방기구의 임무 및 기능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과도적 방안으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완성형 통일국가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상정한 점이다.

셋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용납하는 원칙 위에서 연방정부를 수립

35) 북한은 연방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1983년 9월 9일 공화국창건 35돌 경축연회 김일성 연설을 통해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은 북남이 료번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동신문』 (1983. 9.10)

36) 북한은 ‘10대 시정방침’으로 ①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 견지와 자주적 정책 실시, ②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적 대단결 도모 ③ 경제적 합작교류 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④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교류협조 실현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의 발전 ⑤ 교통·체신 연결과 자유로운 이용보장 ⑥ 근로대중과 전체인민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의 계통적 증진 ⑦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 및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보위 ⑧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의 옹호 및 보호 ⑨ 통일이전의 대외관계의 처리 및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 조절 ⑩ 통일국가로서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 발전 및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련방상설위원회’가 정치·외교·군사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전제와 모순되게 남한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정권의 퇴진, 주한 미군철수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북한은 10대 시정방침을 연방제로 통일된 이후에 실시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통일방안과 함께 제시하여 연방제 방안이 구체적이고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련방’이라는 용어를 국문과 외국어로 표기할 때 차이가 나는 것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이중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문으로 표기할 때는 ‘련방’으로 표기하여 연방정부가 군사·외교권을 포함한 대외주권을 행사하는 연방형 통합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로 표기할 때는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이라고 함으로써 ‘국가연합’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선(先) 선결조건 관철, 후(後) 합작공산화의 실현’을 의도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여전히 ‘남조선혁명전략’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 안

북한은 1991년 1월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기존의 통일완성형 연방제 주장에서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은 동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 나가도록 후대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IX. 대남·통일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⁷⁾

또한 김일성은 “제도를 단일화하려는 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까지 빚어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언급내용은 북한이 종래의 완성형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잠정적·단계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제도통일을 흡수통일로 보고 제도통일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제도통일 후대론’, ‘지역 자치정부의 권한 강화론’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1990년 동서독이 서독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이룩한 데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제도통일은 동·서독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력이 약한 북한이 남한에 흡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단계적 연방제론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정세변화를 관망해 보려는 수세적·방어적 태도로의 방향 전환이었다.

북한의 이 같은 통일전략의 변화는 1993년 4월 김일성의 소위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³⁸⁾을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있다. 김일성은 10대 강령 제 1항에서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37) 『로동신문』(1991. 1. 1)

38)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1993. 4. 7) 강성산 보고를 통해 ① 민족대단결로 자주, 평화, 중립적 통일국가 창립 ②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 ③ 공존·공영·공리 도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인정 및 존중 ④ 모든 형태의 정쟁 중지, 외세의 침략에 공동대처 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가시고 신뢰하고 단합 ⑥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서로 다른 주의 주장에 대한 배척 중지 ⑦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 보호 및 민족대단결 이용장려 ⑧ 접촉, 왕래, 대화의 실현 ⑨ 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연대성 강화 ⑩ 민족대단결과 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 등 10개항을 제시하였다.

각과,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민족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전민족 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뿔뿔 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소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규정하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2000년대: ‘낮은 단계 연방제’ 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낮은 단계 련방제’안이 제기되었다.³⁹⁾ 북한은 동년 10월 개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기념보고회(2000.10. 6)에서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 보고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낮은 단계 련방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혔다.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⁴⁰⁾

이러한 ‘낮은 단계 련방제안’은 지난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제시한 연방제 방안과 비교할 때 두 개 정부의 권한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39) ‘6·15 남북공동선언’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0) 『조선중앙방송』(2000.10. 6)

IX. 대남·통일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91년의 연방제 방안에서는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라고 되어 있어, 권한의 개념이나 범위가 모호하였으나, ‘낮은 단계 련방제안’에서는 두 개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고 함으로써 두 개 정부의 권한을 명확히 하였다.

북측이 우리측의 ‘연합제안’에 접근된 ‘낮은 단계 련방제안’을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장 통일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의 중간단계에서 남북 정부의 대내외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 틀 위에서 상호 공존과 협력을 제도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기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의 권한을 그대로 갖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통일방안을 이론적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북측의 ‘낮은 단계 련방제안’이 우리측의 ‘연합제안’과의 공통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 추이에 따라 북측의 ‘낮은 단계 련방제안’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세분화되어 가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 사회주의 헌법
- 조선로동당 규약

사회주의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1972.12.27)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1992. 4. 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1998. 9. 5)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 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 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 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 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자료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면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빨력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룡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 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자료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노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범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

자료

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게

자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 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예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사회를 인텔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자료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

자료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 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 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 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

자료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 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 기관이다.
-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 수 있다.
-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 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자료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4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분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자료

9.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제122조 내각 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제124조 내각은 자기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5조 내각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 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 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 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 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

자료

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중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뿔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조선로동당 규약

(1980.10.13 제6차 당대회 개정)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으며 오랜 항일혁명투쟁을 통해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한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

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계속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활발히 수행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자료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 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원

1.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
2.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된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 규약을 준수하는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
3. 조선로동당 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입당청원자를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

입당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후보당원으로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 시(구역), 군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위원회의 입당보증서는 당원 1명의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당 세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세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당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입당보증인은 최소한 2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사회, 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보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을 진다.

-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밑에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1개월 내에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 4)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특별히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 5) 타당에서 출당한 사람이 입당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진 당원 3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타당에서 평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시(구역), 군 당위원회가, 시(구역), 군급의 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관할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도(직할시), 중앙위원회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당중앙위원회가 각각 최종적으로 비준한다.

- 6)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에게 당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원심사총회에서

자료

그의 입당자격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의 입당 준비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마친 후에도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명부에서 삭제된다.

후보기간을 연기하거나 후보당원을 명부에서 삭제시키는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 후보당원이나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이 된 자의 입당일시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4. 당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그것을 옹호하며 로동과 생활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2) 당원은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한 높은 조직의식을 가지고 당 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사상생활에 충분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며

자신의 당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며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기를 혁명가로 단련시켜야 한다.

당원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체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당규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규율 위반에 대하여는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3) 당원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자기의 정치, 사상, 문화 및 기술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은 주체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며 경제 및 선진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상황을 료해하며 자신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당원은 혁명적 균중로선을 관철하며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당원은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며 그들을 교양 개조하여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들을 동원하며, 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접수하여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 5) 당원은 로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규범이 되며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집단의 혁명과 투쟁을 지도하며 자신과 가족의 혁명화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정통하며 맡은바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로동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기업관리운영에 솔선 참가하며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하여 나라의 경제를 절약해야 한다.

- 6) 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당원은 높은 혁명적 자립정신을 발휘하고 모든 애로에 대하여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당원은 항상 소박, 솔직, 겸손하여야 하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당과 함께 솔직하며,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이어야 하며 국법과 사회질서 및 공중도덕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7)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긴장된 동원 태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적의 침략으로부터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에 대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8) 당원은 혁명규율과 질서를 준수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안일과 나태함이 없이 혁명적인 경각성을 높이고 당, 국가 및 군사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9) 당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과 부정적인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 당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규정된 당비를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5.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수행 및 당사업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의 투표권과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당원은 당회의에서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막론

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어떠한 지시의 준수도 거절할 수 있다.

-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위원회에 어떤 신소나 청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6) 후보당원의 임무는 당원의 임무와 같다. 후보당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 7) 당의 규율을 위반하는 당원은 당의 책벌을 받는다.

①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파벌조성행위를 하거나 적과 타협하는 등 당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② 당원의 칭호를 박탈하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 대하여는 과오의 경중에 따라 문책, 엄중경고, 또는 권리정지나 후보당원으로 강등하는 책벌을 적용한다.

③ 당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당원을 교양하는데 있다.

당의 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그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④ 당책벌은 본인의 참가하에 그가 속한 당세포총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벌을 토의 결정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는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직접 책벌을 내릴 수 있다.

당원에게 책벌을 적용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당원자격 박탈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직할시)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이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의 당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당생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 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해당 당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세포는 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당규율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당원에 대한 책벌을 해당 당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세포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범한 과오가 해당 위원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에는 엄중경고까지의 책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종파 및 기타 다른 분파에 참가한 당원에 대한 당규율문제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평당원 또는 시(구역), 군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도(직할시) 당위원회에서, 도(직할시) 또는 중앙당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7.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는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청원을 지체없이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8. 당세포는 항상 책벌을 받은 당원을 방조하여야 하며, 만일 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이 개선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책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문제를 총회에서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 당원이 받은 책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해당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받은 책벌의 해제는 그 책벌의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해당 당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9. 정당한 리유없이 6개월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 당세포는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2장 당의 조직원리와 조직구조

11.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
- 1)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선출된 당지도기관은 선거한 당조직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화 보고한다.
 - 2)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
 -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 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자료

12.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노동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분야의 전체사업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분야의 일부사업을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13.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총참모부이다.

집단적 지도는 모든 당위원회의 기본활동지침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여 그것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개인적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해당 지역 또는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토의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4.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전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없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초급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2)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의 대표자는 차하급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조직의 당대표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작성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는 당대회가 결정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수와 초급당위원회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당대표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준후보위원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당원중에서 선출된다.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세칙에 따른다.

15.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의 제명 또는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시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치위원회 가운데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결원된 수만큼 당위원회 보조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만약 필요시는 당위원회 결원은 위원회의 후보위원이 아닌 다른 당원으로 보선될 수 있다.

초급당조직 집행기관위원의 제명 및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실행된다.

초급당이 하급당의 규모가 방대하거나 널리 분산되어 있고 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총회(당대표회)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초급당위원회가 결원보충을 위한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상급 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의 책임비서(비서) 또는 비서(부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각급 당기관의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참가하되 발언권만 가진다.

자료

16.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당위원 또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고 제기된 문제의 결정은 해당 당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17. 각급 당위원회내에는 필요한 부서를 설치한다.
부서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은 당중앙위원회가 가진다.
18.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및 그들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초급 당위원회 및 분초급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도(직할시)당위원회가 비준하고 소수당원을 가진 초급당위원회 또는 부문당위원회 및 당세포의 조직과 해산은 시(구역), 군당위원회가 비준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는 당조직의 조직과 해산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을 막론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및 당 규약을 엄중하게 위반하거나 실천을 태만히 한 경우에 그 당조직을 해산하고 소속당원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며 그들을 재등록하여 새로운 당조직을 조직할 수 있다.
20.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및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당조직의 구성, 당조직의 활동방법과 기타 당건설의 제반문제에 관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2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회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 소집기일과 의정을 3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당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 3) 당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 4)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

23.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 지도하며 당과 혁명대열을 공고히 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 조정하며 혁명적 무력을 조직, 그들의 전투능력을 높이고 기타 정당 및 국내외기관의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24.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출한다.

25.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 한다.

26.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27.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자료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28.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 및 기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29.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한다.
30.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의 대표자 선거절차와 대표자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

제4장 도(직할시)의 당조직

31. 도(직할시)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도(직할시)당대표회이다.
도(직할시)대표회는 3년에 1회 도(직할시)당위원회가 소집한다.
도(직할시)대표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대표회의 소집일과 의정을 2개월 전에 하급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2. 도(직할시)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도(직할시)당위원회와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도(직할시)당위원회 및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 선출

3) 당대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출

33.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굳게 무장시키고 그들이 당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건결히 투쟁하도록 감독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며 당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하급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근로대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기 기본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 조정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적절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 전투력 향상을 조직적으로 지도하며 군사 동원사업을 보장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소관 사업에 관해 당중앙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4.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전원회의를 4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며,

비서처를 조직하고,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도(직할시)당위원회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 사업을 지도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비서는 인사행정 및 당내문제에 대해 필요시 마다 토의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35. 도(직할시)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또는 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로선 및 정책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제의 및 출당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비준하며 당규율 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해결한다.

제5장 시(구역), 군의 당조직

36. 시(구역),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시(구역), 군당대표회이다.
시(구역), 군당대표회는 시(구역), 군당위원회가 3년에 1회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시(구역), 군당대표회는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시(구역), 군당위원회는 시(구역), 군당대표회의 소집일자와 의정을 1개월전에 산하 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7. 시(구역), 군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시(구역), 군당대표회의와 시(구역), 군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시(구역), 군당대표회의와 시(구역), 군당검사위원회 선거
- 3) 도(직할시)당대표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거

38.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수행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보장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한다.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의 핵심을 연구 주지시키고 그 대열을 확대시키며 당원 확대사업을 정기적으로 조직 수행하며 당의 역량을 적절히 배치하고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과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당기총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초급당조직의 집행기관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능과 역할의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매일같이 지도 방조한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을 강화하고 임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 리행을 감독한다.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정확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사상교양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자기의 사업에 관해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9. 시(구역),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3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시(구역),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시(구역), 군당위원회의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하고 행정 및 경제 사업을 지도한다.

시(구역),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1개월에 2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시(구역),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문제제기시마다 인사행정 등 당내 사업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며 그 결정을 집행한다.

시(구역), 군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40. 시(구역), 군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 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심의 처리한다.

제6장 당의 기층조직

41. 당의 최하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며 당주위에 대중을 집결시키고 대중 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당의 전투단위이다.

42. 당의 기층조직의 조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한다.

당원 5명미만의 단위에는 당세포를 두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은 린접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작업성격과 린접관계를 고려하여 2개이상 단위의 당원을 합병하여 1개의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 3~4명이 있는 단위 또는 30명 이상의 단위에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 3명미만의 단위에는 시(구역), 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조직을 둔다.

3) 초급당조직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생활단위에는 부문(마을)당조직을 둘 수 있다.

4) 초급당, 부문당 또는 당세포의 조직형성만으로는 당기층 조직 구성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초급당조직과 부문당조직 사이에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 분초급당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5) 이상의 모든 당조직형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실정에 맞는 다른 당조직형성을 취할 수 있다.

43. 당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조직의 총회(대표회)이다.

1) 당세포총회는 1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마을)당의 총회(대표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초급당조직이 500명이상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구성되어

자료

있거나 그 산하조직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초급당 조직의 총회를 1년에 1회이상 소집할 수 있다.

44. 당의 기층조직은 1년임기의 해당조직을 집행기관을 선거한다.

- 1) 당세포는 총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 2) 초급당위원회, 분초급위원회, 부문(마을)당위원회는 각각 당총회(대표회)에서 선거하며 비서, 부비서는 각각 당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한다.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각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3회이상,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마을)당위원회는 1개월에 2회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1회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한다.

- 3) 중앙기관의 당조직은 당지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45. 당기층조직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여 끝까지 옹호 관철하도록 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 2) 하급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며, 당핵심을 주지, 교양하며 부단히 그 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 3)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한다.
당원들 속에 당규약 학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그들에게 항상

혁명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하고, 모든 활동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도록 당의 임무를 부여하며, 높은 정치 사상적 수준에서의 당회의와 당생활 총화를 수행하며 당원의 당생활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당원들을 혁명가로 개조하고 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을 강화한다.

당원이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도록 그를 방조한다.

- 4) 당원 책임자를 발견 등록하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교양하여 심사 후 자격자를 입당시키며 후보당원과 새로 입당한 당원들을 교양 훈련시킨다.

- 5)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육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무리에 결속시킨다.

- 6) 근로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겸손히 접수하고 그것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모든 단위와 직장에서 계통과 질서를 확립하며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

- 7) 근로대중의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 8) 모든 사업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및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적용하고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며 행정 및 경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 8)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그들의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며 3대혁명붉은기쟁취 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술 혁신운동을 촉진

- 하며 노동생산능률을 제고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 절약하도록 그들을 조직, 고무한다.
- 9)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 사상, 교양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당이 부를 때 항시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10)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하며 당비를 거출하여 자기 사업에 관해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7장 조선인민군대내 당조직

46.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47. 조선인민군대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8.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전군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 당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한다.
- 간부대열을 강화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 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

교양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조선인민군대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당군사로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 기증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당원과 전사들이 언제나 지체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견지도록 하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도록 고무한다.

당원과 전사들에게 높은 혁명적 동지에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 간의 고귀한 전통적 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49.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 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을 수행한다.

50.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지방 당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조선인민군대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를 주둔지역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및 공장 기업소의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장 정치기관

51.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 및 그들에게 소속한 정치기관들은

자료

해당부문에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에게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조직 수행하며, 해당단위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5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당 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3.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하급정치기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당위원회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54.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동원키 위하여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5. 정치기관들은 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한다.

제9장 당과 로동대중의 조직

56.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대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

57.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꾸리며 동맹대열을 강화하며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를 통해 동맹원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키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

58. 각급 당조직들은 로동대중의 간부대열들을 강화하고 근로대 중조직의 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근로대중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장 당의 재정

59. 당의 재정은 당원들의 당비, 당이 운영하는 기관들과 기업소들로부터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60. 당원 및 후보당원의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2004 북한개요

초판인쇄 : 2003년 12월 18일

초판발행 : 2003년 12월 24일

발행처 :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 720-2425

팩스 : (02) 3703-2435

인터넷 : <http://www.unikorea.go.kr>

인쇄처 : 웃고문화사

구입문의 : 정부가해물 판매세타

정가 9,000원